

발간 등록 번호

11-1620000-000936-01

202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2.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 한국피해자학회

직 급 (명) : 교수(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장)

성 명 : 김 혜 경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문요약〉

연구책임자: 김혜경(계명대학교)

공동연구원: 김 혁(부경대학교)

공동연구원: 송귀채(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장 서론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우선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 피해자중심적 형사사법 개혁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기관들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유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피해자의 보호 정도 및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처와 관계기관이 일관성 없이 개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과도한 절차의 중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아무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경제적으로는 재정의 한계 문제, 인적·물적 자원의 한정 문제 등이 드러나기도 하며,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2차적 범죄피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피해자가 원활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복귀를 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범죄피해자 중에서 특히 중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중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적 정비가 후속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 피해자 지원의 실태를 파악함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종사자들과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타기관들과의 연계 현황, 실제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의 정도,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이 느끼는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 범죄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여부, 범죄피해자들이 지원과정에서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의 제시, 그리고 외국법제의 연구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도출 등을 주요 연구 목표로 삼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연구대상으로서의 중대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의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대상이 범죄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제5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라고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범죄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지침 상 지원대상 범죄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범죄에의 취약성이 강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범죄 등도 그 피해의 경중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서는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에 있어서는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법·제도에 관하여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의 특성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시사점은 각국 별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피해대상 범죄 또는 피해자의 특성별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비교검토를 통해서 국내에의 적용가능한 법률 또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현행 우리 법제도와와의 양립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현황부분에서 실제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실제 범죄피해의

당사자와 지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해당 조사에 있어서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구별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심층적 면접조사를,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원센터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번거로움, 피해지원관련 정보획득상 문제점, 실제 범죄피해 회복에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행하고자 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지원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법률상 장애요소의 존재여부,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피해자 지원의 시간적 지연의 원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상의 실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과제를 도출함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목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요약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우리나라의 중대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UN 피해자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에게는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국인 피해자와 구분 없이 구조금의 지급 등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는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UN 피해자인권선언은 분쟁해결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참여권 등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절차참여를 위하여 지원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지원 절차의 번잡성이나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범죄피해자에게는 원상회복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상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국가는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UN 피해자인권선언은 고의범과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과실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의 니즈와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은 전문성을 갖추고 상호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독일, 영국, 일본의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해 보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피해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얀 고리,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여성긴급전화·여성상담소, 여성의 집, 반(反)인신매매 및 이주여성 폭력협회 등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피해자규칙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취약 피해자 등에게는 형사절차상 강화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살인사건의 유족,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을 실시하는 지원기관들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소년 및 아동 피해자, 폭력단 범죄의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피해자 보

호·지원체계는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호·지원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정부 기관과 협력, 연계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화 되어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경찰과 민간단체인 ‘피해자 서포트’가 공통된 사건처리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으며, 피해자보호팀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기관 협력을 통한 개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관과 민간지원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다기관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연락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별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등 폭넓은 범죄피해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액이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친족간 범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이 없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 최근 급부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내용을 발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넷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회비, 기부금, 현금, 유증, 벌금의 일부 할당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형벌부과금 제도를 재원으로 각종 피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일반회계로 운용함으로써 형벌부과금의 납부 상황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2010년 폐지된 「범죄피해자구조법」(1988.7.1. 시행, 법률 제3969호)에 따라 도입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써 대부분의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기본법 성격의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2005. 12. 23. 법률 제7731호를 제정함으로써 손실 복구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1. 1.1. 시행, 법률 제10284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가 주무기관으로서 모든 유형의 피해자를 구별 없이 통합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아동학대범죄는 보건복지부가, 학교폭력은 교육부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공공은 검찰을 통해 구조금, 주거지원 및 5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형사절차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경찰을 통해 관련기관 연계, 신변보호, 심리지원, 임시숙소지원, 사건현장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5주 미만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치료부대비용, 긴급생계비, 학자금, 간병비, 취업지원비, 돌봄비용, 물품 지원 등과 비경제적 지원으로 심리치료, 주거환경개선, 법정동행 및 법정모니터링, 사회보장제도 연계 등 다양한 통합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안정과 일시보호를 위한 스마일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관 통합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1366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유형별 각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입양, 학대아동피해자 보호·지원 및 돌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두 부처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은 사업의 성격상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이 학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이 중하여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피해 복구를 위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합하기도 어렵고 통일된 제도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부처가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고 이후 각 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원활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행 경제적 지원 대상 중 일부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를 구조대상으로 흡수하여 구조금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행 구조금 제도에서 불합리한 구조금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각 부처 사업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며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에 협력하고 있으나 조직이나 상근종사자 인력구조가 현재에도 10년 전이나 다를 바 없어 매우 취약하고 지원도 미미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종사자 인력보강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이미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은 주로 그 보호·지원 대상이 여성이고 사업 성격도 사건 발생 단계에서부터 상담 등 개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유사한 대상 사업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이나 예산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도 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된 경우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지원은 공공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필요한 사업이고 비경제적 보호·지원 서비스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수행하기에 더 적절한 사업으로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보호·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피해자를 제한 없이 통합지원을 하되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상담, 보호시설 운영, 심리치료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 시범으로 시행하게 될 범죄피해자원스톱통합지원센터도 기존 제도권 시스템과 어떻게 차별을 하면서 상호 부족한 체계를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제1절 조사의 배경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비롯하여 총 60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자 149명 중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외에 스마일센터와 상담소 및 아동보호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일센터의 경우에는 의정부, 동부, 서부, 수원, 제주 스마일센터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에 굿씨 상담소 및 서로사랑상담소, 그린트리 예술치료센터와 서울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총 215명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봉사자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각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기관으로 직접 내방을 범죄피해자 14명이었고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무처장이 각각 10명과 7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명의 피면접 범죄피해자들이 겪은 범죄로는 존속살인을 포함한 살인범죄, 가정폭력, 강간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특수상해를 포함한 상해, 과실치상, 스토킹 범죄들이었다.

설문조사의 방식은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객관식 및 주관식의 서

술형을 주로 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심층면접으로서 개별질문에 대하여 피면접자의 생각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제1문항은 기관봉사자가 중대범죄피해자의 존재를 어떠한 경로로 인식하고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연계기관에 대하여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단위로는 경찰에 의한 연계가 가장 많았지만, 검찰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범죄사건이 접수되고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에서의 연계활동과 사건이 검찰에 이관된 이후 검찰에서의 지원기관 연계활동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직접 지원기관에의 지원요청이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사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사법기관에 의한 직접 지원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순 안내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기관 간 연계율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과의 연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마일센터로부터 연계받은 비율이 12%로 나타났고, 피해자가 직접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도 14%에 이르렀다.

문항 2는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중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연계받은 기관들 중에서 주로 사건을 의뢰한 기관을 확인하고 그 중요도를 순서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을 주요한 연계기관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이한 점은 제주지역의 경우에만 검찰을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한국여성의 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 스마일센터나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역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의 연계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이 1문항의 가장 많이 연계 받은 기관이자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및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불일치의 정도가

다소 심한 편이다. 모든 지역 전반에서 경찰과 검찰이 가장 주요한 연계기관 1순위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중이 많았으며, 그 외의 기관들은 피해자 본인이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이 순위에 있다. 이외에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 연계기관으로서 1순위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문항 3부터 문항 6-1까지는 중대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기관에 범죄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까지 및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신청을 하는 방법 및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문항 3은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중대범죄 발생일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의뢰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택은 1주 이내부터 5주 이내 및 5주 이상 그리고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두었다. 우선 전체 모든 종사자들의 응답에 있어서 4주 이내가 32%로 가장 많았고, 5주 이내가 19%로 그 다음이었으며, 1주 이내는 13%에 불과하였고, 2주 이내는 16%였다. 반면 5주 이상 즉 약 1달이 넘게 소요된 비율도 11%에 이르렀다.

문항 4는 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의뢰 또는 연계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해당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기초상담을 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의도하였다. 또한 선택은 문항 3과 같고, 기타 구체적 기술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두었다. 모든 지역에서 5주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경북과 서울에서 각각 기타의 응답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1주일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73%를 차지하였으며, 2주 이내까지의 누적 총계가 91%로, 90% 이상의 사건이 일단 사건지원의뢰가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지원안내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4-1 문항 4에 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보호·지원 안내(기초상담)를 받은 후에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선택은 문항 3과 같다. 해당 기간은 실제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까지의 소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주일 이내 실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전이 67%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지역은 모두 1주일 이내 신청을 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강원, 광주, 부산, 울산,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은 단 한건도 1주일 이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문항 4-2는 사건이 발행한 후에 해당 중대범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보호·지원안내(기초상담)를 받은 이후에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및 그 빈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선택은 매우 자주, 자주, 가끔 발생하는지와 거의 없거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자주 발생 및 매우 자주 발생의 누적 비율은 11%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연락불가이거나 상담 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5는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선택은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전화로 구성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문 방식은 전체 신청방법 중에서 22%로 팩스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팩스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성화된 방법으로 나타났고, 전체 비율 중 24%에 해당하였다. 반대로 홈페이지 이용의 경우 강원,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충북 7%, 대구 5%, 인천 5%, 전남과 충남 3%로 이용도가 매우 낮았다. 제주 24%, 경기 13%, 경북과 서울 12%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6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지원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초기의 경제적 또는 심리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역시 선택지는 문항 3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1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은 8%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 즉, 평균 5명의 피해자 중 1인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답변하였고, 서울이 19%, 경남 8% 및 경북 7%만이 1주일 이내에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누적 2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은 서울이 가장 많은 58%로 중대범죄피해자 2명 중 1명은 2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40%로 많았고, 누적비율로는 경북 34%, 제주 25% 수준이었다. 그 외에 경남 16%, 경기 9% 정도만이 2주 이내에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27%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문항 6-1은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중대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택은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미흡하다까지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합계

별로는 매우 그렇다가 40%, 그렇다가 28%로 누적비율로는 약 68%의 응답자가 긴급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27%였고,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현장에서 긴급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긍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설문들은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이후에 실제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기간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설문 7의 문항은 사건 유형별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종사자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건유형별이라 함은 중대범죄를 6개군으로 구분하여서, 강력범죄(살인, 상도 상해 등),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학교폭력범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언급한 중대범죄 유형군에 해당하는 분류로서 각각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내용과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체 서비스를 100으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지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회복프로그램의 이용은 각각 전체 대비 13% 정도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신변보호프로그램으로 10%에 해당하였다. 현장지원프로그램은 7%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고, 취업지원이 5%로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각 중대범죄별 및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현황은 본문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문항 8부터 11까지는 사건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관하여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및 불만족의 원인 등 만족도에 관한 설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 8은 설문응답자인 지원기관 봉사자로서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질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사건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내용과 질에 관한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선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23%이고, 약간 만족한다는 답변은 35%로서 긍정적 평가가 58%에 해당하였다.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은 29%로 전체의 약 1/3 정도에 미치지 않는았다.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조금만 만족한다는 답변은 11%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에 불과하였다.

문항 9는 만일 만족도 조사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경제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제공조건의 까다로움, 접근성의 불편, 자원의 부족, 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저하 또는 기타 구체적인 이유의 직접 기재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이었다. 전체 47%에 달하는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이를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제공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였으며, 자원(인프라) 부족이라고 본 응답이 15%에 달하였다. 그 외에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본 경우는 9%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응답은 4%에 불과하였다.

문항 10은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 외에 사항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복적인 응답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보완점 및 개선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지원의 신속성과 지원의 지속성 및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각각 14%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지원의 전문성과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 및 간편성이었고, 응답자의 12%가 이에 동의하였다.

문항 10-1은 만일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들로 부터 항의나 이의제기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될 만한 사항을 11개를 제시하고 가장 많은 순서로 3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문항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느낀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이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에 대한 항의가 17%로 가장 많았고, 지원의 지속성이 16%, 지원의 신속성이 15%로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수사절차나 진행상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항의가 14%로 네 번째 순위였다. 반면에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집단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이의제기는 단 1%에 불과하였고, 직원대응의 적극성, 직원 접촉의 용이성과 방문상담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가 2%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11은 지원기관의 봉사자들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순위를 정하여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봉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서비스 역시 경제적 지원으로 전체의 53%가

이를 우선순위로 보았다. 특히 강원, 경남, 광주, 전남 지역은 봉사자 전원이 이를 시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지원에 관하여 대전 지역은 전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외에는 신변보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7%였고, 법률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였다. 그러나 주거지원, 취업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조정지원, 생활관 입소 프로그램의 운영, 기타 사회적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항 12번은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한 경험에 관한 질문이다. 그 결과 매우 자주있다 2%, 자주있다 20%, 보통이다 20%, 가끔 있다 약 33%, 없다 25%로 확인되었다.

12-1번 질문은 12번 질문과 연계된 질문으로 기관의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부예산지원을 기본으로 민간후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1%, 지자체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을 정부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민간후원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2%, 법무부가 지원금을 실적에 따라 지원기관에 분배해야 한다는 응답이 3%, 실적에 따른 예산분배는 지원활동을 위축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11%, 회계나 업무감독을 법무부로부터 받는 조건의 지원금 제공은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해한다는 응답은 단 한명으로 통계상으로는 0%에 해당하였다.

마지막 문항인 13번은 공공과 민간이 주축이 되어 범죄피해자지원이라는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조건은 연계 협력이라는 점에서, 13-1번부터 13-4번까지 질문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연계를 통한 협력과 협업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이 중 13-1번은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소, 스마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체 응답자와 경찰과의 연계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고, 13-2번은 위 응답자와 검찰과의 연계 활성화 정도를, 13-3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정도를, 13-4번은 다른 피해자 지원(수사기관과 지자체 제외)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3-5부터 13-10번 문항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13-5번 질문은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13-6번은 다른 관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이고, 13-7번은 서비스 이용상 편리

성을 묻는 질문이며, 13-8번은 범죄 유형별 서비스의 차별화에 관한 질문을, 13-9번은 기관별 전문성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 여부를, 13-10번은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관한 전체 지역별, 기관별 분석 결과는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응답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통계, 문항에 대한 지역별 비교, 지원기관별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그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은 살인, 강도, 폭행, 상해, 스토킹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소위 중대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이후 개인적인 변화와 지원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변화와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원을 통하여 실제로 범죄피해 회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와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회복 간의 구체적인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개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범죄피해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지원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개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 지원을 받기까지 유선, 기관방문, 형사사법기관에서 행한 연계, 문자안내 등 총 몇 번의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최종 범죄피해를 위한 지원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의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지 여부, 범죄피해에 관하여 공식적인 기관에 접촉한 이후 최종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 중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2차적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었는지,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에 최초 지원요청한 내용과 최종 지원받은 내용은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기타 인권침해라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와 구체적 사례,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또 그 내용이 중복된 점은 없었는지,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싶은 부분, 종사자로부터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는지 여부, 범죄피해 발생 이후 센터에서 피해자지원신청 접수를 하기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지원신청이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유, 지원신청 후 가장 먼저 받은 서비스 종류, 피해자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각 응답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4절 소결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소요 및 최초 연계 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발생 당시부터 최초의 개입기관은 경찰이 가장 많았지만, 최초 범죄발생일로부터 직접 지원기관에 연계의뢰를 하는데 소요기간이 1달 이상 걸린다는 점은 경찰에 의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연계노력이 보다 필요함을 확인하게 하였다. 예컨대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인지 후에는 수사와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연계를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관련 서류를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인계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강조하는 지원서류의 복잡성이나 서비스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원기관마다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같지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범죄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최초 연계되는가에 따라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다른 연계 또는 신청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간의 연계가 보다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지원기관간의 연계는 그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른 지원기관과 유기적 연계율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최초 범죄발생일로부터 중대범죄 보호의뢰를 하는 기관들은 다수이지만,

지원기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관은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단일화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원신청의 방법에 있어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매체의 이용도는 매우 적은 반면, 방문이나 팩스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이 보다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지원신청 방법을 신속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피해자 별 제공되는 보호·지원서비스는 다소 상이하였다. 그렇다면 각 기관별로 특히 많이 다루는 중대범죄별로 특화된 보호·지원서비스를 집중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다른 특화된 보호·지원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기관별 서비스 내용을 특화하고, 기관연계 방식으로 서비스 종류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심층면접과 연관지어 보면, 범죄피해자들은 최초로 받았던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인식이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관별 전문성을 높여서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기관별 자체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원기관의 활동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는 지원기관 자체적으로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정부나 지자체 등에 의한 충당히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사자들은 보호·지원기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에 앞서서 기관 간의 상호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보호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거나 보호·지원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거의 2/3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지원현장에서도 통합과 연계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이 다르므로, 특성에 맞는 전문 기관을 따로 두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분업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나친 분절화를 지양하는 한편,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366 등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초기부터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사절차 개시 이후에 필요한 경우 위 지원기관으로부터의 연계를 받아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때 최초로 피해자와 접촉한 기관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유형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여타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타당하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하여 유사 지원사업을 조정·통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일센터 업무의 상당부분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 여타 보호·지원기관의 지원 내용과 중첩되며, 최종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스마일센터와 여러 재원으로 운영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따로 두고 국가의 지원 예산을 분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공단'의 형태로 전환하여 각 부처의 관련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통합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해 모금된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스마일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심리치료나 트라우마 관리에 집중하고, 기타 중복사업 특히 주거지원이나 법률지원의 경우 강력범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등 관련 사업의 통합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가 특화된 기관에 해당 지원을 의뢰하면, 스마일센터는 심리치료에 특화된 기관으로서 심리치료와 지원에 집중하는 역할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지원사업을 통합하여야 한다. 현장의 종사자들은 대체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기관과의 연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여가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의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 개별법의 난립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 부처별로 개별 범죄피해자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설과 조직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유사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유사 영역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통합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제2절 통합적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가칭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여러 기관을 경유할 경우 반복진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기관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면, 모든 기관이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원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최초로 피해자와 접촉한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개략적인 내용, 제공된 지원서비스 등을 입력하고, 연계되는 모든 지원기관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망의 구축을 통하여 지원기관별로 지원 안내에서 지원신청까지 소요기간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체적인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입력·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공급자 중심의 반쪽짜리 지원체계에 그칠 우려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 기관들이 피해자의 정보 및 지원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가 관련 절차를 알아서 연계해주는 편이 훨씬 편리하고 부담도 적다. 따라서 최초로 피해자를 접촉한 기관은 유형별 특성화된 기관에 연계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자 지원의 책임기관이 되고, 연계 후에는 유형별 특성화된 기존의 지원기관이 최종 코디네이터가 되어 이후의 연계 및 지원과정까지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유형별 해당 기관의 코디네이터가 피해자와 상담하여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서식의 작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절차의 지연, 번잡성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 전담 청구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지원 절차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유지 및 자립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다. 먼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자 역시 구조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족 및 친족간 범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폐기하고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피해자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조금의 지급액 역시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특히 중상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 바, 5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상해구조대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구조금액 역시 상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해당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은 각각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역시 심의의결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의 심의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적 지원, 즉 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을 구조금의 체계 안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적 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현재의 협소한 구조금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폭넓게 설정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벌금액의 10%를 보호기금에 편입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형벌 외에 그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형벌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보호기

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형벌과는 별도로 법익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의 책임을 따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대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되는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기부금을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족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I.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II.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1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국제규범	15
I. 개요	15
II. UN 피해자인권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의 주요 내용	16
III. 시사점	17
제2절 독일	18
I. 개요	18
II.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19
III. 민간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	22
IV. 종합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26

제3절 영국	27
I. 개요	27
II.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29
III.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34
IV.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39
제4절 일본	42
I. 개요	42
II.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	43
III.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49
IV.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53
제5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5
I.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피해 특성에 맞는 지원	55
II.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56
III.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실시	57
IV. 재정의 안정성 확보	58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 실태	6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61
I.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행법적 근거	61
II.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62
제2절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69
I. 법무부 피해자 보호·지원	69
II.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5
III.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6
IV.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민간)	79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80
Ⅰ.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80
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중복	81
Ⅲ. 보호기금의 불균형적 배분 및 재정적 열악성	83
Ⅳ.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의 부족	84
Ⅴ. 민간지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86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91
제1절 조사 배경	91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92
Ⅰ.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기관 설문분석	92
Ⅱ. 지원신청 소요기간 및 지원방법	123
Ⅲ.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분석	149
Ⅳ.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서비스	167
Ⅴ.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만족도	214
Ⅵ. 지원기관 예산지원 및 활동 분석	245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274
Ⅰ. 심층면접의 의도와 목적	274
Ⅱ.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변화정도	275
Ⅲ.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278
Ⅳ.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282
Ⅴ. 기타 사항	287
제4절 소결	290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99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299
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분절화의 지양(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99
Ⅱ. 유사 지원사업의 조정과 통합	301
제2절 통합적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305
Ⅰ.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구축(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05
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06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308
Ⅰ. 구조금 구조대상의 확대(법무부)	308
Ⅱ. 구조금 지급액의 실질화(법무부)	310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312
Ⅰ. 경제적 지원의 통합(법무부, 대검찰청)	312
Ⅱ. 재정의 안정성 확보	315
참고문헌	319

〈표 차례〉

〈표 1〉 긴급임시숙소 위탁 현황(잉글랜드 및 웨일스)	38
〈표 2〉 구조금(검찰)	64
〈표 3〉 사망·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천원)	69
〈표 4〉 상해등 5주 이상 피해자 등 경제적지원 실적 (단위/천원)	70
〈표 5〉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보제공 실적	70
〈표 6〉 피해자 신변보호 실적	70
〈표 7〉 형사조정 실적	70
〈표 8〉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71
〈표 9〉 2022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실적	71
〈표 10〉 2022년도 유형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실적	71
〈표 11〉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종합) (단위/건·천원)	72
〈표 12〉 경제적 보호·지원 실적(세부) (단위/건·원)	73
〈표 13〉 의료비 보호·지원 실적(세부) (단위/건·원)	74
〈표 14〉 상담 지원 실적(비경제적)	74
〈표 15〉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비경제적)	74
〈표 16〉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5
〈표 17〉 2022년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6
〈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76
〈표 19〉 2022년도 학대아동 신고 및 판정 건수	77
〈표 20〉 2022년도 상황별 보호조치 실적	77
〈표 21〉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조치사례	78
〈표 22〉 2022년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실적(전체) ·	78
〈표 23〉 법무부(2022년 기준)	79
〈표 24〉 여성가족부(2021. 6. 기준)	79
〈표 25〉 보건복지부(2022년 기준)	80
〈표 26〉 지역별 연계기관 중복응답 수	93
〈표 27〉 지역별 전체 대비 각 기관의 연계수치	95
〈표 28〉 각 기관 간의 연계율	96

〈표 29〉 지역별 기관연계수치	100
〈표 30〉 지역별 1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 수치	103
〈표 31〉 지원기관별 중요 연계기관 응답률(수치)	107
〈표 32〉 지역별 2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수치	112
〈표 33〉 지원기관별 2순위 중요기관 선택 수치	118
〈표 34〉 지원기관별 3순위 중요기관 선택 수치	122
〈표 35〉 지역별 범죄발생후 지원(연계)의뢰 소요기간 응답수치	124
〈표 36〉 각 지역별 사건지원의뢰접수 후 지원안내까지 소요기간 응답수치	132
〈표 37〉 각 지역별 지원안내 후 지원신청까지의 소요기간 응답수치	136
〈표 38〉 기관별 신청소요기간 응답수치 비교	140
〈표 39〉 지역별 미신청 응답수치	141
〈표 40〉 지역별 피해자 지원신청 방법 응답수치	144
〈표 41〉 지원의뢰접수일부터 서비스지원시점까지 소요기간 응답수치	150
〈표 42〉 지원기관별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응답수치	157
〈표 43〉 지역별 긴급지원제도 활용 정도 응답수치	158
〈표 44〉 지원기관별 긴급지원제도 활용도 응답수치	161
〈표 45〉 각 단계별 기간소요비교	164
〈표 46〉 각 기관간 단계별 기간소요 비교	165
〈표 47〉 지역별 보호·지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합계	174
〈표 48〉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 제공수치	175
〈표 49〉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 분포율	177
〈표 50〉 지역별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제공 합계	181
〈표 51〉 지원기관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현황	182
〈표 52〉 지원기관 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제공 격차	183
〈표 53〉 지역별 성폭력범죄 보호·지원서비스 현황	186
〈표 54〉 성폭력범죄 보호·지원 서비스 전체 평균	188
〈표 55〉 지원기관별 성폭력범죄 보호·지원 서비스 현황	188
〈표 56〉 지원기관 간 성폭력범죄 지원서비스 평균과의 차이	190
〈표 57〉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지원 현황	190
〈표 58〉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비율	192
〈표 59〉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 현황	193

〈표 60〉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지원 서비스 평균과의 차이	194
〈표 61〉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류별 제공 비율	195
〈표 62〉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보호·지원서비스 비율	197
〈표 63〉 지원기관별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유형	198
〈표 64〉 지원기관별 서비스유형의 평균과의 편차	199
〈표 6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유형별 비율	200
〈표 66〉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지원 비율	201
〈표 67〉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02
〈표 68〉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평균과의 편차	203
〈표 69〉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 비율	204
〈표 70〉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현황	205
〈표 71〉 지원기관별 학교폭력범죄 보호·지원서비스 비율	208
〈표 72〉 지원기관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평균과의 편차	208
〈표 73〉 지역별 지원기관 봉사자 만족도 전체 평균	216
〈표 74〉 전체 만족도 조사 평균 응답률	217
〈표 75〉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218
〈표 76〉 지역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 응답수치	219
〈표 77〉 강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20
〈표 78〉 성폭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21
〈표 79〉 지역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22
〈표 80〉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23
〈표 81〉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24
〈표 82〉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25
〈표 83〉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26
〈표 84〉 스토킹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27
〈표 85〉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28
〈표 86〉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	229
〈표 87〉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30
〈표 88〉 종사자 불만족 원인	231
〈표 89〉 지역별 서비스 종사자 불만족 원인	232
〈표 90〉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234

〈표 91〉 지역별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응답수치	236
〈표 92〉 피해자 항의 또는 이의제기 사항 응답수치	237
〈표 93〉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1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239
〈표 94〉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2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240
〈표 95〉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3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241
〈표 96〉 1순위로 필요성을 인식한 서비스 응답수치	243
〈표 97〉 2순위로 필요성을 인식한 서비스 응답수치	244
〈표 98〉 12번 전체 응답자 현황	245
〈표 99〉 12번 전체 응답자 현황 그래프	246
〈표 100〉 12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47
〈표 101〉 12번 지역별·항목별 응답자 현황	247
〈표 102〉 12-1번 지역별·항목별 응답자 현황	252
〈표 103〉 13-1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56
〈표 104〉 13-2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57
〈표 105〉 13-3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58
〈표 106〉 13-3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59
〈표 107〉 13-3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59
〈표 108〉 13-4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60
〈표 109〉 13-4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61
〈표 110〉 13-4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61
〈표 111〉 13-5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63
〈표 112〉 13-5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63
〈표 113〉 13-5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64
〈표 114〉 13-6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64
〈표 115〉 13-6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65
〈표 116〉 13-6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66
〈표 117〉 13-7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67
〈표 118〉 13-7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67
〈표 119〉 13-7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68
〈표 120〉 13-8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69
〈표 121〉 13-8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69

〈표 122〉 13-8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70
〈표 123〉 13-9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71
〈표 124〉 13-9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71
〈표 125〉 13-9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72
〈표 126〉 13-10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73
〈표 127〉 13-10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73
〈표 128〉 13-10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74
〈표 129〉 2022년 기준 유족구조금 산출(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	311

〈그림 차례〉

[그림 1] 긴급 임시숙소의 침상 수(잉글랜드)	37
[그림 2] 총 연계받은 기관 규모	94
[그림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율	97
[그림 4] 상담소 연계율	98
[그림 5] 스마일센터 연계율	98
[그림 6] 아동보호기관 연계율	99
[그림 7] 서울지역 1순위 중요연계기관 응답률	104
[그림 8] 대구 지역 1순위 응답률	105
[그림 9] 충북 지역 1순위 응답률	105
[그림 10] 울산 지역 1순위 응답률	105
[그림 11] 전남 지역 1순위 응답률	105
[그림 12] 충남 지역 1순위 응답률	106
[그림 13] 전남 지역 1순위 응답률	106
[그림 14] 경북 지역 1순위 응답률	106
[그림 15] 전북 지역 1순위 응답률	106
[그림 1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응답률	108
[그림 17] 상담소 응답률	108
[그림 18] 스마일센터 응답률	109
[그림 19] 아동보호전문기관 응답률	109

[그림 20]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경찰 선택률	110
[그림 21]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검찰 선택률	110
[그림 22]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 선택률	111
[그림 23]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선택률	111
[그림 24] 경기 지역 2순위 응답률	113
[그림 25] 서울 지역 2순위 응답률	113
[그림 26] 제주 지역 2순위 응답률	114
[그림 27] 대구 지역 2순위 응답률	114
[그림 28] 강원 지역 2순위 응답률	115
[그림 29] 경남 지역 2순위 응답률	115
[그림 30]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경찰 선택률	116
[그림 31]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검찰 선택률	116
[그림 32]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 선택률	117
[그림 3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18
[그림 34] 상담소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19
[그림 35] 스마일센터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20
[그림 36]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20
[그림 37] 3순위 중요연계기관 선택률	122
[그림 38] 지역별 범죄발생후 지원(연계)의뢰 소요기간	126
[그림 39] 응답자별 기간 소요 단순 응답 횟수	127
[그림 40]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1주 이내	128
[그림 41]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2주 이내	129
[그림 42]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3주 이내	130
[그림 43]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4주 이내	131
[그림 44]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5주 이내	132
[그림 45] 지원의뢰접수 후 지원안내까지 소요 기간별 비율	134
[그림 4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응답률	135
[그림 47] 상담소 응답률	135
[그림 48] 스마일센터 응답률	135
[그림 49] 아동보호전문기관 응답률	135
[그림 50] 지역간 주차별 신청완료 비율의 비교	138

[그림 51] 범피센터 신청소요기간	139
[그림 52] 상담소 신청소요기간	139
[그림 53] 아전기관 신청소요기간	139
[그림 54] 스마일센터 신청소요기간	139
[그림 55] 전체 미신청 빈도	142
[그림 56] 범피해자지원센터 미신청빈도	143
[그림 57] 상담소 미신청빈도	143
[그림 58] 스마일센터 미신청빈도	143
[그림 59]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신청빈도	143
[그림 60] 지원신청방법별 이용빈도	146
[그림 6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방법비율	148
[그림 62] 상담소 신청방법비율	148
[그림 63] 스마일센터 신청방법비율	149
[그림 64]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청방법비율	149
[그림 65] 소요기간 주단위별 응답률	151
[그림 66] 지역별 1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52
[그림 67] 지역별 2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53
[그림 68] 지역별 3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53
[그림 69] 지역별 4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54
[그림 70] 지역별 5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54
[그림 71] 범피센터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56
[그림 72] 상담소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56
[그림 73] 범피센터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56
[그림 74] 상담소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56
[그림 75] 긴급지원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	159
[그림 76]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이 높은 지역	160
[그림 77] 긴급지원제도 활용이 낮은 지역	160
[그림 78] 긴급지원의 매우 적극 활용	162
[그림 79] 긴급지원의 적극 활용	162
[그림 80] 긴급지원의 활용 보통	162
[그림 81] 긴급지원의 활용 미흡	162

[그림 82] 전체 보호·지원서비스 이용률	169
[그림 83] 지원기관별 경제적 지원 비교	178
[그림 84] 지원기관별 의료지원 비교	178
[그림 85] 지원기관별 주거지원 비교	178
[그림 86] 지원기관별 취업지원 비교	178
[그림 87] 지원기관별 신변보호 비교	179
[그림 88] 지원기관별 법률지원 비교	179
[그림 89] 지원기관별 현장지원 비교	179
[그림 90] 지원기관별 회복프로그램 비교	179
[그림 91] 지원기관별 상담서비스 비교	180
[그림 92] 강력범죄 경제적 지원 비교	184
[그림 93] 강력범죄 의료지원 비교	184
[그림 94] 강력범죄 주거지원 비교	184
[그림 95] 강력범죄 취업지원 비교	184
[그림 96] 강력범죄 신변보호 비교	185
[그림 97] 강력범죄 법률지원 비교	185
[그림 98] 강력범죄 현장지원 비교	185
[그림 99] 강력범죄 회복프로그램 비교	185
[그림 100] 강력범죄 상담서비스 비교	18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형사사범 영역에 중대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기관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범죄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주변인에 불과하였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복구와 사회복귀 및 법적 안정성의 회복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동법은 범죄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받을 권리,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및 해당 지원받을 권리,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피해자의 권리로서 선언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들 역시 정비하였다.

특히 동법은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의무와 범죄예방의무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요청하였고, 2022년에는 제4차 기본계획이 공고되었다. 그리고 각 연도별 기본계획들은 국가 및 사회에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비전으로 하여, 법적·제도적 개선들을 요구하여 왔다.

그와 같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피해지원계획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각 부처별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2022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9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국가폭력으로 인

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지원사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였다. 나아가 국가폭력에 관하여는 이미 광주광역시가 2012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부처나 지자체별로 중심 컨트롤타워 없이 수십 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범죄유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피해자의 보호 정도 및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처와 관계기관이 일관성 없이 개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과도한 절차의 중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아무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경제적으로는 재정의 한계 문제, 인적·물적 자원의 한정 문제 등이 드러나기도 하며,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2차적 범죄피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피해자가 원활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복귀를 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범죄피해자 중에서 특히 중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중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적 정비가 후속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 피해자 지원의 실태를 파악함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종사자들과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타기관들과의 연계 현황, 실제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의 정도,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이 느끼는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 범죄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여부, 범죄피해자들이 지원과정에서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의 제시, 그리고 외국법제의 연구와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등을 주요 연구 목표로 삼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I.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대상으로서 중대범죄 피해자 정의

우선 연구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의 정의는 법률상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규정 제1호 라목은 특정범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동법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형법상 개인적 범익에 관한 죄 중에서 살인, 약취유인, 성범죄, 강도범죄 등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대상이 범죄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제5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라고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범죄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지침 상 지원대상 범죄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범죄에의 취약성이 강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범죄 등도 그 피해의 경중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검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일반적인 지원제도 이외에도 기관 또는 부처별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지원제도들은 해당 부처의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출원되기도 한다.

해당 기금으로는 2022년 현재 강력범죄등 피해자보호지원과 성폭력피해자지원으로 구분되어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조정, 범죄피해구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들의 신변보호강화, 진술조력인의 양성·배치, 성폭력피해자지원,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 편성은 의무지출로서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과 재량지출로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따른 충분한 현물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 자체의 부족보다는 간접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 5주 미만 상해피해자 치료비 지원,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 당시부터 검찰청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원예상이 충분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자와의 연계가 일률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순수하게 민간차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검찰과의 연계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의 각 부처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출처: 법무부 <http://www.moj.go.kr/cvs/2709/subview.do> 인용.

소관부처	대상범죄	시설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법무부	강력범죄	스마일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생활관 제공, 심리평가 및 상담실시, 정신과 병원 진료연계, 법률상담 지원 등
여성 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이주여성 성폭력 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입소지원, 상담실시, 직업훈련연계, 긴급지원비(생계비·교통비 등) 지원
		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성인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진학 지원 등
보건 복지부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응급조치, 보호, 심리상담 등

그러나 여기에서도 학교폭력, 스토킹범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범죄별 지원대상, 지원시설 및 지원제도, 주관부처,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예컨대, 우리 법제와 유사하게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모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범죄별 지원근거 법률이 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제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1976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상법(Opferentschädigungsgesetz)이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2004년 9월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청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echtsreformgesetz)」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2차 개혁법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7개 법제의 광범위한 개혁입법으로서 정보권과 피해자권리강화, 부대소송의 개편, 피해자보상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거의 고려되지 못하며, 절차상 피해자부담이 지속된다는 비판²⁾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범죄피해자의 배상에 관하여는 폭력범죄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³⁾,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犯罪被害者等基本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과 관련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은 재산적 손해의 회복방법으로서 공적 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민간피해자지원의 중심단체인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⁴⁾ 등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각국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제도들이 피해자의 범죄피해를 구분하여 지원여부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지원기관이 관주도적인지 민간 주도인지 여부, 피해자지원의 경제적 재원이 어떠한 경로로 출연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김성룡/김현조,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52면 이하.

3) <http://www.gesetze-im-internet.de/bvg/index.html>

4) <https://www.npa.go.jp/higaisya/rikai/renkei/zenkoku.htm>

나아가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의 특성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시사점은 각국별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피해대상 범죄 또는 피해자의 특성별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분석하고자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검토를 통해서 국내에의 적용가능한 법률 또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현행 우리 법제도와와의 양립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범죄피해자 심층면접 및 지원기관종사자 설문조사

특히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실제 범죄피해의 당사자와 지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해당 조사에 있어서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구별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심층적 면접조사를,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원센터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번거로움, 피해지원관련 정보획득상 문제점, 실제 범죄피해 회복에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행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지원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법률상 장애요소의 존재여부,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피해자 지원의 시간적 지연의 원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상의 실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과제를 도출함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5.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 관련 개선방안의 제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이 범죄피해자보호의 모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결과,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및 관

리·운용의 근거법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범죄별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의 근거 법률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의 근거법으로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보호의 근거법으로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주요법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정부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 대한 연계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정책을 수립·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범죄는 교육부 소관으로 예방대책과 처리과정을 매뉴얼화 하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에 대한 중복성과 절차의 복잡성 등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단일범죄에 대하여 그 근거법 및 지원정책 수립기관, 지원기관 및 관리귀속주체 등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집행상 중복과 사각지대의 문제도 제기되며 나아가 책임귀속의 모호성도 문제될 수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학교폭력범죄만 보더라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인 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되, 학교폭력의 발생은 교육감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라는 단일의 주제 하에도 그 근거법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음. 또한 이를 위하여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교육청 외에도 지역센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기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산재된 제도 및 근거 법령들을 범죄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실무가의 분석과 심층면접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비교법적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비교법적 연구는, 영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외국의 피해자보호·지원제도 및 근거법령을 검토하고자 하며, 해외의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 중 범죄피해자 및 관련 종사자의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방법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비롯하여 총 60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자 149명 중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외에 스마일센터와 상담소 및 아동보호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일센터의 경우에는 의정부, 동부, 서부, 수원, 제주 스마일센터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에 굿씨 상담소 및 서로사랑상담소, 그린트리 예술치료센터와 서울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총 215명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봉사자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총 설문자 수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149명 중 14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연합회 4명을 포함한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20명, 부산 7(부산, 부산동부,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 7명 중 1명 불참)명, 인천 5명, 대구(대구,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5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4명, 경기(경기북부, 고양·파주, 부천, 수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범죄피해지지원센터 소속) 25명, 강원(춘천, 강릉, 원주·횡성, 속초, 영월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0명, 충북(청주, 충주, 제천, 영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8명, 충남(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3명, 전북(전주, 군산, 정읍, 남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8명, 전남(목포, 장흥, 전남동부, 해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8명, 경북(경북북부,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5명, 경남(경남,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3명, 제주 2명이다.

스마일센터로는 의정부스마일센터 4명, 동부스마일센터 9명, 서부스마일센터 8명, 수원스마일센터 8명, 제주스마일센터 6명이 참여하였고, 상담소로는 굿씨상담소 6명, 서로사랑상담소 6명, 그린트리예술치료센터 5명,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15명이 참여하여 총 215명의 지원기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각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기관으로 직접 내방을 범죄피해자 14명이고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무처장이 각각 10명과 7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범죄피해자들이 겪은 범죄로는 존속살인을 포함한 살인범죄, 가정폭력, 강간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특수상해를 포함한 상해, 과실치상, 스토킹 범죄들이었다.

설문조사의 방식은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객관식 및 주관식의 서술형을 주로 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심층면접으로서 개별질문에 대하여 피면접자의 생각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국제규범

제2절 독일

제3절 영국

제4절 일본

제5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국제규범

I. 개요

국제사회는 범죄피해자의 열악한 상황을 직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조약, 협약, 선언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는 1945년 국제연합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국제인권협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이하, UN 피해자인권선언), 1991년 아동권리협약,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고문방지협약,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2016년 자유권 선택 의정서상 보상에 관한 지침, 2020 자의적 구금실무위 심의 10호 - 자의적 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UN 피해자인권선언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한 최초의 국제문서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성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UN 피해자인권선언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 연성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인권선언 제8조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⁵⁾ 또한 각국 정부는 UN 피해자인권선언에 따라 국내입법을 단행함으로써, 동 선언은 피해자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사실상의 규범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중대범죄 피해자

5) 최종필, 형사절차상 '피해자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20면.

지원 정책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UN 피해자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UN 피해자인권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의 주요 내용

1. 범죄피해자의 정의와 차별 없는 대우

UN 피해자인권선언은 형법을 위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실질적 장애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자를 범죄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가해자의 특정여부, 체포여부, 기소 또는 유죄판결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천족 관계 여부 등을 불문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언어, 종교, 국경, 정치 혹은 기타 의견, 문화적 신념 또는 관습, 재산, 출생 및 가족 신분, 민족 및 사회적 기원, 장애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 사법에 대한 접근과 공정한 대우

범죄피해자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접근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게는 절차상 정보를 받을 권리, 의견 진술권,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신속한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고,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상회복과 보상

UN 피해자인권선언은 가해자가 원상회복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중대한 신체 또는

장신장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 또는 가족 등 피부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피해자 지원

UN 피해자인권선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보건 또는 사회복지, 기타 관련 부조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 사법, 보건, 사회복지 및 기타 유관기관은 피해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Ⅲ. 시사점

UN 피해자인권선언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에게는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국인 피해자와 구분 없이 구조금의 지급 등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는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UN 피해자인권선언은 분쟁해결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참여권 등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절차참여를 위하여 지원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지원 절차의 번잡성이나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범죄피해자에게는 원상회복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상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국가는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UN 피해자인권선언은 고의범과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과실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의 니즈와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은 전문성을 갖추고 상호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독일

I. 개요

독일의 경우 일찍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상당수 마련하고 있었다. 1976년에는 「피해자보상법」(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이 제정되어, 재할비용, 생계유지 비용 등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피해자의 지위 개선과 강화를 목적으로 「피해자보호법」(Ers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소송참가제도와 부대사소제도의 개편 및 임의적 절차관여권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90년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의 개정, 1994년 「범죄방지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ordnung und anderer Gesetz)의 제정에 의해 ‘피해자·가해자 화해·조정’(TOA: Täter-Opfer-Ausgleich)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해자의 권리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나아가 1998년 피해자의 민사청구권 확보를 위해 「피해자민사청구법」(Gesetz zur Sicherung der zivilrechtlichen Ansprüche der Opfer von Straftaten)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증인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에 의해 형사절차에서 증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⁶⁾ 또한 2004년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꾸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

6) 滝本幸一·橋本三保子, “ドイツにおける被害者保護施策及び被害者救済活動の現状”, 法務総合研究所研究部報告9 -諸外国における犯罪被害者施策に関する研究-, 法務総合研究所, 2000, 107면.

져 왔다.

이러한 입법과 더불어 독일의 경우 민간 단체가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움직임은 민간 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도 민간 단체의 노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또한 독일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거나 정부 주도로 운용되는 이른바 ‘준(準)민간단체’가 아니라, 회비, 기부금, 현금, 유증, 벌금의 일부 할당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⁷⁾ 대부분의 민간 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회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조세상 우대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신청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자선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⁸⁾

II.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1.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기소유예와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및 연락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의 부과 여부, 가해자에 대한 자유박탈처분의 내용 및 종료 여부, 가해자의 가석방 등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6조의d). 또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부대공소권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14조). 이러한 정보권의 보장을 위하여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배상명령에 관한 정보,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또는 법원 출석동행 등 보호·지원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406조의h).

7)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 358면.

8) Hohn Petra(堀田晶子訳), “ドイツにおける被害者支援活動”, 法學研究: 法律·政治·社会81卷6号, 2013, 49면.

2. 형사절차 참여권의 보장 및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사인소추(Privatklage), 부대공소(Nebenklage), 부대사소(Adhäsionsverfahren)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인소추는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를 대상으로 사인에게 소추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374조-394조), 부대사소는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형사절차에서 재산상 청구를 하는 제도로서(동법 제403조), 우리의 배상명령과 유사한 제도이다. 또한 부대공소는 일정한 중죄를 대상으로 피해자 및 가족이 검사가 기소한 형사절차에 참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동법 제395조). 부대공소권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사실상 모든 위법한 범죄의 피해자 등이 부대공소인으로 형사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⁹⁾

증인, 사인소추인, 부대공소인과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8조 제3항).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도 변호사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된다(동법 제406조의f). 특정범죄 피해자들은 부대공소절차에서 피해자변호사(Opferanwalt)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¹⁰⁾ 특히 성폭력 범죄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경우 이후 성인이 된 때에도 부대공소권자에게 국선피해자변호사의 선임을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397조의a 제1항). 다만,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반드시 부대공소제도와 결부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3. 법률지원

전술한 부대공소권자에 대한 피해자변호사제도 외에도 다양한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지원법」(Beratungshilfegesetz)에 따라 중범죄의 피해자는 수입의 다과와 상관없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일반 범죄의

9)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03면.

10)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 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0, 65면.

피해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자에 해당하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데에 사용되는 무료 법률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러한 바우처는 소송절차 전이나 화해 전 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¹¹⁾

소송비용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이해관계를 관철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기대하기 힘들 것을 요한다.¹²⁾ 경제적 무능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임차 비용, 세금, 난방비,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 비용 등에 의한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제 대상 항목을 공제한 후 소득이 월 15유로 이하에 해당하면 소송경비의 지원 대상이 된다.

4. 범죄피해보상금 제도

고의에 의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신체 피해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는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특히 다중을 위태롭게 하는 수단을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원인 행위가 고의는 물론 과실에 의한 행위인 때에도 피해보상의 대상이 된다(범죄피해보상법 제1조). 피해보상금은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복지국가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범죄피해보상금은 크게 상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이 있다. 상해보상금은 ‘치료비, 치료와 관련된 의료품, 장구, 의치, 안경 등의 비용, 재활보상 등’의 일시금, ‘정신요법을 포함한 치료·통원, 입원, 신체장애인에 대한 재활 또는 치료에 사용된 의료품, 신체보조수단(장구, 의치, 안경, 렌즈, 붕대)의 손괴물, 재택 간호 등’에 대한 비용보상, ‘범죄 피해에 의한 항상적 건강 상해로 취업활동이 감퇴한 경우 범죄 당시 수입이나 재산을 반영한 연금 또는 소득 저하의 정도를 고려한 조정연금’ 등의 연금으로 구성된다. 유족보상금은 시체처리비 또는 장례비에 대한 일시금 및 유족에 대한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또한 외국인 피해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11)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351면.

12)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93면.

13) 内閣府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 平成23年度諸外国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に対する経済的支援

될 수 있다.

Ⅲ. 민간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

1. 종합적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를 제외한 독일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주로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여타 주와는 다르게 공공 사법복지서비스 내에 피해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을 중심으로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민간의 피해자 지원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¹⁴⁾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한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로는 하얀 고리, 범죄피해자지원협회가 있고, 기타 범죄의 유형에 따라 특화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공공기관과의 연계과정에서 법정 동행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단체에서의 피해자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하얀 고리(Weisser Ring)

하얀 고리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단체이다. 1976년 17명으로 시작한 하얀 고리는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전국 420개 지회에서 약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변호사, 학자,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 고리에는 전문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며, ① 상담, 조언, 동반 서비스 등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원,

に關わる制度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11, 67-68면.

14)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105면.

② 치료, 간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③ 의료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타 기관에의 지원 중개, ④ 경찰, 검찰, 법원 등에의 동행, ⑤ 법적 절차 또는 신청절차 등에 관한 조언과 비용의 지원, ⑥ 변호사비용의 지원, ⑦ 의료비나 생활비용 등의 지원, ⑧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휴양 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⁵⁾ 특히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초기법률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 전문의로부터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티켓을 배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얀 고리에서는 전국 단위의 전화상담 서비스(Weisser Ring-Opfer-Telefon)도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 서비스는 중앙콜센터의 단일 번호로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정에 맞추어 상담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얀 고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크게 기초연수와 상급연수로 구분된다. 먼저 연수는 활동지역에서 봉사자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이후 다양한 기초연수를 실시한다. 기초연수에서는 협회의 조직 및 피해자와의 접촉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용, 지원 현황에 대한 연수, 피해자조사표를 활용한 피해사례 처리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 기초연수 종료 후 하얀 고리의 구성원은 연수 대상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대상자가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급연수를 실시한다. 상급연수에서는 사회법,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의 대화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피해자 사례처리에 관한 그룹별 연수가 이루어진다.¹⁶⁾

2) 범죄피해자지원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

범죄피해자지원협회는 1988년에 설립된 민간의 피해자 보호·지원 조직이다. 범

15)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354면.

16)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72-173면.

죄피해자지원협회는 8개 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협회는 회비와 기부금, 주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피해자지원 표준지침’(Opferhilfestandards)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지원 표준지침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규약은 아니지만, 전문적 지원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기관은 ① 독자적인 공익법인일 것, ②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에 포함될 것, ③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상담소일 것, ④ 대표자 외에 3명 이상의 사회교육학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상담사를 둘 것, 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무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며, 고소·고발과 관계가 없을 것 등의 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⁷⁾

범죄피해자지원협회는 피해자를 위한 전화상담 또는 면담 및 심리치료를 주된 임무로 하며, 피해자를 위한 위기 개입, 법률 조언, 법정 동행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할 법원의 위촉을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위한 중재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동 협회는 범죄피해자 지원 유럽 네트워크의 구성단체로서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의 피해자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유럽 전체에서 모든 피해자가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공동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¹⁸⁾

2. 여성폭력 관련 지원단체

1) 여성긴급전화·여성상담소 등

여성긴급전화(Frauennotruf)와 여성상담소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160개 이상의 여성긴급전화 및 여성상담소가 연계되어 있다. 여성긴급전화는 상담, 위기개입 등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물론이고,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전문적 지원, 동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⁹⁾

17)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73-174면.

18)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74면.

그 외에도 피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소녀·여성 성폭력 대책 여성주의 프로젝트 연방 연합회’(BAG-FORSA), ‘연방 예방 연합회’(Bundesarbeitsgemeinschaft Prävention und Prophylaxe e.V.), ‘독일 아동보호협회’(Deutscher Kinderschutzbund Bundesverband e.V.), ‘연방가족부 부모긴급전화’(Elternnotrufe), ‘성폭력 피해 여성 긴급전화’(Notruf für vergewaltigte Mädchen und Frauen e.V), ‘아동 성폭력 대책 연석회의’(Runder Tisch “Sexueller Kindesmissbrauch in Abhängigkeits- und Machtverhältnissen in privaten und öffentlichen Einrichtungen und in familiären Bereich” der Bundesregierung) 등이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대책 연석회의’ 활동 결과 탄생한 성폭력 대책기금으로 전국적인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⁰⁾

이들 단체들은 ①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주거 제공 및 보호, ②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위기개입, ③ 여성긴급전화와 전문 상담소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④ 성폭력과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 운영 및 쉼터 제공, ⑤ 강제결혼, 납치 및 폭력 등의 위협을 받는 이주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전문상담소와 쉼터 제공, ⑥ 소녀보호시설과 소년사무소 및 아동보호 전화 운영, ⑦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이동진료소 등 특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라 특화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²¹⁾

2) 여성의 집

여성보호시설인 여성의 집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상담창구로 기능하며,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 약 350개소가 있으며, 기독교 단체, 노동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집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이 260개의 여성의 집과 230개의 상담소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의 집은 주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조성금을 받고 있는데, 그

19)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90면.

20)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90면.

21)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356면.

외에도 기부, 가해자의 벌금 등이 운영 자금으로 활용된다. 여성의 집은 설립 당시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나, 양질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급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1984년 여성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조성금이 신설되어 유급 직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대부분은 조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²²⁾

여성의 집에서는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숙소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행동 제한 등 정신적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도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쉼터로 대피한 여성이 집을 찾으러 자택에 일시적으로 돌아갈 때에는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3) 반(反)인신매매 및 이주여성 폭력협회

반인신매매 및 이주여성 폭력협회는 폭력 및 인신매매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이다. 현재 37개의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회원은 여성상담소, 이주민 프로젝트, 여성보호시설, 성매매여성 상담소 등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 협회는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²³⁾

IV. 종합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독일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호·지원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 연계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시작되는 지원체계와 범죄 신고 등을 통해 수사절차와 결부되어 개시되는 지원체계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민간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거나,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지원기관에 알려줌으로써 신속하게 상담·의료·법률 지원서비스가 개시될

22) 田口理穂, “ドイツのDV被害者が駆け込む「女性の家」システムから、いま日本が学べること”, 2020.7.28.(<https://president.jp/articles/-/37251?page=4>, 2023년 8월 21일 검색).

23)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357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²⁴⁾ 예를 들어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경우 주 정부 지침을 통해 사건 접수 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하얀 고리 등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하얀 고리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⁵⁾

또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무료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상호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지원의 내용이 해당 지원기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른 지원기관을 소개하거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보호·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⁶⁾ 범죄피해자지원협회의 피해자지원 표준지침 역시 피해자지원기관이 지역사회의 인프라의 하나로 기능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르트문트시 청소년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 가족, 청소년 상담 관련 전문협의체인 ‘연방교육상담협의회’(Bundeskonferenz für Erziehungsberatung e.V.)를 통해 각 구역별로 상담실을 직접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⁷⁾

제3절 영국

I. 개요

영국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탄생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된 ‘피해자 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1970년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위기대응(Rape Crisis)²⁸⁾, ‘레퓨지(Refuge)²⁹⁾, ‘피해자

24)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93-94면.

25)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89면.

26)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94면.

27)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91면.

28) 성폭력 위기대응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1973년 설립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식 및 이해를 위한 사업

서포트(Victim Support)³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단체들이 조직되었고³¹⁾, 이는 ‘피해자 운동’으로 발전하였다.³²⁾ 학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는 등³³⁾ 피해자의 욕구 및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³⁴⁾

국가차원에서는 1964년 ‘범죄피해보상계획’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피해자 헌장」(Victim's Charter)을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에 이르렀다.³⁵⁾ 1995년에는 「범죄피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을 제정하여 범죄피해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에는 ‘범죄피해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을 새로이 수립하였다. 특히 2004년 제정된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은 ‘피해자 위원’(Commissioner for Victims and Witnesses[Victims' Commissioner])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위원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³⁶⁾ 법무부

도 실시하고 있다.

- 29) 레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971년 Chiswick, West London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전문기관으로, 현재 영국(Unted Kingdom) 전역에서 피해자 임시숙소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30) 피해자 서포트는 1972년 Bristol에 설립되어 1974년 구호단체가 되었다. 설립 당시 범죄자 갱생위원, 경찰, 보호관찰직원 등이 주축이 되었으며, 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해자지원단체로 폭넓은 피해자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 지원 전화서비스 운영,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살인 피해유족 등 전국규모의 특별지원, 가정폭력·성폭력·학대·반사회적 행위·증오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역 서비스 제공,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역서비스 제공, 회복적 사법), 연구개발, 기금 모금,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31) 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6, 180면.
- 32)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supporting victims of crime : a rapid evidence assessment, Victims' Commissioner : University of Portsmouth, 2016, p.6.
- 33) Vennard J., “Justice and recompense for victims of crime”, New Society 19, 1976, pp.379-381.
- 34) Ashworth A., “Victim Impact Statements and Sentencing”, Criminal Law Review, 1993, pp.498-509.
- 35) Ministry of Justice,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12, pp.26-27.

장관이 지명하는 피해자위원은 피해자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피해자를 대변하여 정부에 조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⁷⁾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피해자규칙」(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 Victims' Code)이 제정되어, 피해자의 다양한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다만, 피해자규칙은 법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권리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현재 가칭 「피해자 법률」(Victims Law)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³⁸⁾

II.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1. 이해할 권리와 이해될 권리

수사·사법기관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무료 통역을 제공하고, 형사절차와 관련된 내용 및 결과 등을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한다.³⁹⁾

2. 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됨이 없이 경찰에 의해 사건이 조사되고, 관련 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경찰관은 필요한 통역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자에 의하여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은 아동, 장애인 등 취약성으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단계

36) 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181면.

37) Victims' Commissioner, Commissioner for Victims and Witnesses: Report for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2013-14, 2014, p.5.

38) Victims Commissioner, Victims Law Policy Paper: Victims' Commissioner's Proposals for a Victims Law, 2021, p.3.

39)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20, paras.1.1-1.6.

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있는 때에는 진술조력인(Registered Intermediary)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⁴⁰⁾

성폭력, 성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성별을 가진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18세 미만이나 두려움이 큰 피해자와 같이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협의한 후 반대신문이 필요한 증거에 대하여 재판 전 법정 외 장소에서 반대신문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희망하여 재판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통해 피고인과의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⁴¹⁾

3. 형사절차 진술권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재산적 영향 등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가 있다. ‘피해자 의견진술’(Victim Personal Statement)은 양형을 위한 고려 요소가 되며, 피해자 또는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피해자 의견진술은 통상 범죄의 영향이 비교적 생생한 경찰단계에서 실시되는데, 경찰은 온라인이나 피해자지원단체, 그 밖에 적절한 단체를 통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재차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다. 피해자 의견진술은 피고인의 유죄평결이 있는 후에 법정에서 의견진술서를 직접 낭독하거나 대리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현 출되며, 이는 가석방 심사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⁴²⁾

4. 정보권

1)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0)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2.1-2.6.

41)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2.8-2.9.

42)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7.1-7.9.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확인서는 편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전달되며, 가정폭력과 같이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우송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찰은 형사절차상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내용, 의료 지원, 심리지원, 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피의자가 성인인 때에는 경찰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범죄예방법팀 (Youth Offending Team)이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 신고 후 5영업일 이내, 후술하는 취약 피해자의 경우 1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⁴³⁾

2)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피해자는 체포, 주의처분 하의 조사, 불송치 석방, 경찰 보석 또는 수사 상태에서의 석방, 경찰 보석 조건의 변경 또는 추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취약 피해자의 경우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5영업일 이내(취약 피해자의 경우 1영업일 이내)에 그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불소추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취약 피해자의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처분의 이유,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의신청 방법,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계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기소를 한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기소된 범죄의 내용, 첫 공판 기일의 일시·장소, 피고인이 경찰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가석방 조건 및 변경된 조건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⁴⁴⁾

3) 재판절차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건이 기소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증인보호팀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취약 피해

43)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3.1-3.6.

44)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6.1-6.15.

자의 경우 1명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같은 기간 내에 재판 기일의 일시 및 장소(모든 피해자 공통 1명업일 이내), 보석의 결과,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 재체포 관련 절차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증거를 제공받아 증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모든 피해자 공통 1명업일 이내), 증인보호서비스에 관한 정보, 특별 절차 신청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⁴⁵⁾

증인보호팀은 법원으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명업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재판의 이유를 요약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재판 후 5명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증인보호팀은 피고인의 유죄평결이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재판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재판에 관한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장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통보받거나 설명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⁴⁶⁾

4) 형 집행 과정에서의 범죄자의 정보에 관한 권리

특정 폭력 또는 성폭력범죄로 12월 이상의 구금형 또는 치료감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는 ‘피해자 연락제도(Victim Contact Scheme)’에 따라 피해자연락관(Victim Liaison Officer)이 지정된다. 피해자연락관은 수형자의 석방 여부,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기타 가석방 조건 또는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한다. 피해자는 가석방 심사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가석방 조건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의 요지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⁴⁷⁾

5.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계될 권리

45)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8.1-8.7.

46)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9.1-9.18.

47)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11.1-11.8.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 취약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에 연계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2영업일 이내에 지역에서 가능한 지원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경찰에서 유족연락관(Family Liaison Officer)을 지정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유족연락관은 유족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단일 창구로서 기능하며,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National Homicide Service)제도에 따른 특별 지원이 실시된다.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도우미'(Sexual Violence Advisor),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도우미'(Domestic Violence Advisor)'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가 된다.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할 때에는 증인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⁴⁸⁾

6. 경제적 지원에 관한 권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배상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⁴⁹⁾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피해보상계획에 따라 사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범죄피해보상국(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제도는 우리와 달리 구조금과 기타 경제적 지원제도가 합쳐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급 대상 및 범위 역시 광범위하다. 범죄피해보상금은 상해 보상금, 일실 소득 보상금, 특별 경비 보상금, 위로금, 유자녀 양육비, 피부양자 부양금, 장례비, 기타 유족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 보상금, 일실 소득 보상금, 특별 경비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며, 위로금, 유자녀 양육비, 피부양자 부양금, 장례비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기타 유족 보상금은 수급권자인 피해자가 범죄 피해와 상관없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범죄피해보상의 상한은 500,000파운드이며, 피해자 등이 다른 형태로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⁵⁰⁾

48)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4.1-4.10.

49)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5.1.

친족간 범죄에 대한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범죄피해보상금은 일반 재원에 의하여 운용되며, 벌금과는 별개의 형벌부과금(surcharge)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형벌부과금은 피해자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외에 피해자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서 출석한 경우 교통비, 양육비, 일일 소득, 식비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압수된 물건에 대한 환부신청권도 인정된다.⁵¹⁾

7. 이의 신청권

형사사법 관련이 피해자규칙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의회 고충처리위원회(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⁵²⁾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1. 취약 피해자 등의 강화된 권리

피해자규칙은 취약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로서 중대범죄의 피해자 및 유족 또는 지속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되어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기관에 의한 특별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유형은 ① 중대범죄의 피해자, ② 지속적 범죄의 피해자, ③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를 집중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권리가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니즈평가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범죄의 내용⁵³⁾등을 토대로 이러한 3가지

50) Ministry of Justice,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 2019.

51)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s.10.1-10.3.

52)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paras.12.1-12.5.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판단한다.⁵⁴⁾

먼저, ①과 관련해서는 살인 등 범죄피해자의 유족, 가정폭력, 증오범죄, 테러, 성폭력 범죄, 인신매매, 살인미수, 유괴, 감금, 방화치상의 피해자가 이에 해당된다. ②의 경우 계속된 괴롭힘이나 스토킹 등으로 반복된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③의 경우 범죄 피해시 18세 미만인 자 또는 정신질환, 지능·사회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된다.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또는 그 친족이나 관계자의 행위, 범죄의 내용과 상황, 피해자의 연령,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인종, 가정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경찰이나 증인보호팀 등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특별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조치의 일반적인 예로는 가림막의 설치, 비디오 증계시설을 활용한 증언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비공개 재판에 의한 증언, 법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법관 등에 의한 재판, 진술조력인 등의 조력을 통한 증언, 사전 녹화방식에 의한 반대신문 등이 있다.⁵⁵⁾

2. 살인사건의 피해자 등

살인사건의 유족에 대해서는 지정된 경찰 유족연락관(Family Liaison Officer)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살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National Homicide Service)에 연계할 수 있다. 경찰 유족연락관은 경찰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으로 구성되며, 평상시에는 일상 업무를 하다가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 경찰 서장이나 담당 과장의 지시를 받아 유족에게 부검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⁵⁶⁾ 유족연락관의 연계를 거쳐 살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 담당자(caseworker)가 배정되고, 지원 담당자는 대면, 전화, 온라인 등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설명 및 도움, 재

53) 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190면.

54)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pp.10-11.

55) MOJ,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para.4.11.

56) McGarry D. & Smith K., Police Family Liai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정지원 등 긴급한 지원에 대한 도움, 트라우마 상담, 회복적 사법, 채무, 법률 및 주택 상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⁵⁷⁾

3.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도우미(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ocate)’가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⁵⁸⁾ 특히 의료기관과 경찰이 연계하여 증거물의 확보, 수사,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는 원스톱서비스 기관인 ‘성폭력 위탁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SARC)⁵⁹⁾’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SARC는 내무부와 보건부가 범죄피해자의 정신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한 산출물인데, SARC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즉 병원 서비스와 통합된 전용 설비의 구축, 24시간 실시 가능한 증거물 채취(요급한 경우 4시간 이내), 경찰의 소개 없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 및 증거물 채취 관련 전문 훈련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간호사의 성별 선택의 기회 부여, 위기 개입 지원자의 존재, HIV 등 성병 검사를 위한 약물 지원 및 긴급 피임, 정신적·사회적 지원·심리상담·형사 절차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 계속적 피해자 케어·직원배치·전문훈련 등을 보증하는 기반시설의 설비·수집 정보의 사용법·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배려한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⁶⁰⁾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57) <https://www.victimsupport.org.uk/more-us/why-choose-us/specialist-services/homicide-service/>(2023년 8월 18일 검색).

58) Robinson A. & Hudson K., “Different yet complementary: Two approaches to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UK”,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1(5), 2011, pp.8-9.

59) 우리의 해바라기센터와 유사한 기관으로 런던에서는 성폭력 위탁센터가 Haven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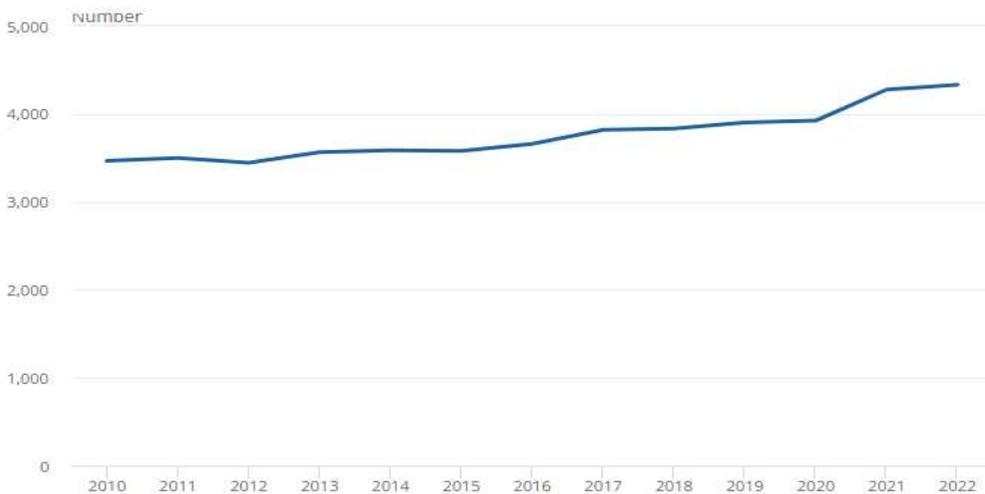
60) Home Office, *National Service Guidelines for Developing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SARCs)*, 2005, 88-189면.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도우미’(Domestic Violence Advisor)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내용으로는 긴급 임시숙소 제공, 무료 상담전화, ‘다기관 위험성 평가 회의’(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s: MARACs) 등이 있다.

1) 긴급 임시숙소

영국 여성단체 ‘여성의 원조’(Women’s aid)가 운영하는 긴급 임시숙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심리적·실질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잉글랜드 내 긴급 임시숙소 시설 수는 2019년 267개, 2022년 268개로 큰 차이가 없으나, 아래 그래프와 같이 침상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침상 수는 2015년 3,578개에서 2022년 4,332개로 증가하였는데, 인구 1만 명당 1개의 침상 수를 권장하고 있는 유럽 이사회 의 권고 수준에는 23.2%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1] 긴급 임시숙소의 침상 수(잉글랜드)



출처: Domestic abuse victim services, England and Wales: 2022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victimservicesenglandandwales/2022>, 2023년 8월 18일 검색).

여성의 원조가 운영하는 긴급임시숙소에 위탁된 인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잉글랜드의 경우 2021년 3월말 기준 28,370명을 위탁받아 37.1%에 대하여 긴급 임시숙소를 제공하였고, 웨일스에서는 같은 시기 2,197명을 위탁받아 43.8%에 대하여 긴급 임시숙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경우 입소가 거부되고 있는데, 이는 긴급 임시숙소에서 피해자의 지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표 1〉 긴급임시숙소 위탁 현황(잉글랜드 및 웨일스)

구분		2020년 3월 말	2021년 3월 말
잉글랜드	위탁 총 인원	28,657	28,370
	수용(%)	37.1	38.1
	거부(%)	62.9	61.9
웨일즈	위탁 총 인원	2,136	2,197
	수용(%)	51.6	43.8
	거부(%)	34.2	40.2
	피해자의 지원 거부(%)	13.4	15.2

출처: Domestic abuse victim services, England and Wales: 2022(<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victimservicesenglandandwales/2022>, 2023년 8월 18일 검색).

2) 무료 상담전화

레퓨지(Refuge)는 영국에서 가장 큰 가정폭력 피해자지원단체로서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무료 상담전화(National Domestic Abuse Helpline)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 상담전화는 피해자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역 내 서비스로의 연계, 임시숙소 추천, 감정적 지원, 위험평가 및 안전 계획의 수립,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영국에서 상담전화를 이용한 사람의 88.6%는 여성이었으며, 전체 상담 중 82.3%는 정신적·감정적 학대, 74.4%는 행동 통제, 56.4%는 협박 또는 위협 행동에 대한 내용이었다.⁶¹⁾

61) Domestic abuse victim services, England and Wales: 2022(<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victimservicesenglandandwales/2022>, 2023년 8월 18일 검색).

3) 다기관 위험성 평가회의(MARACs)

MARACs는 고위험 가정폭력 사안에 대하여 경찰,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법원, 여성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다기관 협력 체계이다. MARACs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험성을 평가·분석하고, 각 기관은 자체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가정폭력의 위험성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2년 3월 말 기준 11,067건의 평가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의 6.3%는 남성 피해자였으며, 8.7%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 1.4%는 동성애나 양성애, 트랜스젠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평가회의의 대상이 된 사건의 가정에는 총 141,961명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아동에 대한 지원도 실시되었다. 가정폭력의 내용으로는, 폭행 40.6%, 상해 24.2%, 기타 범죄 14.9%, 손괴 6.1%, 비범죄 6.1%, 절도 2.9%, 성폭력 3.4%, 기타 1.7%인 것으로 확인된다.⁶²⁾

IV.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1. 다기관 협력 시스템⁶³⁾

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기관 협력 시스템이 잘 구축된 것으로 유명한데,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니즈평가(needs assessment)’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증인보호팀 및 검찰과 공유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주로 민간단체인 ‘피해자 서포트(Victim Support)’에 의해

62) Domestic abuse victim services, England and Wales: 2022(<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victimservicesenglandandwales/2022>, 2023년 8월 18일 검색).

63) 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187-188면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이루어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보는 사건신고 후 2일 이내에 경찰을 통해 피해자 서포트로 자동 전송된다. 다만, 차량 내 절도, 자동차부정사용, 경미한 손괴, 자동차 절도와 같이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서포트에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으며,⁶⁴⁾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피해 유족의 경우에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구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 정보는 24시간 운영되는 사건처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경찰과 피해자 서포트는 보안메일을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 나이, 범죄사실에 관한 개요 등이 포함된다. 일단 경찰로부터 위탁을 받으면 ‘피해자보호팀(Victim Care Unit)’이 피해자와 접촉하여 요구를 파악한 다음, 피해자 서포트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개별지원을 실시한다.⁶⁵⁾ 위에서 살펴본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다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연계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위탁센터), 인신매매 피해자, 살인 피해 유족, 법원 증인 서비스, 일부 전국규모의 전화상담서비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지원에 관한 위탁 사업을 제외한 피해자 지원은 지방치안관리관(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 PCC)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⁶⁶⁾ 지방치안관리관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grant)이나 계약(contract)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연계 외에 지역별로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⁶⁷⁾ 예를 들어 런던의 경우 런던경찰청 산하에 5개 권역별로 피해자

64)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취약한 경우 또는 중요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서포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ACPO, ACPO - Victim Support Victim Referral Agreement, 2003).

65) Victims' Commissioner, Review of Victim Services in London, pp.20-21.

66) Ministry of Justice, Victims' Services Commissioning Framework, p.9. 가정폭력 피해자도우미, 다기관 위험평가회의, 성폭력 피해자도우미, 전화상담서비스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내무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7) 이하 내용은 김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188-189면에서 발췌.

보호·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서포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⁶⁸⁾ 또한 Avon and Somerset에서는 경찰관 및 민간단체가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자지원등대(Lighthouse Victim Care)’를 설립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증인 지원관(Victim and Witness Care Officer)’이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⁶⁹⁾ Dorset에서는 ‘피해자과(Victims’ Bureau)’를 신설하고, 피해자과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⁷⁰⁾ 그 밖에 Kent의 경우 다기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 서포트, 증인보호팀, 증인서비스 등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을 연결해 주는 ‘나침반 하우스(Compass House)’를 설립하였고, Cambridge에서는 ‘피해자 허브(Victims’ Hub)’, Devon and Cornwall에서는 ‘피해자보호팀(Victim Care Unit)’을 운영하고 있다.⁷¹⁾

68) 런던경찰청 산하 조직인 ‘Met Prosecutions’의 범죄소추국(Crime Prosecution Services) 내에 관할을 South West, North West, Central, South East, North East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증인보호팀(Witness Care Unit), 사례담당(case builder), 문서관리팀(archiving team)을 두고 있으며, 기소 이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소추국 내에 기소이후 관리팀(Post Prosecutions Team)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Met Prosecutions 소속 Alan Catlin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69)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supporting victims of crime : a rapid evidence assessment, p.14.

70)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supporting victims of crime : a rapid evidence assessment, p.14.

71)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supporting victims of crime : a rapid evidence assessment, p.14.

제4절 일본

I. 개요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중공 건물 폭파사건 등을 계기로 1980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을 제정하여, 살인·상해 등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대한 상해가 남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이 공식적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1년 개최된 ‘범죄피해 급부제도 발족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범죄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새로운 범죄 피해자 지원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찰에서는 1996년 ‘피해자대책 요강’을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고, 검찰에서는 1999년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4년 12월에는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는 한편, 국가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범죄피해자대책의 대강 등을 정하는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에서는 동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제2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2016년 4월에는 ‘제3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2021년 3월에는 ‘제4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범죄피해급부제도의 확충, 성범죄 피해자의 긴급피임 등 경비의 공비 부담 제도의 창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상병급부금의 급부기간 연장, 가급부금액 제한의 재검토, 유아가 있는 경우 유족급부금의 인상 및 친족간 범죄에서의 감액·불지급사안의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급부제도의 확충, 심리상담 비용의 공비부담제도의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제도화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지방공공단체에서의 범죄피해자 등 지원, 피해가 잠재하기 쉬운 범죄피해자 등에의 지원, 가해자 처우에서의 범죄피해자 등에의 배려 충실, 다양한 범죄피해자 등을 배려한 다방면의 지

원 등을 주요 과제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세부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II.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

1. 정보제공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형사절차의 개요, 수사협력의 요청, 범죄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각종 상담기관·창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팜플렛인 ‘피해자 안내’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안내는 원칙적으로 살인이나 상해, 성범죄 등 신체범, 뺑소니나 교통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수사관이 배부한다. 피해자 안내는 형사절차의 개요와 수사 협력의 요청,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요원제도, 형사절차, 수사상황의 정보에 관한 제도, 재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전 확보에 관한 제도, 경제적 지원이나 각종 지원·복지제도, 정신적 피해의 지원, 각종 상담 기관·창구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며, 교통사고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자동차 보험제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사업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어판 안내서도 구비하고 있다.⁷²⁾

또한 경찰에서는 살인, 상해, 성범죄 등 신체범, 중대한 교통사고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제도, 피의자 검거까지의 수사상황, 피의자 검거상황, 체포 피의자의 처분상황 등을 사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는 ‘피해자연락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검찰청에서도 사건 처분의 결과, 재판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손해 회복·경제적 지원

1) 범죄피해급부제도 등

범죄피해급부제도는 묻지마 살인 등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72)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2022, 7면.

유족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사회의 연대공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범죄피해를 조기에 경감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다시금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부금은 유족급부금, 중상병급부금, 장해급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본부 또는 경찰서에 접수하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특히 2023년 6월 6일 개최된 제16회 ‘범죄피해자 등 시책추진회의’에서는 급부금의 대상 및 금액을 발본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급부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급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또는 국외범죄피해장해위로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외국인 피해자도 급부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2)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일본사법지원센터(이하, 법테라스)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가 민사절차를 이용할 때에 수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변호사·사법 서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민사법률 부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등은 동 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절차의 성과를 이용하여 간이 신속하게 범죄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이용할 때에도 민사법률 부조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부터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변호사와의 상담시 심리상담사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 역시 법테라스가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테라스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경험이나 이해가 풍부한 변호사를 정통변호사로 지정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⁷³⁾

경찰에서는 ‘피해자 안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법무성에서도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등을 통해 손해배상명령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에

73)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2022, 2-3면.

서는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손해회복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피해회복급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동 절차를 통해 13건, 총 5억 6,541만 엔을 지급하였다.⁷⁴⁾

한편, 법무성에서는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형자가 석방 전에 작업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사용목적이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회복에의 충당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시 보상금 계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폭력단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사회나 각 도도부현 ‘폭력 추방운동 추진센터’의 연계를 통해 폭력단에 의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손해 회복을 위한 조언이나 교섭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경찰 등에서 폭력단 관계사안에 대한 지원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12건, 민사소송을 지원한 건수는 53건이었다.⁷⁵⁾

3) 주거의 안정

피해자기본법 제16조는 주거의 안정을 위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지방공공단체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 관계사업자, 주거지원단체 등으로 조직된 주거지원협의회 및 2017년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주거지원법인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아동상담소·부인상담소의 일시보호, 부인상담소가 일시보호위탁처로 계약한 모자생활지원시설, 민간 쉼터 등에서의 일시보호 등을 통해 피해

74)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3면.

75)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7면.

직후 및 증기적인 주거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일시보호의 대상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폭력·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동반 가족이다. 2012년부터는 부인보호시설 퇴소후의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동 시설 인근의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생활 훈련이나 지원을 실시할 경우 건물의 임대료의 일부를 공비로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일시 피난을 위한 숙박장소에 대한 비용, 자택이 범죄장소가 된 경우 청소비용 등을 공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2022년 4월 기준 67개 도도부현·정령 지정도시, 489개 시구정촌에서 범죄피해자 등이 공영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⁷⁶⁾

4) 고용의 안정

피해자기본법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등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범죄피해 등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부자가정의 부친, 모자가정의 모친 등을 시범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시범고용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치료나 재판을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후생노동성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휴가 제도를 관계행정기관,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 및 노동자에게 홍보하고 있다.⁷⁷⁾

3. 신체·정신적 피해회복 및 피해방지의 지원

1) 신체·정신적 피해회복의 지원

범죄피해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종 공적 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⁷⁸⁾

76)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13-14면.

77)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14면.

78) <https://www.npa.go.jp/hanzaihigai/keisatsu/kouhi.html#seihanzai>(2023년 7월 24일 검색).

신체범 피해자의 경우 초진료,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사체 검안료 등을 공비로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 범죄가 자택에서 발생한 경우 긴급피난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나 청소비용,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검 후 반송비용, 유체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비로 부담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피임, 초진료, 진단서 발급비용, 성감염증 등 검사비용, 인공임신 중절비용 등에 대한 공비부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 6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자동차 사고 대책 사업 부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⁷⁹⁾

한편, 정신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심리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배치, 정신과 의사 또는 민간의 상담사와의 연계,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비용의 공적 부담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46개 도도부현 경찰에 177명(그중 공인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 보유자 132명)의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도도부현 경찰에서 심리상담 비용에 대한 공비부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⁸⁰⁾ 공비부담제도는 피해자 등이 직접 선택한 정신과 의사 또는 임상심리사 등으로부터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며,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가족, 기타 관계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상 초진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진료 등의 횟수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2021년의 이용 건수는 2,033회이었으며⁸¹⁾, 관련 예산은 2,900만 엔이다.⁸²⁾

2) 안전의 확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범죄피해자의 재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의 확보를 위해 일시보호, 시설 입소, 방법 지도, 형사절차 관여시의 특별조치, 개인정보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기본법 제15조). 안전의 확보를 위

79)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22-23면.

80)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13면.

81)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4면.

82)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168면.

해서는 확정판결이나 보호처분 결정 후의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처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확정판결 후의 처우상황, 보호처분 결정 후의 처우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등 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21년 통지 희망자수는 80,894명이었으며, 통지자 수는 133,987명이었다.⁸³⁾

경찰에서도 ‘재피해방지요강’에 근거하여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재차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재피해방지대상자로 지정하고, 재피해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교시·연락체계의 확립, 재피해방지 대상자의 요망의 파악, 자주경계지도, 경찰에 의한 경계조치,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피해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법무성과 경찰이 상호 연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재피해방지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형자의 석방 등에 관한 정보(자유형 집행종료에 따른 석방예정 및 예정 연월일·귀주 예정지, 가석방에 의한 석방예정 및 예정 연월일·지정 귀주지 등)의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통보하고 있다. 2021년 동 제도에 의한 통지희망자 수는 588명이었으며, 실제로 통지를 받은 자는 418명이었다.⁸⁴⁾

범죄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법무성·검찰청에서는 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주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않도록 하는 제도, 검찰관이 증거 개시에 있어 변호인에게 피해자의 성명 또는 주거를 피고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건을 붙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사안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주민표·선거인 명부의 사본 교부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피해자 등의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서도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 현 주소의 등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탁에 있어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⁸⁵⁾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가림 장치의 설치, 비디오 증계

83)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35면.

84)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36면.

85)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39-41면.

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 위의 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각각 133건, 1,335건, 412건이었다.⁸⁶⁾ 그 밖에 일시보호, 시설 입소 등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다.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1.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 직후부터 상담을 받아 긴급 피임약의 처방, 증거채취 등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가능한 한 같은 장소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어,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의 주된 지원대상은 강제성교·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 중 범죄로부터 대략 1~2주를 경과하지 않은 급성기의 피해자이다. 주된 지원 내용은 지원 코디네이터 및 상담, 산부인과 의료지원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전화나 내방에 의한 상담, 피해자의 상태 및 니즈의 파악, 지원의 선택지 제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관계기관·단체(경찰, 정신과 전문의·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 변호사·법테라스, 남녀공동참가센터, 부인상담소, 아동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검찰청 등)에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의 경우 응급의료·계속적 의료·증거채취 등이 포함된다.

내각부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국 공통 단축번호 '#8891'을 도입하여, 다이얼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야간 휴일 콜센터'를 설치하여 야간 상담이나 긴급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팅을 통한 상담이 가능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SNS 상담 Cure time'도 운영하고 있다.⁸⁷⁾

86)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49-50면.

87)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32면.

2. 피해소년 및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직원이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후쿠오카현의 경우 5개의 모든 소년서포트센터가 경찰관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 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아동상담소, 교육위원회의 3개 기관이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개 소년서포트센터 중 4개소의 경우 아동상담소와 동일한 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그중 2개소에는 교육위원회의 출장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특히 기타큐슈시에서는 경찰기관(소년서포트센터), 복지기관(아동상담소·아동종합상담센터), 교육기관(소년서포트팀)이 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기관인 소년서포트센터는 경찰관, 소년보호직원, 파견 교육위원회 직원(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상담소·아동종합상담센터는 아동상담소 직원, 교원, 전직 교장, 파견경찰관(경부),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서포트팀은 아동상담소·아동종합상담센터, 전직 경찰관, 전직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각각의 기관은 그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관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같은 공간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기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서포트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성적 학대를 인지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면서 소년서포트센터에 파견된 교원 및 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상담소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면접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등 필요한 개입을 실시하게 된다.⁸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아동상담소의 출입조사, 일시보호,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아동학대 사안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이루어지며, 아동상담소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아동상담소장과 경찰은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하여 심리상담, 보호자에 대한 지도, 조언, 수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전술한 소년서포트센터 등 다기관 연계가 아동학대 사안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이다.

88)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10-12면.

3. 폭력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

경찰에서는 폭력단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 전화를 개설하는 등 폭력단 관계 상담의 수리 체계를 정비 하였으며, 사건 검거, 폭력단대책법에 근거한 중지명령의 발출, 경고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도도부현 ‘폭력 추방운동 추진센터’(이하, 도도부현 센터) 및 각 변호사회의 민사개입 폭력대책 위원회 등과 연계하고 있다. 2011년 12월 ‘보호대책 실시요강’을 새롭게 제정하고, 폭력단 범죄의 피해자나 참고인, 폭력단 등과의 관계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 경계원을 지정하여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도부현 센터에서는 경찰,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 하에 폭력추방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소년지도위원, 보호사, 전직 경찰관이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폭력단원을 살대로 한 민사소송의 비용 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정 폭력단원이 그 폭력단의 명칭을 나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획득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지정 폭력단의 대표자 등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시 피해자 측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2021년 폭력단 관계상담 건수는 총 46,058건이었으며, 그중 경찰상담이 19,287건, 센터 상담이 26,771건이었다.⁸⁹⁾

4.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대응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많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거나 생명을 잃는 등 피해의 내용이 중대하므로 각종 지원 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교통사고사건 수사담당과에 배치된 피해자 연락 조정관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심정을 배려하며 적절

89)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27면.

히 대응하도록 각 경찰서에서 실시되는 피해자 연락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사건 수사관에 대하여도 적절한 피해자 연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교통안전 활동 추진센터’서는 경찰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교통사고의 보험청구, 손해배상 청구, 합의 등 경제적 피해회복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회복에 관해서도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⁹⁰⁾

5.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범죄의 내용 자체는 경미해 보이더라도 중대 범죄로 급진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검거, 피해자 등의 안전한 장소로의 피난, 신변 경계, 112 긴급통보등록 시스템 등록, CCTV나 긴급통보장치의 활용 등을 통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사결정 지원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동 절차는 사안의 위험성, 스토킹규제법 등에 근거한 경찰의 조치 등을 피해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등과 인식을 공유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⁹¹⁾

이들 사안의 보호·지원에 있어서는 활발한 다기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등과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대응방법, 치료·심리상담의 필요성에 관한 조언 등을 얻어, 가해자에게 정신·심리치료의 권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등의 일시보호 등을 실시하는 부인상담소,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고 있다.⁹²⁾

90)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28-29면.

91)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30-31면.

92)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31면.

IV.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1. 네트워크의 구축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역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지원단체에서는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홍보 계발활동, 전화상담 또는 면접상담, 병원이나 재판소 등에의 동행지원, 피해자·유족의 자조 그룹 지원, 자원봉사 상담원의 양성·연수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이들 중 자격을 갖춘 단체를 ‘범죄 피해자 등 조기 원조단체’로 지정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47개 모든 도도부현에 설치된 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 ‘전국 사단법인 전국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전국범죄피해자 지원 포럼의 개최 등 정보교환 사업, 전국연수회 등 교육·훈련 사업,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홍보계발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에는 조기 원조단체로 지정을 받은 47개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1개의 지원단체가 가맹되어 있으며, 그중 41개 단체는 기부금 공제 대상인 공익 사단법인으로, 6개 단체는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⁹³⁾

범죄피해자 등의 니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법, 행정, 의료, 보도기관 등이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 지방공공단체, 관계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연락 협의회’가 각 도도부현에 설립되어 있다. 연락 협의회 하에서 각 기관·단체 등이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범죄 피해자 등의 니즈에 맞는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보다 세세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을 단위로 하는 연락 협의회(피해자 지원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⁹⁴⁾

93)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32면.

94)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33면.

2. 지역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연계

1)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지방공공단체는 범죄피해자 등의 생활 근거지와 직결되는 행정을 담당하므로, 지방공공단체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의 제정은 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2년 4월 1일 기준 47개 도도부현, 20개 정령 지정도시, 1,721개 시구정촌 중 39개 도도부현, 11개 정령 지정도시, 453개 시구정촌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⁹⁵⁾

그중 최근 조례를 제정한 히로시마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히로시마에서는 2022년 3월 범죄피해자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서는 범죄피해자 등 지원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현의 책무 및 현민·사업자·민간지원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 등 지원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현의 방침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의 기본적 시책 사항으로 상담, 정보의 제공,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원조 등 기본법에 대응한 시책을 규정하는 한편, 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항으로서 ‘피해가 현재화되기 쉬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중대사안에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가 현재화되기 쉬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에는 아동이나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등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곤란하여 피해가 현재화되기 쉬운 범죄피해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발 및 환경정비를 실시할 것을, ‘중대사안에서의 지원’에는 사상자가 다수에 이르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원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현은 조례의 제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고, ‘피해의 경감·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 ‘사회 전체의 이해·지원 기반’을 조성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2차 피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제도에 관한 상담창구에서의 정보제공, 아동·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범죄·성폭력 피해에 관한 계발활동 등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⁹⁶⁾

95)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69면.

2) 다기관 연계 및 지역간 연계

지방공공단체에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전국의 47개 모든 도도부현에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시책을 담당하는 시책 주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구정촌에는 피해자 종합대응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의 주관과 실장 회의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등 지원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공인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응창구와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4월 기준 20개 도도부현·정령 지정도시, 95개 시구정촌의 종합적 대응창구에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다.⁹⁷⁾

특히 교토부에서는 「교토부 범죄피해자 서포트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포트팀에는 전문직 직원(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과 피해자 유족이 배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⁹⁸⁾ 또한 경찰에서는 각 도도부현에서 시구정촌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자, ‘범죄피해자 등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공공단체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있다.⁹⁹⁾

제5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I.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피해 특성에 맞는 지원

각국의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해 보면, 공통적으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일찍이 사인소추, 부대공소, 부대사소, 임의적 절차관여제도, 피해자·가

96)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70면.

97)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71면.

98) 犬井勇司, “京都府における犯罪被害者支援”, 日本自治体危機管理学会誌20号, 2017, 149면.

99)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71면.

해자 화해·조정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피해자구칙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과 정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각국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및 범죄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즉 종합적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단체로는 하얀 고리, 범죄피해자지원협회가 활동하고 있고, 여성긴급전화·여성상담소, 여성의 집, 반(反)인신매매 및 이주여성 폭력협회 등 특화된 지원 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영국 역시 취약 피해자 등에게 형사절차상 강화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살인사건의 유족,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을 실시하는 지원기관들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자, 소년 및 아동 피해자, 폭력단 범죄의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II.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은 정부기관,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호·지원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 연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경우 사건 접수 후 경찰이 하얀 고리 등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에 피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지원의 내용이 해당 지원기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른 지원기관을 소개하거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보호·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협회에서는 피해자지원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역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과 민간 단체인 ‘피해자 서포트’는 공통된 사건처리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으며, 피해자보호팀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기관 협력을 통한 개별지원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관과 민간지원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의 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기관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연락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별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Ⅲ.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실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폭넓은 범죄피해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고, 지원의 내용 역시 광범위하다. 특히 고의범은 물론이고 일부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 역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관대한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보상금의 지급 범위가 넓고 지급액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친족간 범죄에 대한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구조금에 해당하는 급부금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급부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조만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IV. 재정의 안정성 확보

각국에서는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다.

먼저, 독일은 우리와 달리 민간단체 주도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민간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회비, 기부금, 헌금, 유증, 벌금의 일부 할당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형벌부과금제도를 재원으로 각종 피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일반회계로 운용함으로써 형벌부과금의 납부 상황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공공단체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공공단체 역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제2절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 실태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I.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행법적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이다.¹⁰⁰⁾ 헌법재판소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하 ‘구조청구권’이라 한다)¹⁰¹⁾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국가 외부에서 초래되는 적의 침입과 국가 내부에서 초래되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물리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범인을 수사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국가의 책무로 판시하고 있다.¹⁰²⁾

위의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의 세부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이다. 보호법은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한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피해자 보호·지원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신체·정신적 피해복구를 청구할 권리

100) 제9차 헌법 개정은 1987년 9월 21일 공고,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부칙의 규정에 의해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적법절차조항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제도 신설과,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 의무 명시하는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관보 제10744호).

101) 생존권적기본권은 사회권적기본권(Soziale Grundrechte) 또는 ‘생활권적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102) 권순현, 「헌법강의」, 형설출판사, 2016, 598면;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생명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그 밖의 필요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재산적 피해복구를 청구할 권리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경제적기본권으로서 물권 또는 채권,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재산 일부를 소진하거나(적극적 손해)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소극적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면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구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셋째, 형사절차 정보접근권 및 진술을 할 권리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권리에 대하여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27조 제5항), 보호법 제8조 제1항도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II.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1. 법무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현행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법무부(검찰·경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의 폭행·살인·방화·금품갈취(강도)·절도·성폭력 등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무 부처로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이 되려면 국내(공해상의 국적항공기 및 선박 내의 범죄 포함)에서 발생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 성립을 요건으로 하되 책임성은 배제)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무부의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검찰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는 스마일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기관 및 단체별 보호·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사망, 장애, 중상해 구조금 지급 및 주거지원,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담당한다.

센터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연계된 5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치료비·긴급생계비·간병비·학자금·치료부대비용·돌봄비용·취업지원비 등과 심리치료, 법률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경제적·비경제적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이 되려면 ①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 제36장의 범죄¹⁰³⁾, ②.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¹⁰⁴⁾, ③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¹⁰⁵⁾ 및 ④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⑤기타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였을 것, 범죄피해자가 범죄

10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104)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제342조 (미수범)

105)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단,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 이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대검찰청 지침 제3조 제2항). 법무부(검찰·센터)의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구조금(검찰)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0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제32조
의의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구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대상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피해자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법 제3조 제1항 제4호)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및 배우자, 친족(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지구심의회, 법 제25조 제1항)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법 제25조 제2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청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신체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구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전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 •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애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구조결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법 제24조)
구조금 지급 예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원칙금지, 예외인정, 법 제19조) • 기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법 제19조)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법 제20조)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전부 또는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경찰청 보호지원제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주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 방향 설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 활동’,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경찰청훈령 제1063호, 2022. 10. 7. 시행) 등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

공',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보호'(훈령 제29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발생 초기 수사를 개시하므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따라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찰이 검찰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사건은 피해 상황에 따라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외에도 1366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등에 연계 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범죄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도 연계가 되지만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계하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형사사건 또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경우 법무부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절차에 따라 연계 지원을 한다. 다만,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소관 사건의 경우 지역 교육지청과 해당 학교 등과 연계협력을 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지원 허브로서 초기 심리상담, 임시숙소지원,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있다.

3. 여성가족부 보호·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주관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와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근거에 따라 통합상담센터인 1366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쉼터 등이 설립되어 있고, 이러한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사건 발생초기 긴급 대응(신고, 상담, 진술 및 증거보전, 응급치료, 임시시설보호 등)과 이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법률조력, 지지 등 주로 비경제적 보호·지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일부 응급 치료비 지원이 가능함).

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위의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과 다르게 사건 신고 등 수사 개시 전 발생 초기부터 상담, 보호시설 연계 등 비경제적 보호·지원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처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각각 다른 주된 원인은 범죄유형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4.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보건복지부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지원과 아동학대(아동복지)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구분된다. 노인학대범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예방사업, 노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 권리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 제39조의5),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및 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로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경찰이, 피해아동 보호·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가정지원센터 등이 담당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피해자 보호·지원도 여성가족부의 사업과 유사하게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및 분리 보호, 위탁 보호, 행위자 교육, 가족 강화 등 비경제적 보호·지원을 주 사업으로 한다.

5.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사건 발생시 학교장의 자체 해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청소년 교육과 선도, 가정법원 또는 관할법원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따른 보호처분,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형벌의 부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과 ‘학교폭력의 경중에 의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학내 자체 해결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한다(법 제13조의2). 이 경우 교육지원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3호, 시행 2022. 3. 25.)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을 한다. 따라서 학교 자체 해결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적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교 자체 해결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검찰·경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기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법원에서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 안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따라 설치된 증인지원관을 통한 증인지원(보호) 조치가 대표적이다. 형사배상명령신청 제도는 모든 형사범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 사건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법상의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재산범죄 등도 포함된다.

증인지원 제도는 법원 내 증인지원관실을 설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사건의 증인도 보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2절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¹⁰⁶⁾

I. 법무부 피해자 보호·지원

1. 검찰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구조금 및 경제적지원,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변보호 관련 위치추적장치 및 2차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이전비 지원, 사건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회복과 당사자 화해를 위한 형사조정, 성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변호인 지원 및 진술조력인 지원으로 구분한다. 아래의 표는 각각 사망·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실적, 5주 이상의 상해 등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실적, 형사피해자에 대한 형사정보제공 실적, 신변보호(위치추적장치 및 이전비 등)실적, 형사조정 실적,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실적을 나타낸다.

〈표 3〉 사망·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천원)

연도	건수	금액
2020	206	9,567,057
2021	191	9,792,147
2022	189	9,502,935

106) 법무부,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31p 이하 자료 참조

〈표 4〉 상해등 5주 이상 피해자 등 경제적지원 실적 (단위/천원)

연 도		치료비	심리 치료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계
2020	건	632	387	302	68	167	1,556
	금액	2,004,767	149,880	598,040	77,200	615,897	3,445,784
2021	건	586	388	319	84	151	1,528
	금액	2,086,714	228,171	683,553	111,052	581,238	3,690,728
2022	건	487	453	249	76	145	1,410
	금액	1,809,197	219,834	499,100	97,200	589,858	3,215,189

※ 성폭력 범죄피해의 경우 5주 이상 신체적 상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표 5〉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보제공 실적

구분	연도별	2020	2021	2022
통지의사 확인		161,155	199,030	242,044
사건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 등		990,972	1,555,361	1,529,808

〈표 6〉 피해자 신변보호 실적

구분	연도별	2020	2021	2022
위치확인장치 지원		30	18	15
이전비		189	177	193
신원관리카드(가명조서)		104	245	226
피해자보호시설		4	4	4

〈표 7〉 형사조정 실적

연 도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2020	77,514	66,425	34,296	51.6

2021	60,217	50,173	28,550	56.9
2022	70,878	59,969	36,719	61.2

〈표 8〉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연 도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합계
2020	26,007	2,684	28,691
2021	38,446	4,184	42,630
2022	39,161	3,822	42,983

2. 경찰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실적은 초기상담 및 심리상담, 관련기관 및 단체 연계, 피해자 안전조치, 사건 현장정리, 범죄피해영향평가 등 비경제적 지원으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각각 경찰의 2022년도 범죄피해자 주요 보호·지원 실적, 유형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실적을 나타낸다.

〈표 9〉 2022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실적

연 도	초기 상담	지원 연계	피해자 안전조치	임시숙소 제공	현장 정리	피해 평가	기타 지원
2022	8,202	24,327	29,372	6,569	144	1,690	1,203

※ 기타 지원은 피해자 회복적 경찰 활동임.

〈표 10〉 2022년도 유형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실적

총계	ICT기술			인력		제도			시설	
	112 등록	스마트 위치	CCTV	순찰	경호	경고 (가해자)	권고 (피해자)	정보 변경	보호 시설	임시 숙소
80,026	30,041	14,208	817	21,485	12	2,307	10,950	2	19	185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민법상 사단법인(공익)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정부 보조) 재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공공과 민간 차원의 경제적·비경제적 통합지원을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보호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를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지원이나 타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11〉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종합) (단위:건·천원)

지원유형	건/금액(원)	2021	2022
경제적 지원 ¹⁰⁷⁾	건	13,413	11,502
	금액	6,600,362	5,962,612
치료비 지원 ¹⁰⁸⁾	건	5,328	4,965
	금액	3,302,128	3,023,361
신변보호 등	건	604	435
	금액	10,722	26,894
현장 지원	건	10	1
	금액	6,655	1,580
취업 지원	건	69	68
	금액	75,803	87,549
법률지원	건	11,814	12,112
	금액	7,520	11,877
주거 지원	건	367	480
	금액	293,350	427,985
프로그램 지원	건	3,700	4,383
	금액	221,563	241,949

전문분야 지원	건	186	136
	금액	200	45
합 계	건	121,148	120,936
	금액	10,442,500	9,696,104

출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2년 범죄피해자지원 연감 자료

〈표 12〉 경제적 보호·지원 실적(세부) (단위/건·원)

지원유형	건/금액(원)	2021	2022
생계비 지원	건	5,060	4,991
	금액	3,729,659	3,486,007
간병비 지원	건	276	252
	금액	481,893	406,053
학자금 지원	건	1,077	1,079
	금액	631,328	623,352
취업 지원	건	69	68
	금액	75,803	87,549
장례비 지원	건	183	157
	금액	514,404	469,752
물품 지원	건	6,104	4,363
	금액	555,745	428,016
기타 지원	건	655	592
	금액	611,531	461,884
합 계	건	13,413	11,502
	금액	6,600,362	5,962,612

107) 경제적지원 : 피해자에게 직접·간접 지원되는 생계비, 학자금, 간병비, 장례비, 물품지원, 주거이전비, 보증금 및 임차금지원 등이 포함됨.

108) 치료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치료부대비용, 기타 관련 지원금이 포함됨.

〈표 13〉 의료비 보호·지원 실적(세부) (단위:건·원)

지원유형	건/금액(원)	2021	2022
치료비 지원	건	3,171	2,705
	금액	2,705,519	2,329,087
치료부대 비용	건	145	157
	금액	56,395	48,011
심리치료 지원	건	1,956	2,032
	금액	529,521	615,831
기타 지원	건	16	26
	금액	2,365	1,985
합 계	건	5,328	4,965
	금액	3,302,218	3,023,361

〈표 14〉 상담 지원 실적(비경제적)

지원 유형	2021	2022	비고
면접상담	10,297	10,941	
전화상담	61,382	59,440	
사이버상담	3,670	5,412	
가정방문상담	1,060	1,055	
기타상담	9,317	10,074	

출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2년 범죄피해자지원 연감 자료

〈표 15〉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비경제적)

지원 유형	2020	2021	비고
심리상담(치료)등	66,993	72,398	

출처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자료 참조

II.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¹⁰⁹⁾

1. 성폭력 피해자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디지털성폭력 포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 등을 이용하여 사건 발생단계에서 신속한 대응과 응급치료비 지원, 피해 이후 심리적 외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이 주요 업무이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16〉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지원 유형	2021	2022.6월	비고
회복 프로그램	2,029	855	
의료비	12,816	6,516	
법률지원	1,435	1,013	

〈표 17〉 2022년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지원 건수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연계지원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2.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상담 및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한국가정법

109) 법무부,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166p 이하 자료 편집.

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및 지방자치단체, 검찰·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의 청구(「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8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등 여러 제도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아래 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실적을 나타낸다.

〈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지원 유형	2021	2022.6월	비고
회복 프로그램	3,950	2,248	
의료비	8,996	5,097	
법률지원	9,491	4,047	

Ⅲ.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¹¹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피해아동으로 구분하며,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확인에 착수하고 아동학대 판정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일시 및 장기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 등 보호조치, 행위자 및 피해아동 수탁 프로그램 지원, 가족기능강화, 학대 원인 파악에 따른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유기적인 아동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피해아동 보호·지원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과 다르게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

110) 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p30 이하 편집

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위의 절차와 같이 보건복지부 학대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위탁법인에서 제공한다. 구체적인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19〉 2022년도 학대아동 신고 및 판정 건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			아동학대 판정 건수				
신고 의무자	비신고 의무자	계	신체 학대	정서 및 방임	성 학대	중복 학대	계
16,149	28,382	44,531	4,911	12,676	609	9,775	27,971

〈표 20〉 2022년도 상황별 보호조치 실적

피해아동 상황별 보호조치			
보호조치 유형	건 수		비율(%)
원가정 보호(보호체계 유지)	25,028		89.5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친족보호	344	10
	가정위탁	47	
	시설입소	2,361	
	입 양	0	
	시설입소	35	
	계	2,787	
사망	52		0.2
기타	104		0.4
계	27,971		100

〈표 21〉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조치사례

아동학대 판정 건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7,971	3,567	12.8

〈표 22〉 2022년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실적(전체)

구 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상담	612,047	69	396,554	73.9	191,192	78.1
의료지원	4,749	0.5	1,399	0.3	472	0.2
심리치료	70,190	7.9	31,855	5.9	11,882	4.9
가족기능강화	87,899	9.9	28,131	5.2	27,866	11.4
학습 및 보호지원	10,672	1.2	1,426	0.3	553	0.2
사건처리지원	48,373	5.5	36,085	6.7	2,666	1.1
행위자 프로그램	1,241	0.1	33,855	6.3	354	0.1
피해아동 프로그램	1,098	0.1	141	0	55	0
기타	50,720	5.7	7,284	1.4	9,721	4
계	886,989	100	536,730	100	244,761	100

IV.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민간)

〈표 23〉 법무부(2022년 기준)

시설 구분		2021년	2022년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	1	1
	센터	59	60
	계	60	61
스마일센터	총괄센터	1	1
	센터	16	16
	계	17	17

※ 2022. 7월 경기동부센터 신설(남양주시청 내)

〈표 24〉 여성가족부(2021. 6. 기준)

시설 구분		2019년	2020년	2021.6월
해바라기센터(통합센터)		39	40	39
성폭력피해 상담소		104	104	10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2	32	34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128	128	128
	통합 상담소	30	30	30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66	65	65
계		399	399	400

출처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자료 참조

〈표 25〉 보건복지부(2022년 기준)

시설 구분	2022년	20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89	89
가정위탁지원센터	18	18
아동학대긴급전화	73	73
학대아동보호시설	125	141
입양기관	19	19
자립지원전담기관	18	18
계	342	358

※ 돌봄센터(지역아동·다함께돌봄) 전국 5,170개소는 제외함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및 국감자료 참조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I.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 혼재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하부 조직체계도 검찰, 경찰, 민·관 합동, 민간 법인(민간단체 포함) 등이 각각의 보호·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부처별, 사업 간, 조직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혼재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과 개입 요건이 각각 다르고 접근 방법도 상이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통합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법무부가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보호·지원 대상은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하여야 서비스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은 신고(인지) 전 사건 발생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 사업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서비스 개입이나 예방적 서비스 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건도 자체 해결이라는 자율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업간, 여성가족부 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피해자 사업간 보호·지원 체계의 중복과 비효율, 제도의 오남용,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상 문제점,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의 미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중복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정부 각 부처(공공)간, 공공과 민간간, 민간과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각 부처간 중복사례는 법무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 제공하는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경우 범죄유형으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호기금 관련 예산도 여성가족부에 편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면 여성가족부 소관 보호·지원 체계와 법무부 보호·지원 체계 양쪽 모두에 중복으로 접수되어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원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주로 중복지원 여부를 피해자의 진술이나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검찰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 민간단체인 성폭력·성매매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도 각각 설치와 운영으로 이미 시스템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¹¹¹⁾

특히 여성가족부 소관 피해자 보호·지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관련 법제상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개별

111)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5, 70~71면 ; 송귀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16. 83~90면.

법률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등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상담소와 시설 등은 주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성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원스톱 통합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지적이 제기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1366 여성의 전화, 통합지원형 해바라기센터 등의 기능을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개편은 관련 법률을 근거하여 각각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¹¹²⁾

2021년 6월 기준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지원형 해바라기센터는 전국 39개소, 성폭력상담소는 10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34개소, 가정폭력상담소는 128개소, 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3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65개소로 총 400개 관련 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 현황은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는 500개소(당시 보호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시설 운영비 보조금액은 28,943백만원 임)에서 100개소가 감소하였다.¹¹³⁾ 따라서 지속적으로 통합상담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통합이 중요 과제로 지적된다. 다만, 보호시설의 경우 성폭력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범죄피해자는 달리 임시 또는 단기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있다.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신고자 유형으로 보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6,149건(36.3%)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382(63.7%)이나 나타났다.¹¹⁴⁾ 학대행위자 유형은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건(82.7%)로 가장 높고 대리양육자 3,047(10.9%), 친인척 879(3.1%) 순

112) 송귀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앞의 논문 84~85면.

113) 송귀재,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앞의 논문 73면.

114) 이은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70면, 2015. :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56면.

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은 주로 행위자가 가족이나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법무부의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특성상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전담공무원은 학대여부 판단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을 하고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과 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단순 아동학대피해 사건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의뢰가 요청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피해 관련 예산도 2021년 법무부 보호기금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현행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일반적인 경미한 사건 발생의 경우 피해아동 가정분리조치가 아닌 원가정 보호가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이나 재발위험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보호시설(쉼터)에서 일시 또는 장기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 기준 전체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130개 단체는 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¹¹⁵⁾ 그 결과,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 되어 시설을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학대피해아동이 해당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보호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학대아동보호시설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 및 친인척에 의하여 발생하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범죄와 피해의 노출이 제한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단지,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중대한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학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Ⅲ. 보호기금의 불균형적 배분 및 재정적 열악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1. 1. 1. 법률 제10284호로서 제정되고 2015. 1.

115) 메트로신문(<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1025500201>) “202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강선우의원) “쉼터 찾아 떠도는 학대피해아동”...예산 늘려야” 2023. 10.25. 기사 인용.

1. 법률 제12778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보호기금법’이라 한다)은 피해자 보호·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법으로 2011년 1월 시행되었다. 이 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는 법무부의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만을 목적으로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를 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보호기금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제정법안 공청회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기금 사업에 포함하게 되었고,¹¹⁶⁾ 이러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법안 발의 당시 보호기금 활용비율과 동일하게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금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보호기금의 용도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구조금, 피해자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개소 및 운영비 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 피해자국선변호사 수당, 형사조정위원 수당,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보조, 여성아동보호연대 및 여성인권진흥원 운영비 보조, 중앙 및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 경찰의 피해자 지원사업비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체 사업비에서 여성가족부 사업비 보조 비중이 50%를 넘어 부처간 보호기금 배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고,¹¹⁷⁾ 관련 시설개설 및 운영비 보조,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간접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¹¹⁸⁾ 문제가 제기되었다.

IV.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의 부족

구조금의 지급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점도 문제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 정의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116)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앞의 논문 71면(각주 25).

117)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논문 73면.

118)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272.html) 사회면 “범죄 피해자 돕는 기금 1133억, 직접 지원된 건 고작 283억” 2023.3.27.자 기사 참조.

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수많은 생명·신체 피해자 중 앞의 ‘사망·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3년간 평균 195명이다. 그러나 2021년도 폭행, 상해,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180,46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구조금을 받은 피해자는 195명으로 비율은 약 0.1% 수준이다.¹¹⁹⁾

최근 3년간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평균 구조금 9,620,713천원도 평균 구조대상 피해자 수인 195명으로 나누면 피해자 1인이 받은 평균 구조금은 약 49,337천원에 불과하다.¹²⁰⁾ 그런데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구 또는 회복 기간 소득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구조피해자와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장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구조금의¹²¹⁾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보장이 매우 미흡하다. 한편,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규정과 같이 과실(부주의)에 의한 피해자는 구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혼인하여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내국인의 배우자도 현행 법률로는 구조대상이 되지 못한다(법 제23조). 뿐만 아니라, 동 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9세 이상의 생계를 같이하는 무소득 자녀(제3호)에 대한 지나친 유족구조금 제한과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등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19조 제1항).

그 외에도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장해구조금과,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써 중상해에 해당하는 중상해구조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다. 구조금액 산출에 있어서

119) 법무연수원, 2022년도 「범죄백서」 (2023년 발행) 11면.

120) 법무부, 2023년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자료집” 31면.

121) 송귀채,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2호, 2022, 18면.

도 사건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70세 이상의 비산업활동인구인 고령의 구조피해자와 30~60세 정도의 산업활동 연령의 피해자가 받는 구조금이 동일하다는 문제점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며 그 외에서 보호법의 여러 문제점이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V. 민간지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현행 법무부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찰을 통하여 집행하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조금과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심리치료, 주거이전비 등),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주거지원 등이 있다.¹²²⁾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5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심리치료, 주거이전비, 간병비, 취업지원, 통번역 지원, 돌봄지원 등) 및 비경제적(자조모임 지원, 주거환경개선,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 및 신뢰관계동석, 의견진술지원) 통합지원 등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심리상담·치료는 스마일센터에서 각각 맡고 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을 보면 최근 2년간 연평균 지원액 합계는 10,069,302천원으로 평균 지원 건수는 121,042건이다.¹²³⁾ 따라서 공공이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과 민간이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을 비교하면, 경제적 지원은 공공이 연간 총 13,071,280천원이고 민간이 총 10,069,302천원으로 공공 대비 민간의 경제적 지원 비율은 약 77% 수준이지만 서비스 대상 건(명)수는 공공이 1,693건(명)이고 민간이 121,042건(명)으로 공공이 민간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적을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

122) 최근 3년간 연평균 구조금 지급 합계는 9,620,713천원으로 평균 구조대상피해자 수는 195명이며, 1인 평균 구조금은 약 49,337천원이다. 5주 이상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적도 <표 - 52>와 같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금액 합계는 3,450,567천원으로 지원 받은 건수는 1,498건이며 1건 평균 지원금액은 2,303,449원이다.

123)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기준(종합)임.

능할 수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수는 약 현재 총 149명으로 센터(61개소)당 약 2.4명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비는 지방 및 국고보조, 운영비는 자체 부담 형태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자체 회원을 통해 조달하는 운영비도 회원 수 감소와 회비 미납 등 사유로 예산이 부족하여 상근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제1절 조사 배경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제4절 소결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제1절 조사 배경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비롯하여 총 60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자 149명 중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외에 스마일센터와 상담소 및 아동보호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일센터의 경우에는 의정부, 동부, 서부, 수원, 제주 스마일센터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에 굿씨 상담소 및 서로사랑상담소, 그린트리 예술치료센터와 서울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총 215명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봉사자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총 설문자 수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149명 중 14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연합회 4명을 포함한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20명, 부산 7(부산, 부산동부,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 7명 중 1명 불참)명, 인천 5명, 대구(대구,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5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4명, 경기(경기북부, 고양·파주, 부천, 수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25명, 강원(춘천, 강릉, 원주·횡성, 속초, 영월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0명, 충북(청주, 충주, 제천, 영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8명, 충남(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3명, 전북(전주, 군산, 정읍, 남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8명, 전남(목포, 장흥, 전남동부, 해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8명, 경북(경북북부,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5명, 경남(경남,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13명, 제주 2명이다.

스마일센터로는 의정부스마일센터 4명, 동부스마일센터 9명, 서부스마일센터 8명, 수원스마일센터 8명, 제주스마일센터 6명이 참여하였고, 상담소로는 굿씨상담소 6명, 서로사랑상담소 6명, 그린트리예술치료센터 5명,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15명이 참여하여 총 215명의 지원기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각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기관으로 직접 내방을 범죄피해자 14명이고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무처장이 각각 10명과 7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범죄피해자들이 겪은 범죄로는 존속살인을 포함한 살인범죄, 가정폭력, 강간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특수상해를 포함한 상해, 과실치상, 스토킹 범죄들이었다.

설문조사의 방식은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객관식 및 주관식의 서술형을 주로 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심층면접으로서 개별질문에 대하여 피면접자의 생각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당 설문결과에 대하여 각 질문사항 별로 정리하고 이를 그래프 형식으로 작성하여 질문의 의도와 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I.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기관 설문분석

1. 설문의 내용과 의도

본 설문은 기관봉사자가 중대범죄피해자의 존재를 어떠한 경로로 인식하고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해당 기관들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직접 최초의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그 연결규모 또는 정도(빈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지원기관에 범죄피해자를 연결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는 경찰, 검찰,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하 표에서는 피해자로 약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표에서는 범피로 약칭), 해바라기센터(이하 표에서는 해바라기로 약칭), 스마일센터(이하 표에서는 스마일로 약칭), 한국여성의 전화(1366)(이하 표에서는 1366으로 약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이하 표에서는 상담소로 약칭),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표에

서는 아전으로 약칭)을 상정하였고, 기타 그 외의 자나 기관으로부터 연결을 받은 경우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결받은 기관들은 다수가 예정되므로 제한없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2. 연결받은 기관의 빈도

가. 지역별 연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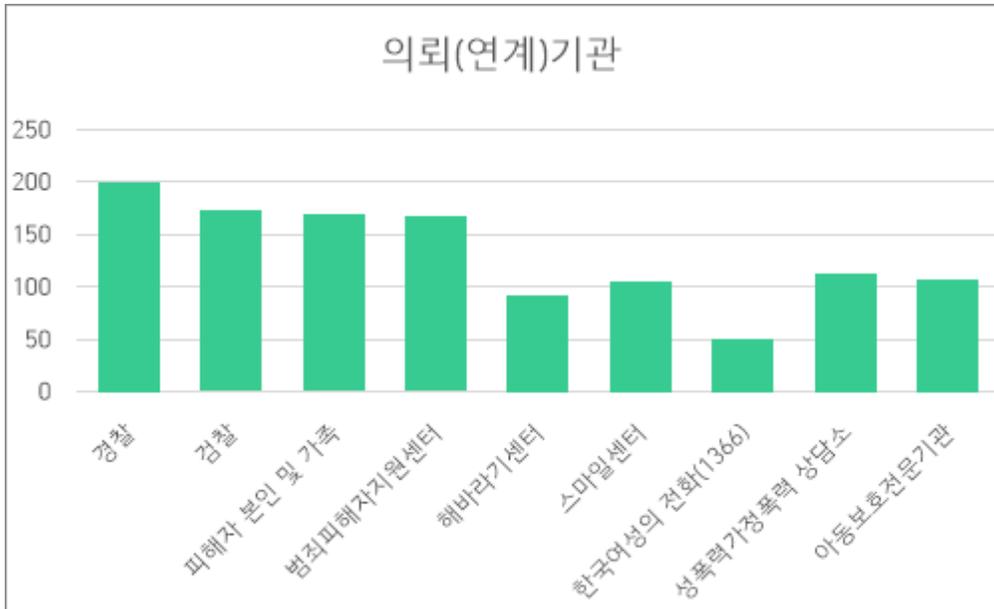
다음은 지역별 연결받은 기관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이다.

〈표 26〉 지역별 연계기관 중복응답 수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합계
서울	56	40	41	53	23	27	11	22	37	310
강원	10	10	8	6	8	5	4	8	7	66
경기	35	29	34	30	19	24	6	17	12	206
경남	12	12	10	11	4	2	1	11	4	67
경북	15	15	11	10	7	4	4	5	7	78
광주	3	3	3	2	3	3	3	3	3	26
대구	5	5	5	4	1	4	0	1	1	26
대전	3	3	3	3	3	3	3	3	3	27
부산	6	6	6	5	0	3	0	3	0	29
울산	4	4	4	3	3	3	2	4	4	31
인천	5	5	5	5	4	4	4	4	3	39
전남	8	8	6	6	4	6	4	6	8	56
전북	8	8	8	8	4	4	2	7	6	55
제주	8	3	8	6	2	8	1	1	2	39
충남	13	13	10	7	5	3	3	10	7	71
충북	8	8	6	7	2	2	2	7	3	45
총합계	199	172	168	166	92	105	50	112	107	1171

이를 지역을 통합하여 전체 전국단위로 중대범죄 피해자를 연계해주는 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연계를 받는 기관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총 연계받은 기관 규모



이에 따르면 전국단위로는 경찰에 의한 연계가 가장 많았지만, 검찰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범죄사건이 접수되고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에서의 연계활동과 사건이 검찰에 이관된 이후 검찰에서의 지원기관 연계활동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직접 지원기관에의 지원요청이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사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사법기관에 의한 직접 지원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순 안내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서는 사법기관에서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 외 기타기관으로는 구청 등을 포함한 지자체가 가장 많았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경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나. 지역별 각 기관 연계비율

이를 각 지역별 전체 대비 각 기관의 연계비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지역별 전체 대비 각 기관의 연계수치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서울	56	40	41	53	23	27	11	22	37
강원	10	10	8	6	8	5	4	8	7
경기	35	29	34	30	19	24	6	17	12
경남	12	12	10	11	4	2	1	11	4
경북	15	15	11	10	7	4	4	5	7
광주	3	3	3	2	3	3	3	3	3
대구	5	5	5	4	1	4	0	1	1
대전	3	3	3	3	3	3	3	3	3
부산	6	6	6	5	0	3	0	3	0
울산	4	4	4	3	3	3	2	4	4
인천	5	5	5	5	4	4	4	4	3
전남	8	8	6	6	4	6	4	6	8
전북	8	8	8	8	4	4	2	7	6
제주	8	3	8	6	2	8	1	1	2
충남	13	13	10	7	5	3	3	10	7
충북	8	8	6	7	2	2	2	7	3

각 지역별로 가장 연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찰이고, 특히 제주와 부산은 경찰에 의한 연계가 가장 높았다.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대다수의 지역들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연계율이 일치하고 가장 높았다.

제주지역은 검찰보다 경찰에서의 연계율이 거의 3배에 이르렀고,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스마일센터와의 연계율이 가장 높은 21%에 이른다는 점이다.

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여성의 전화(1366)과의 연계율이 가장 낮았으며, 부산과 대구는 단 한명도 이들과 연계한 적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경남 역시 1366과의 연계율이 1%에 불과하였고, 경기와 제주도 3%에 불과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성폭력, 가정폭력등 여성폭력상담을 주로 하고 있지만, 연계율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주된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각 기관과 기관간 연계율

각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8〉 각 기관 간의 연계율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범피	19	20	17	20	8	14	4	9	10	121
상담소	11	2	6	16	1	0	0	3	10	49
스마일	17	14	17	16	14	13	7	10	6	114
아전	9	4	1	1	0	0	0	0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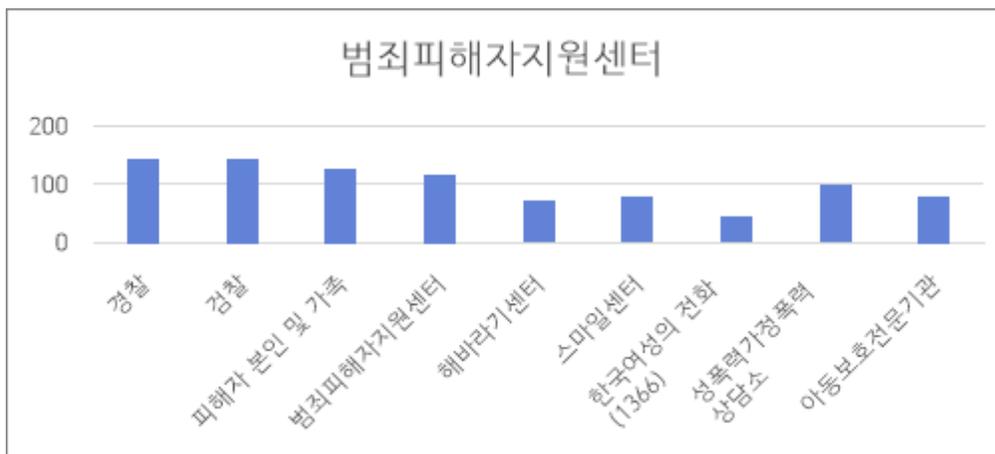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범피	16%	17%	14%	17%	7%	12%	3%	7%	8%
상담소	22%	4%	12%	33%	2%	0%	0%	6%	20%
스마일	15%	12%	15%	14%	12%	11%	6%	9%	5%
아전	35%	15%	4%	4%	0%	0%	0%	0%	42%

기관 간 연계율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과의 연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간 상호 연계와 경찰과의 연계가 16%, 그다음으로 스마일센터로부터 연계받은 비율이 12%로 나타났고, 피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14%에 이르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과의 연계율이 높은 점은 장소적으로 검찰청 내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계기관 1순위부터 4순위까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24%로 동일하였다. 특히 1순위로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의 61%가 경찰이라고 응답하였고, 36%만이 검찰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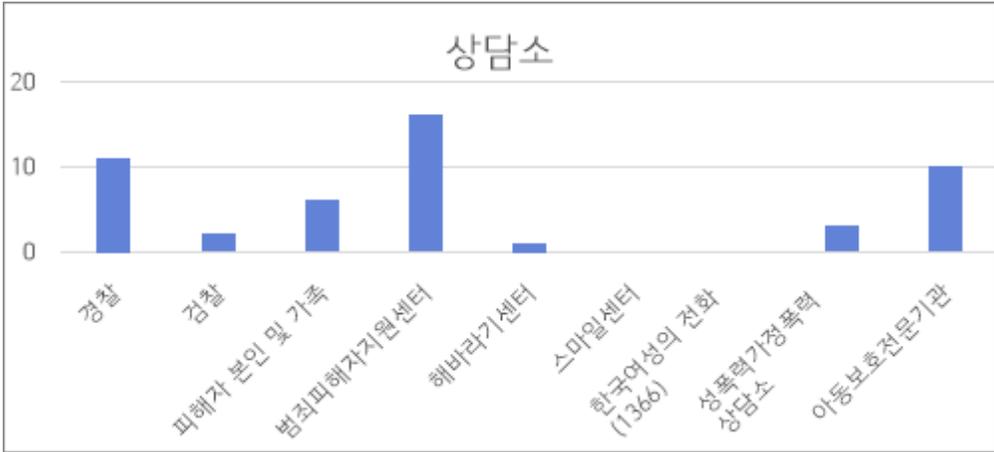
이는 연계율과 중요 연계기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이 가장 중요한 1순위 연계기관이라고 91%가 응답한 스마일센터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많았다.

[그림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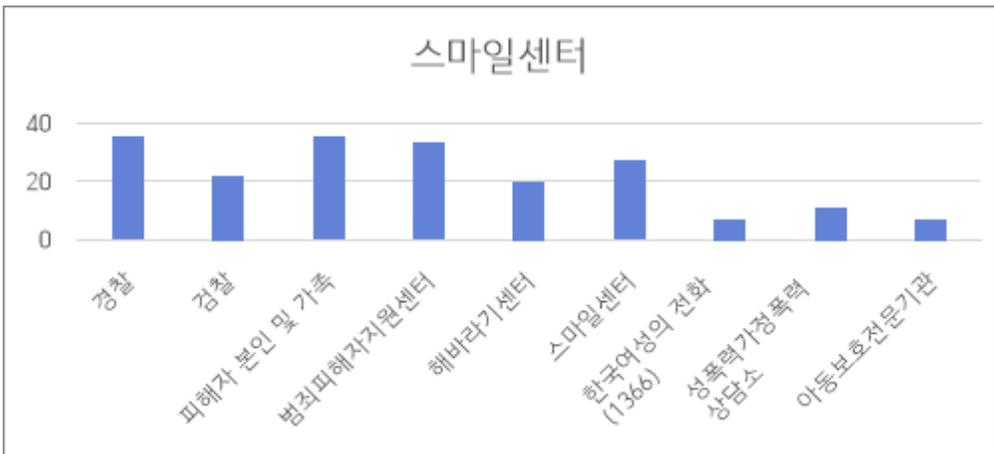
상담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율이 전체의 1/3에 해당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찰과의 연계율이 22%,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율이 20%에 이르렀지만 스마일센터나 1366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4] 상담소 연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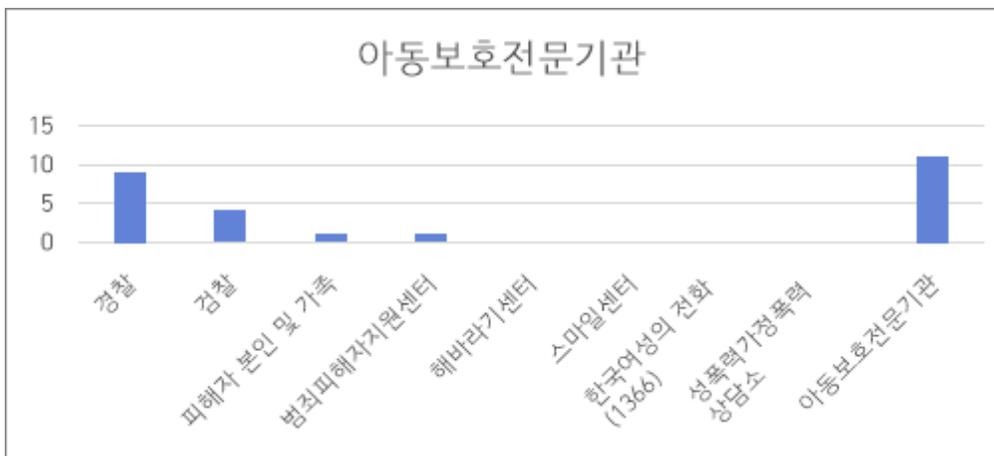
스마일센터는 경찰, 검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간 연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여전히 한국여성의 전화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저조한 편이다. 스마일센터가 성폭력, 가정폭력을 주요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전화 및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전문기관과의 연계여부는 아동전문기관이 아동학대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연계의 저조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스마일센터 연계율



아동전문보호기관은 아동전문보호기관 상호간의 연계율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과의 연계율이 35%에 이르렀다. 그 외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의 연계는 전혀 없고, 피해자가 직접 지원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도 거의 없었다. 이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특수성 및 피해아동이 대부분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특히 구청 등 지자체로부터 직접 연계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 아동보호기관 연계율



3. 연계기관의 중요도

가. 전체 지역별 연계기관의 중요도

문항2는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중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연계받은 기관들 중에서 주로 사건을 의뢰한 기관을 확인하고 그 중요도를 순서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문항 1과 같고, 구체적으로 그 외의 기관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문항은 중요한 기관을 순위를 매겨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기록을 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조사결과는 전체 4순위 안에 드는 중요한 연계기관을 총합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각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비교하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중요한 연계기관으로써 4순위 내에 포섭되는 기관별 중요도를 분석한 것이 아래의 내용이다.

우선 각 지역별 결과를 기관별 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지역별 기관연계수치

	미응답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기타
강원	0	10	8	4	1	5	1	2	7	2	0
경기	0	35	29	28	28	6	5	1	4	3	1
경남	1	12	13	9	5	1	2	0	9	0	0
경북	6	15	15	6	5	7	0	1	3	2	0
광주	0	3	3	2	0	0	3	0	0	1	0
대구	0	5	5	5	1	0	3	0	1	0	0
대전	0	3	3	3	2	1	0	0	0	0	0
부산	2	6	6	6	1	0	3	0	0	0	0
서울	47	57	34	38	45	9	10	0	5	19	20
울산	0	4	4	2	3	0	2	0	0	1	0
인천	0	5	5	4	4	0	0	0	0	1	1
전남	1	0	0	0	0	1	1	2	1	1	0
전북	0	8	8	4	4	0	2	0	4	2	0
제주	0	8	8	7	3	0	0	0	6	0	0
충남	3	8	2	8	4	1	5	0	1	0	0
충북	1	13	13	7	4	2	0	3	7	2	0

여기에서 기타란 경찰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이외의 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연계, 다른 유형의 보호센터, 구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도봉베다니 등과 같은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각 지역별이나 대상범죄의 특성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관들과의 연계를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을 주요한 연계기관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이한 점은 제주지역의 경우에만 검찰을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한국여성의 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 스마일센터나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역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특히 해바라기센터의 경우에는 강원지역 14%, 경북지역 12% 이외에는 거의 연계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일센터 역시 광주가 25%인 점을 제외하고는 제주 16%, 대구 15%, 울산 13% 정도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의 연계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드러났으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19% 및 전남, 충남 13% 정도의 비율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이를 전혀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 역시 2%에 불과하여 모든 대도시에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북 등 인구분포도가 매우 적고 인구수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상담소의 역할이나 비중이 크지만, 대도시일수록 상담소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1문항과의 연관성

1문항은 실제 지난 1년간 중대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뢰를 연계받은 기관에 대한 답변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문항은 그 중에서 연계기관을 중요도 순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1문항의 실제 연계기관과 2문항의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는 기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이 1문항의 가장 많이 연계 받은 기관이자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및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불일치의 정도가 다소 심한 편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연계율을 통상 각 지역별로 대구, 부산, 제주 등 연계율이 5%에 이르지 않는 지역 이외에는 통상 10% 정도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1%, 서울 7%, 인천 5% 이외에 모든 지역에서 단 한명의 응답자도 주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즉, 실제 연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을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서울의 경우 연계를 가장 많이한 기관 순서가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중요한 연계기관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높았고, 경찰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검찰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비록 저조하나 4%의 연계율을 보이지만, 이를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주 지역은 특이하게 검찰과의 연계가 8%에 불과하였는 바,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도 검찰은 6%에 불과하였다. 또한 스마일센터와의 연계율도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21%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도 16%에 이르러 상당히 높았다.

광주 지역도 1문항과 2문항의 간극이 다소 높다. 많이 연계한 기관으로는 경찰 12%, 검찰 12%, 피해자 본인 12%, 해바라기센터 12%, 스마일센터 12%, 한국여성의 전화 12%,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2%, 아동보호전문기관 12%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8%에 불과하였지만, 연계 중요기관에 대한 응답으로는 경찰 25%, 검찰 25%, 스마일센터 25%로 이 기관들이 가장 많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응답자 중 단 한 명도 중요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특히 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계비율로 치면 강원도 11%이지만 중요기관 인식은 0%이다. 이러한 지역은 상당수에 이르는 바, 연계율이 경남은 6%, 경북은 9%, 광주 12%, 대구 4%, 대전 11%, 울산 13%, 전남 14%, 전북 11%, 충남 10%, 충북 7%에 이르지만 이들 지역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어서, 중요도 인식은 모두 0%였다.

이처럼 실제 연계하였던 경험이 있는 기관과 기관종사자들이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계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현실적인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다. 지역별 1순위 중요 연계기관

2문항은 각각 주요 연계기관이라고 판단되는 기관에 순위를 정하여 1-4순위까

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각 지역별 설문결과 1순위로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기관별 1을 지표로 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30〉 지역별 1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 수치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기타
강원	10	0	0	0	0	0	0	0	0	0
경기	26	8	1	0	0	0	0	0	0	0
경남	9	3	0	1	0	0	0	0	0	0
경북	9	6	0	0	0	0	0	0	0	0
광주	0	3	0	0	0	0	0	0	0	0
대구	4	1	0	0	0	0	0	0	0	0
대전	3	0	0	0	0	0	0	0	0	0
부산	3	3	0	0	0	0	0	0	0	0
서울	36	3	2	17	0	0	0	0	0	13
울산	1	3	0	0	0	0	0	0	0	0
인천	2	2	0	1	0	0	0	0	0	0
전남	0	0	0	0	1	1	1	1	1	0
전북	2	6	0	0	0	0	0	0	0	0
제주	6	2	0	0	0	0	0	0	0	0
충남	7	1	0	0	0	0	0	0	0	0
충북	2	11	0	0	0	0	0	0	0	0

이에 따르면 경찰이 1순위의 주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지역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서울, 전북, 제주, 충북이다. 특히 강원과 대전 지역은 모든 응답자가 1순위로 경찰을 우선하였다. 반면 광주지역은 경찰을 주요 연계기관이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물론 각 지역별 응답자 수에 편차가 있고, 적은 지역은 8-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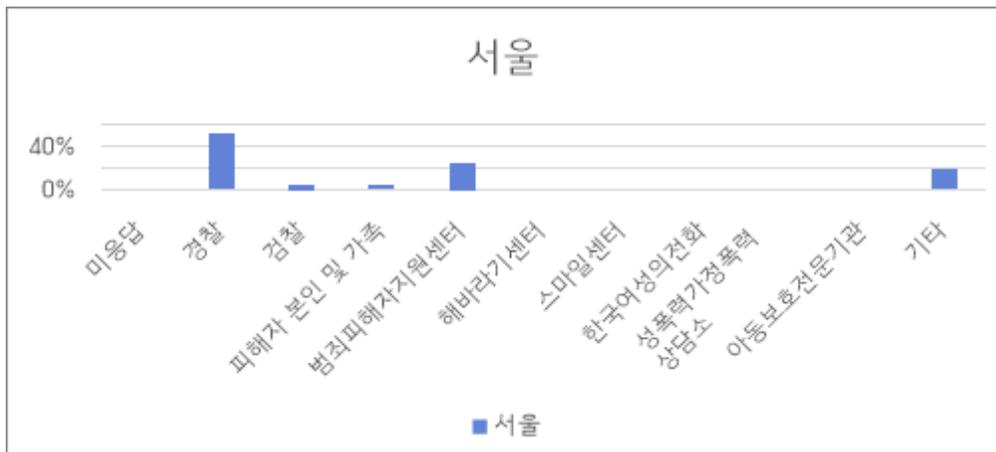
를 지원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순위라는 점에서는 그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순위 주요 연계기관이 검찰이라고 한 지역은 광주,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정도이다. 특히 광주는 모든 설문작성자가 검찰을 1순위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역 전반에서 경찰과 검찰이 가장 주요한 연계기관 1순위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중이 많았으며, 그 외의 기관들은 피해자 본인이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이 순위에 있다. 이외에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 연계기관으로서 1순위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다음은 각 지역별로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1순위로 선정한 기관들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서울지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서울지역 1순위 중요연계기관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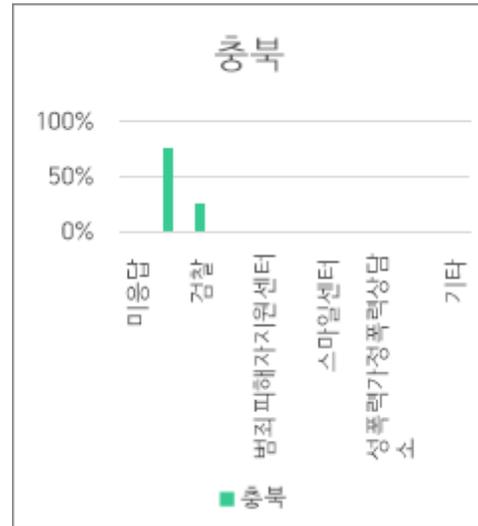
서울지역은 1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경찰과 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들었고, 검찰은 오히려 매우 낮았다. 또한 검찰 연계율 13%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율이 12%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한 명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스마일센터 9%,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7%, 해바라기센터 7%, 한국여성의 전화 4%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라고 인식한 봉사자는 없었다. 기타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법원, 구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별로 강원과 대전 지역은 모든 응답자가 경찰만을, 그리고 광주 지역은 모든 응답자가 검찰만을 1순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충북, 울산, 대구, 전남, 부산, 충남, 경북, 전북지역은 경찰과 검찰을 1순위라고 응답하였지만, 응답비율은 각각 달랐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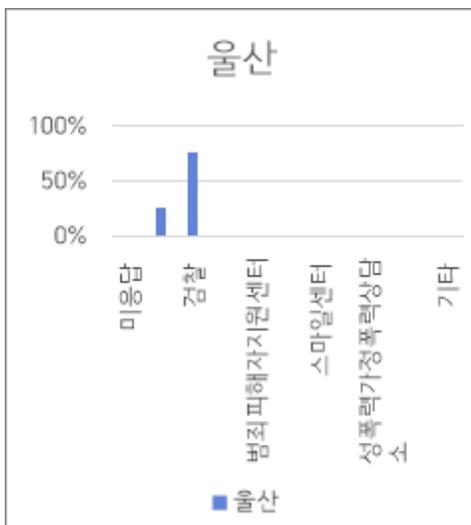
[그림 8] 대구 지역 1순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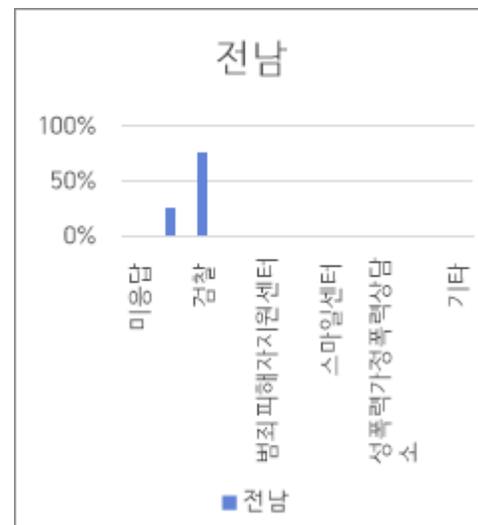
[그림 9] 충북 지역 1순위 응답률



[그림 10] 울산 지역 1순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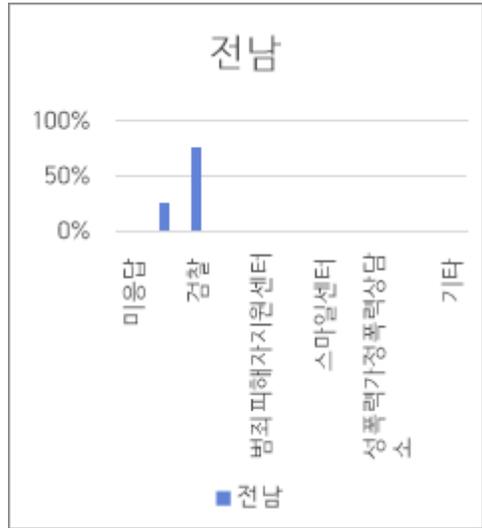
[그림 11] 전남 지역 1순위 응답률



[그림 12] 충남 지역 1순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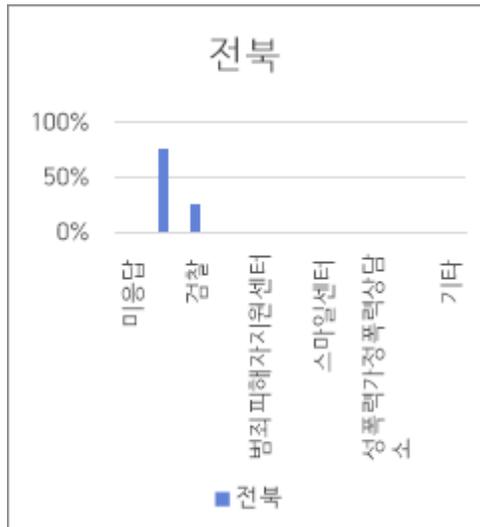
[그림 13] 전남 지역 1순위 응답률



[그림 14] 경북 지역 1순위 응답률



[그림 15] 전북 지역 1순위 응답률



그 외에 경기지역은 경찰 74%, 검찰23%로 경찰을 중요 기관으로 인식하였고, 피해자본인의 직접 지원이 1순위라고 본 응답비율은 3%였다. 경남지역은 경찰 69%, 검찰 23% 이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1순위로 본 응답비율이 8% 였다. 그리고 인천 지역은 경찰 40%, 검찰 40%로 비율이 동일하였고 그 외에 범죄피

해자지원센터를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였다.

라. 종사자소속 기관별 중요도 1순위 연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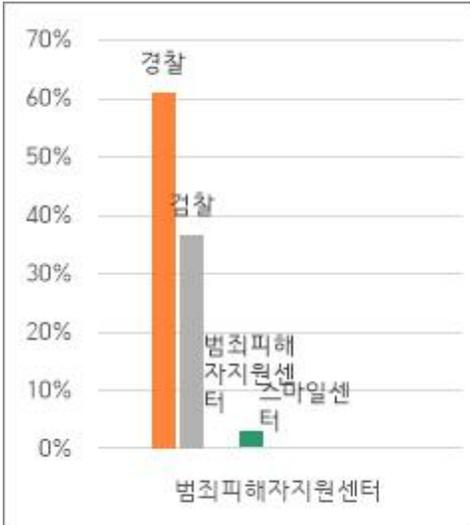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속 기관별로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관별로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지원기관별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다.

〈표 31〉 지원기관별 중요 연계기관 응답률(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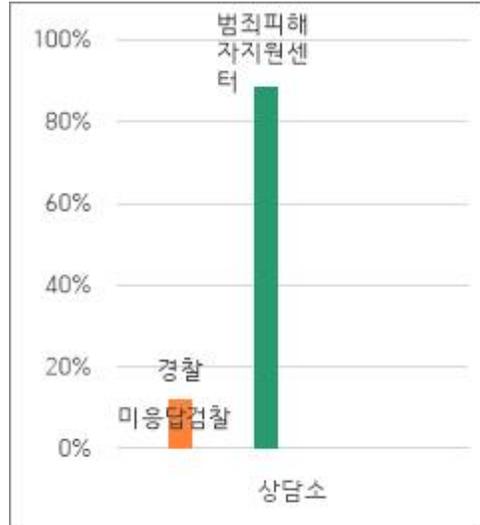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1% (90)	36% (54)	0%	3% (4)	0%	0%	0%	0%	0%
상담소	12% (2)	0%	0%	88% (15)	0%	0%	0%	0%	0%
스마일센터	91% (32)	0%	9% (3)	0%	0%	0%	0%	0%	0%
아동보호 전문기관	13% (2)	0%	0%	0%	0%	0%	0%	0%	0%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검찰보다는 경찰을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검찰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4위의 순위에 드는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종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림 1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응답률



[그림 17] 상담소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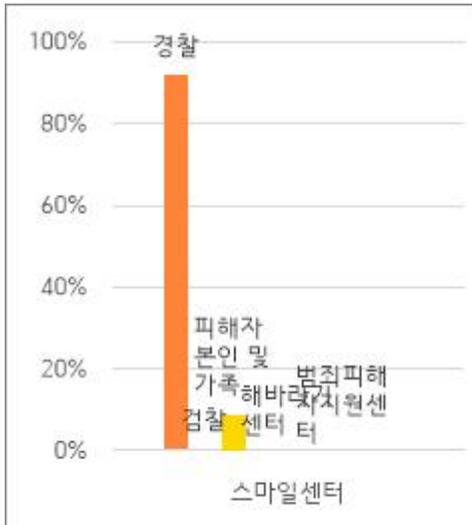


그러나 상담소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이 12% 였으나 검찰이라고 응답한 종사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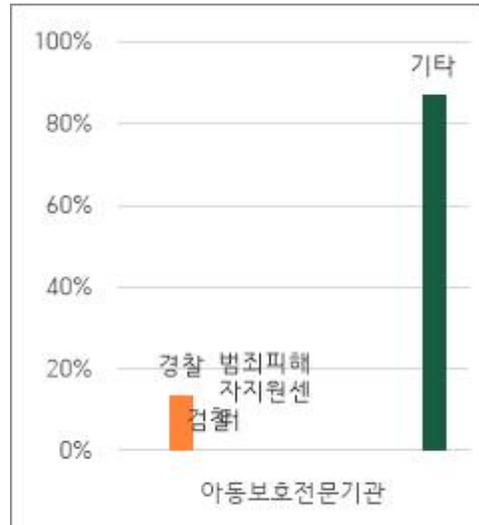
반대로 스마일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순위를 부여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대신 경찰이 중요연계기관이라는 응답이 91%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 주요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보였는 바, 통상적으로 경찰을 중요연계기관으로서 순위에 넣었던 범죄피해자보호센터나 스마일센터 종사자들과는 달리 기타가 87%이르렀다. 이는 대체로 구청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일부 법원도 포함되었다.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기관으로서, 법원은 보호명령을 부과하는 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중요 연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스마일센터 응답률



[그림 19] 아동보호전문기관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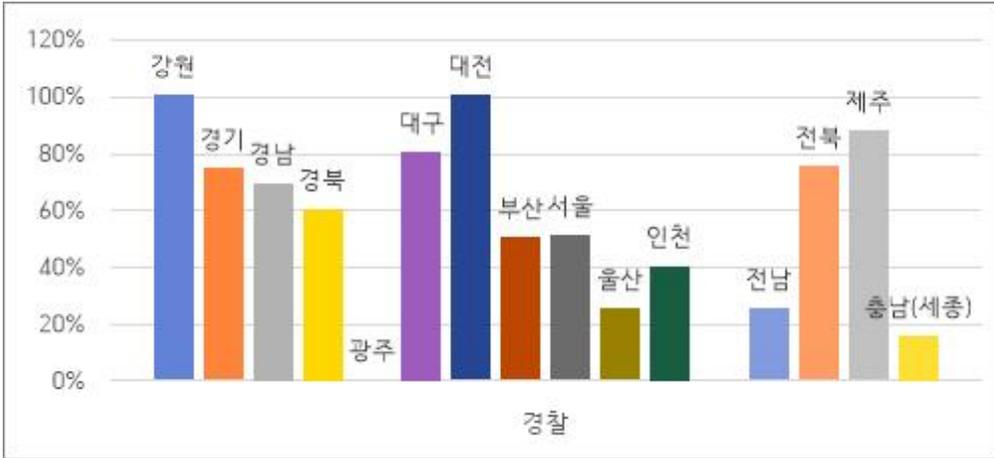
정리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종사자들은 경찰을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담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경찰을 약 12% 정도만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상담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청 등 지자체를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최초 연계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담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학대피해 아동을 인계받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나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수사 초기에 경찰로부터 인계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연계기관별 1순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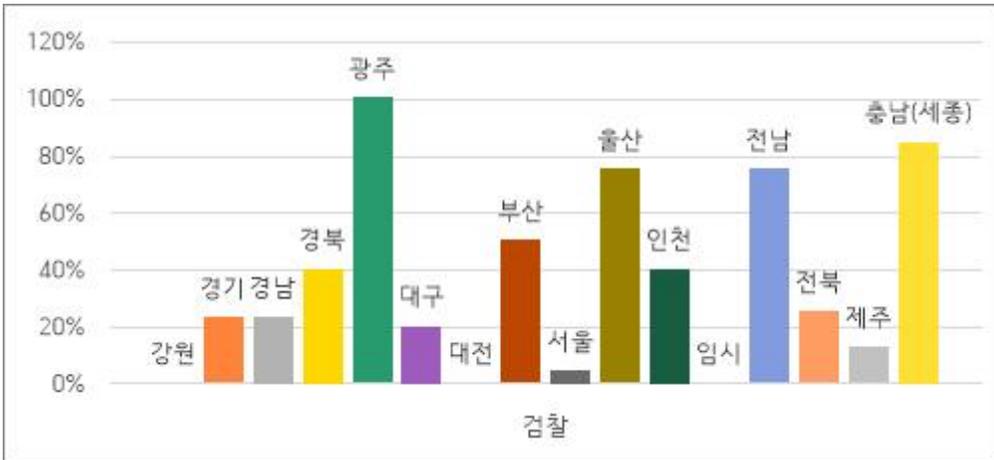
경찰, 검찰, 피해자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연계기관별로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1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다. 다음은 이에 관한 도표이다.

[그림 20]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경찰 선택률



우선 강원, 대전 지역은 모든 응답자가 경찰이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광주에는 경찰을 선택한 응답자가 한명도 없었다. 대구 역시 80%라는 높은 비율로 경찰을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21]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검찰 선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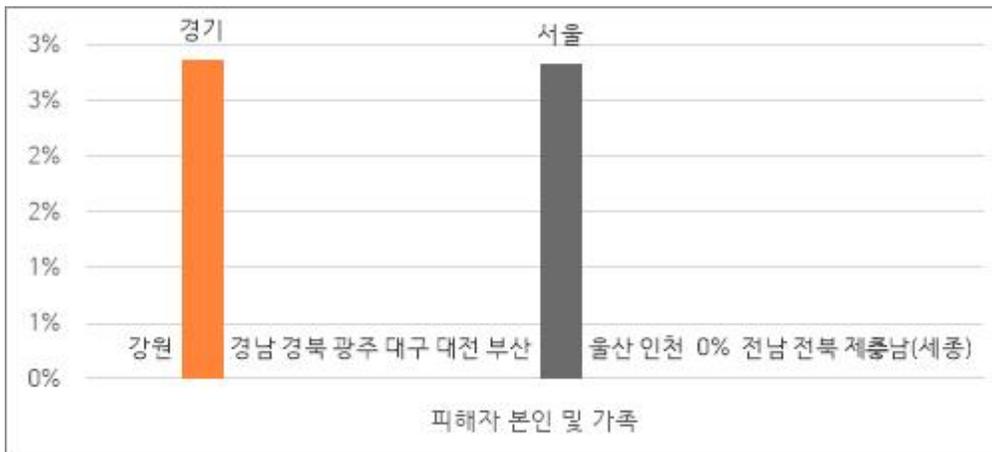


검찰에 대하여는 광주지역의 모든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하였지만, 반대로 대전은 단 한명도 검찰을 선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이 80%이상의 응답자가 경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울산과 전남 지역에서 검찰을 중요 연계기관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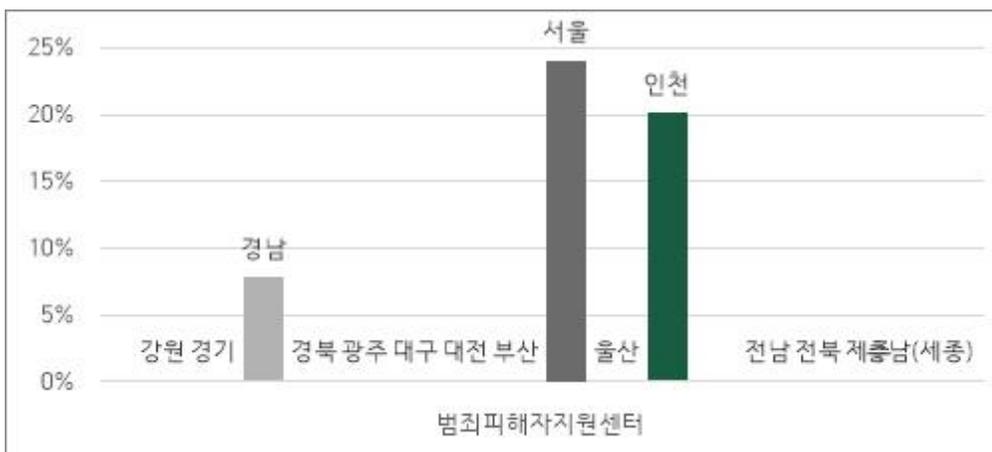
그 외에 유의미한 1순위의 중요 연계기관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라는 답변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라고 답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밖에 없었으며, 그 비율로 3%에 불과하여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요한 1순위 연계기관이라고 본 지역으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4% 였고, 다음으로 인천이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는 경남 지역에서 8%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특히 인천지역과 경남지역은 경찰 및 검찰 이외의 1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을 선택하였다.

[그림 22]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 선택률



[그림 23]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선택률



바. 지역별 2순위 중요 연계기관

다음으로 지역별로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다. 순위상 2순위부터는 미응답이 약간 있었다. 다음은 지역별 2순위로 연계기관으로서 중요하다고 답한 기관의 비율이다.

〈표 32〉 지역별 2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수치

	미응답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강원	0	0	7	1	0	1	0	0	1	0
경기	0	9	12	2	12	0	0	0	0	0
경남	0	3	7	1	0	0	0	0	2	0
경북	0	6	9	0	0	0	0	0	0	0
광주	0	3	0	0	0	0	0	0	0	0
대구	0	1	1	3	0	0	0	0	0	0
대전	0	0	3	0	0	0	0	0	0	0
부산	0	3	3	0	0	0	0	0	0	0
서울	3	12	19	12	10	0	0	0	1	13
울산	0	3	0	0	0	0	0	0	0	1
인천	0	2	2	1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1	0	0
전북	0	6	2	0	0	0	0	0	0	0
제주	0	2	6	0	0	0	0	0	0	0
충남	0	1	1	5	0	0	1	0	0	0
충북	0	11	1	1	0	0	0	0	0	0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은 경찰을 1순위라고 답한 비율이 74%이고 2순위라고 답한 비율이 26%로서 경찰은 1, 2순위를 합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기 지역은 2순위로 경찰 26%, 검찰 3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4%라고 응답하였는 바, 1순위가 경찰, 검찰, 피해자라고 답하였던 것과는 달리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2순위에도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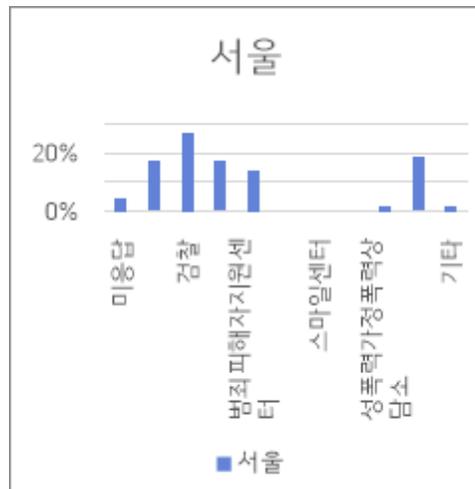
서울의 경우에는 1순위에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순서였다면, 2순위의 중요 연계기관으로는 검찰이 27%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8%로 1순위에서는 전혀 응답률이 없었던 등 기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과 피해자본인 및 가족이 17%라고 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1%로 순위에 있었으나, 해바라기센터와 스마일센터 및 한국여성의 전화는 여전히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경기 지역 2순위 응답률



[그림 25] 서울 지역 2순위 응답률



울산지역의 경우 1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검찰 75%, 경찰 25% 였지만, 2순위에서는 경찰 75%, 아동보호전문기관 25% 비율로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요한 2순위 연계기관으로 응답한 지역은 서울과 울산 두 지역밖에 없다. 인천 지역은 경찰, 검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1순위의 중요 연계기관으로 인식하였고, 여전히 경찰과 검찰을 중요한 2순위 연계기관으로 답하였으며 피해자본인이 중요하다고 본 비율은 20%이다.

2순위 중요 연계기관에 대한 답변에서는 1순위와 달리 강원지역에서 해바라기센터 10%, 제주지역에서 스마일센터 13%,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강원지역 10%,

경남지역 15%, 서울지역 1%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들 기관들은 1순위 중요 연계기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전국의 응답자 중 단 한명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은 기관들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본 비율이 18%였는 바, 역시 2순위로 중요하다고 본 비율 역시 18%로 동일하였다. 또한 인천 지역은 1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지만 2순위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지역만이 동 기관을 중요한 2순위 연계기관이라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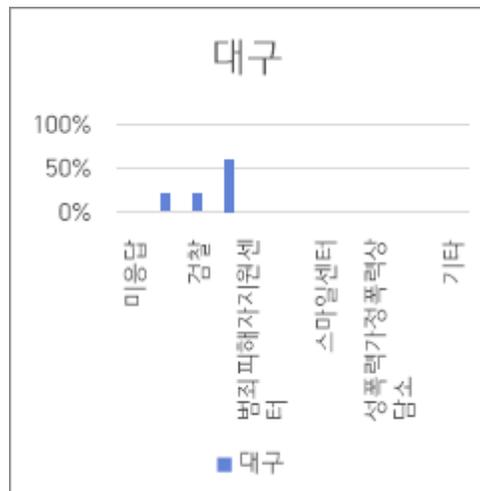
가장 특이한 2순위 중요 연계기관 인식도는 대구와 제주지역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1순위로 중요한 연계기관을 87.5%의 수준으로 경찰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12.5%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과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2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63%가 피해자 본인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스마일센터와 경찰 및 검찰이 동등하게 13%의 응답률을 보였다.

대구 역시 피해자 본인이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 60%에 이르러서 피해자본인이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 제주 지역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 지역은 1순위 중요 연계기관을 경찰 80%, 검찰 20%라고 하였으나, 2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는 경찰과 검찰 모두 20% 수준이었다.

[그림 26] 제주 지역 2순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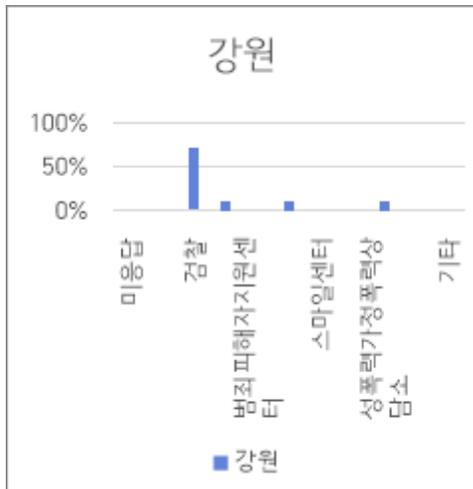
[그림 27] 대구 지역 2순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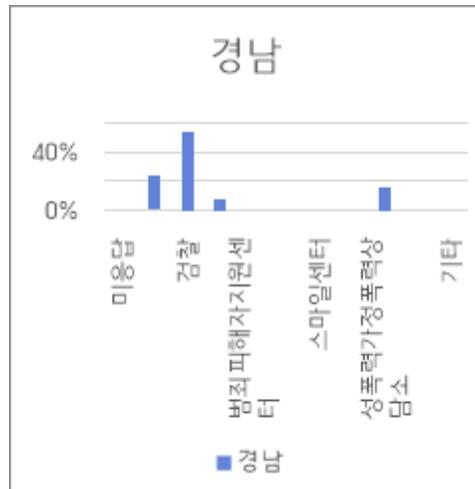
강원 지역과 경남 지역 역시 1순위 중요 연계기관 인식조사와 달리 2순위 조사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강원지역은 1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100% 모든 응답자가 경찰이라고 하였지만, 2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은 경찰은 당연히 단 한명도 없지만, 검찰이 70%, 피해자 본인이 10% 이외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선택한 비율이 10%에 이르렀다.

경남 지역은 1순위로 경찰을 69% 비율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검찰에 표기를 하였지만, 2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는 검찰이 54%, 경찰이 23%이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비율이 15%에 이르러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8] 강원 지역 2순위 응답률



[그림 29] 경남 지역 2순위 응답률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1순위 중요 연계기관을 100% 모두 경찰을, 2순위 중요 연계기관을 100% 비율로 모두 검찰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충북 지역, 전북 지역, 경북지역은 1순위를 경찰 75%와 검찰 25% 순으로, 2순위를 검찰 75%와 경찰 25% 순으로 동일한 역비율로 응답하였다. 반대로 충남지역과 전남지역은 1순위를 검찰, 경찰순으로 부여하였다면 2순위를 경찰, 검찰 순으로 역비율로 부여하였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응답이 거의 없었다. 다만 충남지역은 2순위 중요한 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을 8% 정도로 응답하였다.

부산지역의 경우 1 순위가 경찰, 검찰 반반이었고, 2 순위 역시 경찰, 검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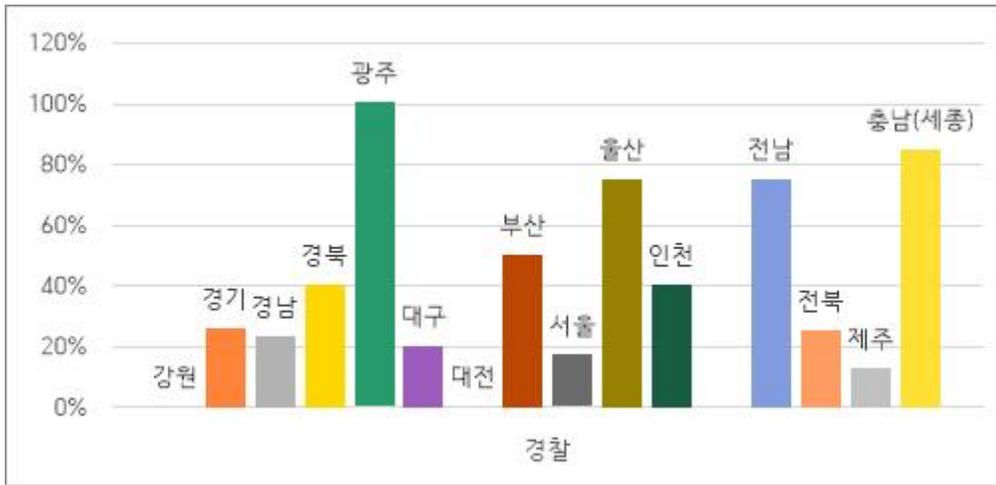
반반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기관을 선택한 종사자는 없었다.

사. 연계 기관별 2순위 중요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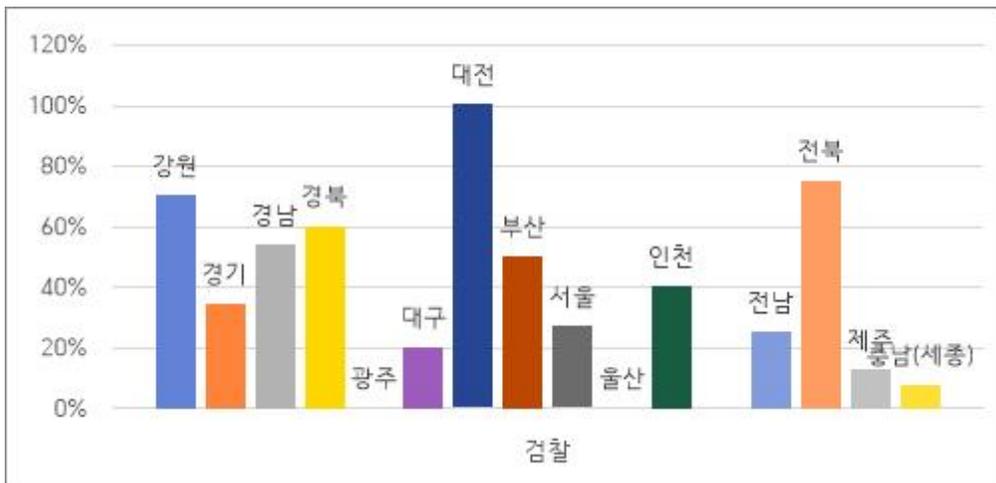
연계 기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어느 기관을 2순위의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응답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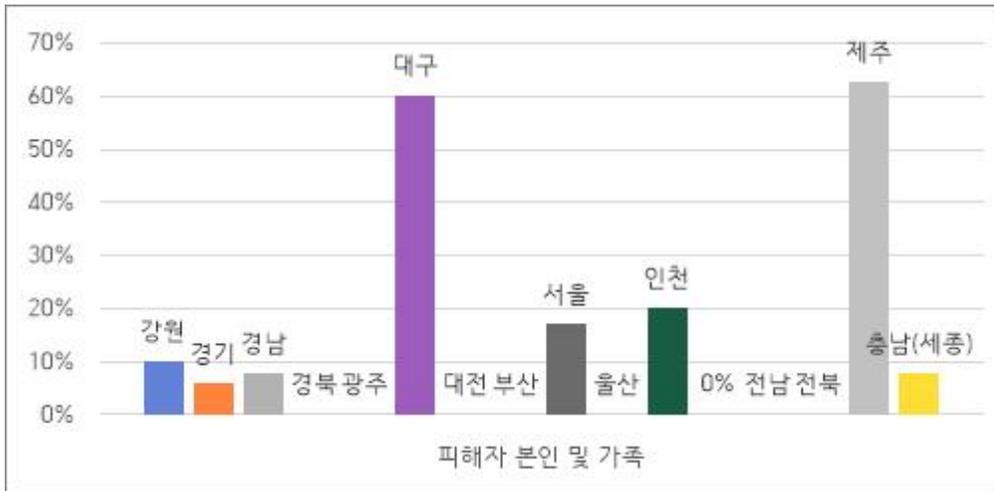
[그림 30]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경찰 선택률



[그림 31]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검찰 선택률



[그림 32]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 선택률



그 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응답한 지역은 경기 34%, 서울 14%였고 그 외 다른 지역은 없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하여는 경남 15%, 강원 10%, 서울 1% 지역만이 응답률을 보였고, 해바라기 센터는 강원지역만 10%, 스마일센터는 제주지역만 1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울산과 서울 지역만이 각각 25%, 18%의 응답률을 보였을 뿐이다.

이처럼 중요 연계기관의 순위는 1순위와의 비교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별 비교 및 중요 연계기관 중심의 비교도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연계활동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종사자소속 기관별 중요도 2순위 연계기관

마지막으로 응답자인 종사자가 소속된 피해자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연계기관 2순위로 선정한 기관이 서로 상이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 종사자 소속기관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 33〉 지원기관별 2순위 중요기관 선택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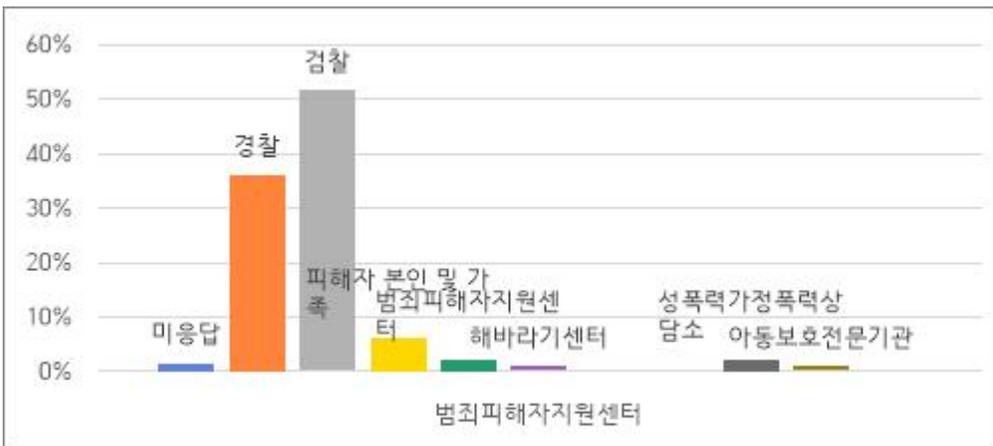
	미응답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센터	1366	상담소	아전	기타
범피	2	53	76	9	3	1	0	0	3	1	0
상담소	0	5	0	4	1	0	0	0	1	6	0
스마일	0	3	1	12	18	0	1	0	0	0	0
아전	1	3	2	1	0	0	0	0	0	7	1
합계	0	0	0	0	0	0	0	1	0	0	0

1순위와는 달리 종사자 소속별로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관을 2순위 중요 연계 기관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순위 중요 연계기관 선택과는 달리 스마일센터를 제외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 2순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타를 선택한 부분은 역시 1순위와 마찬가지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으로부터의 연계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순위 중요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의 비중이 두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고, 경찰이라고 답한 비율이 약 2/3 정도에 이르렀지만, 2순위 중요도에서는 검찰이 2/3에 이르는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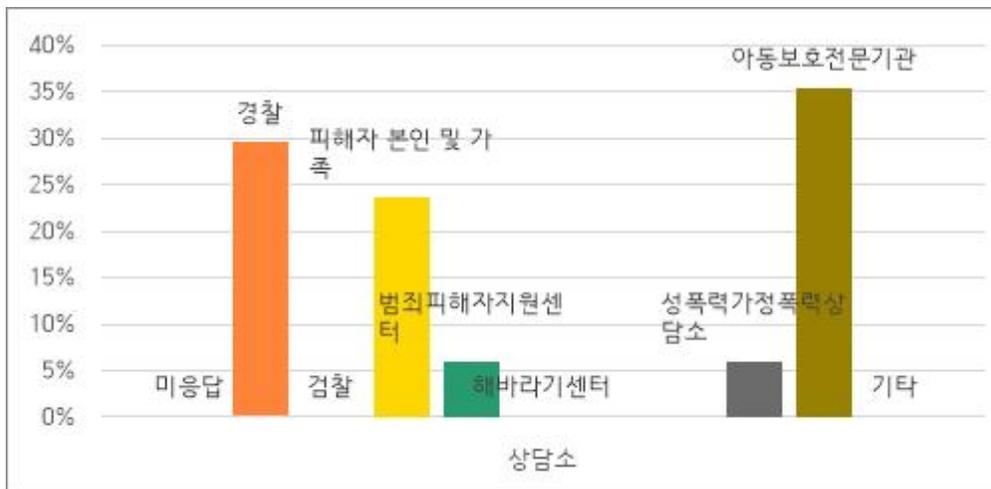
이를 설문에 응한 종사자 소속 기관별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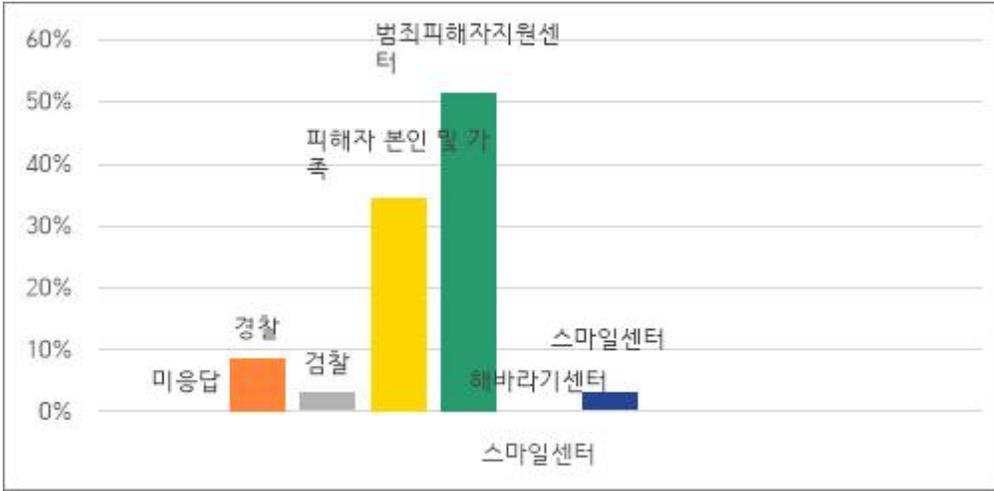
상담소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3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2순위 중요 연계기관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경찰,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및 한국여성의전화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특이한 점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중요한 2순위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이 6% 있다는 점이다.

[그림 34] 상담소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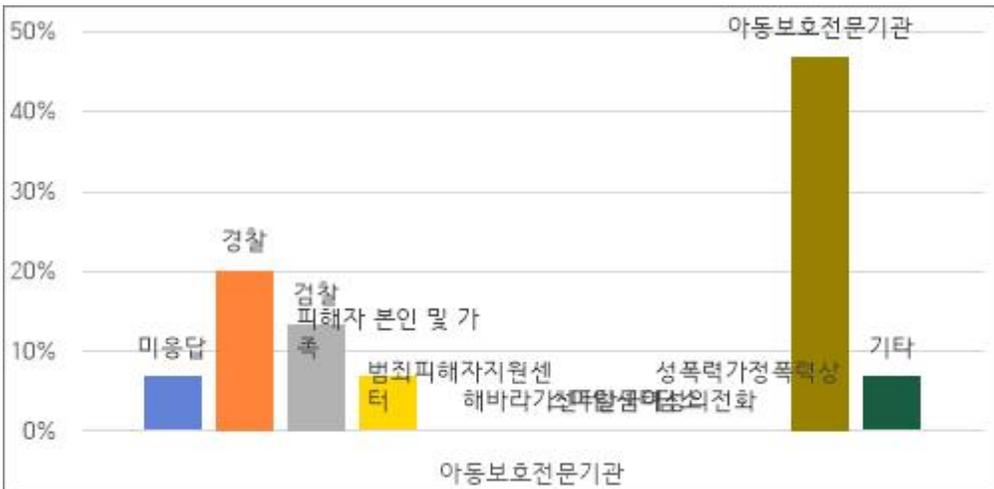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순위로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피해자본인 및 가족이라고 답하였다. 스마일센터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라는 점에서, 1순위 중요 기관으로 90%이상의 응답자가 경찰을 선택하였지만, 그 압도적 선택률로 인하여 2순위에서는 경찰을 선택한 비율이 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순위와 2순위를 누적합산하게 되면 스마일센터 종사자의 99% 즉 전부 경찰이 가장 중요한 연계 기관이라고 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스마일센터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요한 2순위 연계기관으로 선택하였고, 여전히 기타로서 지자체 등이 7%의 응답비율로 선택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의 선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순위로 선택한 비율 역시 20%에 불과하였다.

[그림 36]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자. 3순위 중요 연계기관

그 외에 설문조사에서는 3순위와 4순위까지 조사를 하였다 우선 3순위의 경우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스마일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비율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3순위는 미응답 8%를 포함하여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 3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5%,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12%, 스마일센터가 10%, 검찰이 8%,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 경찰이 3% 및 한국여성의 전화가 1%로 나타났다.

경찰이 3% 나타난 이유는 서울이 연계기관 중 7%, 인천이 연계기관 중 20%의 비율로 경찰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스마일센터를 3순위의 중요 연계기관으로 선택한 비율이 대구가 67%, 대전 60%, 부산 및 제주가 50%, 전남 25%, 충북 13%, 경기 9%, 경북 8%, 서울 3%의 비율로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총 4%의 비율을 보인 분포를 살펴보면 광주가 20%, 제주 13%, 강원 10%, 충남 8% 비율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도 12%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이유는, 전북지역에서 75%, 강원 및 충북 지역 50%의 높은 비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남 38%, 전남 25%, 경북 13%, 충남 8%, 경기 3%의 응답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4%의 비율인바, 강원과 인천 지역에서 20%의 응답률을, 그 외에 서울 7%, 경기 3%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1366은 충남에서 8%, 경북에서 7%의 비율로 3순위 중요 연계기관이라고 답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응답자가 없었다.

기타를 선택한 경기 3%, 서울 8%는 아동학대신고기관인 구청 및 보호명령 기관인 법원에 의한 연계를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7] 3순위 중요연계기관 선택률



연계기관 별 지역선택으로는 3순위로 경찰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인천, 검찰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경남이다.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대전이며, 특히 대전지역은 3순위에 대하여 응답자 100% 피해자 및 가족이라고 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울산지역에서, 해바라기 센터는 경북지역에서, 스마일센터는 광주지역에서, 한국여성의 전화는 충남에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전북지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과 강원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3순위 중요연계기관으로 선택되었다.

종사자의 소속기관별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본인 및 가족을, 상담소는 기타의 기관을, 스마일센터는 검찰과 피해자본인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동등한 비율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동등한 비율로 3순위의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4> 지원기관별 3순위 중요기관 선택 수치

	미응답	경찰	검찰	피해자	범피	해바라기	스마일	1366	상담소	아전	기타
범피	5	1	7	58	22	6	16	2	26	4	1
상담소	7	1	1	1	1	0	0	0	0	1	5
스마일	1	0	9	9	9	2	5	0	0	0	0
아전	5	4	0	0	1	0	0	0	0	4	1
합계	18	6	17	68	33	8	21	2	26	9	7

II. 지원신청 소요기간 및 지원방법

1. 설문 의도와 내용

문항 3부터 문항 6-1까지는 중대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기관에 범죄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까지 및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신청을 하는 방법 및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우선 문항 3은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중대범죄 발생일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의뢰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택은 1주 이내부터 5주 이내 및 5주 이상 그리고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두었다.

문항 4는 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의뢰 또는 연계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해당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기초상담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의도하였다. 또한 선택은 문항 3과 같고, 기타 구체적 기술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두었다.

문항 4-1 문항 4에 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보호·지원 안내(기초상담)을 받은 후에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선택은 문항 3과 같다.

문항 4-2는 사건이 발행한 후에 해당 중대범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보호·지원안내(기초상담)를 받은 이후에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및 그 빈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선택은 매우 자주, 자주, 가끔 발생하는지와 거의 없거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문항 5는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선택은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전화로 구성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항 6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지원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초기의 경제적 또는 심리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역시 선택지는 문항 3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문항 6-1은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중대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택은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미흡하다까지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설문들은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이후에 실제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기간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러한 지원방법의 용이성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2. 범죄발생일로부터 지원기관의 지원의뢰까지의 소요기간

가. 지역별 기간 소요 정도

총 16개의 지역별로 기간 소요 정도를 1주일 단위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역을 합산한 총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체 모든 종사자들의 응답에 있어서 4주 이내가 32%로 가장 많았고, 5주 이내가 19%로 그 다음이었으며, 1주 이내는 13%에 불과하였고, 2주 이내는 16%였다. 반면 5주 이상 즉 약 1달이 넘게 소요된 비율도 11%에 이르렀다.

〈표 35〉 지역별 범죄발생후 지원(연계)의뢰 소요기간 응답수치

	1주이내	2주이내	3주이내	4주이내	5주이내	5주이상
강원	0	5	1	3	1	0
경기	4	5	4	10	11	4
경남	1	2	1	3	2	3
경북	4	2	1	4	2	0
광주	0	0	0	3	0	0
대구	2	0	0	0	2	1
대전	1	0	0	2	0	0
부산	0	2	1	3	0	0
서울	10	10	5	23	13	11

울산	0	0	1	0	0	0
인천	2	1	1	1	0	0
전남	0	2	0	4	0	0
전북	2	2	2	2	0	0
제주	0	1	1	5	1	0
충남	0	1	3	2	2	2
충북	0	0	0	1	6	1
합계	26	33	21	66	40	22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범죄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의뢰 또는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과 대구로서 각 40%에 이르는 사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경남지역은 피해자가 지원기관에 지원의뢰가 되는 기간 소요일이 5주 이상인 비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한편, 1주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비율은 8%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4주 이내 25%, 5주 이내 17%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 중에서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비율이 33%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2/3 이상이 3주 이상의 기간을 대기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충북지역도 유사하다. 3주 이내까지라는 응답은 1명도 없는 반면 5주 이내와 5주 이상이 88%에 이르고 있어서 피해자 5명 중 4명 이상이 5주까지 대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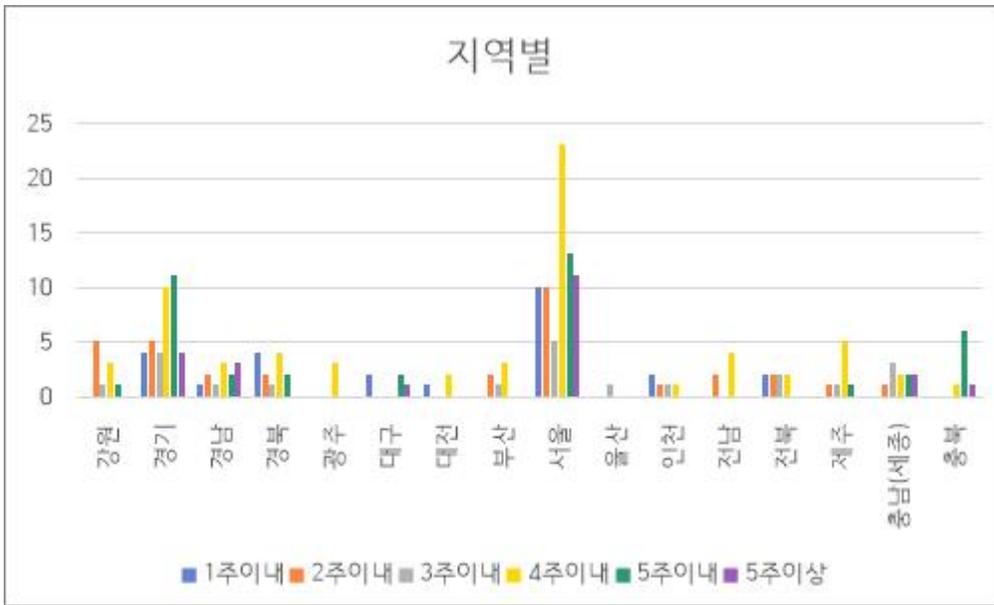
광주와 충북 지역의 종사자들은 범죄발생일로부터 1주이내부터 3주 이내에 지원의뢰가 이루어진다고 답한 비율이 0%인 반면, 인천, 전남, 전북 지역은 5주 이내 및 5주 이상이 0%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연계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천지역은 모든 피해자가 4주이내에 연계가 완료되며, 3주 이내 연계율이 80%에 이르고 있어서 3주 이내 총 연계율 75%를 보이고 있는 전북과 함께 가장 신속하게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주 이내를 기준으로 총 누적연계율로 환산한다면, 울산 100% -인천

80% -전북 75% -강원 60% -부산 50% 지역만이 3주 이내에 50% 이상의 연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3주 이내 누적연계율이 0%인 지역은 충북과 광주이고, 제주 26%, 경남과 전남 지역이 33%, 서울 3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누적연계율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광주 지역의 종사자 응답으로 전원이 4주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8] 지역별 범죄발생후 지원(연계)의뢰 소요기간



나. 응답자별 기간소요

응답자별 단순 응답 횟수는 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그림 39] 응답자별 기간 소요 단순 응답 횟수



각 응답자의 총 수가 설문응답자 합계와 상이한 이유는 기타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속 응답자의 경우 연합회에서 임의로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경남지역 응답자는 사건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뢰 의지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답하였다.

전남지역 응답자는 의뢰하는 기관별로 서로 평균기간이 달라서 경찰은 4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검찰은 5주 이상 또는 5주 이내로 경찰보다 평균적으로 의뢰에 소요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차이가 난다고 답하였다. 이는 경북지역도 유사하다. 경북지역은 의뢰연계기관별 차이가 더욱 심해서 경찰은 2주 이내에 의뢰연계가 이루어지지만, 검찰은 송치 후에 지원의뢰를 함으로써 5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답변하였다.

경기지역 일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기관이 연계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5주 이상이 소요되지만 범죄피해자가 자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주 이내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답하였다.

충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기간이 사안마다 매우 다른데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피해자 관리가 소홀해 졌다고 답하였고, 일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의뢰가 감소하고 있는 바 지자체나 기관단체 등으로 연계의뢰 기관이 변경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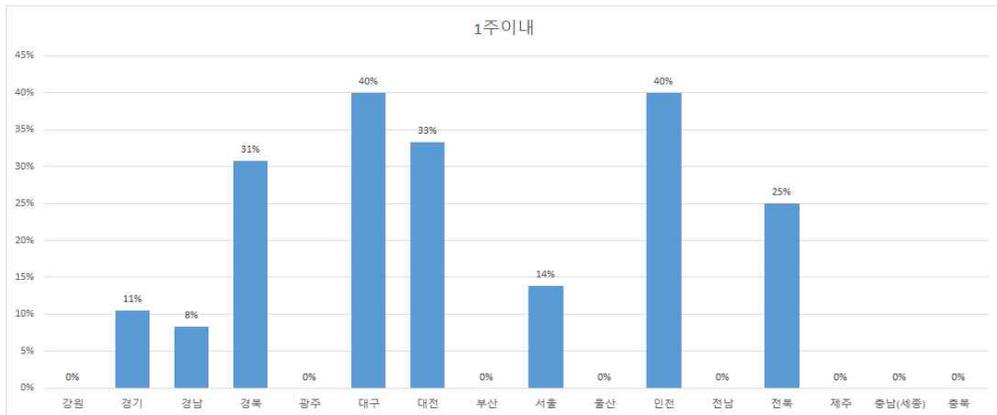
앞서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경찰이 검찰과 함께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

택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답변들은 경찰의 의뢰가 감소되고 있다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경찰보다 검찰에서 의뢰연계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점도 개선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주차별 기간소요 정도

각 주차별로 가장 비율이 많은 지역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범죄발생 후 기관연계의 퇴까지 소요기간이 1주 이내라고 답한 지역은 대구와 인천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전이 33%였다. 반면 대도시로는 광주, 부산, 울산, 지방으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은 1주일 이내에 연계된다고 한 응답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림 40]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1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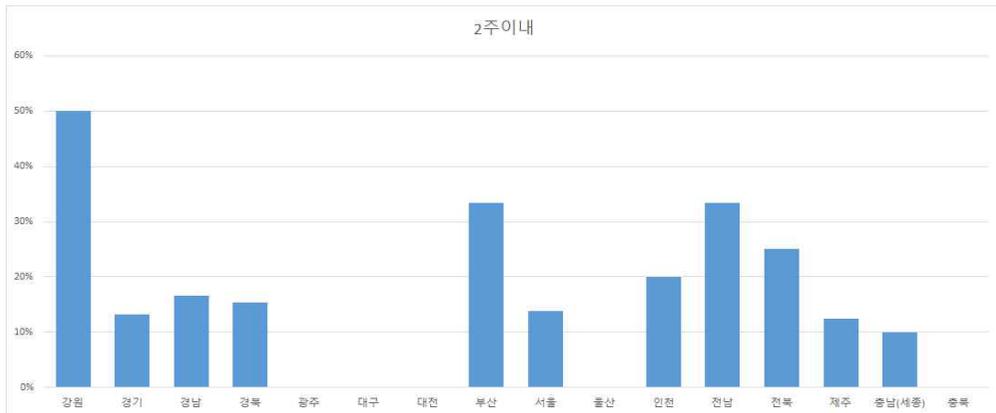


2주 이내라고 응답한 지역으로는 강원지역이 50%, 전남과 부산은 33%이고 전북지역은 25%, 인천지역은 20%에 이른다. 그러나 대구와 대전 및 울산, 충북 지역은 0%이다. 제주와 경기 지역 역시 13%로 저조한 편이다.

2주 이내까지 누적연계율은 총 29%이다. 이중 가장 높은 누적연계율을 보인 지역 60%에 해당하는 인천지역이고, 2명 중 1명이 2주 이내에 연계의뢰 되는 지역은 강원과 전북이었다. 그 외에는 경북지역이 46%, 대구지역 40% 정도로 다소

높은 편에 해당한다. 반면 누적연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이 랑게 광주, 울산, 충북지역으로 연계율 0%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제주지역 13%, 경기지역 24%, 경남지역 25%, 서울지역 28%의 누적연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외 30%를 상회하는 지역으로는 전남, 대전, 부산 지역이 33%에 해당한다.

[그림 41]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2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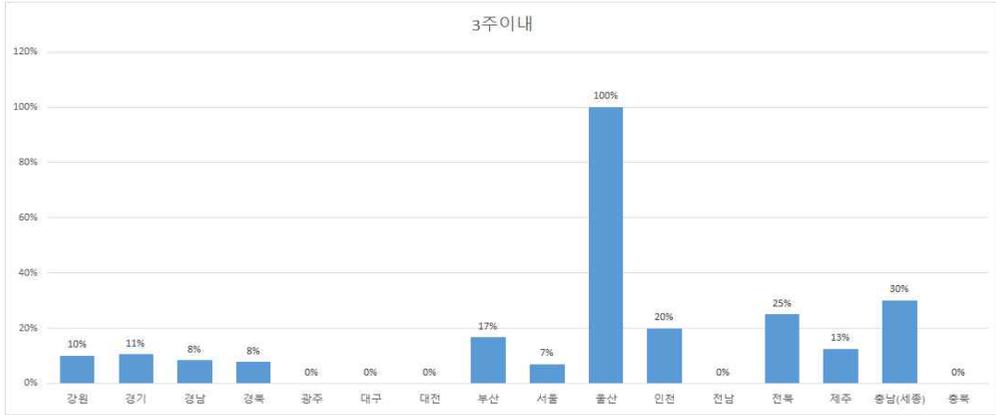


3주 이내에 연계의뢰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울산이 100%였고, 충남 30%, 제주 25%, 인천 20% 정도가 1/5 이상의 연계율에 해당한다.

3주 이내 누적연계율은 울산이 100%에 해당한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개소 밖에 개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도 4명에 불과하여, 100%가 3주 이내라고 응답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서울이나 인천 등과 같이 개설 지원기관이 다수이고 종사자 수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3주 이내라고 전원이 응답하였다면 그 이유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개설 지원기관 1개소의 특성인 것으로 이해함으로 족할 것이다.

그 외에 인천지역은 3주 이내 누적연계율이 80%로 가장 높았고, 전북 75%, 강원 60%, 경북 54%로 2명 중 1명이 3주 이내에는 연계의뢰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와 충북은 연계비율이 0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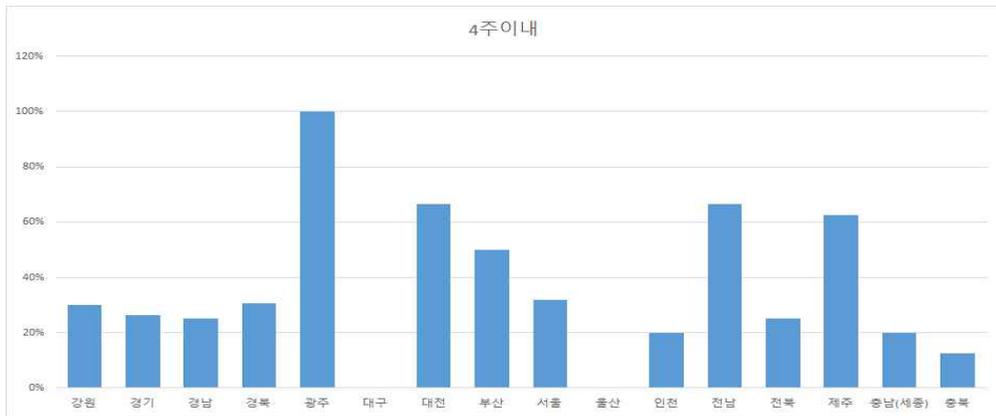
[그림 42]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3주 이내



4주 이내에 연계의뢰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가 100%였다. 이 역시 광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과 마찬가지로 광주 역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개소 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는 울산보다 더 적은 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4주 이내 100%라는 응답비율은 해당 지원기관 자체의 특성일 뿐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대전과 전남 지역은 67%로 누적연계율로 환산하면 4주 이내에 모든 범죄피해자의 연계의뢰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4주 이내 누적연계율이 100%에 해당하는 지역은 울산과 인천, 전북 지역이다. 다만 울산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주 이내에 100%가 연계의뢰 된다고 답변하였다. 강원지역은 90%의 누적연계율을 보이고 있고, 제주 지역이 88%, 경북지역이 8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대로 충북지역은 13%로 가장 저조하였고, 대구 역시 40%로 저조하였다. 그 외에 누적연계율을 살펴보면 경기 61%, 경남 58%, 서울 67%, 충남 60%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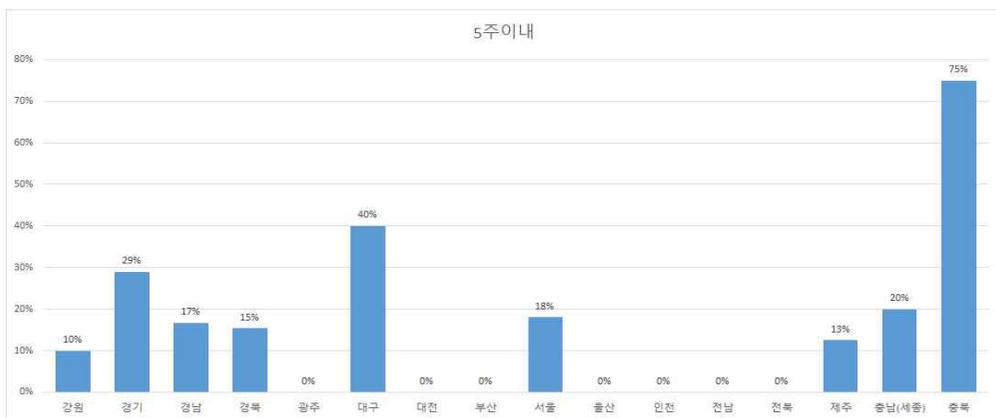
[그림 43]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4주 이내



5주 이내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지역은 충북이 75%이다. 충북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주 및 5주 이상이 88%에 이른다. 충북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 영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4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각각 종사자는 2명씩이므로 그와 같이 늦은 시점에 연계된다고 응답한 것은 지역 자체의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충북지역은 4주부터 5주 이상까지 총 100%라고 응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매우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 역시 5주 이내 40%, 5주 이상 20%라고 응답하였다. 대구지역은 대구 및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개소 5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충북 지역과 동일하게 지역적 특색이라고 하기에는 응답 단위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그림 44]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5주 이내



3. 사건의뢰접수일로부터 지원안내까지의 소요기간

가. 지역별 기간 소요 정도

총 16개의 지역별로 사건지원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해당 피해자에게 유무선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기초상담을 포함한 보호·지원 안내기간까지의 소요 정도를 1주일 단위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역을 합산한 총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5주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경북과 서울에서 각각 기타의 응답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1주일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73%를 차지하였으며, 2주 이내까지의 누적 총계가 91%로, 90% 이상의 사건이 일단 사건지원의뢰가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지원안내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은 각 지역별 기간 소요 분석 결과이다.

〈표 36〉 각 지역별 사건지원의뢰접수 후 지원안내까지 소요기간 응답수치

	1주 이내	2주 이내	3주 이내	4주 이내	5주 이내	5주 이상	기타
강원	6	3	0	1	0	0	0
경기	23	8	1	3	0	0	0
경남	10	3	0	0	0	0	0
경북	12	1	0	1	0	0	1
광주	3	0	0	0	0	0	0
대구	4	1	0	0	0	0	0
대전	2	1	0	0	0	0	0
부산	6	0	0	0	0	0	0
서울	53	12	1	3	0	0	2
울산	1	3	0	0	0	0	0
인천	4	0	0	1	0	0	0
전남	4	2	0	2	0	0	0
전북	7	0	0	0	1	0	0

제주	5	3	0	0	0	0	0
충남(세종)	11	1	0	1	0	0	0
충북	7	1	0	0	0	0	0
총합계	158	39	2	12	1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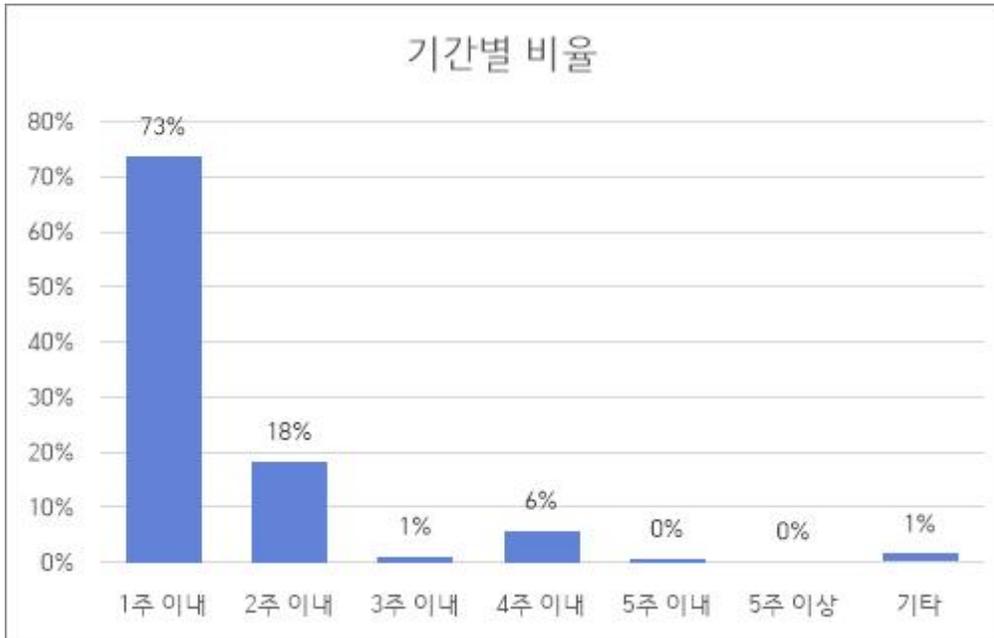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광주와 부산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지원안내가 완료된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북과 충북이 88%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서 80%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지원안내가 완료되는 지역은 경북, 대구, 인천, 충남이었다.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명 중 1명에 대하여는 지원안내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대체로 지원안내가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울산은 4명의 피해자 중 3명은 2주 정도의 연계안내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2주 이내 누적합산은 100%로서 2주 이내에 모든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완료된다고 답하였다. 그 외에도 경남과 충북,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누적 2주 이내에 모든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완료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4주 이내 안내완료된다는 답변을 한 지역은 인천과 전남이며, 전북지역은 5주 이내에 완료된다는 답변이 약 13% 정도 되었다.

한편 기타에 해당하는 답변은 지원의뢰를 접수한 당일 또는 접수일로부터 2-3일 정도 안에 신속히 완료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속 봉사자 1명은 연합회의 특성상 이를 응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간별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지원의뢰접수 후 지원안내까지 소요 기간별 비율



나. 기관별 소요기간

기관별로는 응답자 수의 편차가 있어서 다소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면은 있다.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다 응답자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반적으로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응답자를 비율로 환산하면 1주일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75.7%로서 전체 응답비율인 73%와 매우 유사하다. 그 외 2주 이내라고 답한 비율은 17.6%로서 이 역시 전체 응답비율은 18%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자가 가장 많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각 기관별 응답자 분포에 관한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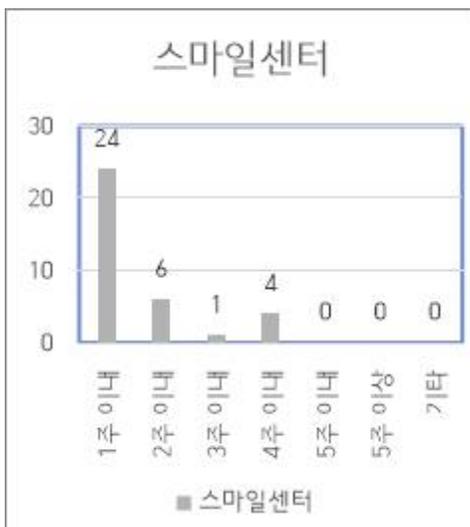
[그림 4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응답률



[그림 47] 상담소 응답률



[그림 48] 스마일센터 응답률



[그림 49] 아동보호전문기관 응답률



상담소도 1주일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체 대비 64.7%에 해당하며, 2주 이내라는 응답은 29.4%로서 누적 응답률로 환산하면 94.1%로 전체 91%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스마일센터도 역시 68.6%의 응답자가 1주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하였으며, 17.1%가 2주 이내라고 답함으로써, 85.7%가 누적 2주 이내라고

함으로써 평균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주 이내라는 답변이 11.4%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지연 연계 횟수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명을 제외한 응답자 모두가 1주일 이내에 모든 지원안내 연계가 완료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답자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4. 지원안내 이후 실제 지원신청까지의 소요기간

가. 지역별 기간 소요 정도

총 16개의 지역별로 해당 피해자에게 유무선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기초상담을 포함한 보호·지원 안내를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까지의 소요 정도를 1주일 단위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역을 합산한 총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각 지역별 기간소요에 대한 표이다.

〈표 37〉 각 지역별 지원안내 후 지원신청까지의 소요기간 응답수치

	1주 이내	2주 이내	3주 이내	4주 이내	5주 이내	5주 이상
강원	0	2	4	4	0	0
경기	6	6	9	12	1	1
경남	1	10	1	1	0	0
경북	6	2	3	2	2	0
광주	0	0	0	3	0	0
대구	1	0	1	0	3	0
대전	2	1	0	0	0	0
부산	0	2	1	3	0	0
서울	25	24	8	10	3	0
울산	0	1	2	0	1	0
인천	1	2	1	1	0	0

전남	2	1	1	2	2	0
전북	2	2	2	2	0	0
제주	0	6	1	0	1	0
충남(세종)	0	2	0	6	5	0
충북	0	2	4	2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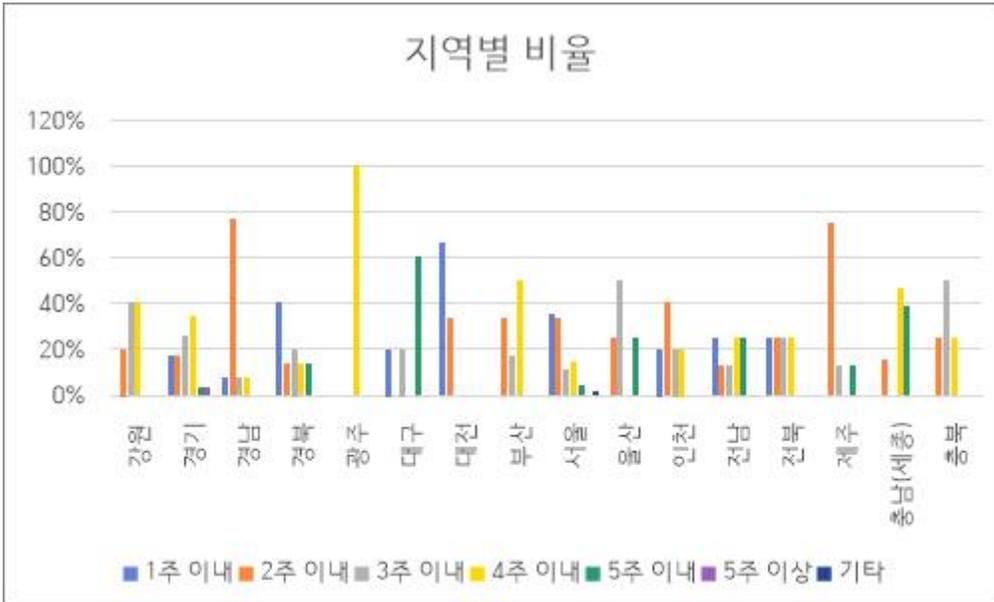
해당 기간은 실제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까지의 소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주일 이내 실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전이 67%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지역은 모두 1주일 이내 신청을 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강원, 광주, 부산, 울산,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은 단 한건도 1주일 이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주일 이내 신청 67%, 2주일 이내 신청 33%로 누적 합계로 환산하면 모든 피해자의 실제 지원신청이 2주일 이내에 모두 완료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경남이 2주 이내 누적 85%의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2주 이내 누적 69%, 전북이 2주 이내 누적 50%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광주는 4주 이내 즉, 거의 1달 정도 지원신청에 소요된다는 답변이 100%였고, 강원지역 역시 2주 이내 20%, 3주이내 40%, 4주 이내 40%라고 답변함으로써 누적 4주 이내에 신청이 완료됨을 알 수 있다.

실제 지원신청이 가장 지연되는 지역은 대구로서 60%가 5주 이내라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충남지역은 4주 이내가 46%, 5주 이내 38%로 전체 피해자의 약 85%가 4주 내지 5주 경과시점에 지원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원신청의 지연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광주, 대구, 충남 지역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연신청이 거의 없는 지역은 대전, 경남, 제주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각 주별단위 신청완료비율을 지역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0] 지역간 주차별 신청완료 비율의 비교



주차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대비 1주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4%이고, 2주 이내라고 답한 비율은 29.3%로, 이주 이내에 약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는 17.7%이고 4주 이내는 22.3%로서 약 1달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보는 누적합산비율이 약 90.7%로서 90%이상의 피해자가 1달 이내에 지원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5주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18명으로 약 8.4%에 이르고 그 외의 답변까지 포함하면 9.3%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1달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관별 소요기간

다음은 중대범죄피해자에게 지원안내를 하고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까지 소요기간을 각 지원기관별로 비교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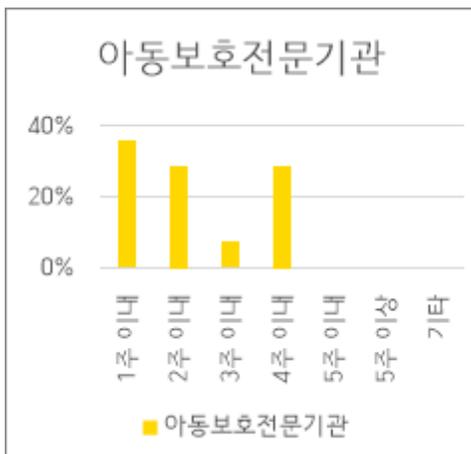
[그림 51] 범피센터 신청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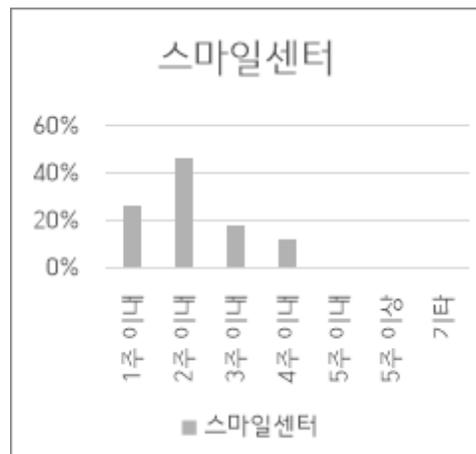
[그림 52] 상담소 신청소요기간



[그림 53] 아전기관 신청소요기간



[그림 54] 스마일센터 신청소요기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주 이내 및 4주 이내에 신청을 한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1주 이내에 신청완료하는 비율은 15%로서 비교대상군인 지원기관 중에서는 1주 이내 신청완료 비율이 가장 낮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지원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완료시점까지의 신속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1주 이내 신청은 15%, 2주 이내 신청은 26%로 2주 이내 누적 신청율은 41%로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3주 이내가 20%, 4주 이내 신청비율이 26%로 2주 이상 1달 내에 신청완료비율이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5주 이상 소요되었다는 답변도 1건 있었고, 1달 이상 5주 이내의 소요기간이 걸렸다는 답변도 12%에 해당하는 18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장 많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원안내 이후 신청기간까지 소요기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피해보호 지원자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센터 내의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상담소의 경우에는 1주 이내가 56%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주까지 누적 신청이 85%에 이르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높은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1주일 이내가 36%, 2주일까지 누적신청비율은 65%에 해당한다. 스마일센터는 1주일 이내 신청은 26%로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2주일까지의 누적신청비율은 72%로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에서 29%가 4주 이내, 8%가 5주 이내라고 답변함으로써 약 38%의 피해자들이 4-5주 기간 사이에 지원신청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상대적으로 신청 등의 사회적 활동에 미숙한 아동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각 지원기간 간의 신청소요기간을 비교한 표이다.

〈표 38〉 기관별 신청소요기간 응답수치 비교

	1주 이내	2주 이내	3주 이내	4주 이내	5주 이내	5주 이상	기타
범피센터	22	38	30	38	18	1	1
상담소	10	5	1	2	0	0	0
스마일센터	9	16	6	4	0	0	0
아전기관	5	4	1	4	0	0	0
총합계	46	63	38	48	18	1	1

5. 미 지원신청 빈도

가. 지역별

동 설문은 사건발생 후에 해당 중대범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안내를 받은 후에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빈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에 범죄를 인지한 공식기관이 피해자에게 지원의뢰를 위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및 피해자에게 지원안내를 하여 상담을 받고도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역별 빈도에 관한 표이다.

〈표 39〉 지역별 미신청 응답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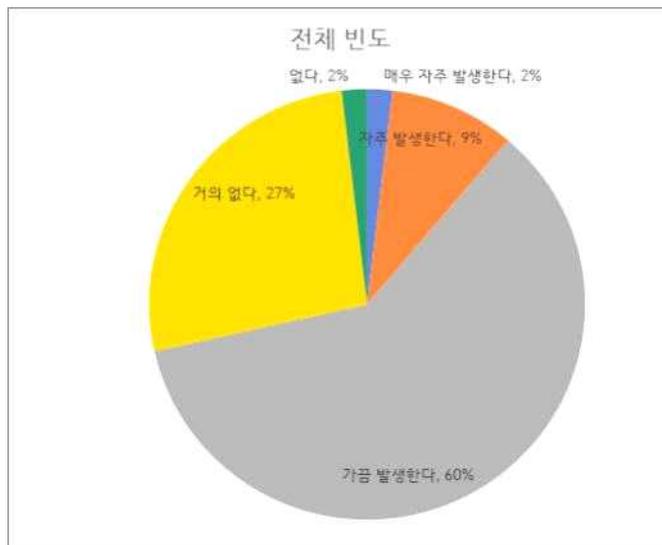
행 레이블	매우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가끔 발생한다	거의 없다	없다
강원	0	0	9	1	0
경기	0	8	21	5	1
경남	0	1	6	5	0
경북	0	3	5	7	0
광주	0	0	3	0	0
대구	0	0	5	0	0
대전	0	0	3	0	0
부산	0	0	6	0	0
서울	4	7	31	26	3
울산	0	0	3	1	0
인천	0	0	5	0	0
전남	0	0	4	4	0
전북	0	0	3	5	0
제주	0	0	7	1	0
충남(세종)	0	0	11	2	0
충북	0	1	7	0	0

매우 자주 발생한다는 답변은 서울이 6%로 유일하였고, 전체 응답의 2%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전혀 없다고 답변한 지역도 경기 3%, 서울 4%로서 전체의 2%에 해당하였다. 자주 발생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경기 23%, 경북 20%, 충북 13%, 그리고 서울이 10%로서 전체 기준으로 약 9%에 해당하였다.

가끔 발생한다는 지역으로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이 모든 응답자가 그와 같이 답변하였고, 그 외에 강원도는 가끔 발생한다는 답변이 90%이고 나머지 10%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제주 역시 가끔 발생한다 88%, 거의 없다 13%이고 충남지역도 가끔 발생한다 85%, 거의 없다 15%였다. 반면에 전남지역은 가끔 발생한다와 거의 없다가 각각 50%였고, 전북은 각각 38%, 63%에 해당하였다. 한편 충북은 가끔 발생한다는 답변 88% 이외에 자주 발생한다는 답변이 13%에 해당하였다.

전체 빈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5] 전체 미신청 빈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발생 및 매우 자주 발생의 누적 비율은 11%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연락불가이거나 상담 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그것이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자의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

하고 만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원기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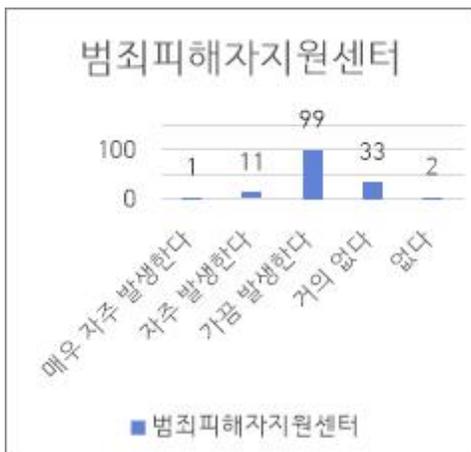
지원기관별로 연락두절이나 미신청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이다. 우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는 가끔 발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상담소와 아동전문기관은 거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거의 없거나 없다는 답변의 비율은 상담소가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6.7% 정도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거의 없다 또는 없다는 누적비율이 24%, 스마일센터는 17.2% 정도였다. 한편 자주 발생 또는 매우 자주발생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상담소는 전혀 없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8.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 스마일센터는 25.7% 순서였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자 5명 중 1명은 자주 발생의 빈도 내에 속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스마일센터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역시 향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 답변수가 적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스마일센터의 경우 ‘매우 자주 발생한다’고 한 답변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각 기관별 빈도에 관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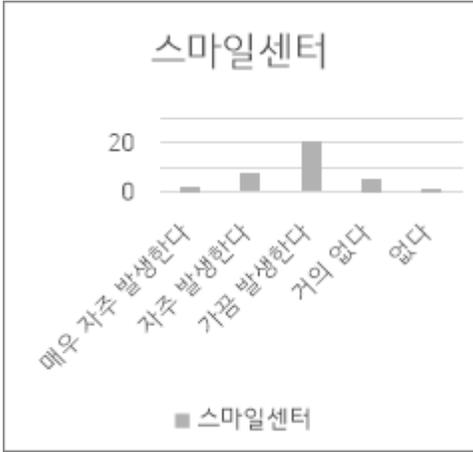
[그림 5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미신청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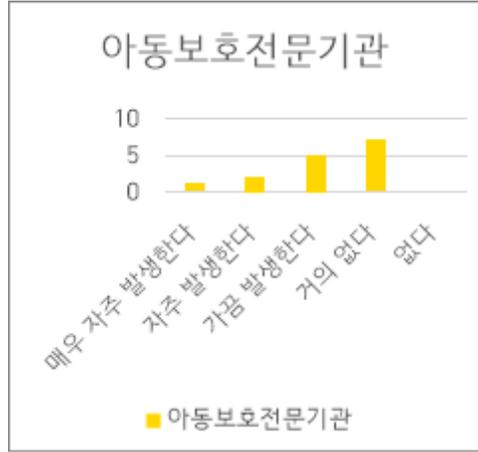
[그림 57] 상담소 미신청빈도



[그림 58] 스마일센터 미신청빈도



[그림 59]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신청빈도



6. 지원신청의 방법

가. 지역별 지원신청 방법의 비교

지원기관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그리고 전화의 통신매체수단을 제공하고 이중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지역별 지원신청방법에 관한 표이다.

〈표 40〉 지역별 피해자 지원신청 방법 응답수치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전화	기타
강원	10	4	3	0	10	4	0
경기	21	13	23	14	25	13	0
경남	11	9	2	0	8	5	0
경북	15	9	7	6	9	6	0
광주	3	0	0	0	0	0	0
대구	3	4	5	1	4	4	0

대전	3	3	3	0	3	3	0
부산	4	2	4	0	6	0	0
서울	26	17	47	23	52	32	3
울산	4	0	4	0	4	1	0
인천	5	4	5	1	5	1	0
전남	8	4	6	1	7	4	0
전북	8	4	2	0	6	4	0
제주	2	1	2	6	7	7	0
충남	12	8	7	1	4	1	0
충북	8	4	2	2	7	6	0

지역별로는 광주가 100% 모두 방문신청을 받는다고 답변하였고, 전체 중 30% 이상 즉 약 1/3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직접 방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지역으로는 강원, 경남, 울산, 전북, 충남 등이 있었다.

대전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및 전화가 각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울산은 방문, 이메일, 팩스는 사용하되 우편과 홈페이지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우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경남과 충남으로 각각 26%, 24%에 이르렀다. 우편의 경우 신청방법 중 가장 전달과정에서의 기간소요가 길지만, 여전히 활용되고 있었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주도가 24%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 경북과 서울 12% 외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기타의 답변을 한 이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 공문으로 이를 받는다는 답변이 2%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기관이 각 지자체로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기관으로 공문의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지원신청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방문 방식은 전체 신청방법 중에서 22%로 팩스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팩스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성화된 방법으로 나타났고, 전체 비율 중 24%에 해당하였다.

반대로 홈페이지 이용의 경우 강원,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충북 7%, 대구 5%, 인천 5%, 전남과 충남

3%로 이용도가 매우 낮았다. 제주 24%, 경기 13%, 경북과 서울 12%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신청방법별 이용빈도에 관한 그래프이다.

[그림 60] 지원신청방법별 이용빈도



지원신청방법으로 팩스와 방문이 가장 많은 반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등의 봉사자 및 피해자의 연령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관의 봉사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방문이나 팩스와 같은 기존의 방식을 선호하고, 지원기관의 설치율이 낮은 지방일수록 역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의 방식을 활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강원도는 이메일 10%, 홈페이지 0%의 활용을, 경남은 이메일 6%, 홈페이지 0%의 활용을, 전북은 이메일 8%, 홈페이지 0%, 충북은 각각 7%만 이용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매체 이용빈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방문과 팩스 및 전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도의 경우 방문과 팩스, 전화의 누적비율이 76%에 이르고, 경남은 67%, 전북은 75%, 충북 7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방문 100% 이외에 홈페이지의 이용은 경남 및 충남이 약 20%를 상회하였으며, 이메일의 활용도는 울산이 30%를 넘어서 가장 많았던 것

으로 확인되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충북과 강원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10%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방문의 방법은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통상 활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편의 방식은 광주와 울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반면, 경남과 충남은 약 25% 정도에 이르러 높은 이용비율을 보였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직접 지원안내를 한 담당자와의 연락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팩스의 활용은 부산이 38%로 가장 높은 이외에도,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화의 방법은 제주가 24%로 가장 높았고, 충북과 대전, 대구 등지에서 거의 20% 정도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다.

각 지원기관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의 이용비율이 전체의 8%에 불과하다는 점은, 홈페이지 운영의 물적 비용의 계상에도 고려할 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한다. 또한 지원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의 통일성과 용이성을 향후 고려한다면, 지원신청시점부터 자료보관과 관리에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방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기관과의 접촉이 가장 용이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지원기관별 지원신청 방법의 비교

지원기관별로 지원신청 방법의 빈도를 비교하면, 우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직접 방문과 팩스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28%, 22%에 해당하였다. 반면 홈페이지의 이용은 4%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특히 방문에 의한 신청은 총 475건의 답변 중에서 132건을 차지하였는바,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한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상담소의 경우에는 우편이나 홈페이지의 이용은 전혀 없었다. 반면 팩스이용이 53%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외에 이메일에 의한 신청이 34%이고 전화와 방문은 총합으로 12%에 불과하였다. 스마일센터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달리 홈페이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는바, 홈페이지 이용 27%, 팩스이용 28%, 전화 이용 26%로 이 세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달리 방문신청은 4%에 불과하였고 우편이용은 없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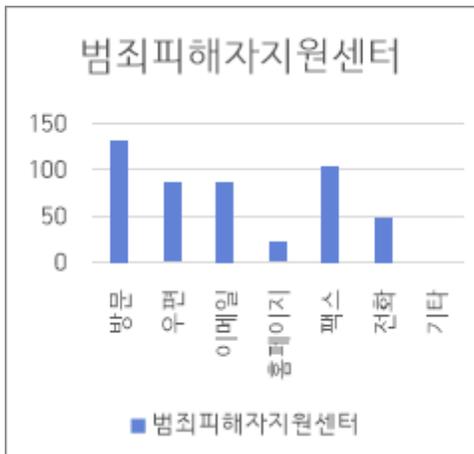
가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로서 상담, 심리치유 및 임시거처 제공 등 대면제공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신청이 거의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화 신청이 30%로 가장 많았고, 이메일신청이 22%, 방문 신청 18% 및 팩스 11% 정도 였다. 특이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기관의 특성상 지자체에 의한 공문신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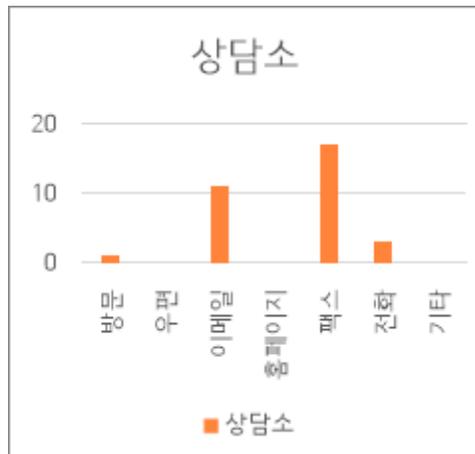
동 설문에서는 각각 지원기관별로 신청방법에 특색이 있거나 지원기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방문신청과 우편신청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메일신청은 스마일센터가 가장 높았으며, 팩스 신청은 모든 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상담소의 경우에 유독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신청도 각 기관별로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도가 30%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와 같은 기관 별 상이한 점들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기관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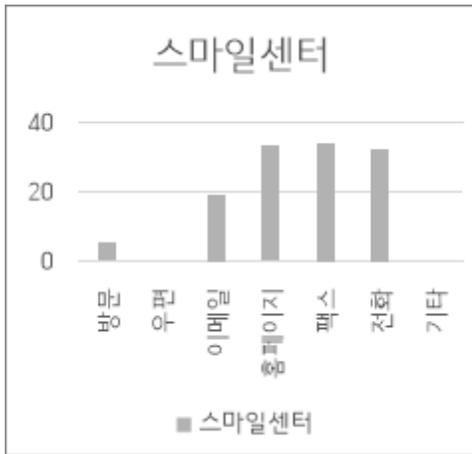
[그림 6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방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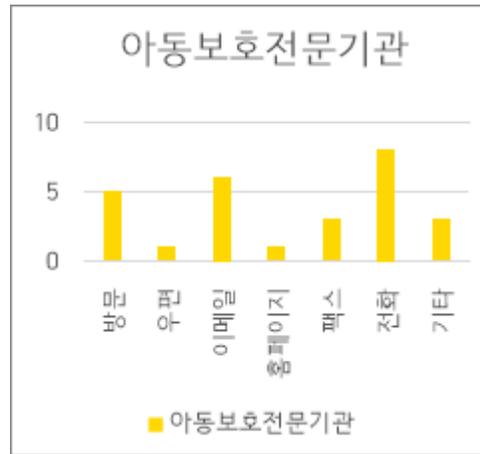
[그림 62] 상담소 신청방법비율



[그림 63] 스마일센터 신청방법비율



[그림 64]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청방법비율



Ⅲ.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분석

1. 신청접수일부터 실제 보호지원까지의 기일소요

가. 지역별 기간 소요 정도

총 16개의 지역별로 사건의 지원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초기 피해자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정도를 1주일 단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문항 4의 사건 지원의뢰접수일로부터 지원안내 소요기간과 문항 4-1의 지원의뢰 상담 이후 지원신청기간 및 신청 이후 경제적 또는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가 실제 이루어지기까지의 소요기간에 해당된다.

질문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여러 단계로 인하여 1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은 8%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 즉, 평균 5명의 피해자 중 1인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답변하였고, 서울이 19%, 경남 8% 및 경북 7%만이 1주일 이내에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누적 2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은 서울이 가장 많은 58%로 중대범죄피해자 2명 중 1명은 2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40%로 많았고, 누적비율로는 경북 34%, 제주 25% 수준이었다. 그 외에 경남 16%, 경기

9% 정도만이 2주 이내에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27%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은 주별 지원의뢰 접수일로부터 초기 서비스지원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표이다.

〈표 41〉 지원의뢰접수일부터 서비스지원시점까지 소요기간 응답수치

	1주 이내	2주 이내	3주 이내	4주 이내	5주 이내	5주 이상	기타
강원	0	0	1	8	0	1	0
경기	0	3	3	21	7	0	0
경남	1	1	3	6	2	0	0
경북	1	4	1	7	2	0	0
광주	0	0	0	3	0	0	0
대구	1	0	0	1	3	0	0
대전	0	0	0	3	0	0	0
부산	0	0	0	5	1	0	0
서울	14	28	8	14	4	3	1
울산	0	0	0	1	3	0	0
인천	0	2	1	2	0	0	0
전남	0	0	4	0	0	3	1
전북	0	0	2	6	0	0	0
제주	0	2	5	0	1	0	0
충남	0	0	1	6	0	3	3
충북	0	0	1	5	1	1	0
총합계	17	40	30	88	24	11	5

누적비율 3주 이내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는 제주 지역이 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서울은 69%, 인천 60%, 전남 50% 정도가 피해자 2명중 1명 정도가 3주 이내에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누적 3주 이내에 단 한명도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지역으로는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광역시 권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8%, 강원 10%, 충북 13%, 경기 18% 등 도 단위의 지방에서도 신속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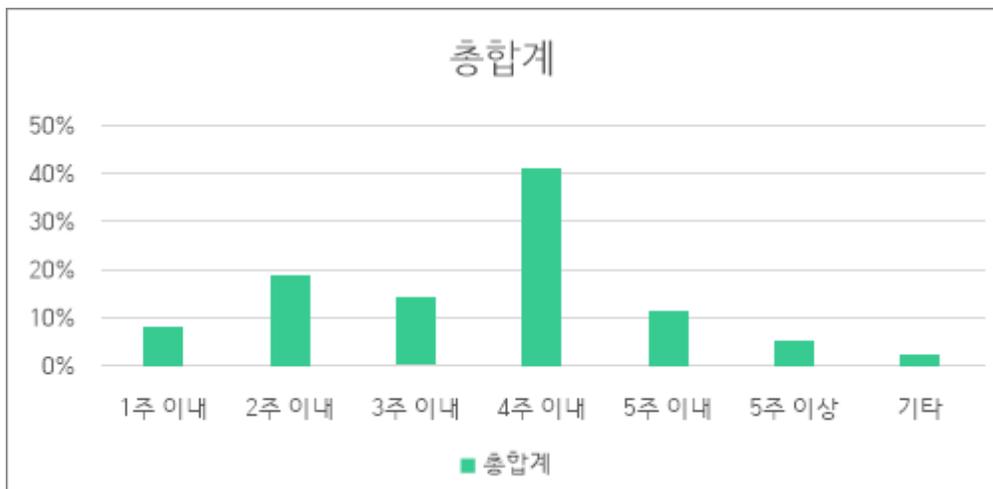
가장 많은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기일은 4주 정도로 대전과 광주는 100%가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강원도 80%, 부산 83%가 이 구간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 누적비율로는 4주 이내에 100%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전북, 인천, 대전, 광주로 확인되었다.

반면 5주 이내, 즉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지역으로는 경기 21%, 경남 15%, 경북 13%, 부산 17%, 서울 10%, 제주 13%, 충북 26% 수준에 이른다. 가장 지연되는 지역으로서는 대구가 5주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이 60%, 울산이 75%로 매우 늦은 시점에 실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충남은 5주 이상 및 기타에 대한 응답이 46%, 전남은 51%로 약 2명 중 1명의 범죄피해자는 5주 이상 지연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주 이내가 8%에 그친 반면 5주 정도가 11%, 5주 이상 및 기타가 7%에 이르고 있어서 지원접수일로부터 실제 지원시점까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소요기간별 응답률에 관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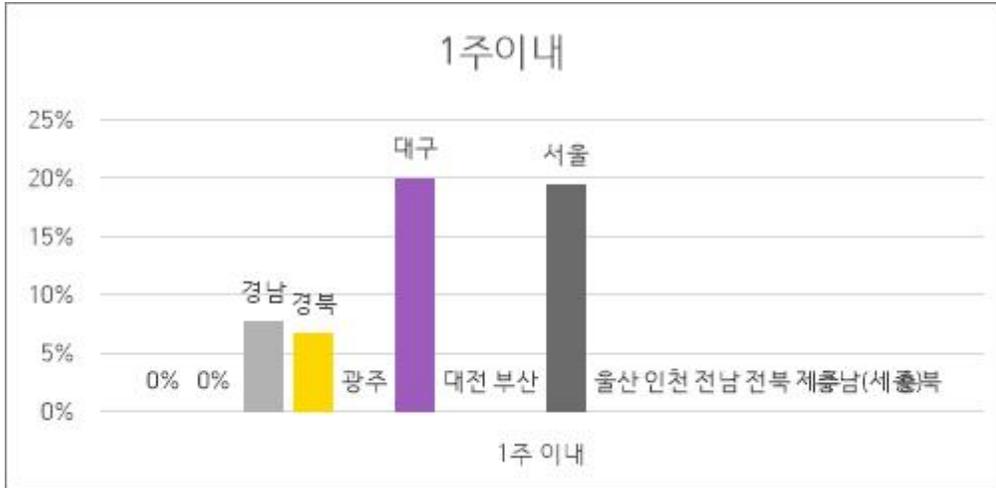
[그림 65] 소요기간 주단위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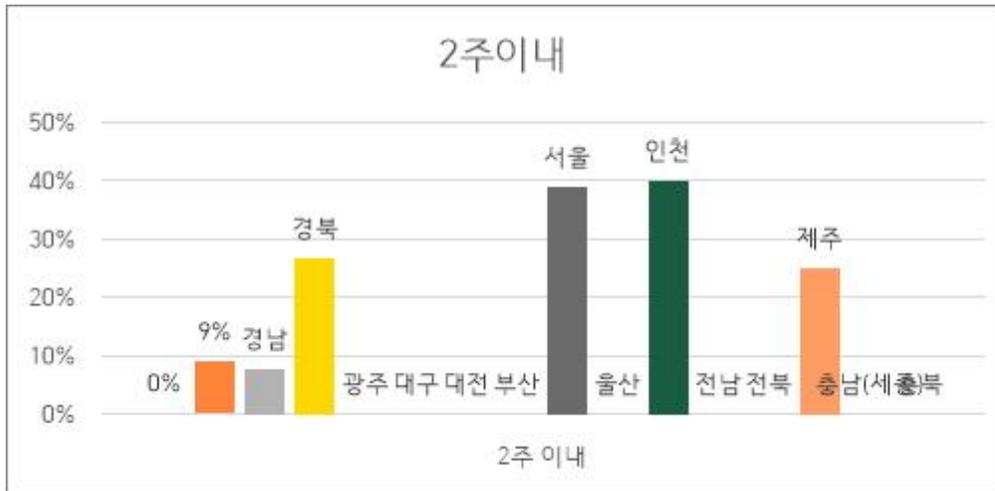
기타 의견으로서 심리적 지원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최초 서비스 지원시점과 지원기간을 혼동하여 답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가급적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획일된 지원시점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거나 피해자의 욕구 및 재판까지의 과정 중에서 선택과 결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마다 매우 달라서 평균적인 지원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발생한 범죄군의 특징별 또는 피해자가 처한 환경별로 지원메뉴얼을 세분화하고 지원종류와 시기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매뉴얼단위의 선지원 후 피해회복 여부를 확인하여 그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지역별로 주 단위별 1주-5주까지의 지원서비스 제공실태에 관한 표이다. 그래프의 지역별 순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역순이다.

[그림 66] 지역별 1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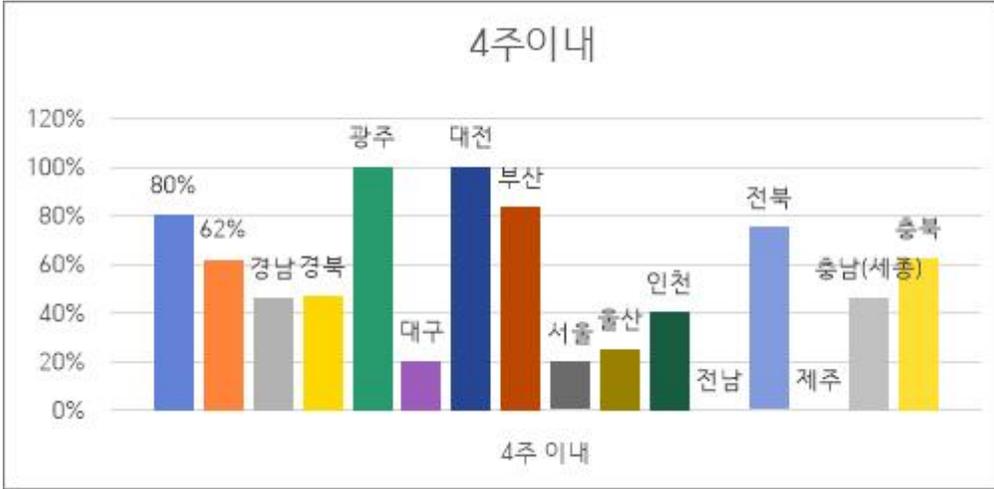
[그림 67] 지역별 2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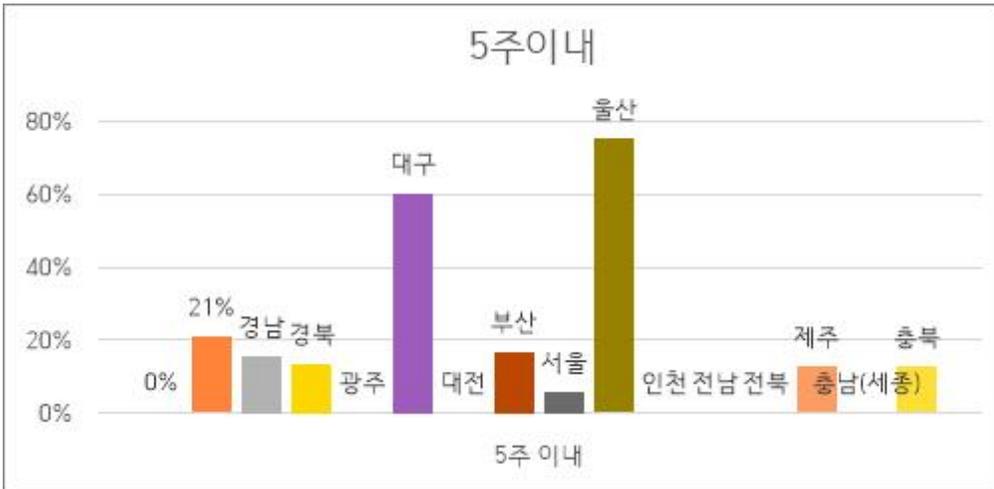
[그림 68] 지역별 3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그림 69] 지역별 4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그림 70] 지역별 5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나. 지원기관별 지원서비스 제공 소요정도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소, 스마일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지원의뢰 연계접수시점부터 실제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소요기간을 확인하였다. 우선 1주 이내에 가장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상담소로, 1주 이내 39%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단 2%만이 1주일 이내에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5주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 답변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많았고 26%가 5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지원기관별로는 상담소가 누적 2주 이내에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마일센터는 누적 2주 이내가 56%, 누적 3주 이내가 82%로 누적 비율로는 가장 신속하게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스마일센터의 경우 4주 이내 즉 한달 이내에 모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주 이내 27%, 누적 2주 이내 47%, 누적 4주 이내 87%의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5주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한 답변은 1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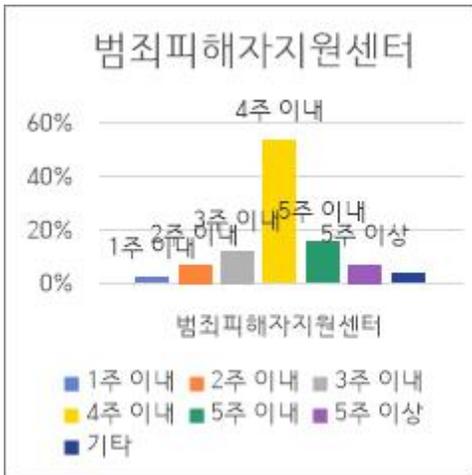
가장 분포도가 심하고 서비스제공이 지연되는 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누적 2주 이내가 9%로 10명의 피해자 중 채 1명도 2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주 이상 기타 역시 10%에 해당하고, 5주 및 그 이상까지 누적비율은 26%로 드러나서, 지원접수 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지역적 분포가 가장 넓고 다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지원기관의 신속성의 정도가 전체 지표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3주 이내 누적비율조차 21%로 간신히 20%를 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에 해당하고 있다. 중대범죄피해자일수록 조기 개입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의뢰를 접수받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실제 초기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되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지원의뢰단계-피해자 연락 및 지원안내-지원신청-신청에 의한 초기 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이라는 각 단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단계를 생략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를 남긴다. 또한 지원안내 단계와 지원신청을 분리하지 않고, 지원안내 단계에서 중대범죄의 피해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정립하여, 안내 단계에서 선지원의 의사확인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한 지원을 함이 타당할 것이다.

지원신청 여부를 범죄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가 현실적인 문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위축과 완전
 한 정보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신청여부 및 지원종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불완전한 상태일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기관의 주도적인 견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원기관별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간별 소요정도를 나타내는 표
 이다.

[그림 71] 범피센터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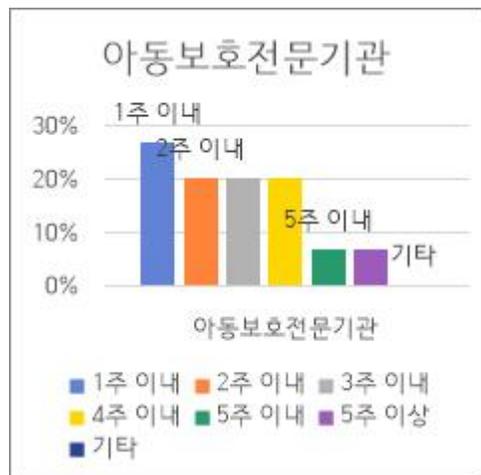
[그림 72] 상담소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그림 73] 범피센터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그림 74] 상담소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이를 통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2〉 지원기관별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응답수치

	1주 이내	2주 이내	3주 이내	4주 이내	5주 이내	5주 이상	기타
범지원센터	3	10	18	79	23	10	5
상담소	7	11	0	0	0	0	0
스마일센터	3	16	9	6	0	0	0
아전기관	4	3	3	3	1	1	0
총합계	17	40	30	88	24	11	5

2.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여부

가. 지역별 긴급지원제도 활용 정도

각 지역별로 중대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긴급지원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이므로 반드시 범죄피해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대상이므로 아동학대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의 중대범죄피해자가 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전 지원이지만 예외적으로 현물지원도 가능하며, 의료지원은 의료기관 퇴원 전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액은 제한된다. 주거지원은 위기사유로 인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가구구성원수에 의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3년도부터 긴급지원의 한 형태로서 스토킹과 같은 범죄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본 설문은 아동학대, 성폭력 및 가정폭력범죄를 포함한 중대범죄에 대한 응답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긴급지원제도가 지원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는 지원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각 지역별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표이다.

〈표 43〉 지역별 긴급지원제도 활용 정도 응답수치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미흡하다
강원	5	3	1	1	0
경기	9	9	15	2	0
경남	5	3	3	2	0
경북	9	5	1	0	0
광주	3	0	0	0	0
대구	0	1	4	0	0
대전	3	0	0	0	0
부산	1	5	0	0	0
서울	27	13	23	6	1
울산	1	3	0	0	0
인천	4	1	0	0	0
전남	0	6	2	0	0
전북	3	4	1	0	0
제주	7	0	1	0	0
충남	6	4	3	0	0
충북	2	2	4	0	0
총합계	85	59	58	11	1

지역별로는 광주와 대전은 긴급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제주, 인천 응답자 중 80%가 활용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다. 반면 대구는 80%가 보통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충북 50%, 경기 4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의 누적비율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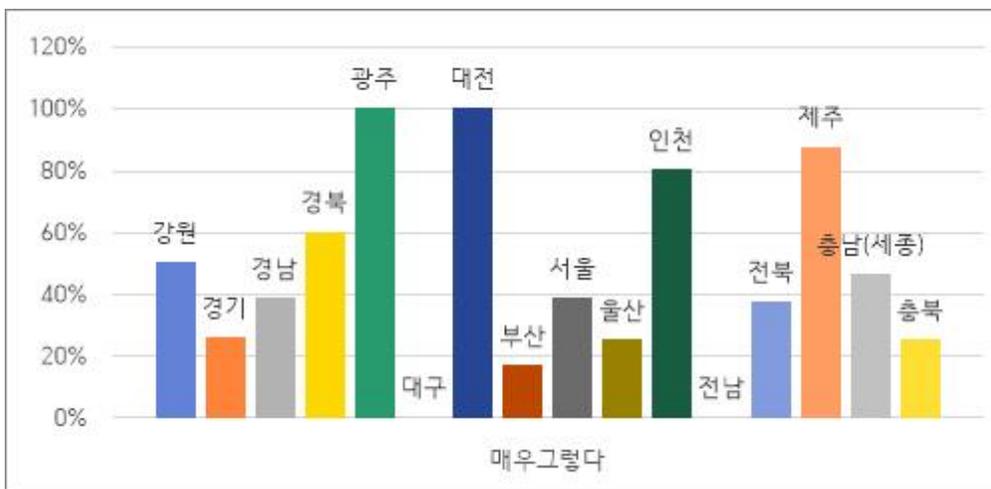
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광주와 대전을 포함하여 울산, 인천, 부산이 100%의 답변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긴급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북 93%, 제주와 전북이 8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 긍정적인 답변의 누적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80%, 충남 77%, 전남 75%, 서울 58%, 경기 52%, 충북 50%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구지역은 긍정적 답변이 20%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미흡하다는 답변을 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남이 15%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10%, 서울 9%, 경기 6%의 응답이 있었다. 한편 서울지역은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도 1%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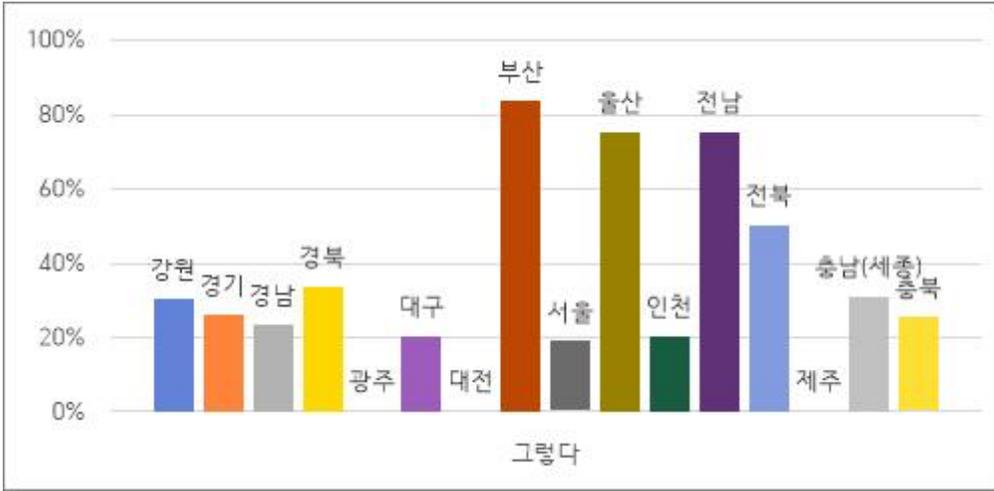
총합계별로는 매우 그렇다가 40%, 그렇다가 28%로 누적비율로는 약 68%의 응답자가 긴급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27%였고,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현장에서 긴급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긍정적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긴급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지역별 비교표이다. 여기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답변과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에 대한 비율만 지역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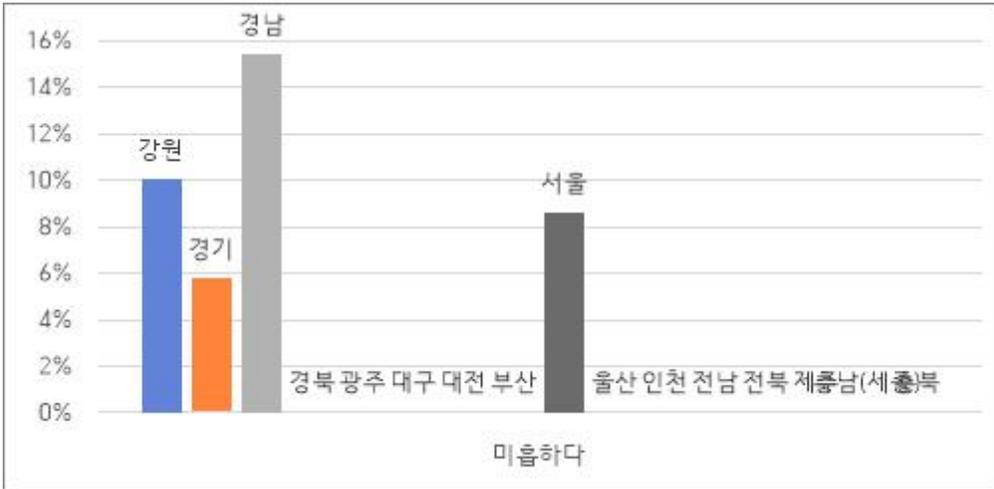
[그림 75] 긴급지원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



[그림 76]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이 높은 지역



[그림 77] 긴급지원제도 활용이 낮은 지역



나. 지원기관별 긴급지원제도 활용도

다음으로 각 지원기관별 긴급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비교하였다. 다음은 각 지원기관별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표이다.

〈표 44〉 지원기관별 긴급지원제도 활용도 응답수치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미흡하다
범피센터	65	46	32	4	0
상담소	10	3	3	2	0
스마일센터	9	8	16	2	0
아전기관	1	2	7	3	1
총합계	85	59	58	11	1

활용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상담소로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56%인 반면, 가장 활용도가 낮은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7%에 불과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의 누적비율을 보면 범피피해자보호센터가 75%의 활용도를, 그 다음으로 상담소가 73%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스마일센터는 49%,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1%에 불과한 활용도를 나타냈다.

더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답변이 21%,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이 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답변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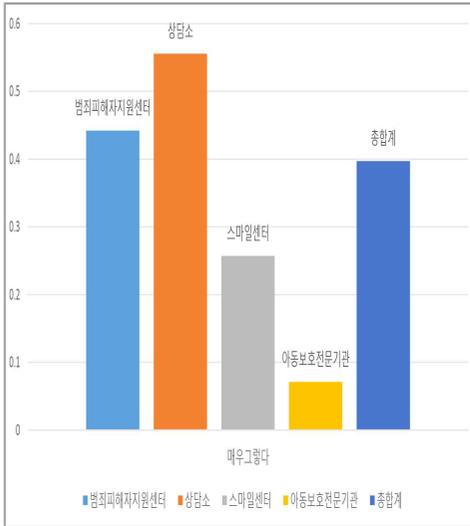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되며, 가장 최근의 고시에 따르면 12개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¹²⁴⁾ 해당 고시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와 별론으로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하여, 범죄자로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지원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지원기관의 판단 하에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여부를 결정하겠으나, 현실적인 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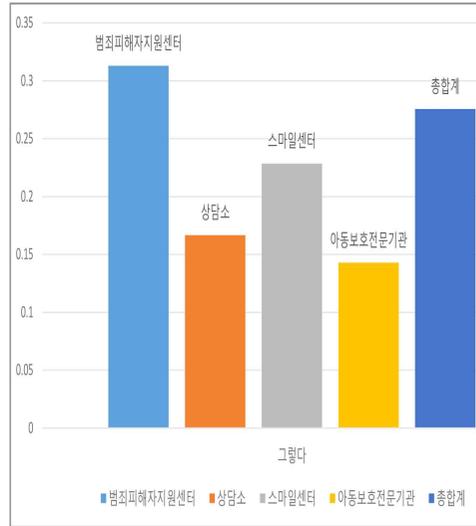
다음은 각 기관별 활용도에 대한 비교표이다.

1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2023/3/2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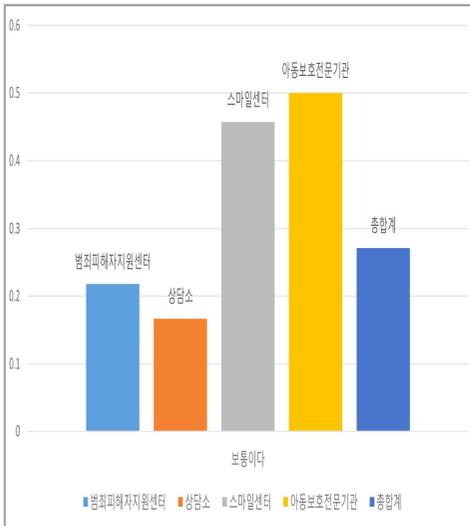
[그림 78] 긴급지원의 매우 적극 활용



[그림 79] 긴급지원의 적극 활용



[그림 80] 긴급지원의 활용 보통



[그림 81] 긴급지원의 활용 미흡



3. 각 지원단계별 시사점

각 설문은 문항 3, 4, 4-1 및 6의 4개 군으로 나누어 단계별 소요기간을 질문하였다. 즉, 중대범죄발생일-기관에의 피해자 보호·지원 의뢰(연계) 접수일-구체적

인 피해자·지원안내(기초상담)일-피해자의 보호지원신청일-초기 피해자보호지원일을 각각 분리하여 그 기간소요 정도에 대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렇다면 각각의 소요기간의 총 합으로써, 중대범죄발생일로부터 실제 지원신청이후 초기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총 소요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요기간별 비교

중대범죄발생일로부터 피해자보호 지원의 의뢰연계까지의 소요기일에 대하여는 주별 편차가 크지 않았고, 1주 이내 13%, 2주 이내 16%, 3주 이내 10%, 4주 이내 32%, 5주 이내 19% 및 5주 이상 11%로, 오히려 4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지원의뢰(연계)를 접수한 한 날로부터 유·무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의 안내까지는 전체의 73%가 1주일 이내에, 그리고 전체의 91%가 누적 2주 이내에 모두 완료되었다. 즉, 최초 범죄발생일 이후에 범죄가 공식적인 경찰, 검찰,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인지된 날로부터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의뢰연계까지만 그 기일이 단축된다면, 봉사기관에서의 연계이후 지원안내까지는 크게 지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범죄발생일로부터 지원연계까지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다시 봉사기관에서 지원안내를 받는데 통상 2주 정도 기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2달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지원안내 이후에 실제로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까지의 기간 역시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상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였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하고, 2주 이내 29%, 3주 이내 18%, 4주 이내 22% 및 5주 이내가 18%로 비록 피해자가 봉사기관의 안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하기 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단계별 기간소요에 대한 비교이다.

〈표 45〉 각 단계별 기간소요비교

	1주 이내	2주 이내	3주 이내	4주 이내	5주 이내	5주 이상
범죄발생일-지원의뢰	13%	16%	10%	32%	19%	11%
지원의뢰 - 지원안내	73%	18%	1%	6%	0%	0%
지원안내 - 지원신청	21%	29%	18%	22%	8%	1%
지원의뢰 - 서비스제공	8%	19%	14%	41%	11%	5%

또한 범죄발생일로부터 최초범죄발생인지 기관의 지원기관에 대한 연계의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범죄발생 이후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인지 자체에 기간이 소요된다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의 공식기관에서 인지 이후에 연계의뢰가 지체되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 확인 이후의 의뢰연계사이에 지연이 발생한다면 중대범죄에 한하여 범죄발생인지 이후에는 피해자보호지원기관에 범죄발생을 통보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의 전달에 대한 동의를 얻은 이후에 지원기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방안이 가능하다면, 지원의뢰 접수일로부터 피해자에게 유무선으로 구체적인 보호지원안내 및 기초상담까지의 기간소요 자체가 거의 지체됨이 없이 바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안내 이후 실제 범죄피해자의 지원신청까지의 기간 역시 2주 이내 누적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3주에서 5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50%에 이르도록 지연되는 이유 역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관련 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서류간소화 및 서류대체물에 의한 변경 또는 사전신청 후 사후 서류제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체 지원연계의뢰시점부터 최초의 서비스제공시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1주 이내라고 응답한 답변은 8%에 불과하고 2주까지의 누적 답변율도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3주까지의 누적 서비스제공 답변도 41%로서 범죄피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은 4주 즉, 거의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답변으로 41%에 이르렀다. 이는 선 지원 후 요건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

해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다음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지원기관별 단계별 기간소요 비교

범죄피해자, 상담소, 스마일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기관별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비교는 지원기관별로 기간소요의 특성이 구별되는지 및 지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의 문제일 것이다.

다음은 각 기관간 단계별 기간소요에 관한 비교표이다.

〈표 46〉 각 기관간 단계별 기간소요 비교

범죄발생- 지원의뢰	1주이내	2주이내	3주이내	4주이내	5주이내	5주이상	기타
범피센터	16%	19%	13%	28%	16%	8%	0%
상담소	6%	29%	12%	53%	0%	0%	0%
스마일센터	8%	5%	5%	41%	35%	5%	0%
아전기관	0%	5%	0%	21%	26%	47%	0%
총합계	13%	16%	10%	32%	19%	11%	0%

지원의뢰- 지원안내	1주이내	2주이내	3주이내	4주이내	5주이내	5주이상	기타
범피센터	76%	18%	0%	5%	1%	0%	1%
상담소	65%	29%	0%	6%	0%	0%	0%
스마일센터	69%	17%	3%	11%	0%	0%	0%
아전기관	80%	7%	7%	0%	0%	0%	7%
총합계	74%	18%	1%	6%	0%	0%	1%

지원안내- 지원신청	1주이내	2주이내	3주이내	4주이내	5주이내	5주이상	기타
범피센터	15%	26%	20%	26%	12%	1%	1%
상담소	56%	28%	6%	11%	0%	0%	0%
스마일센터	26%	46%	17%	11%	0%	0%	0%

아전기관	36%	29%	7%	29%	0%	0%	0%
총합계	21%	29%	18%	22%	8%	0%	0%

지원의뢰-서비스제공	1주이내	2주이내	3주이내	4주이내	5주이내	5주이상	기타
범피센터	2%	7%	12%	53%	16%	7%	3%
상담소	39%	61%	0%	0%	0%	0%	0%
스마일센터	9%	47%	26%	18%	0%	0%	0%
아전기관	27%	20%	20%	20%	7%	7%	0%
총합계	8%	19%	14%	41%	11%	5%	2%

범죄피해자보호센터의 경우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지원의뢰를 받기까지 주차별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지만, 일단 지원의뢰 후 지원안내까지는 신속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시 지원안내 이후에 실제 지원신청까지는 다시 주차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실제 지원신청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2주 이내 신청이 되는 경우가 전체의 반절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범죄발생일로부터 피해자 지원의뢰연계까지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이 없는 반면, 일단 지원의뢰가 되면 지원안내까지는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며, 이후 피해자의 지원신청도 65% 정도가 2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발생일 이후 지원의뢰까지 4주와 5주에 76%가 집중되어 있어서 유독 지원의뢰까지 소요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단 지원의뢰가 되면 지원안내까지는 86%가 2주 이내에 모두 완료되며, 안내 이후 실제 지원신청 역시 누적 2주 이내에 72%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원기관이 범죄에 대한 인지 이후에는 가장 신속하게 보호지원 단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소도 다소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상담소 역시 범죄발생이 이후 1-2주 이내에 지원의뢰연계가 되는 비율은 단지 35%에 불과하고 4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이 53%에 이르러서 두 명 중 한 명의 피해자는 거의 한 달 정도 경과 이후에야 비로소 지원의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지원의뢰가 되어 상담소에서 인지한 이후에는 94%의 피해자에게 지원안내를 2주 이내에 완료하고 지원 안

내 이후 85%의 피해자가 누적 2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함으로써, 지원기관에의 인지 이후 진행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장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의뢰연계가 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실제 지원신청까지의 소요기간의 지연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지원의뢰 이후 실제 지원서비스 제공까지 통상 4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은 기간단축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소와 비교하여 상담소가 누적 2주 이내에 모든 서비스제공 시작이 완료된과는 달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누적 2주 내에 열 명 중 한 명도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IV.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서비스

1. 설문 의도와 내용

설문 7의 문항은 사건 유형별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종사자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건유형별이라 함은 중대범죄를 6개군으로 구분하여서, 강력범죄(살인, 상도 상해 등),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학교폭력범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언급한 중대범죄 유형군에 해당하는 분류로서 각각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내용과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서비스라 함은 중대범죄의 세분화와는 상관없이 지원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10개 군으로 구분하여 각 서비스별로 어떠한 지원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원서비스는 ①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각종 생필품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② 치료비, 치료부대비용, 간병비,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의료지원 ③ 주거지원 및 임시주거(임시숙소, 쉼터, 긴급피난처 등) 제공 등을 포함하는 주거지원 ④ 취업훈련비 및 부대비용, 취업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지원 ⑤ 수사기관 동행, 법정동행, CCTV 설치,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신변보호 ⑥ 재판모니터링, 법률절차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지원 ⑦ 주거이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병원 이송, 범죄 현장 정리

등의 현장지원 ⑧ 자조모임,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모금운동, 지원 행사 등을 포함한 회복 프로그램 지원 ⑨ 대면상담, 방문상담, 전화/이메일 /사이버상담,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구성되는 상담서비스제공은 기본적으로 해당란에 선택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⑩ 기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각 범죄별로 어떠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 및, 지원기관별 선호 또는 주로 사용되는 서비스 종류, 그리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보호·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가. 전체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경제적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9개 항목에 해당하는 보호·지원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 및 각 지원종류별 빈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서비스를 100으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지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회복프로그램의 이용은 각각 전체 대비 13% 정도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신변보호프로그램으로 10%에 해당하였다. 현장지원프로그램은 7%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고, 취업지원이 5%로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기타 서비스로는 물품지원과 같은 현물지원, 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과 같은 각 기관의 연계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지원등 사회적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원, 힐링캠프, 가정방문을 통한 식료품 지원, 희망의 집과 같은 쉼터 제공, 구조금지원제도의 안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및 개명 지원, 시군복지정책과의 연계지원, 피해자소재열람제한과 같은 제도안내, 청소년심리상담복지시설 입소나 청소년상담센터 연계지원, 경찰의 순찰 및 방범강화 협조, 일대일 맞춤형심리치유 PRO, 범죄피해평가,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지원, 장학금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지방자치단체 생계비 등과의 연계지원 등의 내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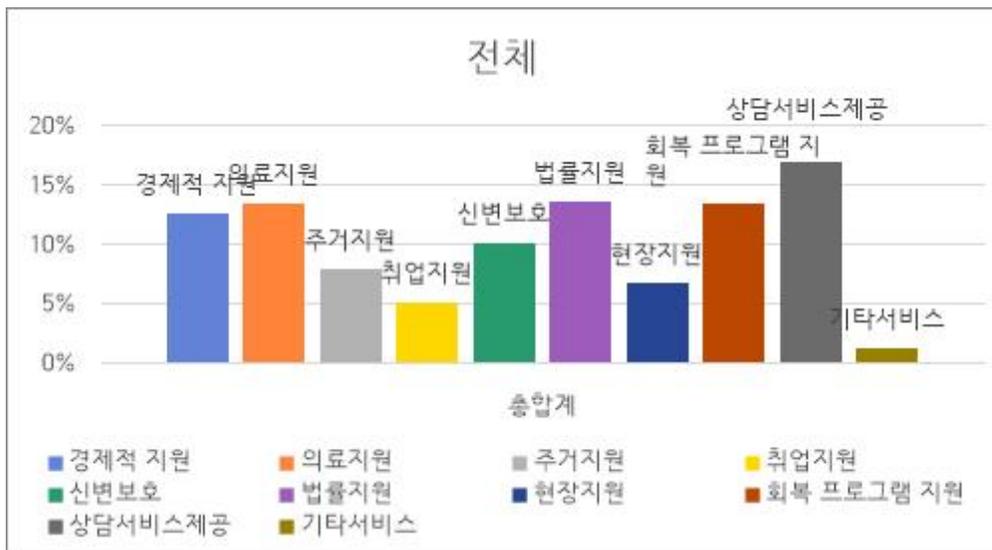
기타 서비스 내용상 1-9의 서비스와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면 특이점으로는 식료품제공 등을 포함한 현물지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및 개명지원, 기초생활수

급자 지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와의 연계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명지원을 법률지원의 일부라고 한다면, 기타 서비스로서 핵심은 현물지원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에도 현물지원을 경제적 지원의 일부라고 할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각 지원제도는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분기 또는 연간 및 횟수에 의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지원기관 중에서는 경제적 지원 관련 권한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 수준에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예컨대 학자금의 경우에도 지원범위가 학기당 1회 최대 연 2회지원으로 한정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기관의 단일지원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기타의 답변에는 그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선안의 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전체 보호·지원서비스 이용률에 관한 표이다.

[그림 82] 전체 보호·지원서비스 이용률



나. 지역별 보호·지원서비스 제공현황

각 지역별로 중대범죄 전체에 제공되는 보호·지원서비스의 현황을 그 종류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적 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10%를 상회하였으며, 가

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전남으로 해당지역 전체 서비스를 기준으로 22%에 해당하였고, 반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제주로 5%에 그쳤다. 의료지원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를 넘었지만, 제주지역만 5%에 불과하였다.

주거지원은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으며 10%를 상회하는 지역은 가장 많은 12%의 대구를 비롯하여 광주, 제주, 대전, 인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2%에 불과한 부산이었다. 그 외에도 충북과 전남이 4%로 전체의 5%에 이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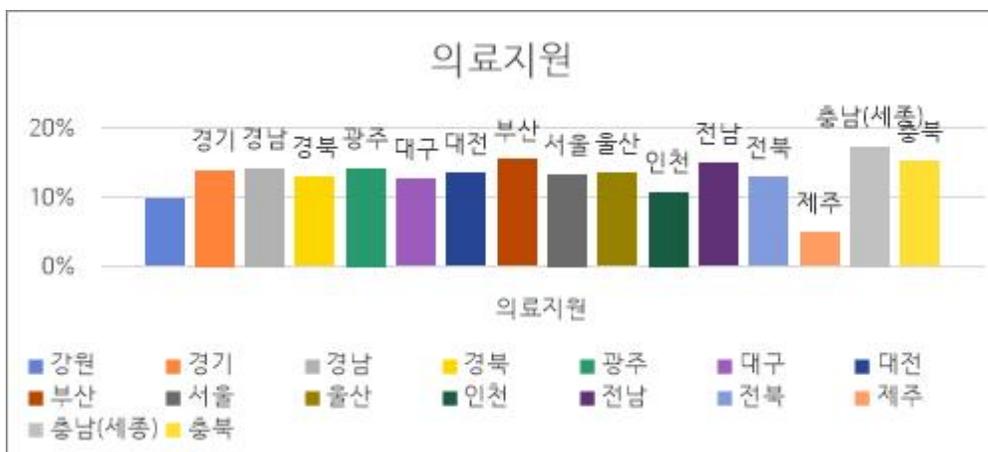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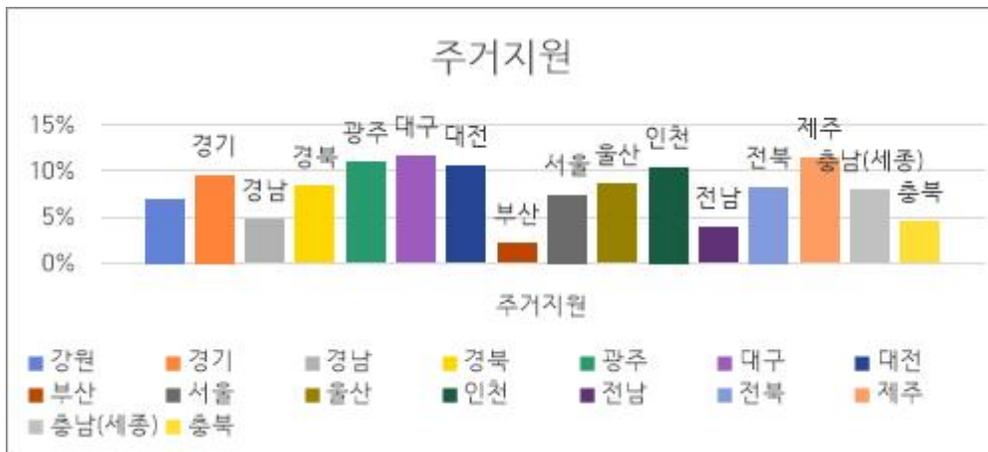
취업지원 역시 편차가 매우 큰 편으로, 제주지역은 취업지원을 하였다는 응답이 모든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광주와 인천은 전체 응답의 10%에 이르는 비율을 보였다. 취업지원이 전체 평균 5%임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 이외에도 전남 2%, 대구 3% 등의 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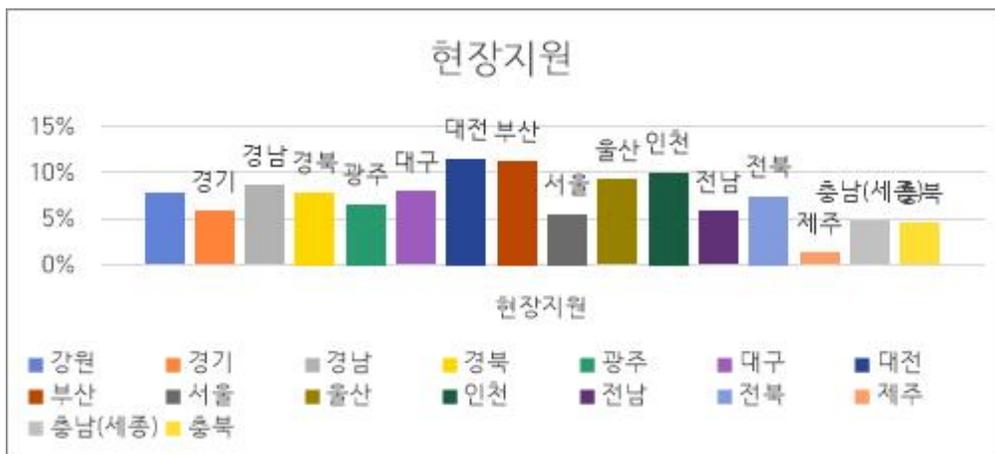
신변보호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10% 내외의 비율을 보였고, 이는 전체 총 평균이 10%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지원 역시 전체 평균이 13%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제주지역은 20%로 가장 높았고, 광주지역은 8%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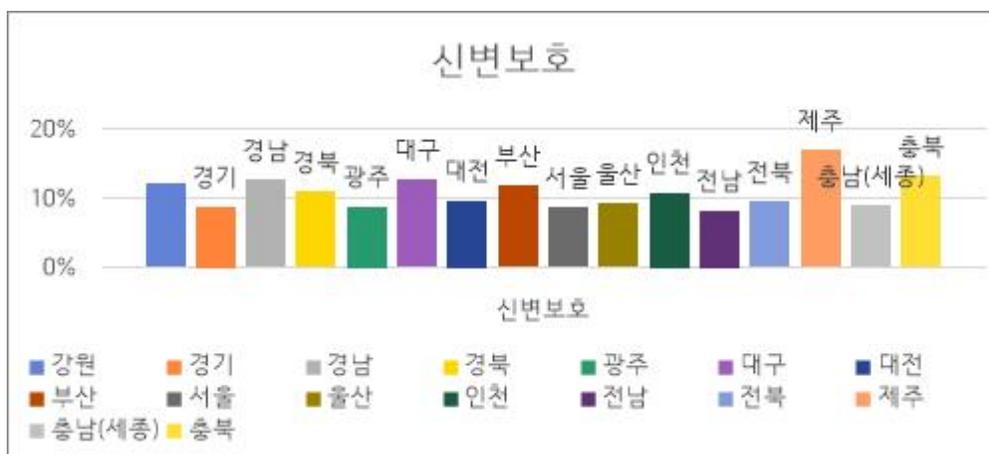
현장지원 역시 7%라는 전체 평균에 유사하게 각 지역별로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대전과 부산이 11%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반대로 제주지역은 1%로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회복프로그램 역시 전체 평균인 13%와 유사하게 각 지역별로 균등하였으며, 충남지역만이 9%로 10%에 이르지 못하는 비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지역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가 16%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기타 서비스로 힐링캠프를 기재한 응답도 있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담서비스 역시 전체 평균과 유사한 17% 내외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3%의 비율을 보였다. 기타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보호·지원 서비스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은 전남, 의료지원은 충남, 주거지원은 대구, 취업지원은 광주와 인천, 신변보호지원은 제주, 법률지원 역시 제주, 현장지원은 대전과 부산, 회복프로그램은 제주, 상담서비스는 서울 등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보호·지원 서비스별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취업지원, 현장지원 모두 제주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주거지원은 부산이 2%, 신변보호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과 유사하였고, 법률지원은 광주가 8%, 회복프로그램은 충남이 9%, 상담서비스는 전남과 전북, 광주가 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평균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지만, 가장 특이한 비율을 나타내는 곳은 제주 지역이다. 제주 지역은 많은 서비스에서 전혀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예컨대 경제적 지원이 전체 13%임에도 5%에 불과하고, 의료지원 역시 전체 13%임에도 5%, 취업지원이 전체 5%임에도 0%, 현장지원이 전체 7%임에도 1%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거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반대로 신변보호서비스는 전체 10%에 훨씬 상회하는 17%, 법률지원은 전체 13%에 비하여 20%, 회복프로그램이 전체 13%에 비하여 20%, 상담서비스가 전체 17%에 비하여 매우 높은 21%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한다. 제주 지역은 앞선 문항 1과 2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범죄피해자 의뢰 또는 연계받은 기관이나 중요연계기관으로 여기는 항목에서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 경찰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25%를 보였고, 다른 지역과 달리 해바라기 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있었으며, 스마일센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검찰이라는 답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답변은 없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피해의 많은 부분에서 특정 성별을 짐작케 하거나 성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비율의 상대적 높은 비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서 신변보호라든가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회복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한다. 다음은 지역별 보호·지원 서비스의 유형별 제공률을 나타낸 표이다.

〈표 47〉 지역별 보호·지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합계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46	25	18	17	31	30	20	25	40	8
경기	106	146	100	47	91	163	61	160	178	1
경남	68	61	20	22	54	62	37	41	62	4
경북	83	81	52	46	68	71	49	80	89	10
광주	13	13	10	9	8	7	6	15	10	1
대구	29	24	22	6	24	28	15	24	19	0
대전	9	14	11	4	10	15	12	13	17	0
부산	31	30	4	7	23	31	22	22	26	0
서울	144	197	110	63	128	196	81	222	349	3
울산	23	22	14	10	15	21	15	20	24	0
인천	30	29	28	26	29	30	27	30	30	12
전남	45	31	8	4	17	36	12	32	24	0
전북	45	45	29	25	33	43	26	46	44	17

제주	9	8	19	0	28	33	2	33	35	0
충남	72	77	35	19	39	51	21	39	76	16
충북	41	44	13	13	38	40	13	42	47	0
합계	794	847	493	318	636	857	419	844	1070	72

다.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각 지원기관별로 전체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8〉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 제공수치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764	734	368	306	543	657	392	618	744	71
상담소	3	6	3	1	7	16	1	24	95	0
스마일센터	11	82	119	11	75	171	15	172	192	1
아전기관	16	25	3	0	11	13	11	30	39	0
전체	794	847	493	318	636	857	419	844	1070	72

우선 전체 평균이 앞선 지역별 평균과 1% 정도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반올림값으로 인해서 이고, 지표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든 보호·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평균에 가까운데,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설문응답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응답률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서의 서비스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 및 의료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률지원의 제공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서비스도 이와 같다.

반면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정 보호·지원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상담소의 경우에는 굿씨 상담소나 서로사랑상담소 등과 같이 청소년 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상담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상담서비스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회복프로그램 지원이 18%이며, 그 외에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14%로 전체의 93%가 이와 같은 조언 또는 상담에 치우쳐 있는 반면,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 보호나 현장지원과 같은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들은 전무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담서비스가 45%, 회복프로그램의 지원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의료지원이 18%에 이르고, 법률지원은 9% 정도 해당한다. 반면 상담소와 같이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및 현장지원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지원 의뢰를 받는 많은 경우가 지자체로부터 공문 또는 연계를 통한 부분이고, 그와 같은 경우 지자체가 직접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지원의 통합을 위하여는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안정까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경험이 적고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중의 기관에서 접촉을 하거나 지원을 하기 보다는 단일기관에서 통합지원 관리를 함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일센터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주거지원이 13%로서 평균에 해당하는 8%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스마일센터의 경우 심리치료와 상담, 정신과진료 및 법률지원, 입소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 법률지원 역시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회복프로그램의 경우 20%로서 평균 12%를 상회하며, 상담서비스도 21%로 평균 16%보다 높고, 법률지원서비스인 경우 21%로서 평균 14%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반면 취업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지원기관 별 편차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49〉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 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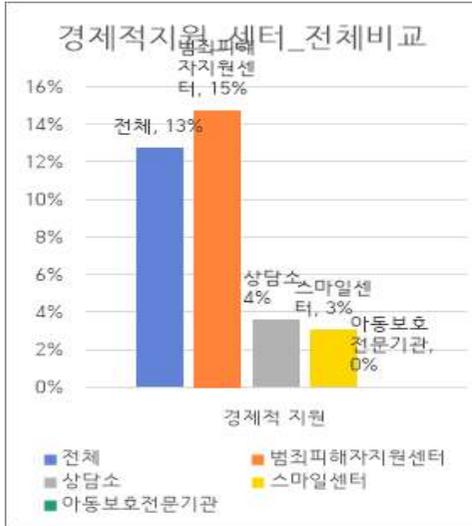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2%	1%	-1%	1%	1%	-1%	1%	-2%	-2%	0%
상담소	-9%	-10%	-8%	-5%	-10%	0%	-7%	5%	45%	-1%
스마일센터	-10%	-4%	6%	-4%	-2%	7%	-4%	8%	5%	-1%
아전기관	-13%	4%	-8%	-5%	-10%	-5%	-7%	15%	30%	-1%
전체	0%	0%	0%	0%	0%	0%	0%	0%	0%	0%

위 표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각 지원기관별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의 서비스제공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경제적 지원은 평균보다 높지만 회복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상담소는 상담서비스제공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은 매우 높은 편인 반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 등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유사한 면이 있어서 상담서비스제공과 회복프로그램지원은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 등은 매우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스마일센터 역시 다소 유사한 편이 있어서 회복프로그램지원이나 상담서비스제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법률지원과 주거지원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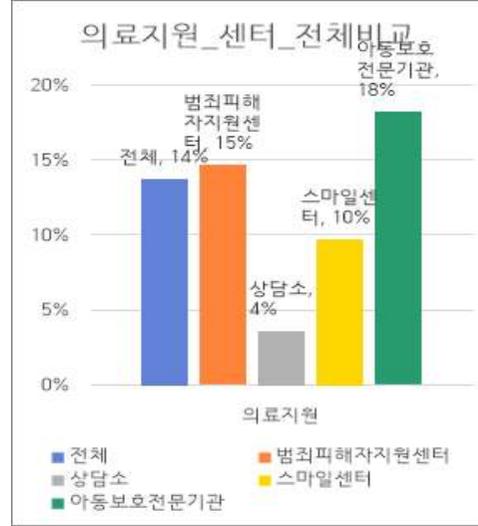
생각건대 지원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상담소를 방문하는 범죄피해자라고해서 반드시 상담만으로 범죄로부터 피해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이 전무하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스스로 다중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복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통합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 보호·지원서비스 별 지원기관간의 제공비율에 관한 비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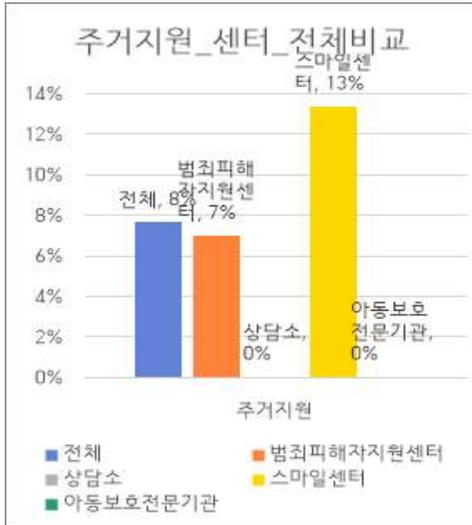
[그림 83] 지원기관별 경제적 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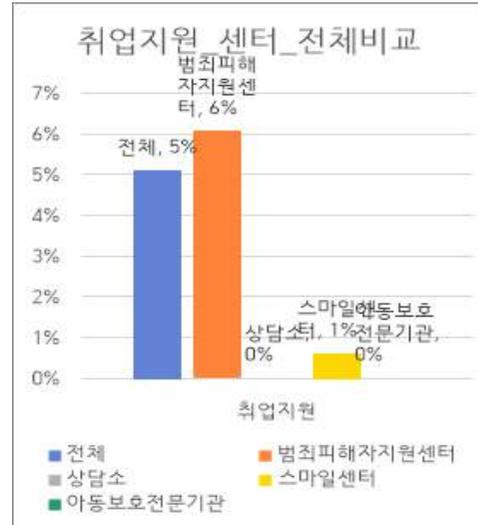
[그림 84] 지원기관별 의료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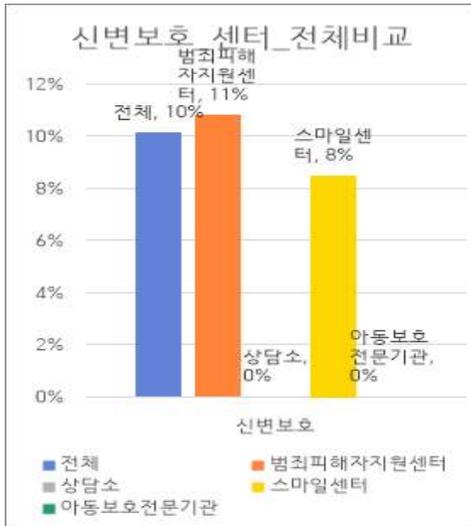
[그림 85] 지원기관별 주거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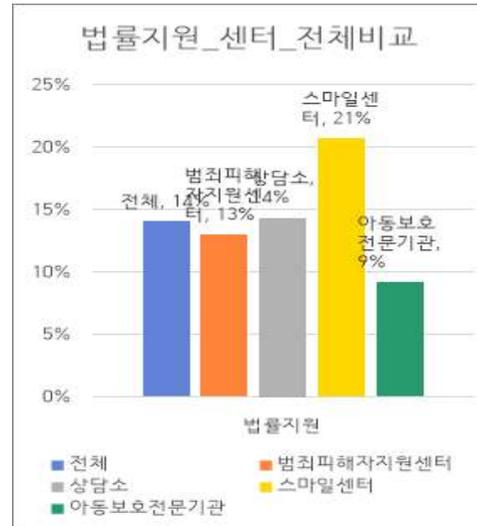
[그림 86] 지원기관별 취업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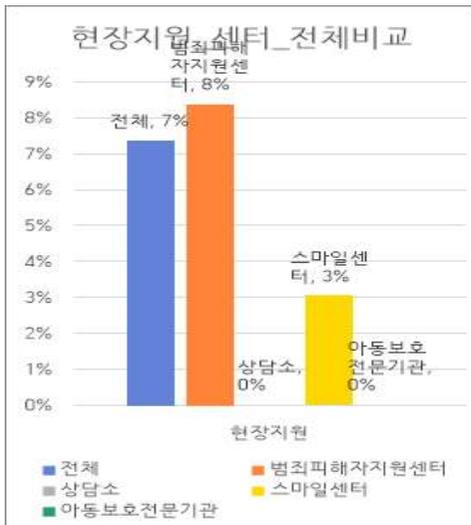
[그림 87] 지원기관별 신변보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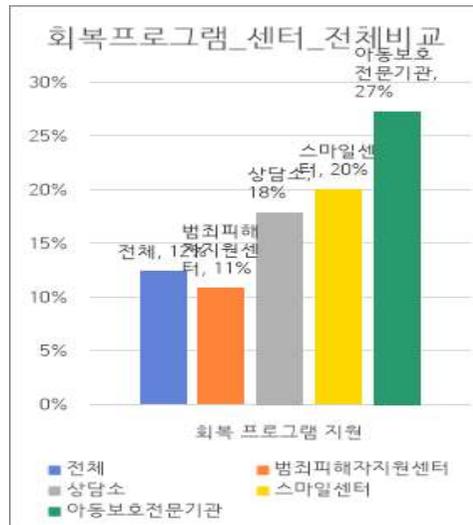
[그림 88] 지원기관별 법률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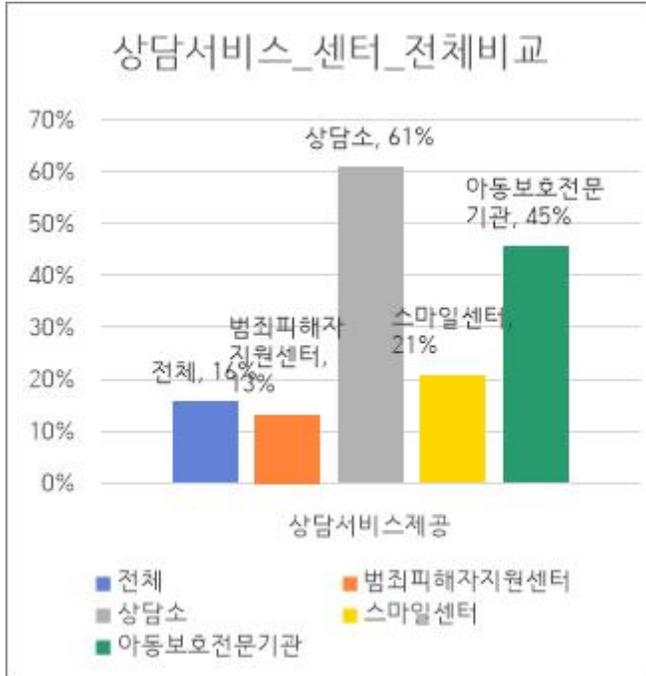
[그림 89] 지원기관별 현장지원 비교



[그림 90] 지원기관별 회복프로그램 비교



[그림 91] 지원기관별 상담서비스 비교



3.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가. 지역별 강력범죄 피해자서비스 지원 현황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이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담서비스가 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14%에 해당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13% 정도이고, 대체로 서비스제공 전체 평균과 매우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특히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 등은 전체 평균과 완전히 동일하였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약 1% 높은 반면,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와 같은 심리회복 지원은 각각 1%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각 지역별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50〉 지역별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제공 합계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9	9	4	1	6	8	2	4	7	2
경기	23	31	20	13	19	32	12	29	33	1
경남	13	13	6	4	12	12	9	9	11	0
경북	15	15	9	9	12	13	9	13	15	3
광주	3	3	3	1	1	2	1	3	2	0
대구	5	5	2	0	4	5	3	4	3	0
대전	3	3	2	2	3	3	3	2	2	0
부산	6	6	2	0	4	6	4	3	4	0
서울	27	33	22	11	21	39	15	38	59	2
울산	4	4	3	2	4	4	3	3	4	0
인천	5	5	5	5	5	5	5	5	5	2
전남	8	6	2	2	5	7	4	5	5	0
전북	8	8	5	4	6	7	7	8	8	4
제주	2	2	2	0	7	7	1	7	7	0
충남	13	13	2	5	6	10	7	8	13	3
충북	8	8	2	2	6	7	3	7	8	0
합계	152	164	91	61	121	167	88	148	186	17

지역별 특색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주거지원이 평균 11%였으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6%로 낮아졌고, 신변보호가 평균 17%임에 비해 강력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서비스제공은 20%로 높아졌다. 그리고 미미한 변화지만,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모두 평균보다 1% 높았다.

평균과 비교하여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은 취업지원이 평균 7%에서 2%로, 현장지원이 8%에서 4%로 낮아진 반면, 법률지원은 12%에서 15%로, 의료 지원은 10%에서 17%로 평균보다 높았다.

광주지역은 주거지원이 평균 11%에서 16%로 높아졌고, 취업지원은 10%에서 5%로 낮아졌다. 반대로 대구지역은 주거지원이 12%에서 6% 오히려 낮아졌고, 취업지원은 3%에서 0%로 낮아진 반면 의료지원은 평균보다 3%로 높은 16%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평균 9%보다 높은 13%로 나타났고, 취업지원도 4%인 평균보다 높은 9%이다. 반면에 심리지원에 해당하는 회복프로그램은 평균 12%에서 9%로, 상담서비스 역시 평균 16%에서 9%로 낮아졌다.

부산지역은 주거지원이 평균 2%였던 것이 6%로 높아진 반면, 취업지원은 4%에서 0%로 낮아졌다. 울산지역은 신변보호가 9%에서 13%로 높아진 반면,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는 각각 다소 낮아졌다. 전북지역은 현장지원만 평균 7%에서 11%로 높아졌을 뿐이고, 다른 큰 변화는 없었다. 충남지역은 주거지원이 평균 8%였으나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3%로 대폭 낮아졌고, 현장지원은 평균 5%에서 9%로 높아졌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와 경남, 경북, 충북 지역은 평균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지원기관별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현황

다음은 지원기관별로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기관별 서비스 지원의 비율에 관한 표이다.

〈표 51〉 지원기관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146	145	69	60	107	128	83	107	130	16
상담소	1	1	0	0	0	4	0	5	17	0
스마일센터	5	16	22	1	14	34	5	33	34	1
아전기관	0	2	0	0	0	1	0	3	5	0
전체	152	164	91	61	121	167	88	148	186	17

전체적으로는 평균보다 법률지원이 1% 감소한 반면,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는 각각 1% 증가하였다. 지원기관별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는 평균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상담소는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및 신변보호, 현장지원은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회복프로그램은 3% 높은 18%의 비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제적 지원이 평균 11%였지만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0%이며, 신변보호와 현장지원 역시 평균 7%였으나 단 한건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회복프로그램은 평균 20%이나 27%로 증가하였고, 특히 상담서비스는 평균 26%였던 것이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45%로 매우 큰 비율로 높아졌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강력범죄피해자인 아동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기관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지원기관 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제공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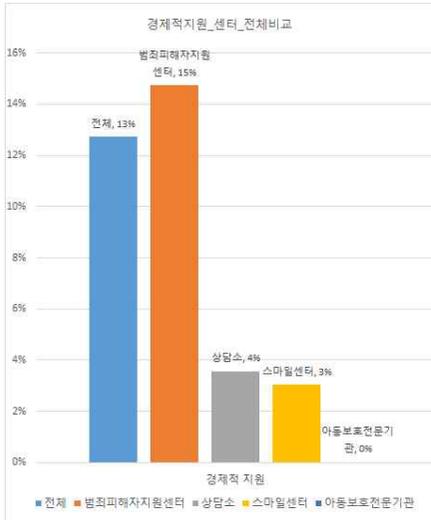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2%	1%	-1%	1%	1%	-1%	1%	-2%	-2%	0%
상담소	-9%	-10%	-8%	-5%	-10%	0%	-7%	5%	45%	-1%
스마일센터	-10%	-4%	6%	-4%	-2%	7%	-4%	8%	5%	-1%
아전기관	-13%	4%	-8%	-5%	-10%	-5%	-7%	15%	30%	-1%
전체	0%	0%	0%	0%	0%	0%	0%	0%	0%	0%

강력범죄 피해자 평균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다만 소숫점 반올림으로 인하여 1퍼센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우선 경제적 지원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기관들은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 역시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평균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모수가 가장 많아서 평균에 가깝기 때문이고, 다른 기관들에서 평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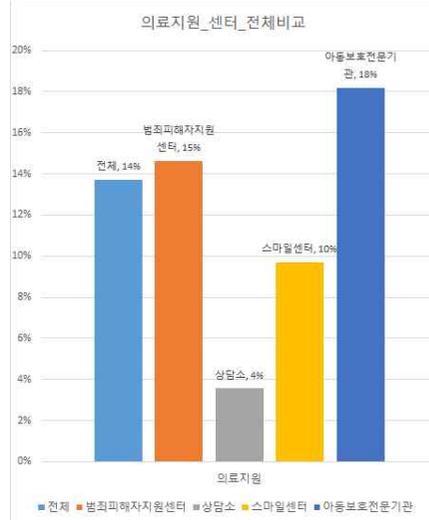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별 보호·지원서비스 종류별 비교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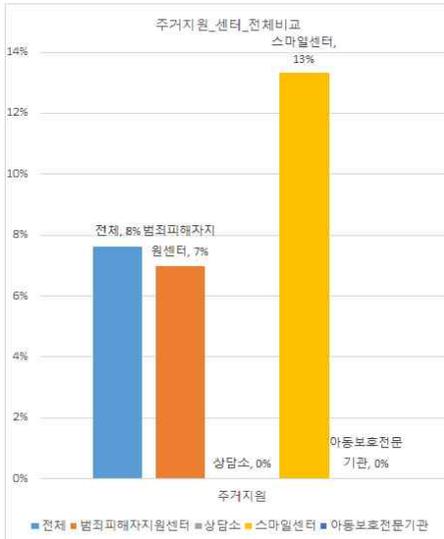
[그림 92] 강력범죄 경제적 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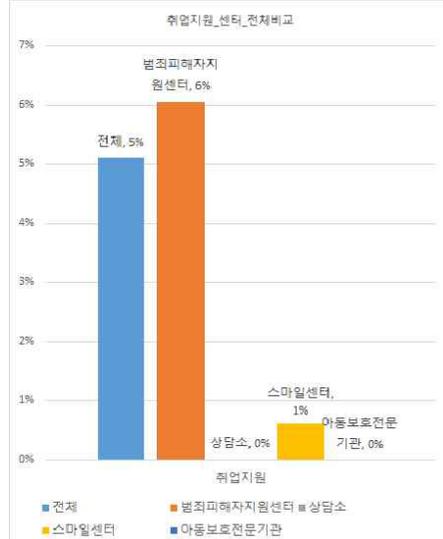
[그림 93] 강력범죄 의료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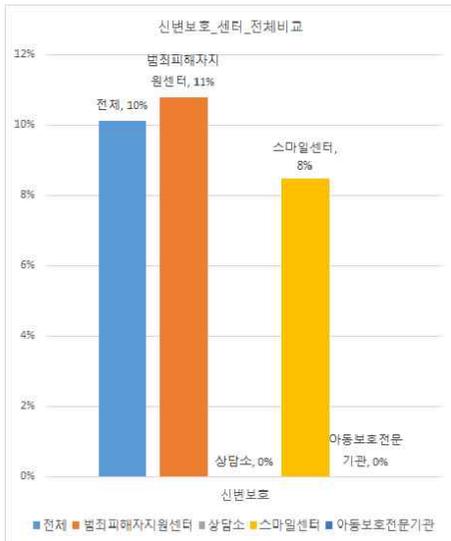
[그림 94] 강력범죄 주거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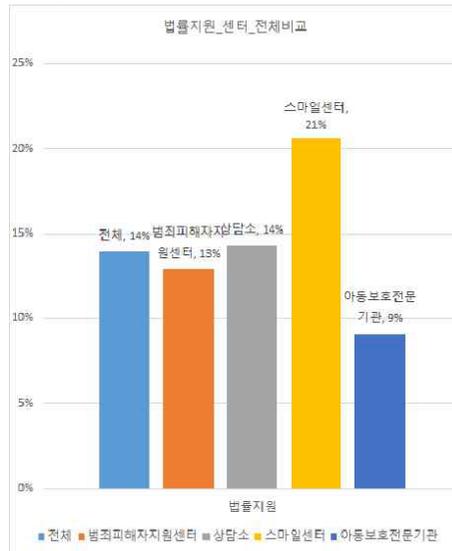
[그림 95] 강력범죄 취업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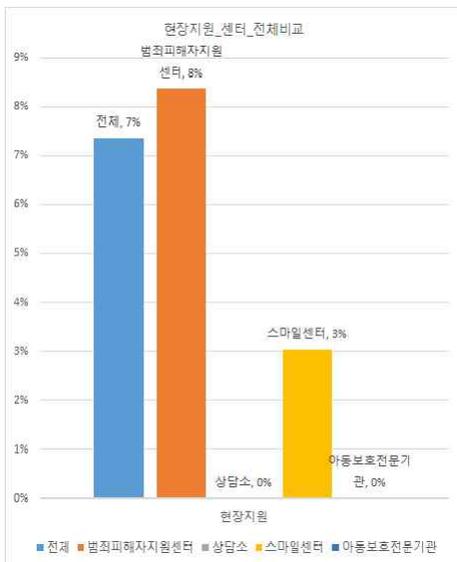
[그림 96] 강력범죄 신변보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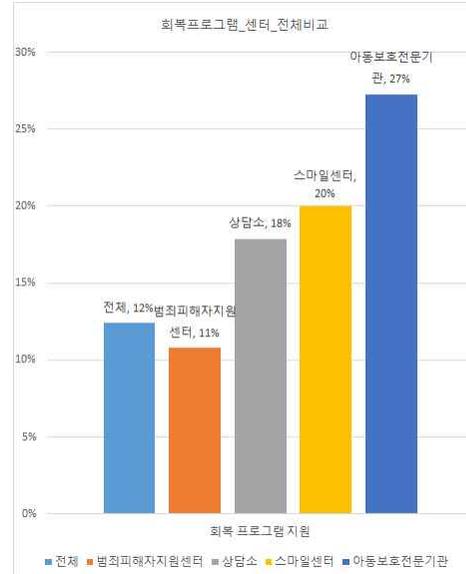
[그림 97] 강력범죄 법률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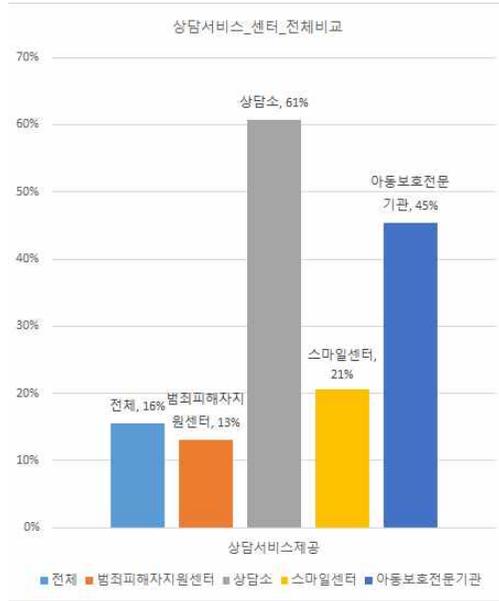
[그림 98] 강력범죄 현장지원 비교



[그림 99] 강력범죄 회복프로그램 비교



[그림 100] 강력범죄 상담서비스 비교



4.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가. 지역별 성폭력범죄 피해자서비스 지원 현황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지원 서비스도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에서의 지역별 차이이다.

〈표 53〉 지역별 성폭력범죄 보호·지원서비스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8	4	4	7	6	5	6	4	7	2
경기	16	28	21	13	19	30	11	29	32	0
경남	13	11	3	6	9	12	7	9	11	0
경북	14	14	13	9	13	12	13	15	15	3
광주	3	2	2	2	2	1	1	3	2	0

대구	5	4	5	3	4	5	3	4	4	0
대전	3	3	2	0	2	3	2	3	3	0
부산	6	6	0	2	6	6	6	4	6	0
서울	22	34	19	12	24	40	11	38	55	0
울산	4	4	3	2	2	4	3	3	4	0
인천	5	5	5	5	5	5	5	5	5	2
전남	8	7	2	0	4	8	4	5	3	0
전북	8	8	6	6	7	8	5	8	8	3
제주	1	2	4	0	7	8	0	7	7	0
충남	13	13	8	7	9	9	3	7	13	3
충북	7	8	2	2	7	7	2	8	8	0
합계	136	153	99	76	126	163	82	152	183	13

다만 경제적 지원이 평균 13%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는 11%로 다소 낮았고, 상담서비스 역시 전체 17%보다 낮은 15%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변보호와 법률 지원 및 취업지원이 평균보다 1% 정도 상회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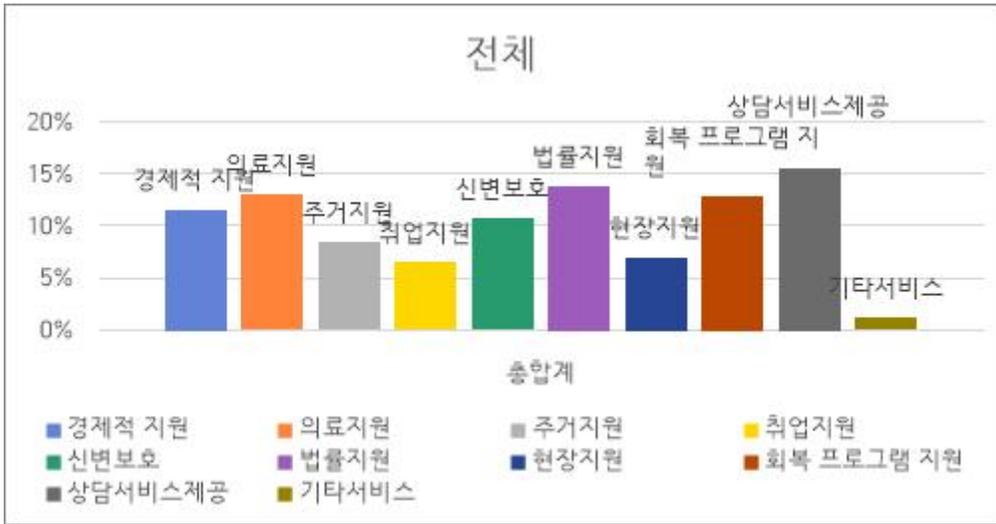
지역별 차이는 전체 평균보다 3% 이상의 차이를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평균보다 3% 낮은 15%임에 비하여 현장지원이 평균보다 3% 높은 11%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도 경제적 지원이 평균보다 낮았으며, 취업지원은 평균이 4%임에 비하여 다소 높은 7%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주거지원과 현장지원이 평균보다 3% 높은 11%로 나타났다. 강원과 경기 지역이 평균보다 경제적 지원이 낮은 반면, 광주지역은 반대로 평균보다 3% 높은 17%인 반면, 의료지원은 3% 낮은 11%라고 응답하였다. 대구 지역은 취업지원이 평균 3%보다 높은 8% 였고, 부산지역은 현장지원이 평균 11%보다 높은 14%였다. 서울지역은 법률지원이 13%인 평균보다 높은 16% 였고 전남지역도 법률지원이 평균 17%보다 높은 20% 였다. 전남지역은 현장지원도 평균 6%보다 높은 10%로서 법률지원과 현장지원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취업지원이 평균 4% 보다 높은 8%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법률지원, 취업지원 및 현장지원 등에서 평

균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지역은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성폭력 범죄 보호·지원 서비스의 전체 평균을 나타낸 표이다.

〈표 54〉 성폭력범죄 보호·지원 서비스 전체 평균



나. 지원기관별 성폭력범죄 보호·지원 서비스 현황

지원기관별로 성폭력범죄 보호·지원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5〉 지원기관별 성폭력범죄 보호·지원 서비스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135	133	77	73	107	124	80	113	130	13
상담소	0	2	0	1	1	3	0	4	15	0
스마일센터	1	15	22	2	18	34	2	33	34	0
아전기관	0	3	0	0	0	2	0	2	4	0
전체	136	153	99	76	126	163	82	152	183	1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지원이 전체 평균 13%보다 성폭력범죄 평균이 11%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이 14%로 전체 평균 및 성폭력범죄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는 성폭력범죄의 전체 평균보다 각각 2% 낮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은 높되, 심리치료와 같은 서비스가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경제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로 의료지원은 상담소 전체 4%보다 높은 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의외로 상담소의 상담서비스 비율은 전체 평균인 15%보다 훨씬 높은 58%이지만 상담소 자체 평균인 61%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다. 성폭력범죄 자체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 자체 평균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성폭력범죄 자체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경제적 지원은 평균 11%보다 매우 낮은 1%였고, 의료지원 역시 13%보다 낮은 9%, 취업지원도 6%보다 낮은 1%, 현장지원 역시 7%보다 낮은 1%였다. 반면에 주거지원은 8% 평균보다 높은 14%, 법률지원 역시 14%보다 높은 21%, 회복프로그램도 평균보다 7% 높은 20%, 상담서비스 역시 평균인 15%보다 높은 21%였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원, 법률지원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일센터의 특성상 주거지원은 입소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가능하고, 통합서비스로서 법률지원과 심리치료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평균에서 경제적 지원이 11%인 반면 성폭력범죄는 0%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의료지원은 자체 평균인 17%보다 높은 27%라고 응답하였다. 신변보호는 자체 평균 7%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법률지원은 자체 평균 9%의 두 배에 이르는 18%였으며, 상담서비스도 자체 평균 26%보다 높은 36%라고 응답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평균과 비교하여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성폭력범죄 평균 경제적 지원이 11%임에 반해 전혀 없었고, 반대로 의료지원은 평균 13%보다 두 배 높은 27%였으며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지원은 4% 높은 18%, 회복 프로그램은 5% 높은 18%, 그리고 상담서비스는 두배 이상 높은 36%에 달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폭력범죄 평균과 거의 모든 영역의 서비스에서 차이를 현격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방식을 분

할하고 있는 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유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원기관 간의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 56〉 지원기관 간 성폭력범죄 지원서비스 평균과의 차이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2%	1%	-1%	1%	0%	-1%	1%	-1%	-2%	0%
상담소	-11%	-5%	-8%	-3%	-7%	-2%	-7%	3%	42%	-1%
스마일센터	-11%	-4%	5%	-5%	1%	7%	-6%	8%	6%	-1%
아전기관	-11%	14%	-8%	-6%	-11%	4%	-7%	5%	21%	-1%
전체	0%	0%	0%	0%	0%	0%	0%	0%	0%	0%

5.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가.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서비스 지원 현황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도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취업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약 2% 높은 7%인 반면 상담서비스는 2% 낮은 15%이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 서비스지원 현황에 관한 지역별 비율이다.

〈표 57〉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지원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9	6	7	6	9	6	4	7	8	1
경기	20	24	21	11	19	28	12	28	29	0
경남	13	11	3	8	12	12	6	9	11	1
경북	15	14	9	10	14	14	10	15	15	1

광주	2	3	1	2	1	1	1	3	2	0
대구	5	4	5	3	4	5	3	4	3	0
대전	3	3	2	2	0	3	3	2	3	0
부산	6	6	0	5	6	6	4	4	4	0
서울	28	35	21	12	21	34	16	40	60	1
울산	4	4	3	4	3	4	3	4	4	0
인천	5	5	5	5	5	5	4	5	5	2
전남	8	5	2	2	2	6	0	5	4	0
전북	8	8	5	5	6	8	6	8	8	2
제주	1	1	7	0	5	8	1	7	7	0
충남	10	13	9	4	8	10	3	8	13	2
충북	8	7	3	6	7	7	3	8	8	0
합계	145	149	103	85	122	157	79	157	184	10

지역별 차이는 전체 평균보다 3% 이상 차이를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4% 낮은 14%인 반면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은 각각 평균보다 4%, 3% 높아서 11%와 10%에 이른다. 경남지역은 취업지원이 평균 5%에서 9%로 상승하였다. 광주지역은 의료지원이 평균 14%보다 높은 19%로 나타난 반면, 주거지원은 평균 11%보다 매우 낮은 6%에 불과하였고, 신변보호 역시 평균 9%보다 낮은 6% 였다.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서비스들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회복프로그램은 평균 16%보다 높은 19%였고, 상담서비스는 유의미한 차이 범주 안에는 속하지 않으나 2% 높았다.

대구 지역은 취업지원이 평균 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8%에 이르렀고, 그 외의 서비스는 평균과 유사하였다. 대전 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평균 9%보다 높은 14%인 반면 신변보호는 평균 10%와 달리 전혀 없었다. 현장지원의 경우에는 평균 11%보다 높은 14%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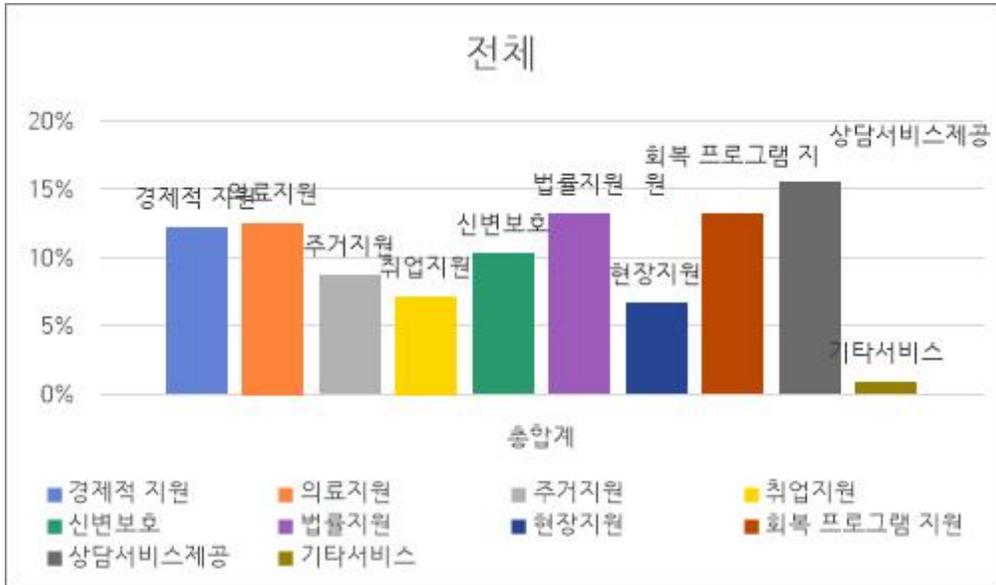
부산지역은 특히 취업지원에서 평균 4%보다 매우 높은 12%에 이르고, 신변보호도 12%보다 높은 15%에 해당하였다. 울산지역도 특히 취업지원이 평균 6%보

다 두 배 높은 12%에 이르렀고, 상담서비스는 반대로 전체 평균보다 3% 낮은 12%였다. 전남 역시 취업지원이 평균보다 높아서 2%보다 높은 6%에 이른 반면, 현장지원은 평균이 6%였지만 가정폭력범죄에서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제주 지역은 주거지원이 평균 11%보다 높은 19%인 반면, 반대로 신변보호는 평균 17%보다 낮은 14%였다. 충남은 경제적 지원은 평균보다 3% 낮은 13%인 반면 주거지원은 3% 높은 11%였다. 충북지역은 의료지원이 평균 15%보다 3% 낮은 12%인 반면 취업지원은 평균 4%보다 거의 3배에 이르는 11%였다.

지역별로는 법률지원에서는 큰 차이 없이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 58〉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비율



이처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지원은 많은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취업지원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경북지역은 전체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비스별로는 의료지원은 광주지역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주거지원은 제주, 취업지원은 광주, 신변보호는 부산, 법률지원은 제주, 현장지원은 대전, 회복프로그램 지원은 광주와 제주, 상담서비스 제공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나.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 현황

지원기관별로는 경제적 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 평균 11%보다 매우 높은 17%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 전체 평균인 1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기도 하다. 반면 스마일센터는 1%에 불과한 바, 이는 스마일센터 전체 평균과 동일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평균인 12%에는 매우 못 미치는 비율이다.

의료지원은 모든 기관에서 자체 평균과 유사하였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 높은 20%에 해당하였다. 신변보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평균은 7%였으나, 가정폭력범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주거지원, 현장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은 모든 지원기관에서 전체 평균과 유사하였으며, 상담서비스의 경우 상담소가 자체 평균 61%보다 못 미치는 50%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 현황을 비율로 나타낸 표이다.

〈표 59〉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137	127	75	81	106	121	75	115	126	10
상담소	1	2	3	0	3	3	0	4	16	0
스마일센터	2	14	25	4	13	31	2	31	34	0
아전기관	5	6	0	0	0	2	2	7	8	0
전체	145	149	103	85	122	157	79	157	184	10

서비스별 가장 제공비율을 높은 기관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회복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높았고, 취업지원과 신변보호는 범피센터가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은 스마일센터가 가장 높았고, 상담서비스는 상담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과의 편차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은 스마일센터가 가장 편차가 높은 -11%를 나타냈고, 의료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 주거지원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9%의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지원은 상담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7%, 법률지원은 스마일센터는 7%인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로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현장지원은 상담소가 가장 낮은 -7%를, 회복 프로그램운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 평균보다 높았으며, 상담서비스는 상담소가 35%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의 평균과의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표 60〉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지원 서비스 평균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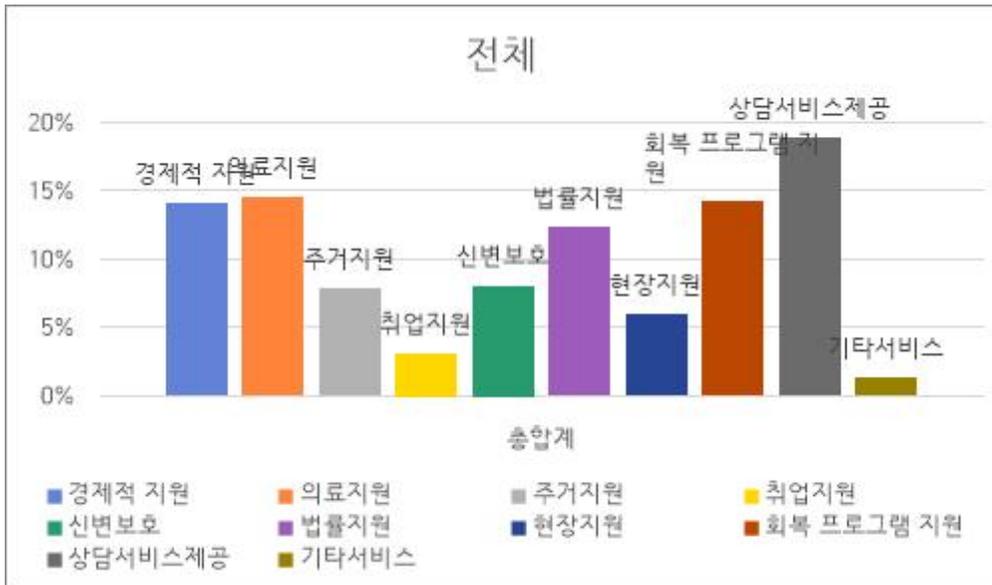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2%	1%	-1%	1%	1%	-1%	1%	-1%	-2%	0%
상담소	-9%	-6%	1%	-7%	-1%	-4%	-7%	-1%	35%	-1%
스마일센터	-11%	-4%	7%	-5%	-2%	7%	-5%	7%	6%	-1%
아전기관	4%	7%	-9%	-7%	-10%	-7%	0%	10%	11%	-1%
전체	0%	0%	0%	0%	0%	0%	0%	0%	0%	0%

6.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가.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서비스 지원 현황

아동학대 범죄는 전체평균과 비교하여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에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반대로 취업지원이나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 또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은 특별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류별 현황이다.

〈표 61〉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류별 제공 비율



전반적으로 상담서비스제공과 회복프로그램지원과 같은 심리치료 지원 및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기타서비스에는 물품지원 등의 현물지원, 복지재단 및 각 기관연계 방식의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학교는 학교장 측면에서 행하거나 아동전문보호기관이나 워터의 장애 의한 선택지원 등의 내용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은 특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료지원이 지역 평균인 18%보다 매우 높은 29%로 나타난 반면, 의료지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10%에서 5%로 낮아졌으며, 주거지원, 취업지원은 전혀 없었다. 신변보호와 법률지원은 지역 평균이 각 12%였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5%에 불과하였고 현장지원도 평균 8%보다 낮은 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회복프로그램은 10%에서 19%로, 상담서비스는 15%에서 29%로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전체 평균과 유사한 상승 또는 하락비율로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경기지역은 상담서비스가 평균 17%에서 20%로 높아진 이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경남지역은 경제적 지원은 지역 평균 16%보다 높은 22% 의료지원도 14%보다 높은 18%이고 상담서비스도 지역 평균 14%보다 높은 20%에 이르렀

다. 그러나 취업지원은 전혀 없고, 신변보호도 지역 평균인 13%보다 훨씬 낮은 6%이며, 현장지원 역시 지역 평균 9%보다 낮은 6%였고, 회복프로그램 역시 평균 10%보다 낮은 6%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상담서비스가 지역평균 14%보다 높은 17%인 것 외에는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광주지역은 의료지원이 평균 14%보다 높은 20%로 나타난 반면 주거지원은 지역 평균 11%보다 낮은 7%이고 취업지원도 10%보다 낮은 7%였으나, 신변보호는 지역 평균인 9%보다 높은 13%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회복프로그램은 평균보다 낮은 13%, 상담서비스 역시 11%보다 낮은 7%에 불과하였다.

대구지역은 취업지원은 전혀 없는 것 이외에는 지역 평균과 유사하였다.

대전지역은 경제적 지원과 취업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반면 의료지원은 지역 평균 13%보다 매우 높은 21%를 차지하였으며, 주거지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평균 10%보다 높은 14%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변보호는 지역 평균 10%보다 낮은 7%에 불과하였고, 현장지원도 지역 평균 11%보다 낮은 7%였다. 상담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역 평균 16%보다 높은 21%에 해당하였다.

부산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높은 편으로 지역평균 16%보다 높은 22%인 반면, 취업지원과 주거지원, 현장지원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법률지원도 평균보다 높은 22%였고, 상담서비스도 지역 평균 13%보다 다소 높은 17%에 해당하였다.

서울지역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지역평균과 유사하지만, 법률지원은 13%보다 낮은 10%인 반면, 오히려 현장지원이 5%보다 높은 8%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역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다소 높아서 지역평균보다 각각 3%, 4% 높은 17%인 반면, 역시 취업지원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인천 지역은 취업지원에서 지역 평균 10%보다 낮은 7%인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전남지역은 현장지원이 다소 낮은 이외에는 지역 평균과 유사하였다. 전북지역은 현장지원이 지역평균보다 4% 낮은 3%인 점 이외에 역시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지역 평균 5%임에 반하여 11%로 두 배 이상 높았고, 반대로 신변보호는 지역 평균 17%보다 3배 이상 낮은 5%에 불과하였다. 법률지원도 20% 보다 낮은 16%인 반면, 상담서비스는 지역평균 21%보

다 매우 높은 32%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지역평균보다 4% 높은 20%이고 주거지원과 현장지원이 다소 변동이 있을 뿐이다. 충북지역도 주거지원이 지역 평균 4%보다 높은 7%인 점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아동학대범죄는 각 서비스 지원율에서 지역 평균과의 차이가 매우 심한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보호·지원서비스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62〉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보호·지원서비스 비율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6	1	0	0	1	1	1	4	6	1
경기	15	20	15	4	10	22	8	24	29	0
경남	11	9	3	0	3	8	3	3	10	1
경북	13	13	5	5	8	10	6	13	15	1
광주	2	3	1	1	2	1	1	2	1	1
대구	5	4	4	0	4	4	3	4	3	0
대전	0	3	2	0	1	2	1	2	3	0
부산	5	3	0	0	3	5	0	3	4	0
서울	30	39	18	10	19	26	20	41	63	0
울산	4	4	2	0	2	3	2	3	4	0
인천	5	5	4	3	4	5	5	5	5	2
전남	8	5	2	0	2	5	1	6	4	0
전북	8	8	6	4	5	7	2	8	6	4
제주	2	1	2	0	1	3	0	4	6	0
충남	13	12	7	1	5	8	1	5	11	2
충북	6	7	3	1	6	6	2	7	8	0
합계	133	137	74	29	76	116	56	134	178	12

나. 지원기관별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현황

지원기관별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과 가장 유사하며, 스마일센터나 상담소 등은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지원기관별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유형별 비율이다.

〈표 63〉 지원기관별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유형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120	111	53	27	62	87	44	94	117	12
상담소	1	1	0	0	1	2	1	3	15	0
스마일센터	1	14	18	2	7	23	2	26	32	0
아전기관	11	11	3	0	6	4	9	11	14	0
전체	133	137	74	29	76	116	56	134	178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며, 다만 상담서비스는 낮은 비율이다. 그 외의 기관들은 평균과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상담소의 경우 주거지원, 취업지원은 전혀 없고, 상담소라는 기관 특성상 상담서비스가 63%에 이른다. 스마일센터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낮은 1%이고,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회복프로그램은 21%, 상담서비스는 26%로 높게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취업지원은 전혀 없고, 법률지원도 평균의 절반에 미치고 있지만, 의외로 현장지원이 평균 6%의 두 배가 넘는 13%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평균과의 편차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4〉 지원기관별 서비스유형의 평균과의 편차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2%	1%	-1%	1%	0%	0%	0%	-1%	-3%	0%
상담소	-10%	-10%	-8%	-3%	-4%	-4%	-2%	-2%	44%	-1%
스마일센터	-13%	-3%	7%	-1%	-2%	6%	-4%	7%	7%	-1%
아전기관	2%	1%	-3%	-3%	1%	-6%	7%	2%	1%	-1%
전체	0%	0%	0%	0%	0%	0%	0%	0%	0%	0%

서비스유형별로는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높았고, 의료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거지원은 스마일세넬가, 취업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높았다. 신변보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지원은 스마일센터가, 현장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높았고, 회복프로그램은 스마일센터가, 상담서비스는 상담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 유형별 가장 낮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는 경제적 지원은 스마일센터가 1%로 가장 낮았고,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는 상담소가 가장 낮았고, 법률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지원은 스마일센터가, 회복프로그램의 운영은 상담소가 가장 낮았고, 상담서비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상담서비스와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은 전 기관에서 균등하게 적극적인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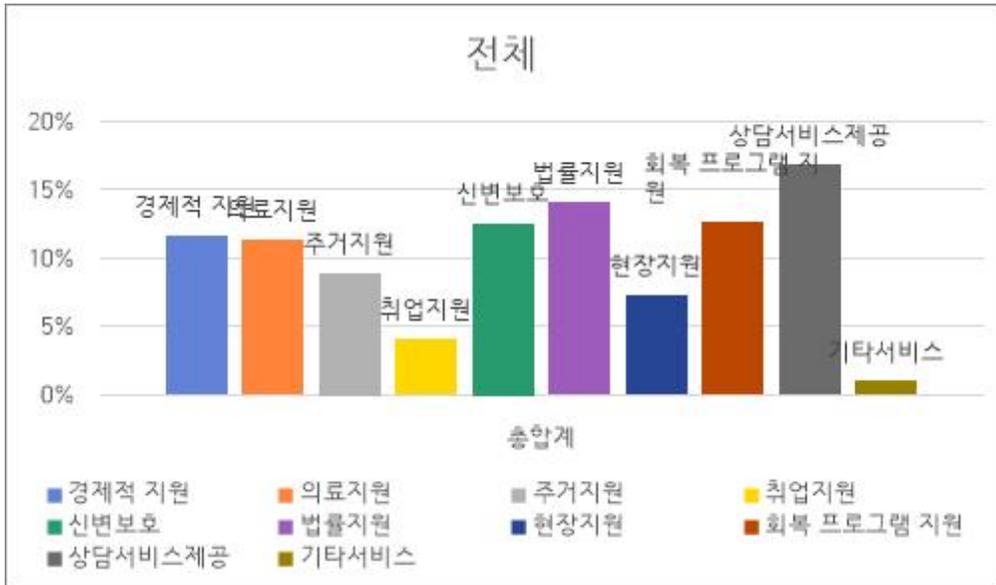
7.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가.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서비스 지원 현황

전체 평균과 스토킹범죄 평균을 비교하면,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나 취업 지원은 낮은 반면, 주거지원 및 법률지원은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신변보호는 전체 평균이 10%임에 반해 스토킹범죄는 1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음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 별 비율이다.

〈표 6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유형별 비율



서비스 유형별로는 상담서비스제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률지원과 신변보호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의료지원은 전체 평균보다 2% 낮았으며, 경제적 지원 역시 1%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다른 중대범죄보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는 적은 반면,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협과 신변위협이 서비스 유형에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특색을 보면 강원 지역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취업지원이 현격히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신변보호와 법률지원, 현장지원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원지역은 신변보호가 지역평균 12%보다 5% 높은 17%이자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도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3% 낮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광주지역은 의료지원이 지역 평균 14%보다 4% 낮은 8%에 불과한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대구지역은 경남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이 지역 평균 15%보다 낮은 12%인 반면, 주거지원은 3% 높은 15%에 이른다.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취업지원은 전혀 없으며, 대전은 그 외에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도 0%이다. 대전은 주거지원이 지역 평균 10%의 두 배에 달하

는 20%로 전국에서 주거지원율이 가장 높았으며, 신변보호도 지역평균 10%의 두 배에 해당하는 20%로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리하면 대전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취업지원은 0%로 가장 낮은 반면, 주거지원과 신변보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은 경제적 지원은 지역평균보다 3% 높았지만,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은 각각 지역 평균보다 3% 정도 낮았다. 울산과 전남은 경제적 지원은 지역 평균보다 3% 낮고, 제주는 신변보호가 지역 평균 17%보다 높은 23%에 이르렀다. 충남은 취업지원이 지역평균 4%보다 낮은 1%에 불과하였고, 충북은 신변보호는 지역 평균보다 높되 회복프로그램은 낮았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경북지역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다.

다음은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지원 유형별 비율에 관한 표이다.

〈표 66〉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지원 비율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7	3	3	1	8	7	6	4	7	1
경기	18	21	18	6	19	28	13	27	29	0
경남	10	9	4	4	12	12	8	7	11	1
경북	14	13	12	9	15	13	9	15	15	1
광주	2	1	2	1	1	1	1	2	2	0
대구	4	4	5	0	5	5	3	4	3	0
대전	0	0	3	0	3	2	2	2	3	0
부산	6	4	2	0	4	4	4	4	4	0
서울	22	29	20	9	27	34	11	34	56	0
울산	3	3	3	2	2	3	3	4	4	0
인천	5	4	5	5	5	5	4	5	5	2
전남	6	3	0	0	4	6	2	5	5	0
전북	6	5	4	4	5	6	4	6	6	2
제주	1	1	4	0	8	7	0	7	7	0

충남	13	13	7	1	8	9	5	4	13	3
충북	6	7	2	1	7	7	2	4	8	0
합계	123	120	94	43	133	149	77	134	178	10

나.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7〉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122	104	73	42	111	115	75	98	125	10
상담소	0	0	0	0	2	2	0	4	15	0
스마일센터	1	14	21	1	17	30	2	29	34	0
아전기관	0	2	0	0	3	2	0	3	4	0
전체	123	120	94	43	133	149	77	134	178	10

전체 평균과 가장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기관은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였다. 상담소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및 취업지원, 현장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원기관의 특성상 회복프로그램지원과 상담서비스제공에 서비스 유형이 집중되어 있다. 스마일센터는 평균보다 법률지원이 유독 강화된 형태의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고, 주거지원도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스마일센터가 쉼터를 제공하고 입소가 가능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및 현장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특색은 다른 종류의 중대범죄에서도 나타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색이기도 하다. 또한 신변보호가 다른 기관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으며, 상담서비스와 회복프로그램 등 심리치료관련 서비스는 상담소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지원기관별 서비스의 평균과의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표 68〉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평균과의 편차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범피센터	2%	1%	-1%	1%	0%	-1%	1%	-1%	-2%	0%
상담소	-12%	-11%	-9%	-4%	-4%	-5%	-7%	5%	48%	-1%
스마일센터	-11%	-2%	5%	-3%	-1%	6%	-6%	7%	6%	-1%
아전기관	-12%	3%	-9%	-4%	9%	0%	-7%	9%	12%	-1%
전체	0%	0%	0%	0%	0%	0%	0%	0%	0%	0%

편차가 가장 큰 기관과 서비스는 상담소의 상담서비스 비율로서, 이는 다른 중대범죄에서도 나타나는 상담소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이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른 기관들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취업지원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매우 소극적인 형태인 바, 스토킹범죄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미취업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신변보호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은 서비스제공 비율에서 확인되는 바, 다른 중대범죄보다도 모든 지원기관에서 신변보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원기관별 가장 많은 서비스 유형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현장지원 서비스였고, 상담소는 상담서비스제공이었으며, 스마일센터는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이 월등히 높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료지원, 회복프로그램 제공이 지원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8.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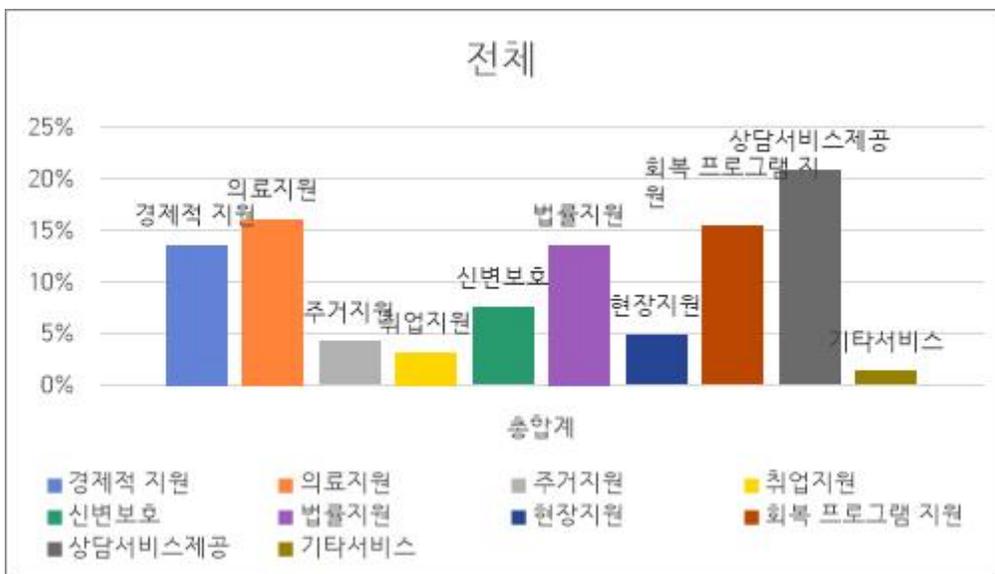
가.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서비스 지원 현황

우선 학교폭력범죄를 어떤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최근의 학교폭력 정의는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반성적 고려하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제한하였지만, 이 역시 가정폭력처벌법 등 형사법상의 일반규정의 문구를 그

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는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법익을 신체의 기능과 안전, 심리적 안정 및 재산으로 광범위하게 넓힘으로 인하여 자의적 해석이라는 문제점을 보다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¹²⁵⁾ 다만, 본 설문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 또는 학교폭력피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고, 별도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다음은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로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69〉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 비율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피해자의 특수성으로서 학생신분이자 미성년자인 점에서 학교연계지원이 가능한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제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의료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 등은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우선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제공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상담서비

125) 학교폭력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영천/김정현, “현행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2, 29면 이하;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12, 257면 이하; 이용식,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169면 이하 참조.

스 제공의 경우 전체 평균이 17%임에 비하여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21%로 매우 높았으며,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도 전체 평균보다 높았는데 특히 의료지원은 전체 평균 13%보다 3% 높은 16%에 달하였다. 학교폭력에는 따돌림과 같은 비범죄유형도 존재하지만 상해, 폭행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범죄와 사이버폭력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사이버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주거지원은 전체 평균 8%보다 훨씬 낮은 3%, 신변보호도 10%보다 낮은 7%, 현장지원도 7%보다 낮은 5%, 취업지원 역시 5%보다 낮은 3%에 불과하였다. 이는 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0〉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현황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강원	7	2	0	2	1	3	1	2	5	1
경기	14	22	5	0	5	23	5	23	26	0
경남	8	8	1	0	6	6	4	4	8	1
경북	12	12	4	4	6	9	2	9	14	1
광주	1	1	1	2	1	1	1	2	1	0
대구	5	3	1	0	3	4	0	4	3	0
대전	0	2	0	0	1	2	1	2	3	0
부산	2	5	0	0	0	4	4	4	4	0
서울	15	27	10	9	16	23	8	31	56	0
울산	4	3	0	0	2	3	1	3	4	0
인천	5	5	4	3	5	5	4	5	5	2
전남	7	5	0	0	0	4	1	6	3	0
전북	7	8	3	2	4	7	2	8	8	2
제주	2	1	0	0	0	0	0	1	1	0

충남	10	13	2	1	3	5	2	7	13	3
충북	6	7	1	1	5	6	1	8	7	0
합계	105	124	32	24	58	105	37	119	161	10

서비스유형별로는 경제적 지원은 제주 지역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 은 부산과 충남이 22%로 가장 높았다. 주거지원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광주와 인천지역은 9%로서 평균 4%의 두 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취업지원 역시 매우 낮은 편이나 광주지역만 18%로 평균 3%의 6배에 달하고 있다. 광주가 취업지원과 주거지원이 유난히 높은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는 경남과 대구에서 13%로 평균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법률지원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유독 제주만은 지원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법률지원 역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현장 지원은 유독 부산만 17%로 전체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회복프로그램은 전남이 23%로 평균 15%를 상회하였으며, 상담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의 제공비율을 보였지만, 광주지역만 9%로 전체 21%보다 매우 낮았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학교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역평균인 18%에 비하여 29%라는 중대범죄 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었다. 반면 주거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신변보호 역시 지역 평균 12%보다 훨씬 낮은 4%에 불과하였다. 현장지원도 지역평균 8%의 절반 수준인 4%에 불과하였지만, 상담서비스는 21%로 지역 평균보다 6%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의료지원이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지원은 전혀 없다. 신변보호 역시 지역 평균 9%보다 낮은 4%에 불과하였지만, 반대로 법률지원이 지역평균 15%보다 높은 19%에 해당하였다. 그 외에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 비율이 높은 점은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지역도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은 학교폭력범죄 특성과 유사한 양상이며, 상담서비스가 높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경북지역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지역평균보다 3%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지원이 적은 것은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은 경북과 반대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지역평균보다 5%씩 낮았다.

대구 지역은 경제적 지원이 지역평균 15%보다 매우 높은 22%로 나타났다. 그 외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현장지원이 낮거나 없는 것 및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가 높은 것은 학교폭력범죄 특성과 유사하였다.

대전지역은 반대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반면, 의료지원은 지역평균 13%보다 높은 18%라고 응답하였다.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이 거의 없는 것 및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가 높은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였다. 다만 법률지원이 지역 평균 14%보다 높은 18%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도 경제적 지원이 지역 평균 16%보다 훨씬 낮은 9%인 반면 의료지원원은 지역평균 15%보다 높은 22%였다.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이 거의 없는 것 및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가 높은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였다.

울산은 경제적 지원이 더 높아서 지역 평균은 14%였지만,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20%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남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지역평균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은 지역평균과 유사하였으며, 충남과 충북은 의료지원이 지역 평균보다 5% 높았고, 나머지는 학교폭력범죄의 전반적 특성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역평균과 매우 차이가 있다. 우선 경제적 지원이 지역평균 5%에 불과한 반면 학교폭력범죄에서는 40%라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의료지원도 지역평균은 5%에 불과하나 학교폭력범죄에서는 20%에 이르렀다. 반면에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지원도 0%로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았다.

학교폭력범죄는 전반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에서 지역평균과의 차이가 현격하였다. 다만 서울, 인천 등은 지역평균과 거의 유사하였다.

나. 지원기관별 학교폭력범죄 서비스 지원 현황

지원기관별로는 전제 서비스유형별 평균에 가까운 서비스제공 비율을 보이는 것은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다. 다음은 학교폭력범죄에 대한 지원기관별 보호·지원 서비스 비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경제적 지원은 상담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편차가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은 전혀 없는 상담소가 편차가 가장 많다. 반면 회복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월등히 높았으며, 상담서비스는 상담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현장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높았고, 상담서비스제공은 상담소가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은 스마일센터가 가장 높았고, 회복프로그램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소결

본 설문은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 서비스가 현황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서비스유형을 10개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비율 및 전체 평균과의 비교, 그리고 지원기관간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호·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각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가 때로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대범죄의 유형별로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중대범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강력범죄보호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체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은 상대적으로 1% 높은 반면,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각각 1%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치료보다는 신체에 대한 치료와 생활지원이 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경제적 지원은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에 가까웠지만, 유독 제주지역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평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의료지원 역시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에 가까운 서비스 비율을 보였다.

주거지원은 광주가 16%로, 지역자체 평균 및 강력범죄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은 인천지역이 11%로 강력범죄 전체 평균에 2배 이상 높았으며, 신변보호는 유독 제주 지역이 20%로 강력범죄 전체 평균에 2배

이상 높았다.

법률지원은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평균과 유사하나, 제주지역은 14% 대비 20%로 매우 높았으며,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 역시 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원기관별로는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월등히 많았고 취업지원과 현장지원, 신변보호도 그 비중은 크지 않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이 가장 많았다. 상담서비스는 상담소가, 회복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은 스마일센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색은 각 지원기관의 설립취지나 지원내용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 지역만 평균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을 하는 원인이나 특색에 관하여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성폭력범죄 피해자지원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은 감소하였고, 취업지원과 신변보호, 법률지원은 전체 평균보다 1% 정도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및 현장지원은 전체 평균과 동일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평균보다 약 두 배 높은 20%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전남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 비중이 22%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제주 지역이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취업지원은 전무하였다. 신변보호는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 평균에 가까웠으며, 법률지원은 제주 지역이 2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제주 지역 자체 평균이 20%이므로 자체적으로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 역시 전국적으로 평균에 가까웠지만, 전남지역은 상담서비스가 7%로 성폭력범죄 평균 1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자체 평균인 11%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지원기관별로 보면 여전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평균과 가장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경제적 지원의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높았고, 현장지원, 취업지원 역시 비중은 크지 않으나 동 센

터가 가장 높았다. 의료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관 자체에서 27%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은 예상대로 스마일센터가 가장 높았고, 이 역시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스마일센터가 회복프로그램의 제공이 20%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서비스는 상담소의 비중이 가장 높되 기관 자체 평균인 61%보다는 낮은 58% 수준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경제적 지원은 다소 낮은 반면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대체로 여성이거나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서, 폭력현장인 가정으로부터의 장소적 격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이 현실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제적 지원이 전남지역이 24%로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해당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것일 뿐이며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주거지원의 경우 부산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취업지원은 평균과 유사하였으나 광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바, 광주의 경우 취업지원 자체가 전국 평균에 2배에 이르고 있으며, 그와 같은 자체 평균보다도 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독 취업지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현장지원은 대전이 14%로 가정폭력범죄 평균의 2배에 이르며,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매우 저조한 자체 평균인 5%보다도 낮은 3%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원은 19%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가정폭력범죄 평균인 9%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자체 평균인 11%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법률지원 역시 높은 편인데, 22%라는 비율은 가정폭력범죄 평균인 13%보다도 높지만, 지역 자체 평균인 20%보다도 높은 것으로 제주지역 자체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기관별로는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평균에 가장 가깝고, 아동보

호전문기관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제적 지원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주거 지원과 법률지원은 스마일센터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센터 자체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라.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아동학대범죄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제공이 높은 것으로 이는 범죄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업지원이나 현장지원, 신변보호 및 법률지원은 낮은 편인데 이러한 점은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경남, 제주지역에서 경제적 지원의 비율이 지역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지원은 강원, 경남, 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의 상반된 결과가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향후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현장지원 등은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회복프로그램은 충남에서, 상담서비스는 광주에서 아동학대범죄 평균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원기관별로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비율이 기관 자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은 각 지원기관별 자체 평균과 유사하였으며, 법률지원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체 평균 7%에 비하여 아동학대범죄만 13%로 매우 높게 확인된다.

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신변보호는 전체 평균보다 3%가 높아서 유의미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주거지원, 법률지원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취업지원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이러한 점 역시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범죄

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시도가 빈번하므로, 신변보호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행위 자체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에의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또는 의료지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전혀 없어서,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반대로 대전은 주거지원이 20%로 스토킹범죄 자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취업지원은 유독 인천지역이 스토킹범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지역 평균보다도 약간 높은 편이다. 회복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과 스토킹범죄 평균이 일치하며, 지역적으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학교폭력범죄의 경우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지원은 전체 평균보다 3%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폭력범죄에서 의료지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학교폭력의 신체위협 비중이 많은 것인지는 학교폭력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현장지원 등은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회복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 속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은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반면, 제주 지역은 유독 학교폭력에만 40%라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 지역은 경제적 지원의 지역 평균이 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은 그의 8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범죄 자체 평균인 14%보다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의료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평균이 5%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범죄에만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현장지원의 경우 부산지역이 17%로 학교폭력범죄 평균인 5%이 3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지역평균인 11%보다도 월등하게 높았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학교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향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관별 특색을 살펴보면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교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높았던 것에 비교되는 점이다. 의료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높은 비중이며, 기관 자체 평균보다도 4% 높게 나타났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상담소는 74%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자체 평균인 61%보다도 매우 높게 확인되었는 바, 상담소가 학교폭력범죄 영역에서 행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스마일센터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하여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법률지원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는 스마일센터 자체의 특성이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게서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V.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만족도

1. 설문 의도와 내용

문항 8부터 11까지는 사건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관하여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및 불만족의 원인 등 만족도에 관한 설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 8은 설문응답자인 지원기관 봉사자로서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질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고, 문항 9는 만일 만족도 조사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경제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제공조건의 까다로움, 접근성의 불편, 자원의 부족, 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저하 또는 기타 구체적인 이유의 직접 기재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항 10은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 외에 사항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복적인 응답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보완점 및 개선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항 10-1은 만일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들로 부터 항의나 이의제기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될 만한 사항을 11개를 제시하고 가장 많은 순서로 3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문항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느낀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이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11은 지원기관의 봉사자들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순위를 정하여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 항목에는 앞서 문항 7에서 제시하였던 서비스 항목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과 분리하여 범죄피해구조금을 항목으로 넣었고, 회복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와 구분하여 심리치유서비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법률지원과 구분하여 범죄피해자 형사조정 지원을, 주거지원과 구분하여 생활관 입소프로그램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 여부에 관하여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본 문항에서는 지원기관별 종사자의 만족도 상대비교는 하지 않았다. 기관별 만족도보다는 지역별 만족도가 문항 9번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원기관별 종사자의 지원 서비스의 편중된 형태를 7번 문항에서 확인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서비스의 특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도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족도 및 개선점의 확인을 통하여, 봉사자 및 범죄피해자가 지원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¹²⁶⁾

2. 보호·지원서비스에 대한 종사자의 만족도 조사

가. 전체 응답결과

사건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내용과 질에 관한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선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23%이고, 약간 만족한다는 답변은 35%로서 긍정적 평가가 58%에 해당하였다.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은 29%로 전체의 약 1/3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126) 이와 관련한 문헌으로는 김혜경, “통합적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연대성의 원리와 전환적 사법이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12, 141면 이하 참조.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조금만 만족한다는 답변은 11%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에 불과하였다. 특히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의 지역적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 1%, 경기 2%, 강원 4%, 광주 6% 였고,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로서 9%에 이르렀다.

다음은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표이다.

〈표 73〉 지역별 지원기관 봉사자 만족도 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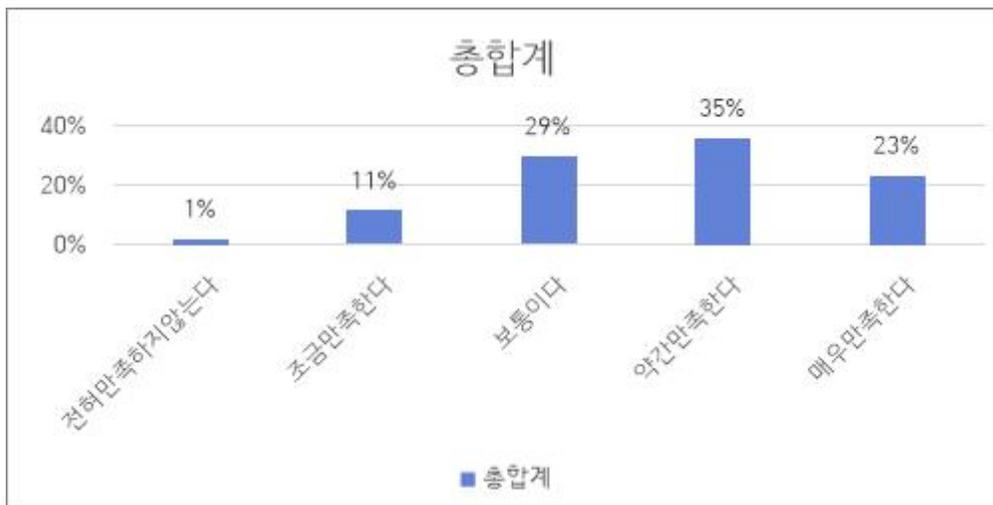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강원	2	7	12	21	11
경기	4	13	51	76	43
경남	0	5	19	16	26
경북	0	14	10	33	26
광주	1	2	5	4	4
대구	3	20	10	0	0
대전	0	0	10	4	0
부산	0	6	18	9	2
서울	5	50	92	129	82
울산	0	1	10	10	1
인천	0	0	7	4	19
전남	2	5	21	8	8
전북	0	3	11	14	14
제주	0	0	19	19	0
충남	0	0	13	42	18
충북	0	0	24	15	7
합계	17	126	332	404	261

지역별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답이 유일하게 50%를 상회하였다. 약간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 누적율도 인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지방이었다.

반대로 불만족의 측면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였고, 부정적 답변 누적율 역시 70%로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그 원인은 다음 문항인 9번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전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응답비율이다.

〈표 74〉 전체 만족도 조사 평균 응답률



이와는 별도로 문항 8-7에서는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그런데 전체 답변율과 지원서비스전반에 대한 답변율은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응답률에 관한 표이다.

〈표 75〉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0	0	3	0	1
경기	0	1	6	1	0
경남	0	0	3	0	0
경북	0	2	1	1	1
광주	0	0	0	0	0
대구	3	0	2	0	0
대전	0	0	0	0	0
부산	0	0	3	0	0
서울	1	4	14	0	0
울산	0	0	2	2	0
인천	0	0	1	0	3
전남	0	0	4	0	0
전북	0	0	0	2	0
제주	0	0	2	0	0
충남(세종)	0	0	2	8	3
충북	0	0	3	0	0
합계	4	7	46	14	8

응답을 하지 않은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지역 평균으로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이고, 부정적 응답률의 누적은 14%이다. 이는 전체 평균으로서 매우 불만족에 해당하는 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바, 우선 대구지역은 불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이동하였다.

반대로 서울은 전체 평균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이 26%에 불과하였지만, 지원서비스 전반에서의 보통이라는 답변은 74%로서, 전체 평균으로서 만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이 모두 보통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만족도에 긍정적인 답변은 전혀

없었다. 즉, 전체 평균은 구체적인 범죄별 응답의 평균값에 불과한 것이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의 만족도에 관하여 강원, 경기, 경북, 전북, 울산, 충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이나 지원과정 등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강력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봉사자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크게 줄었고, 대신 약간 만족한다는 답변이 증가하였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크게 차이가 없다. 다음은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봉사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지역별 응답률에 관한 표이다.

〈표 76〉 지역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 응답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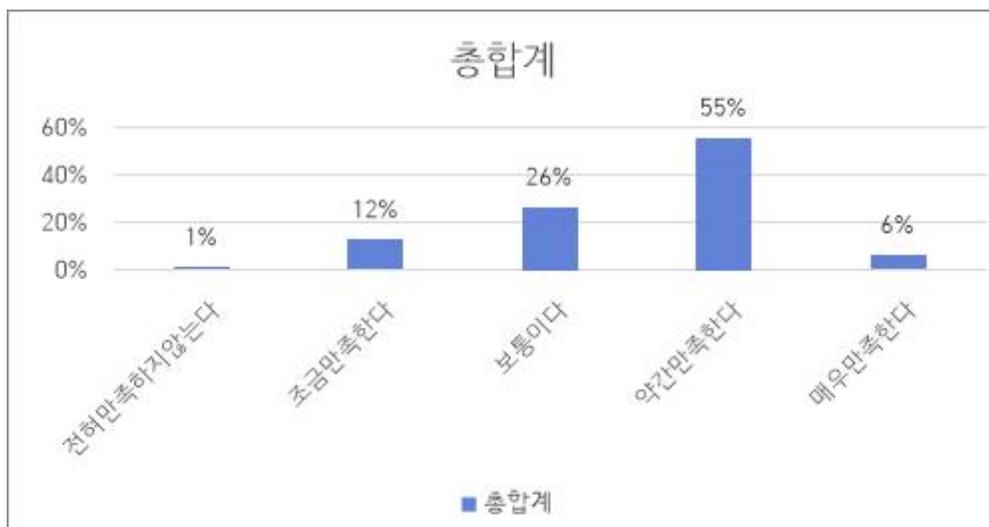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0	2	0	4	0
경기	1	2	3	14	1
경남	0	0	5	7	0
경북	0	2	0	8	0
광주	0	0	0	2	0
대구	0	3	2	0	0
대전	0	0	0	0	0
부산	0	2	3	0	0
서울	0	8	13	26	3
울산	0	0	3	0	0
인천	0	0	1	0	4

전남	0	0	4	4	0
전북	0	0	1	5	0
제주	0	0	1	6	0
총남(세종)	0	0	1	5	1
총북	0	0	3	4	0
총합계	1	19	40	85	9

강원지역은 전반적인 부정적 응답률이 전체 평균보다 두배 정도 높은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없었고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도 전혀 없었다. 부산지역도 부정적 응답이 두 배 이상 높아져서 약 40%가 보통보다 불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울산은 응답자 전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인천지역은 80%가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 서비스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불만족, 보통, 만족으로 대분한다면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77〉 강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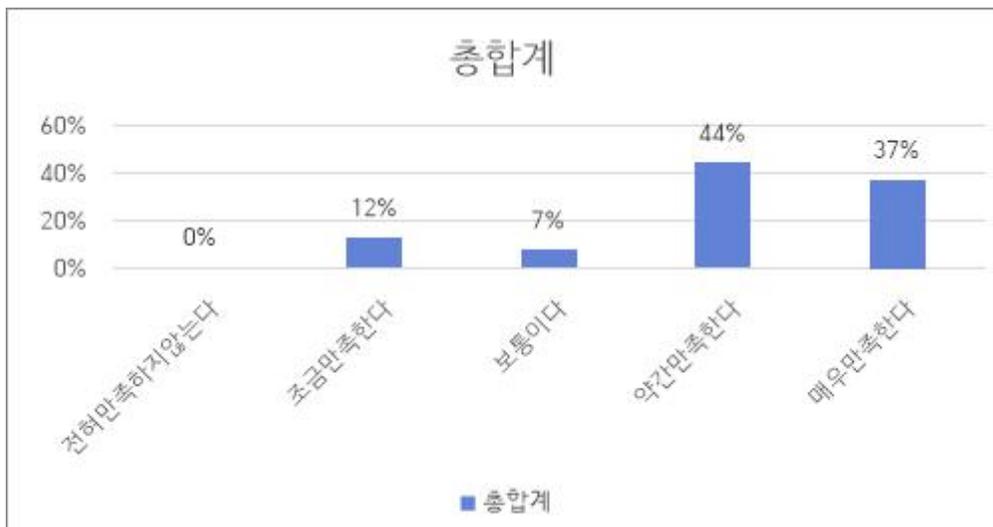
다. 성폭력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종사자의 만족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보통이라는 답변이 7%로 대폭 감소한 대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3%에서 37%로 증가하였고, 약간 만족한다는 답변도 35%에서 44%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 지역에서 없었다. 다만, 보통보다 낮다는 답변의 누적비율은 12%로 동일하였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의 경우 그동안 각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에 의하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종사자의 만족도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 만족도의 평균 비율이다.

〈표 78〉 성폭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지역이 80%였다. 특히 경남지역은 만족한다는 누적 답변율이 100%에 해당하여, 울산과 대전, 충북 및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종사자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전혀 없는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지역이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보통이라는 답변까지 누적율이 0%로 전반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정적 응답률의 측면에서는 역시 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광주와 부산이 67%에 해당하는 응답률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으로는 강원과 경북이 있다. 다음은 지역별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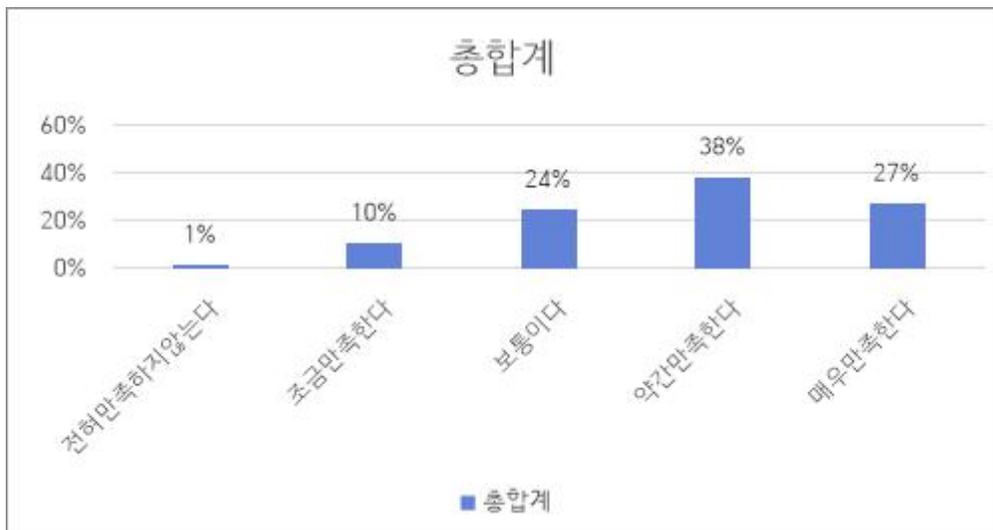
〈표 79〉 지역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0	3	0	4	1
경기	0	1	0	18	9
경남	0	0	0	1	6
경북	0	2	0	8	5
광주	0	2	0	0	1
대구	0	3	0	0	0
대전	0	0	0	2	0
부산	0	2	0	0	1
서울	0	6	8	19	20
울산	0	0	0	2	0
인천	0	0	1	0	4
전남	0	0	0	2	2
전북	0	0	0	2	3
제주	0	0	2	1	0
충남(세종)	0	0	0	6	3
충북	0	0	0	3	2
총합계	0	19	11	68	57

라. 가정폭력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과 매우 유사하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의 평균비율이다.

〈표 80〉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지역별로는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의 50%가 이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남, 강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제주 지역은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전혀 없다. 긍정적 답변의 누적율에 있어서는 제주 지역이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 100%였고, 다음으로 울산과 인천이 누적율 75%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답변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3%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문항 9에서 살펴보겠지만, 특히 광주지역은 서비스제공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서비스 제공조건의 문제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라는 답변의 비율은 전체 대비 1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응답자는 전원 100%는 이를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답변하였다.

부정적 답변 중 불만족 또는 조금밖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경우 대구 지역은 80%가 이에 응답하였고, 그 외에 경북, 부산, 서울지역의 종사자들이 이를 선택하였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제공 관련 종사자의 지역별 만족도이다.

〈표 81〉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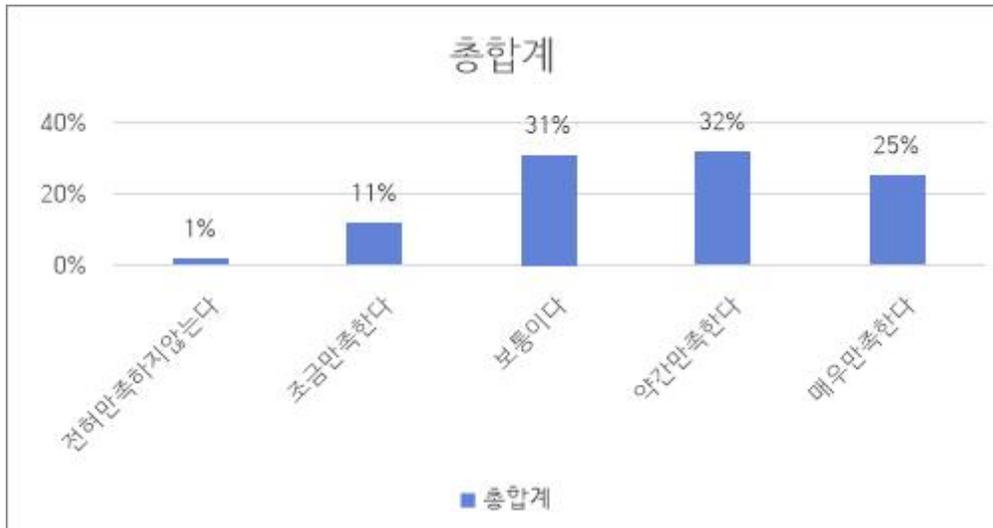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0	0	1	5	4
경기	1	3	8	14	9
경남	0	0	4	3	6
경북	0	2	3	5	5
광주	1	0	1	1	0
대구	0	4	1	0	0
대전	0	0	3	0	0
부산	0	1	3	1	1
서울	0	10	6	27	18
울산	0	0	1	2	1
인천	0	0	1	1	2
전남	0	0	4	2	2
전북	0	0	3	2	3
제주	0	0	0	4	0
충남(세종)	0	0	4	6	1
충북	0	0	5	2	1
총합계	2	20	48	75	53

마.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는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전체 평

균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다소 상승하였고, 약간 만족한다는 답변은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불만족과 관련한 응답은 비율 면에서 변함이 없다.

〈표 82〉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의 지역별 특색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 등과 유사하게 인천지역이 75%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지역 평균인 63%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그 외에는 50%를 넘는 지역은 없다.

약간 만족한다는 긍정적 답변의 누적비율로는 충남 지역이 81%로 가장 높았고, 인천 이외에 경북지역이 73%이다. 반대로 대구, 대전 지역은 긍정적 답변이 전혀 없었고, 광주지역도 누적비율 25%, 충북지역 29%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영역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0%로 6%에 해당하는 경기지역과 함께 두 지역에서만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도 80%의 종사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대구 자체 평균 61%보다도 매우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에 관한 표이다.

〈표 83〉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1	1	3	3	2
경기	2	1	13	9	10
경남	0	1	4	2	6
경북	0	2	2	6	5
광주	0	0	2	0	1
대구	0	4	1	0	0
대전	0	0	3	0	0
부산	0	0	3	3	0
서울	0	10	14	30	15
울산	0	1	1	2	0
인천	0	0	1	0	3
전남	0	2	4	0	2
전북	0	2	1	2	3
제주	0	0	5	3	0
충남(세종)	0	0	2	4	5
충북	0	0	5	2	0
총합계	3	24	64	6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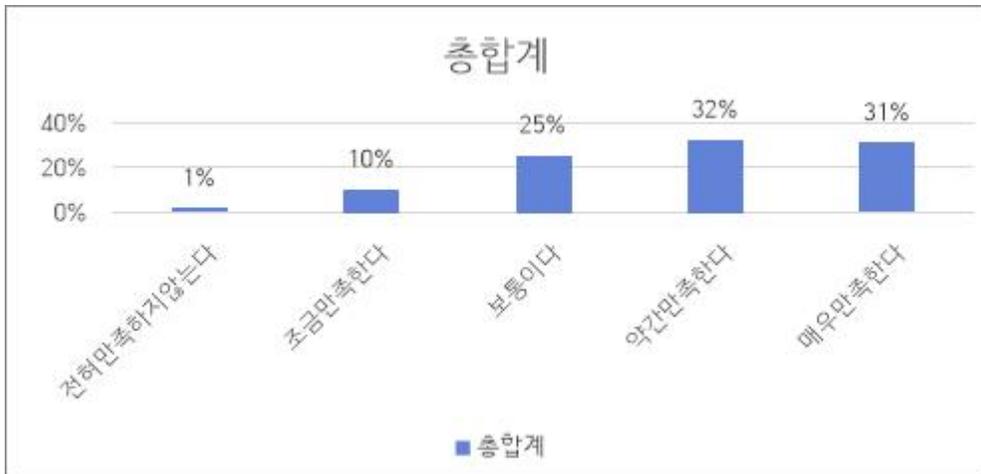
바. 스토킹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스토킹범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변보호 지원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신변보호의 경우 수사기관의 동행, 법정동행이나 CCTV설치 등의 형태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는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전체 평균 23%보다 매우 높은 31%라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에 해당하는 비율은 1% 감소하였다. 다

음은 스토킹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84〉 스토킹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다음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펴보면 우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던 강원지역은 0%로 전혀 없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지역 평균 21%보다 높은 30%에 해당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나 대구, 광주와 같은 불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있었던 지역도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없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5%이고 불만족이라고 하는 누적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전남의 경우 9번 문항의 불만족 원인에 대하여는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답변에 100% 일치하였는바, 스토킹범죄의 불만족 원인도 접근성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대구의 경우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 평균 9%였지만, 스토킹범죄의 서비스에서는 0%였고, 다만 만족한다는 답변도 0%에 해당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인천이었지만, 지역 평균으로서 매우 만족이 63%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는 50%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의미하게는 경북지역이 지역 평균 31%가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지역 평균으로서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37%로서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다음은 각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만족도 비교표이다.

〈표 85〉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0	1	2	4	3
경기	0	2	7	16	10
경남	0	2	2	3	6
경북	0	2	1	4	8
광주	0	0	1	1	1
대구	0	3	2	0	0
대전	0	0	1	2	0
부산	0	1	3	2	0
서울	1	6	15	17	23
울산	0	0	2	2	0
인천	0	0	1	1	2
전남	2	2	2	0	2
전북	0	1	2	1	2
제주	0	0	5	3	0
충남(세종)	0	0	2	7	2
충북	0	0	3	2	3
총합계	3	20	51	65	62

사. 학교폭력범죄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학교폭력범죄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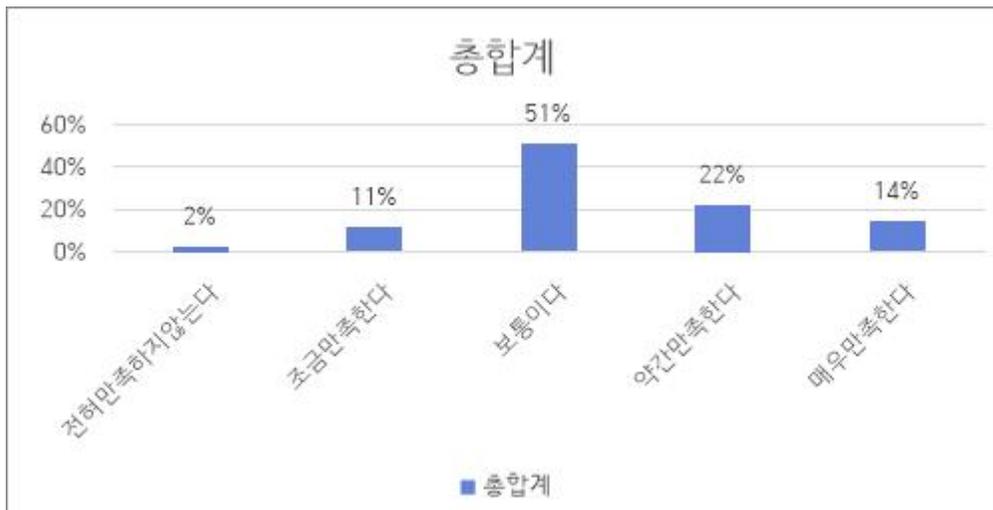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매우 만족이 전체 평균이 23%임에 반하여 학교폭력은 14%로 유의미하게 낮았고, 약간 만족한다는 답변도 전체 평균 35%보다 낮은 2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평균 29%보다 매우 많은 51%이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의 답변도 1% 증가하였다. 특히 보통이라는 답변이 50%가 넘는 범죄군은 학교폭력범죄가 유일하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20%를 넘지 않는 범죄군에는 6%인 강력범죄가 있지만, 강력범죄는 긍정답변 누적율이 61%임에 비하여 학교폭력범죄는 3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매우 만족의 비율이 스토킹범죄가 31%, 성폭력범죄가 37%인 점과 비교한다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해당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설문 9의 기타 응답 중에서는, 학교폭력은 살인, 강도,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지원과 같은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다분하며, 현재 제도상 개입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음은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 86〉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



다음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20%로, 지역 평균 4%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 외에 서울이 전혀 만족하지

못함이 1%임에 비해 학교폭력범죄는 5%로 역시 5배에 이르고 있다.

매우 만족의 비율은 평균이 낮은 점에서도 5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혀 없으며, 다만 광주지역이 50%라고 답변하였다.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률이 전혀 없는 지역도 강원,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제주 등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9 이하의 질문들은 특정 범죄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반적인 개선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학교폭력범죄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만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학교폭력범죄에 대한 지역별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에 관한 표이다.

〈표 87〉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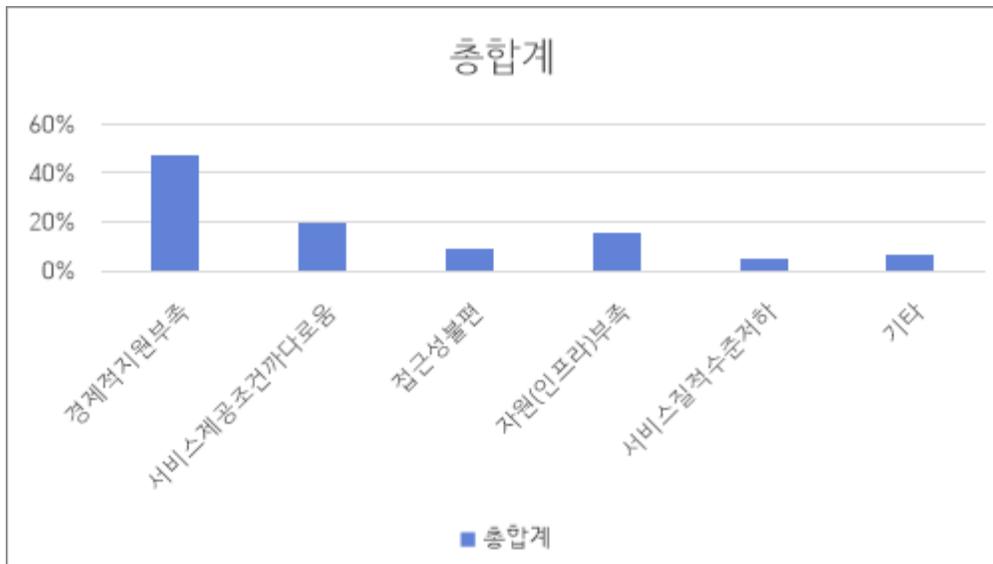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조금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강원	1	0	3	1	0
경기	0	3	14	4	4
경남	0	2	1	0	2
경북	0	2	3	1	2
광주	0	0	1	0	1
대구	0	3	2	0	0
대전	0	0	3	0	0
부산	0	0	3	3	0
서울	2	5	22	10	3
울산	0	0	1	0	0
인천	0	0	1	2	1
전남	0	1	3	0	0
전북	0	0	4	0	3
제주	0	0	4	2	0
충남(세종)	0	0	2	6	3
충북	0	0	5	2	1
총합계	3	16	72	31	20

3. 종사자 불만족 원인

문항9는 문항 8의 중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관하여 응답자인 종사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거나 다소 불만족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에서는 경제적지원 부족, 서비스 제공조건의 까다로움, 접근성 불편, 자원(인프라) 부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주관식 항목을 두었다. 다음은 그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표 88〉 종사자 불만족 원인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이었다. 전체 47%에 달하는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이를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제공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였으며, 자원(인프라) 부족이라고 본 응답이 15%에 달하였다. 그 외에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본 경우는 9%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응답은 4%에 불과하였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지원기관간 또는 지원제도간의 연계 및 협력의 부족이 문제

라고 본 경우도 있었고, 지속적인 후속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은 살인, 강도,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지원과 같은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다분하며, 현재 제도상 개입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별 불만족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9〉 지역별 서비스 종사자 불만족 원인

	경제적 지원부족	서비스제공 조건까다로움	접근성불편	자원(인프라) 부족	서비스질적 수준저하	기타
강원	2	1	0	1	0	0
경기	5	0	0	0	0	1
경남	0	1	0	0	0	1
경북	1	0	0	1	0	0
광주	0	2	0	0	0	0
대구	1	1	0	2	0	0
대전	0	0	0	0	0	0
부산	3	0	0	0	0	0
서울	7	2	1	3	2	1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전남	0	0	2	0	0	0
전북	2	1	0	0	0	0
제주	0	0	0	0	0	0
충남	1	1	0	0	0	0
충북	0	0	1	0	0	0
합계	22	9	4	7	2	3

부산은 응답자 전원이 경제적 지원 부족을 불만족의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경기

역시 기타 답변을 제외한 전원이 경제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광주 지역은 전원이 서비스제공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충북과 전남 지역은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자원 또는 인프라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지역은 경북, 대구는 응답자 절반이,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과 서울이 있었다. 서비스 수준이 질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한 지역은 유일하게 서울이었고, 응답자의 13%가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는 경제적 지원부족, 서비스제공 조건의 까다로움, 자원부족을 원인으로 보았다. 경기 지역은 경제적 지원부족을, 경남지역은 서비스제공조건의 까다로움을, 경북지역은 경제적 지원부족과 자원 부족을, 광주는 서비스제공조건의 까다로움을, 대구는 자원 부족, 경제적 지원부족, 서비스제공조건의 까다로움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부산은 경제적 지원부족을, 전남과 충북은 접근성 불편을, 전북과 충남은 경제적 지원부족과 서비스 제공조건의 까다로움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서울 지역은 모든 항목을 그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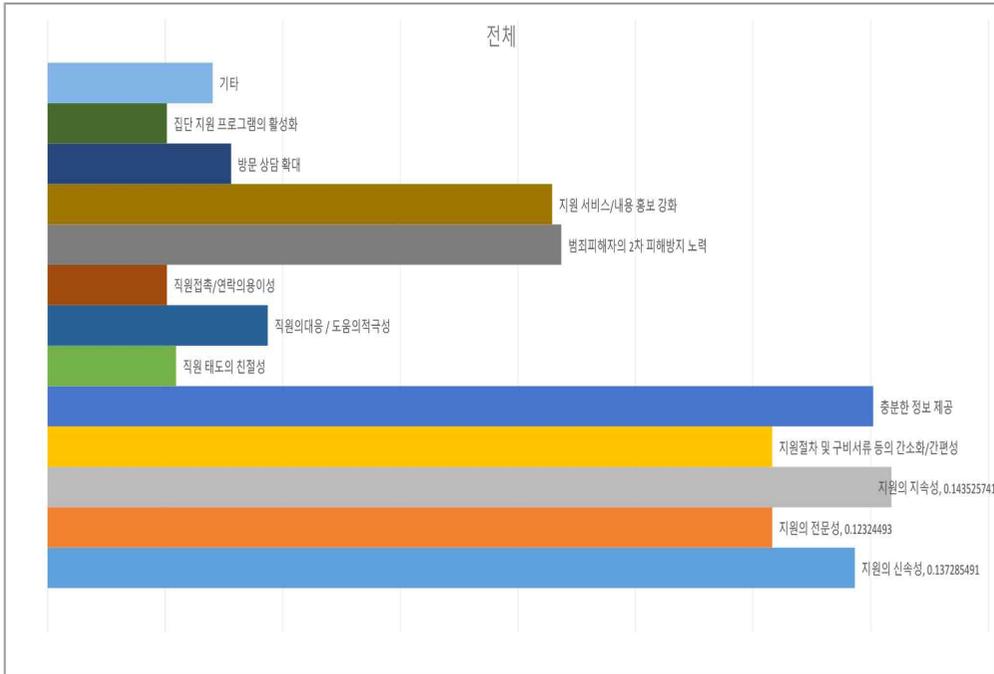
불만족의 원인으로 많은 응답자가 지목한 순서가 개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개선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4.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설문 10은 중대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1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중복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항목에는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전문성, 지원의 지속성,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간편성, 서비스 내용이나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지원의 대응과 도움의 적극성, 직원의 접촉이나 연락의 용이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 등을 비롯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지원 서비스나 내용에 관한 홍보활동의 강화, 방문 상담의 확대, 집단적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항목의 선택에는 순위를 두지 않고 중복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두었다.

이에 대한 전체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 90〉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가장 많은 응답은 지원의 신속성과 지원의 지속성 및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각각 14%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원의 신속성은 문항 3부터 6까지 각 단계별 소요 기간을 통하여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최대 5주 이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원의 지속성은 문항 9에서 불만족에 관한 기타 응답에서도 제시되었던 문제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지원의 내용이나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역시 앞선 신속성·지속성과 더불어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지원의 전문성과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 및 간편성이었고, 응답자의 12%가 이에 동의하였다. 지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종사자의 교육문제와 종사자의 직무상 스트레스의 해소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부분이기도 하며, 후술하는 심층면접에서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타인의 조력이 없이는

서류 등의 구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불충분은 지원의 신속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외에는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의 방지와 지원서비스 내용에 관한 홍보의 강화가 9%에 달하였다. 2차 피해의 방지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 노출 등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지원 내용 및 서비스에 관한 홍보의 강화란 범죄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내용의 설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포함된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각 관련기관의 긴밀한 연계지원, 각 관련기관의 유기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절차 및 지원, 경제적 지원의 강화, 국가구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단위 청사별로 설립하고 해당 청사별로 공익법무관이 상주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이 있었다. 또한 경제적 지원금액이나 내용이 홍보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생계비, 이사비 등 실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제기된 문제로서, 물가상승률이나 현실적인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으로 고정된 경제적 지원금의 현저한 부족에 대한 개선요청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나 유가족 중에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장래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기관 내부의 문제로서 지원기관 직원의 충원, 인력과 예산부족의 개선, 자원의 확대, 충분한 자원의 확보와 정책적 지원의 확대 등을 거론하였고, 전방위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제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직원의 교육문제와 전문성을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참여의지를 이끌어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답변 역시, 직원의 전문성과 교육문제와 결부된다.

이러한 개선안에 대한 지역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91〉 지역별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응답수치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전문성	지원의 지속성	간소화 / 간편성	충분한 정보 제공	직원의 친절성	대응 / 도움의 적극성	연락의 용이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지원 서비스 / 내용 홍보 강화	방문 상담 확대	집단 지원 프로그램	기타
강원	8	5	5	0	4	1	1	0	1	2	0	0	0
경기	18	14	15	7	13	2	4	2	8	9	7	4	6
경남	3	9	7	4	2	1	3	0	0	2	0	0	0
경북	7	10	7	5	5	3	2	1	6	3	1	1	1
광주	2	1	2	1	2	0	0	0	0	0	0	0	0
대구	2	0	3	0	3	0	0	0	0	3	0	1	2
대전	0	0	0	1	0	0	0	0	0	0	0	0	2
부산	2	0	1	1	5	1	0	1	2	1	1	0	0
서울	28	23	35	36	26	0	7	4	22	17	7	3	6
울산	2	0	1	0	0	0	0	0	0	0	0	0	1
인천	2	2	0	2	2	1	1	0	1	2	0	0	0
전남	2	0	3	2	3	2	2	2	3	0	2	2	0
전북	1	0	2	4	4	0	0	0	2	5	0	0	0
제주	1	5	5	4	6	0	0	0	7	5	1	1	0
충남	4	7	2	7	9	0	1	1	2	5	1	1	0
충북	6	3	4	5	6	3	3	2	2	1	0	0	0
전체	88	79	92	79	90	14	24	13	56	55	20	13	18

지원의 신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은 울산이었고, 지원의 전문성에 관하여는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지원의 지속성에 관하여는 광주, 울산 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하였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개선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지역은 부산으로 33%, 즉 1/3이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직원 접촉이나 연락

의 용이성, 집단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2%에 불과하여 그다지 문제되는 개선방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본 지역은 제주로서, 앞선 설문 7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신변보호와 법률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았던 제주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들의 항의 또는 이의제기 사항

문 10-1은 중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나 이의제기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각 항목별로 순위를 두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이란 문항 9 및 문항 10의 세목과 관련이 있으며,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전문성, 지원의 지속성,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간편성, 서비스 내용이나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지원의 대응과 도움의 적극성, 직원의 접촉이나 연락의 용이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 등을 비롯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지원 서비스나 내용에 관한 홍보활동의 강화, 방문 상담의 확대, 집단적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전체 응답률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92〉 피해자 항의 또는 이의제기 사항 응답수치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전문성	지원의 지속성	간소화 / 간편성	충분한 정보 제공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직원 도움의 적극성	직원 연락의 용이성	범죄피 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지원 서비스 / 내용 홍보 강화	방문 상담 확대	집단 지원 프로 그램
강원	3	0	9	3	7	0	0	1	4	2	0	0
경기	20	2	17	17	13	1	2	0	6	6	3	0
경남	4	0	6	6	4	0	0	0	1	1	0	0
경북	9	0	4	9	7	0	0	0	3	0	1	0
광주	2	0	1	2	2	0	0	1	0	0	0	0

대구	4	0	3	3	0	0	0	0	3	0	0	0
대전	1	0	0	3	3	0	0	0	0	2	0	0
부산	2	0	3	2	4	0	1	0	2	0	0	0
서울	33	6	36	33	21	3	12	5	16	13	2	1
울산	2	0	0	4	0	0	0	0	0	0	2	0
인천	2	0	4	4	2	0	0	0	0	3	0	0
임시	0	0	0	0	0	0	0	1	0	0	0	2
전남	4	0	4	4	4	0	0	0	2	2	0	0
전북	0	0	5	5	3	0	0	2	2	1	0	0
제주	1	3	6	2	6	0	0	0	3	3	0	0
충남	7	0	4	8	9	3	0	0	4	1	2	1
충북	4	0	2	3	5	0	0	0	4	3	0	0

전체적으로는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에 대한 항의가 17%로 가장 많았고, 지원의 지속성이 16%, 지원의 신속성이 15%로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수사절차나 진행상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항의가 14%로 네 번째 순위였다.

반면에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집단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이의제기는 단 1%에 불과하였고, 직원대응의 적극성, 직원 접촉의 용이성과 방문상담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가 2%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하였다.

이는 문항 10번과 비교해 보면, 봉사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사안과 실제 항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항 10에서 봉사자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과의 일치도가 높은 부분은 충분한 정보제공,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지속성 부분으로, 이 부분은 양자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 진행상황과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지속성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에 대하여는 항의를 받은 비율은 전체 17%이고, 봉사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2%였다. 이

는 봉사자가 이를 문제점이라고 인식한 것과는 달리 범죄피해자 입자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봉사자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2%로 높은 편이었으나, 그에 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비율은 단 2%에 불과하였다. 이는 봉사자 스스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크게 문제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들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각 지역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항의나 이의제기 중에서 1순위로 가장 많았다고 봉사자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관련 사항이다.

〈표 93〉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1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전문성	지원의 지속성	간소화 / 간편성	충분한 정보 제공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직원 도움의 적극성	직원 연락의 용이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지원 서비스 / 내용 홍보 강화	방문 상담 확대	집단 지원 프로그램
강원	1	0	4	2	1	0	0	0	2	0	0	0
경기	5	1	11	7	6	0	0	0	2	0	0	0
경남	0	0	6	0	2	0	0	0	0	0	0	0
경북	6	0	3	1	4	0	0	0	0	0	0	0
광주	2	0	0	0	1	0	0	0	0	0	0	0
대구	3	0	0	1	0	0	0	0	1	0	0	0
대전	1	0	0	2	0	0	0	0	0	0	0	0
부산	2	0	2	0	2	0	0	0	0	0	0	0
서울	13	2	10	17	7	1	3	0	7	4	1	1
울산	1	0	0	3	0	0	0	0	0	0	0	0
인천	2	0	1	1	0	0	0	0	0	1	0	0
전남	2	0	2	2	0	0	0	0	0	2	0	0
전북	0	0	1	2	3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1	0	0	0	0	2	0	0
부산	0	0	1	2	1	0	1	0	0	0	0	0
서울	10	3	15	13	6	1	4	1	3	4	0	0
울산	1	0	0	1	0	0	0	0	0	0	0	0
인천	0	0	2	1	1	0	0	0	0	1	0	0
전남	0	0	2	2	2	0	0	0	0	0	0	0
전북	0	0	2	3	0	0	0	0	0	1	0	0
제주	0	0	3	1	3	0	0	0	1	0	0	0
충남	2	0	1	3	2	0	0	0	4	1	0	0
충북	2	0	1	0	1	0	0	0	2	1	0	0
합계	29	4	36	45	30	1	6	2	14	12	2	1

2순위에서는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가 21%로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17%였다. 2순위의 이의제기 역시 1순위 또는 전체 이의제기 비율과 유사하다. 다만, 2순위 있어서는 신상정보의 노출 등의 방지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노력과 지원 서비스나 내용에 대한 홍보의 부족에 대한 항의가 6%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2차 피해방지 노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체 평균에서도 6%를 차지하였지만, 서비스 등의 홍보문제는 전체에서는 3%였지만, 2순위에서는 6%로 비율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3순위의 이의제기에 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95〉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3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지원의 신속성	지원의 전문성	지원의 지속성	간소화 / 간편성	충분한 정보 제공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직원 도움의 적극성	직원 연락의 용이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지원 서비스 / 내용 홍보 강화	방문 상담 확대	집단 지원 프로그램
강원	0	0	3	1	2	0	0	0	1	2	0	0
경기	6	0	3	3	2	1	1	0	3	4	1	0

경남	3	0	0	2	0	0	0	0	1	1	0	0
경북	2	0	0	2	2	0	0	0	1	0	1	0
광주	0	0	1	0	0	0	0	1	0	0	0	0
대구	0	0	0	2	0	0	0	0	2	0	0	0
대전	0	0	0	1	2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1	0	0	0	2	0	0	0
서울	10	1	11	3	8	1	5	4	6	5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0	2	0
인천	0	0	1	2	1	0	0	0	0	1	0	0
전남	2	0	0	0	2	0	0	0	2	0	0	0
전북	0	0	2	0	0	0	0	2	2	0	0	0
제주	0	0	0	1	2	0	0	0	2	3	0	0
충남	1	0	2	4	1	3	0	0	0	0	2	0
충북	1	0	0	0	1	0	0	0	2	2	0	0
합계	25	1	23	21	24	5	6	7	24	18	7	0

6.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봉사자 인식

문항 11은 봉사자가 실무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 법률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치유서비스, 범죄피해자 형사조정 지원, 현장지원, 회복프로그램 지원, 생활관 입소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의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순위를 3순위까지 그 중요도에 차별을 두고 응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은 봉사자들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 1순위의 서비스 비율이다.

〈표 96〉 1순위로 필요성을 인식한 서비스 응답수치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 구조금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	심리 치유	형사 조정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강원	1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24	1	1	0	0	4	0	1	3	0	0	1
경남	13	0	0	0	0	0	0	0	0	0	0	0
경북	11	0	0	0	0	0	2	0	2	0	0	0
광주	3	0	0	0	0	0	0	0	0	0	0	0
대구	1	0	1	0	0	0	0	0	0	0	0	3
대전	0	0	3	0	0	0	0	0	0	0	0	0
부산	3	0	2	0	0	0	1	0	0	0	0	0
서울	19	3	10	0	1	10	5	10	9	0	1	2
울산	0	0	2	0	0	0	1	1	0	0	0	0
인천	2	1	0	0	0	0	2	0	0	0	0	0
전남	8	0	0	0	0	0	0	0	0	0	0	0
전북	6	0	2	0	0	0	0	0	0	0	0	0
제주	2	0	1	0	0	1	1	2	0	0	0	0
충남	8	0	3	0	0	0	0	2	0	0	0	0
충북	6	0	1	0	0	1	0	0	0	0	0	0
합계	116	5	26	1	1	16	12	16	14	1	1	6

봉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서비스 역시 경제적 지원으로 전체의 53%가 이를 우선순위로 보았다. 특히 강원, 경남, 광주, 전남 지역은 봉사자 전원이 이를 시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지원으로 대전 지역은 전원이 의료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외에는 신변보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7%였고, 법률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였다. 그러나 주거지원, 취업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조정지원, 생활관 입소 프로그램의 운영, 기타 사회적 지원이라고 답

한 응답자는 전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비율은 앞선 9번 및 10번 문항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다음으로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97〉 2순위로 필요성을 인식한 서비스 응답수치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 구조금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신변 보호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	심리 치유	형사 조정	현장 지원	회복 프로그램
강원	0	0	1	4	1	0	2	1	1	0	0	0
경기	2	6	12	0	0	0	8	2	4	0	0	1
경남	0	1	8	0	0	0	3	0	1	0	0	0
경북	2	1	4	0	1	1	3	2	0	0	0	0
광주	0	0	1	0	0	0	1	0	1	0	0	0
대구	0	0	1	0	0	0	0	2	1	0	0	0
대전	1	0	0	0	0	2	0	0	0	0	0	0
부산	2	0	3	0	0	0	1	0	0	0	0	0
서울	13	1	7	2	0	7	13	13	9	2	0	1
울산	4	0	0	0	0	0	0	0	0	0	0	0
인천	3	0	2	0	0	0	0	0	0	0	0	0
전남	0	2	2	0	0	0	2	0	2	0	0	0
전북	2	0	5	0	0	0	0	0	0	0	0	1
제주	0	1	0	0	0	0	4	1	2	0	0	0
충남	1	0	2	1	0	1	7	0	1	0	0	0
충북	1	1	4	0	0	0	1	0	1	0	0	0
합계	31	13	52	7	2	11	45	21	23	2	1	3

전반적으로는 의료지원이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전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1순위에서는 크게 지목하지 않았던 법률지원을 2순위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수반하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심리치유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약 10%를 선회하고 있다.

이처럼 봉사자가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서비스 항목은 앞선 문항 10의 범죄피해자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항의 또는 이의제기하였던 서비스 유형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의 모색에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VI. 지원기관 예산지원 및 활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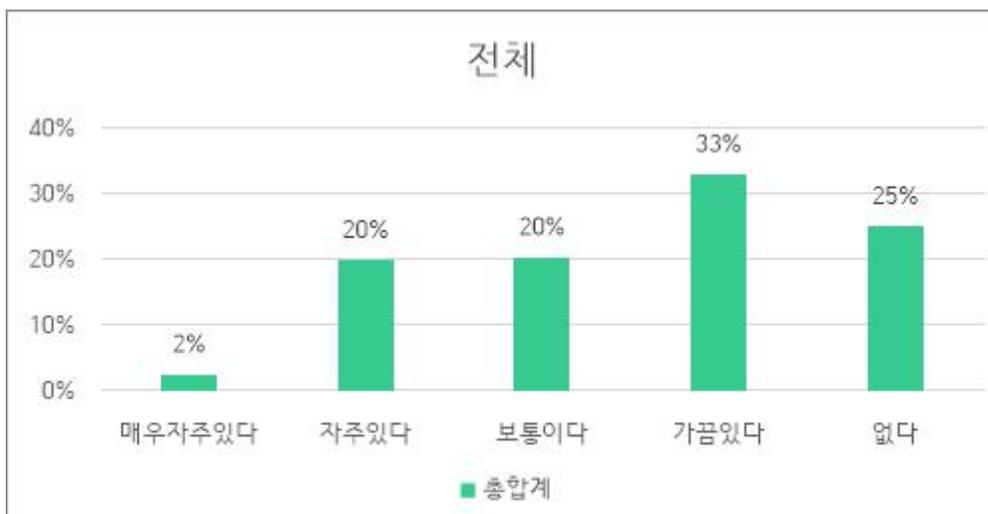
1. 12번 설문 목적과 내용

설문지 12번은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산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는 각 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업수행에 있어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하여 사업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다. 세부 질문 항목으로 ① ‘매우 자주있다’, ② ‘자주있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있다’, ⑤ ‘없다’ 순으로 한 항목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13명의 응답자 중 ① ‘매우 자주있다’가 5명(약 2%), ② ‘자주있다’가 42명(약 20%), ③ ‘보통이다’가 43명(약 20%), ④ ‘가끔있다’가 70명(약 33%), ⑤ ‘없다’가 53명(약 25%)으로 나타났으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8〉 12번 전체 응답자 현황

항 지역	①	②	③	④	⑤	계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	보통이다	가끔있다	없다	
전체	5(2%)	42(20%)	43(20%)	70(33%)	53(25%)	213(100%)

〈표 99〉 12번 전체 응답자 현황 그래프



가. 기관별 응답자 현황

12번 질문은 예산 부족 정도와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부족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기관별로 보고자 하였다. ① ‘매우 자주있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명(약 1%), 스마일센터 응답자 35명 중 2명(약 6%), 아동보호전문기관 1명(약 7%)으로 전체 중 5명(약 2%)이다. ② ‘자주있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1명(약 14%), 스마일센터 9명(약 26%), 상담소 6명(35%), 아동보호전문기관 6명(약 40%)으로 전체 중 42명(약 20%)이다. ③ ‘보통이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명(약 22%), 스마일센터 8명(약 23%), 심리상담소 1명(약 6%), 아동보호전문기관 2명(약 13%)으로 전체 중 43명(약 20%)이다. ④ ‘가끔있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명(약 36%), 스마일센터 4명(약 11%), 상담소 9명(약 53%), 아동보호전문기관 4명(약 27%)으로 전체 중 70명(약 33%)이다. ⑤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8명(약 26%), 스마일센터 12(약 34%), 상담소 1명(약 6%), 아동보호전문기관 2명(약 13%)으로 전체 중 53명(약 25%)이다.

〈표 100〉 12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명)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	보통이다	가끔있다	없다	
범피센터	2	21	32	53	38	146
심리상담소	0	6	1	9	1	17
스마일센터	2	9	8	4	12	35
아전기관	1	6	2	4	2	15
계	5	42	43	70	53	213

나. 지역별 응답자 현황

질문 12번의 지역별 응답자 현황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예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질문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01〉 12번 지역별·항목별 응답자 현황

지역	항	①	②	③	④	⑤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	보통이다	가끔있다	없다
강원		0	2	2	6	0
경기		2	7	7	8	10
경남		0	1	2	5	5
경북		0	4	4	3	4
광주		0	0	1	0	2
대구		0	2	0	3	0
대전		0	0	0	0	3
부산		0	0	2	0	4
서울		2	20	13	24	11
울산		0	0	3	1	0
인천		0	2	0	2	1

전남	0	2	2	4	0
전북	1	0	1	4	2
제주	0	1	0	1	6
충남(세종)	0	1	3	5	4
충북	0	0	3	4	1
총합계	5	42	43	70	53

문 12번의 응답자 비율을 종합하면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지 못한 사례에서 ①(매우 자주있다)~④(가끔있다)항까지 응답한 수가 전체 응답자 수 213명 중 160명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범죄피해자원센터 설문 응답자 146명 중 108명(약 74%)이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①(매우 자주있다)~④(가끔 있다)와 같이 응답하였고, 전체설문 대상 213명 중 약 51%를 차지하였다. 심리상담소의 경우 자체 응답자 수 17명 중 16명(94%)이 예산이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①‘매우 자주있다~④’가끔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수 213명 중 16명으로 약 8%를 차지한다. 스마일센터의 경우 자체 응답자 35명 중 23명(약 66%)이 예산이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①‘매우 자주있다~④’가끔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수 213명 중 23명으로 약 11%를 차지한다.

2. 기관별 예산 적정성 진단

12번 문항의 설문 분석은 “예산상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현황, 가. 기관별 응답자 현황, 나. 지역별 응답자 현황, 다. 종합 분석 순서로 검토하였다.

‘설문 내용과 목적’에 관하여 기관별 응답자 현황에서와 같이 “예산상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실무자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그 결과 ① ‘매우 자주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213명 중 5명

(2%)에 불과하여 비교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② ‘자주있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있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213명 중 155명으로 전체 대비 약 7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①~④항까지 응답한 비율은 전체 75%로 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자주 또는 가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표 4)와 같이 전체 213명 중 53명으로 약 25%이다.

위의 설문 분석 결과와 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느끼는 예산 상황은 대체로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대전의 경우 ① ‘매우 자주있다’, ② ‘자주있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있다’, 중 하나의 응답을 한 사람이 없었으며, 제주는 응답자의 8명 중 2명 (25%) 만이 ①~④에 해당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의 경우 자체 예산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범죄 발생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 외 응답자 전국 평균 75% 이상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피해자 지원 예산 부족 현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적 영향보다는 전국적인 유사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 분석에서는 각 응답 기관별 예산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신체·생명의 침해를 받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응답자 148명 중 108명(약 51%)이 ① ‘매우 자주있다’, ② ‘자주있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자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담소의 경우 17명의 응답자 중 16명(94%)이 위의 ①~④에 해당하는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법무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받는 스마일센터(심리상담 전문기관)는 35명 중 23명(66%)이 ①~④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사설 상담소의 운영 실태와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15명 중 13명(87%)이 ①~④에 해당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의 업무 특성상 아동의 심리상담, 학대 부모의 심리상담 및 교육, 원가정 지원사업 등 영역이 매우 다양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적·비경제적 통합지원을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자체 회비 등으로 전국 센터가 연간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자체 마련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 폭력범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범죄, 교육부의 학교폭력범죄 등 통합지원을 하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실무자인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①~④에 해당하는 예산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일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주로 비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예산상 제약을 보다 많이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담소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상담소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없이 스스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담소로 구분되며 국가 보조를 받는 상담소의 경우에도 운영비 일부 정도에 그치고 어려운 실정이나 사설 상담소의 경우 대부분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효과적인 예산확보 방안

가. 설문 의도와 내용

12-1번 질문은 12번 질문과 연계된 질문으로 전체 응답자 213명 중 160명(약 75%)이 피해자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기관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12-1에서는 기관의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안을 물었다. 세부 질문 항목으로는 ① 정부 예산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민간후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③ 민간후원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 ④ 법무부가 지원금을 센터의 실적에 따라서 분배하여야 한다. ⑤ 실적에 따른 예산분배는 센터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⑥ 회계나 업무감독을 법무부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센터의 독립성을 해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을 요약하면 ①~③항은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후원 확대 중 어떤 예산이 우선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이

고, ④~⑥항은 현행 법무부가 보조하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나. 설문분석 결과

12-1번 질문은 전체 213명이 응답하였으며, 세부 비율로서, ①항은 88명(41%), ②항은 90명(42%), ③항은 3명(2%), ④항은 7명(3%), ⑤항은 24명(11%), ⑥항은 1명(0%)이다.

기관별로는 상담소는 전체 응답자 17명 중 ①항 4명(24%), ②항 13명(76%), 나머지는 0명(0%)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6명(17%), ②항 6명(17%), ③항 0명(0%), ④항 2명(6%), ⑤항 20명(57%), ⑥항 1명(3%)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6명(46%), ②항 6명(46%), ③항 1명(8%)이다.

그 외 12-1번의 지역별 응답자 수 및 지역별 비율분석은 이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 전체 분석과 기관별 분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설문 의도 및 전체·기관별 분석 결과와 같이 부족한 피해자 지원 예산확보 방안은 ①~③항의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후원 확대 방안 중 ②항(보기 2)의 '지자체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가 ①~③항 전체 응답자 수 181명 중 90명(50%)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①항(보기 1) '정부 예산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민간후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수가 88명(49%)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③항(보기 3) '민간후원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수는 3명(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 예산 확대 방안에 관한 응답자의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로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피해자 지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고 현재에도 관련 예산이 정부 보조보다 지자체 보조가 더 많으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④~⑥항(보기) 질문은 현행 법무부가 보조하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12-1항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④~⑥항 대상 응답자 수 34명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위는 26명(76%)

이 ⑤ ‘실적에 따른 예산분배는 센터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위는 7명(21%)만이 ④ ‘법무부가 지원금을 센터의 실적에 따라서 분배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실적에 따른 예산 배분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실적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수보다 약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과 위주 사업수행 방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명(3%)은 ⑥ ‘회계나 업무감독을 법무부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센터의 독립성을 해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2〉 12-1번 지역별·항목별 응답자 현황

구 분	보기1	보기2	보기3	보기4	보기5	보기6	계
강원	7	3	0	0	0	0	10
경기	12	17	0	3	3	0	35
경남	5	8	0	0	0	0	13
경북	9	4	1	1	1	0	16
광주	2	1	0	0	0	0	3
대구	1	3	0	1	0	0	5
대전	3	0	0	0	0	0	3
부산	6	0	0	0	0	0	6
서울	23	31	1	1	13	1	70
울산	4	0	0	0	0	0	4
인천	3	1	0	1	0	0	5
전남	2	6	0	0	0	0	8
전북	3	3	0	0	0	0	6
제주	1	1	1	0	5	0	8
충남(세종)	6	5	0	0	2	0	13
충북	1	7	0	0	0	0	8
총합계	88	90	3	7	24	1	213

4. 효과적 예산확보 방안(12번, 12-1번 질문과 관련)

현행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주로 공공이, 피해 회복을 위한 비경제적 지원과 일부 경제적 지원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앞서 범죄피해자지원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의 경우 국내에서 신체·생명에 침해를 받은 강력범죄·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피해자를 통합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은 검찰과 경찰, 민간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검찰은 구조금, 경제적 지원(상해 등 5주 이상의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이전비),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은 임시숙소, 사건현장정리, 신변보호 등을 제공한다.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공공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를 통합관리, 접수, 상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외하고 있는 5주 미만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의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상담, 자조모임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일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 서비스는 민간 상담소·보호시설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피해자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은 필수적이고 민간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사업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각 부처의 관련 예산수요는 많으나 피해자보호기금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보다 적은 복리후생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단체들은 사업예산 부족으로 일부 자체 기부자를 모집하여 기부금을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보호기금 확대가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지만 정부도 갑작스럽게 기금 확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되는 기부금 배분에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포함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점적으로 공동모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최종 모금액은 4,045억 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1,056억 원(26.1%), 법인 기부금은 2,989억 원(73.9%)이며, 2022년 총모금액 4,279억 원으로 개인 기부금은 1,226억 원(28.7%), 법인 기부금은 3,053억 원(71.3%)에 달한다.¹²⁷⁾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는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을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업뿐 아니라, 법무보호공단의 재소자와 출소자의 재사회화 관련 사업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동모금재원”을 피해자지원단체가 배분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하여 부족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여부

가. 설문 의도와 내용

공공과 민간이 주축이 되어 범죄피해자지원이라는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조건은 연계 협력과 협업이다. 따라서 13-1번~13-4번까지 질문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연계를 통합 협력과 협업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이 중 13-1번은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소, 스마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체 응답자와 경찰과의 연계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고, 13-2번은 위 응답자와 검찰과의 연계 활성화 정도를, 13-3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정도를, 13-4번은 다른 피해자 지원(수사기관과 지자체 제외)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피해자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피

127)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10>

해자통합지원을 정부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사건발생시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만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사건 발생 정보, 피해자 정보 등) 등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 전체 지역별·기관별 분석

1) 13-1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1번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①항 0명(0%), ②항 5명(3%), ③항 13명(8%), ④항 49명(31%), ⑤항 89명(57%)이다.

기관별 분석으로서 범죄피해지원센터의 경우에는 ①항 0명(%), ②항 4명(4%), ③항 4명(4%), ④항 49명(25%), ⑤항 89명(67%)이다. 상담소는 ①항 0명(%), ②항 1명(6%), ③항 4명(24%), ④항 5명(29%), ⑤항 7명(41%)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②항은 0명(%), ③항 1명(3%), ④항 16명(52%), ⑤항 응답자가 14명(45%)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②항, ⑤항 0명(%), ③항 4명(67%), ④항 2명(33%)으로 설문 대상자 대비 응답자 비율이 40%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기관이 경찰과의 연계가 원활한 편인지를 묻는 본 질문에서 ⑤‘매우 그렇다’ 57%, ④‘그런 편이다’ 25%로 두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연계 협력은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지원센터는 ④항 응답자가 49명(25%), ⑤항 응답자가 89명(67%)으로 두 항 응답자 비율이 92%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82%보다 1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일센터 역시 두 항 응답자 비율이 97%로 관련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담소는 70%,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3% 정도로 낮고 ③항 응답자가 4명(67%)으로 비교적 연계 협력이 소극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표본이 소수로 유의미한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표 103〉 13-1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1	0	1	4	6
경기	0	0	0	8	15	23
경남	0	0	0	4	5	9
경북	0	0	0	1	7	8
광주	0	0	1	0	2	3
대구	0	0	0	3	0	3
대전	0	0	0	0	3	3
부산	0	0	0	0	3	3
서울	0	1	12	18	23	54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1	4	5
전남	0	0	0	3	5	8
전북	0	0	0	2	2	4
제주	0	0	0	1	7	8
충남(세종)	0	3	0	4	4	11
충북	0	0	0	3	5	8
총합계	0	5	13	49	89	156

2) 13-2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2번 질문에서 총 응답의 비율은 ①항 2명(1%), ②항 3명(2%), ③항 23명(16%), ④항 53명(34%), ⑤항 74명(48%)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1명(1%), ②항 1명(1%), ③항 3명(3%), ④항 30명(30%), ⑤항 65명(65%)이다. 상담소는 ①항 0명(%), ②항 1명(6%), ③항 1명(6%), ④항 11명(65%), ⑤항 4명(24%)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1명(3%), ②항 1명(3%), ③항 10명(35%), ④항 12명(41%), ⑤항 5명(17%)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과 ②항은 0명(0%), ③항 9명(100%)이다.

결과적으로 검찰과의 연계가 원활한 편인지를 묻는 본 질문에서 ⑤'매우 그렇다' 48%, ④'그런 편이다' 34%로 두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연계 협력은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리적 특성상 사무실이 주로 검찰청 내 위치하므로 ④항 30명(30%), ⑤항 65명(65%)으로 두 응답자 비율이 92%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82%보다 1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소는 89%, 스마일센터는 ④~⑤항 두 응답자 비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④항, ⑤항 응답자 비율이 0%이다.

〈표 104〉 13-2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1	0	1	1	4	7
경기	1	2	4	8	10	25
경남	0	0	1	4	5	10
경북	0	0	0	1	6	7
광주	0	0	0	0	3	3
대구	0	0	0	3	0	3
대전	0	0	0	2	1	3
부산	0	0	0	0	3	3
서울	0	1	16	22	15	54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1	4	5
전남	0	0	0	3	5	8
전북	0	0	0	0	4	4
제주	0	0	1	3	3	7
충남(세종)	0	0	0	4	4	8
충북	0	0	0	1	7	8
총합계	2	3	23	53	74	155

3) 13-3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3번 질문에 관하여는 ①항 2명(1%), ②항 4명(3%), ③항 응답자가 33명(22%), ④항 응답자가 62명(41%), ⑤항 응답자가 50명(33%)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2명(2%), ②항 2명(2%), ③항 18명(17%), ④항 37명(36%), ⑤항 44명(43%)이다. 상담소는 ①항과 ②항 0명(0%), ③항 2명(12%), ④항 11명(65%), ⑤항 4명(24%)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2명(7%), ③항 12명(44%), ④항 11명(41%), ⑤항 2명(7%)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②항, ⑤항 0명(0%), ③항 1명(25%), ④항 3명(75%)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와 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원활한 편인지를 묻는 본 질문에 ④‘그런 편이다’가 62명에 41%, ⑤‘매우 그렇다’가 50명에 33%로 두 응답이 전체 74%를 차지하여 연계 협력은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④항 응답자가 37명(36%), ⑤항 응답자가 44명(43%)으로 두 응답자 비율이 79%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74%보다 5%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소는 ④~⑤항 두 응답자 비율이 89%로 가장 높고, 스마일센터는 ④~⑤항 두 응답자 비율이 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④~⑤항의 두 응답자가 3명(75%)이고 ③항 응답자가 1명(25%)으로 표본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표 105〉 13-3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1	0	2	3	6
경기	1	2	9	9	6	27
경남	0	0	0	2	6	8
경북	0	0	1	2	5	8
광주	0	0	0	1	2	3
대구	0	0	3	0	0	3
대전	0	0	2	1	0	3

부산	0	0	0	0	3	3
서울	1	0	14	23	11	49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4	1	5
전남	0	0	0	5	3	8
전북	0	0	0	2	2	4
제주	0	1	1	3	2	7
충남(세종)	0	0	0	5	3	8
충북	0	0	3	3	3	9
총합계	2	4	33	62	50	151

〈표 106〉 13-3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2	2	18	37	44	103
상담소	0	0	2	11	4	17
스마일센터	0	2	12	11	2	27
아전기관	0	0	1	3	0	4
총합계	2	4	33	62	50	151

〈표 107〉 13-3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2%	2%	17%	36%	43%	100%
상담소	0%	0%	12%	65%	24%	100%
스마일센터	0%	7%	44%	41%	7%	100%
아전기관	0%	0%	25%	75%	0%	100%
총합계	1%	3%	22%	41%	33%	100%

4) 13-4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4번 질문은 ①항 0명(0%), ②항 4명(3%), ③항 30명(20%), ④항 73명(49%), ⑤항 42명(28%)이다.

기관별 분석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2명(2%), ③항 17명(18%), ④항 49명(51%), ⑤항 29명(30%)이다. 상담소는 ①항 0명(0%), ②항 1명(6%), ③항 3명(18%), ④항 9명(53%), ⑤항 4명(24%)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1명(4%), ③항 5명(19%), ④항 12명(44%), ⑤항 9명(33%)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체 응답자 8명 중 ①항, ②항, ⑤항 0명(0%), ③항 5명(63%), ④항 3명(38%)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보호·지원기관(수사기관·자치단체 제외)과의 연계가 원활한 편 인지를 묻는 본 질문에서 ⑤‘매우 그렇다’ 28%, ④‘그런 편이다’ 49%로 두 응답이 전체 77%를 차지하여 연계 협력은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④항 응답자가 49명(51%), ⑤항 응답자가 29명(30%)으로 두 응답자 비율이 81%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77%보다 4%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소와 스마일센터는 ④~⑤항 두 응답자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④~⑤항 두 응답자가 3명에 38%이고 ③항 응답자가 5명(63%)으로 비교적 연계 협력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08〉 13-4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0	3	1	3	7
경기	0	1	7	12	5	25
경남	0	0	0	4	5	9
경북	0	0	4	2	2	8
광주	0	0	0	2	1	3
대구	0	0	0	3	0	3
대전	0	0	0	3	0	3

부산	0	0	0	1	2	3
서울	0	2	13	26	10	51
울산	0	0	1	0	0	1
인천	0	0	0	2	2	4
전남	0	0	0	5	3	8
전북	0	1	0	0	2	3
제주	0	0	0	3	4	7
충남(세종)	0	0	0	7	0	7
충북	0	0	2	2	3	7
총합계	0	4	30	73	42	149

〈표 109〉 13-4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0	2	17	49	29	97
상담소	0	1	3	9	4	17
스마일센터	0	1	5	12	9	27
아전기관	0	0	5	3	0	8
총합계	0	4	30	73	42	149

〈표 110〉 13-4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0%	2%	18%	51%	30%	100%
상담소	0%	6%	18%	53%	24%	100%
스마일센터	0%	4%	19%	44%	33%	100%
아전기관	0%	0%	63%	38%	0%	100%
총합계	0%	3%	20%	49%	28%	100%

6. 기관 종사자 전문성 제고와 접근성 제고 방안(13-5~13-10 질문 관련)

가. 설문 의도와 내용

민간이 주축이 되어 시행 중인 피해자지원사업은 종사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 질과 양이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는 매년 종사자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13-5번 질문은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13-6번은 다른 관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이다. 이어 13-7번은 서비스 이용상 편리성을 묻는 질문이며, 13-8번은 범죄 유형별 서비스의 차별화에 관한 질문을, 13-9번은 기관별 전문성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 여부를, 13-10번은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각 항 질문 내용으로는 전과 같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를 제시하였다.

나. 지역별·기관별 분석

1) 13-5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5번 질문에 관하여는 ①항 0명(0%), ②항 1명(1%), ③항 9명(6%), ④항 68명(43%), ⑤항 82명(51%)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1명(1%), ③항 8명(8%), ④항 46명(45%), ⑤항 48명(47%)이다. 상담소는 ①항과 ②항, ③항 0명(0%), ④항 4명(24%), ⑤항 13명(76%)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0명(0%), ③항 0명(0%), ④항 13명(38%), ⑤항 21명(62%)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②항 0명(%), ③항 1명(17%), ④항 5명(83%)이다.

결과적으로 응답자가 근무하는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묻는 본 질문에서 ⑤ '매우 그렇다' 51%, ④ '그런 편이다' 43%로 두 응답이 전체 94%를 차지하여 스스로 전문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④~⑤항 응답 비율은 92%, 상담소 100%, 스마일센터 100%, 아동보호전문기관 94%로 나타났다.

〈표 111〉 13-5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0	1	2	3	6
경기	0	0	1	11	13	25
경남	0	0	1	3	5	9
경북	0	0	2	4	4	10
광주	0	0	0	0	3	3
대구	0	0	0	3	0	3
대전	0	0	0	1	2	3
부산	0	0	0	1	2	3
서울	0	1	1	24	30	56
울산	0	0	1	0	0	1
인천	0	0	0	2	3	5
전남	0	0	0	3	5	8
전북	0	0	0	4	0	4
제주	0	0	0	3	5	8
충남(세종)	0	0	0	5	3	8
충북	0	0	2	2	4	8
총합계	0	1	9	68	82	160

〈표 112〉 13-5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0	1	8	46	48	103
상담소	0	0	0	4	13	17
스마일센터	0	0	0	13	21	34
아전기관	0	0	1	5	0	6
총합계	0	1	9	68	82	160

〈표 113〉 13-5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0%	1%	8%	45%	47%	100%
상담소	0%	0%	0%	24%	76%	100%
스마일센터	0%	0%	0%	38%	62%	100%
아전기관	0%	0%	17%	83%	0%	100%
총합계	0%	1%	6%	43%	51%	100%

2) 13-6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6번은 다른 지원기관 종사자 전문성을 묻는 질문으로 ①항 0명(0%), ②항 3명(2%), ③항 35명(23%), ④항 87명(58%), ⑤항 26명(17%)이다.

기관별 분석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2명(2%), ③항 25명(25%), ④항 58명(58%), ⑤항 16명(16%)이다. 상담소는 ①항과 ②항 0명(0%), ③항 3명(18%), ④항 11명(65%), ⑤항 3명(18%)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과 ②항 0명(0%), ③항 5명(17%), ④항 17명(59%), ⑤항 7명(24%)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0명(0%), ②항 1명(25%), ③항 2명(50%), ④항 1명(25%), ⑤항 0명(0%)이다.

결과적으로 응답자가 다른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묻는 본 질문에서 ⑤'매우 그렇다' 17%, ④'그런 편이다' 58%로 두 응답이 전체 75%를 차지하여 전문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④~⑤항 응답자 비율은 73%, 상담소 83%, 스마일센터 83%, 아동보호전문기관 25%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③항 '그저 그렇다'가 5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14〉 13-6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1	3	2	0	6

경기	0	0	6	16	3	25
경남	0	0	2	3	4	9
경북	0	0	5	4	2	11
광주	0	0	1	2	0	3
대구	0	0	3	0	0	3
대전	0	0	3	0	0	3
부산	0	0	0	2	1	3
서울	0	2	10	30	7	49
울산	0	0	1	0	0	1
인천	0	0	0	4	0	4
전남	0	0	0	5	3	8
전북	0	0	0	3	0	3
제주	0	0	0	5	3	8
충남(세종)	0	0	0	8	0	8
충북	0	0	1	3	3	7
총합계	0	3	35	87	26	151

〈표 115〉 13-6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	2	25	58	16	101
상담소	0	0	3	11	3	17
스마일센터	0	0	5	17	7	29
아동보호전문기관	0	1	2	1	0	4
총합계	0	3	35	87	26	151

〈표 116〉 13-6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	2%	25%	57%	16%	100%
상담소	0%	0%	18%	65%	18%	100%
스마일센터	0%	0%	17%	59%	24%	100%
아동보호 전문기관	0%	25%	50%	25%	0%	100%
총합계	0%	2%	23%	58%	17%	100%

3) 13-7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7번은 응답자에게 ‘보호·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으로 ①항 2명(1%), ②항 11명(7%), ③항 28명(18%), ④항 49명(32%), ⑤항 62명(41%)이다.

기관별 분석로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응답자는 1명(1%), ②항 4명(4%), ③항 9명(9%), ④항 32명(33%), ⑤항 51명(53%)이다. 상담소는 ①항 0명(0%), ②항 2명(13%), ③항 0명(0%), ④항 8명(50%), ⑤항 6명(38%)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1명(3%), ②항 5명(16%), ③항 12명(38%), ④항 9명(28%), ⑤항 5명(16%)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②항 ⑤항 0명(0%), ③항 7명(100%), ④항 0명(0%)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창구 일원화를 묻는 본 질문에서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⑤‘매우 그렇다’ 41%, ④‘그런 편이다’ 32%로 두 응답이 전체 73%를 차지하여 어느 정도 창구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④~⑤항 응답자 비율은 86%, 상담소 88%, 스마일센터 54%, 아동보호전문기관 0%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③항 ‘그저 그렇다’가 10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창구일원화에 소극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117〉 13-7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1	0	3	3	7
경기	1	3	7	9	4	24
경남	0	2	0	1	6	9
경북	0	0	1	5	2	8
광주	0	0	0	1	2	3
대구	0	0	0	0	3	3
대전	0	0	0	1	2	3
부산	0	0	0	3	0	3
서울	0	4	18	18	16	56
울산	0	0	0	0	0	0
인천	0	0	0	0	3	3
전남	0	0	1	3	3	7
전북	0	0	1	0	4	5
제주	0	0	0	2	6	8
충남(세종)	0	0	0	1	4	5
충북	1	1	0	2	4	8
총합계	2	11	28	49	62	152

〈표 118〉 13-7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1	4	9	32	51	97
상담소	0	2	0	8	6	16
스마일센터	1	5	12	9	5	32
아전기관	0	0	7	0	0	7
총합계	2	11	28	49	62	152

〈표 119〉 13-7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1%	4%	9%	33%	53%	100%
상담소	0%	13%	0%	50%	38%	100%
스마일센터	3%	16%	38%	28%	16%	100%
아전기관	0%	0%	100%	0%	0%	100%
총합계	1%	7%	18%	32%	41%	100%

4) 13-8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8번은 응답자에게 ‘범죄 유형별로 보호·지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범죄 유형이 다른 피해자 간 보호·지원 차별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지역별 응답자 현황은 ①항 21명(1%), ②항 55명(7%), ③항 42명(18%), ④항 45명(32%), ⑤항 22명(41%)이다. 기관별 분석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18명(15%), ②항 43명(35%), ③항 23명(19%), ④항 25명(20%), ⑤항 15명(12%)이다. 상담소는 ①항 1명(6%), ②항 4명(24%), ③항 2명(12%), ④항 7명(41%), ⑤항 3명(18%)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2명(6%), ②항 6명(18%), ③항 9명(26%), ④항 13명(38%), ⑤항 4명(12%)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0명(0%), ②항 2명(20%), ③항 8명(80%), ④항 0명(0%), ⑤항 0명(0%)이다.

결과적으로 범죄 유형별 피해자 간 보호·지원 차별에 관하여 묻는 본 질문에서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⑤‘매우 그렇다’ 12%, ④‘그런 편이다’ 24%로 두 응답이 67명에 36% 차지하였으며 오히려 ①~③ 응답이 64%를 차지하여 범죄 유형별 피해자 간 지원의 차별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④~⑤항 응답자 비율은 32%, 상담소 59%, 스마일센터 50%, 아동보호전문기관 0%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②~③항 응답 비율이 100%이다.

〈표 120〉 13-8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6	2	1	0	9
경기	5	12	9	6	0	32
경남	3	4	1	0	5	13
경북	4	4	2	1	0	11
광주	0	1	1	1	0	3
대구	0	1	0	3	0	4
대전	0	0	2	1	0	3
부산	0	1	2	1	1	5
서울	4	16	17	18	6	61
울산	0	1	0	0	0	1
인천	0	2	0	1	1	4
전남	0	1	3	4	0	8
전북	2	0	1	2	0	5
제주	0	0	0	4	4	8
충남(세종)	2	4	1	2	1	10
충북	1	2	1	0	4	8
총합계	21	55	42	45	22	185

〈표 121〉 13-8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18	43	23	25	15	124
상담소	1	4	2	7	3	17
스마일센터	2	6	9	13	4	34
아전기관	0	2	8	0	0	10
총합계	21	55	42	45	22	185

〈표 122〉 13-8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15%	35%	19%	20%	12%	100%
상담소	6%	24%	12%	41%	18%	100%
스마일센터	6%	18%	26%	38%	12%	100%
아전기관	0%	20%	80%	0%	0%	100%
총합계	11%	30%	23%	24%	12%	100%

5) 13-9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9번은 ‘기관별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각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 협력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지역별 응답자 현황은 ①항 3명(2%), ②항 6명(4%), ③항 10명(6%), ④항 52명(32%), ⑤항 94명(57%)이다.

기관별 분석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3명(3%), ②항 6명(6%), ③항 8명(7%), ④항 33명(30%), ⑤항 59명(54%)이다. 상담소는 ①항 응답자는 0명(0%), ②항 0명(0%), ③항 0명(0%), ④항 2명(12%), ⑤항 15명(88%)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0명(0%), ②항 0명(0%), ③항 1명(3%), ④항 11명(34%), ⑤항 20명(63%)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과 ②항 0명(0%), ③항 1명(14%), ④항 6명(86%), ⑤항 0명(0%)이다.

결과적으로 각 기관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연계 협력을 묻는 본 질문에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⑤‘매우 그렇다’가 94명에 57%, ④‘그런 편이다’가 33명에 32%로 두 응답이 전체에서 89%를 차지하여 기관이 독립성은 각자 유지하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④~⑤항 응답자 비율은 84%, 상담소 100%, 스마일센터 97%, 아동보호전문기관 89%로 나타났다.

〈표 123〉 13-9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0	0	1	3	2	6
경기	0	1	1	8	16	26
경남	1	1	0	0	8	10
경북	0	0	3	2	5	10
광주	0	0	0	2	1	3
대구	2	1	0	0	0	3
대전	0	0	0	3	0	3
부산	0	0	2	2	1	5
서울	0	2	2	19	34	57
울산	0	0	1	0	0	1
인천	0	1	0	1	3	5
전남	0	0	0	2	6	8
전북	0	0	0	1	3	4
제주	0	0	0	2	6	8
충남(세종)	0	0	0	4	4	8
충북	0	0	0	3	5	8
총합계	3	6	10	52	94	165

〈표 124〉 13-9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3	6	8	33	59	109
상담소	0	0	0	2	15	17
스마일센터	0	0	1	11	20	32
아전기관	0	0	1	6	0	7
총합계	3	6	10	52	94	165

〈표 125〉 13-9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3%	6%	7%	30%	54%	100%
상담소	0%	0%	0%	12%	88%	100%
스마일센터	0%	0%	3%	34%	63%	100%
아전기관	0%	0%	14%	86%	0%	100%
총합계	2%	4%	6%	32%	57%	100%

6) 13-10번 지역별·기관별 응답자 분석

13-10번은 응답자에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지원 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전체 지역별 응답자 현황은 ①항 9명(6%), ②항 16명(10%), ③항 46명(29%), ④항 50명(32%), ⑤항 37명(23%)이다.

기관별 분석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①항 3명(3%), ②항 8명(8%), ③항 22(22%), ④항 40명(40%), ⑤항 27명(27%)이다. 상담소는 ①항 1명(6%), ②항 2명(12%), ③항 3명(18%), ④항 7명(41%), ⑤항 4명(24%)이다. 스마일센터는 ①항 4명(13%), ②항 4명(13%), ③항 15명(47%), ④항 3(9%), ⑤항 6명(19%)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항 1명(11%), ②항 2명(22%), ③항 6명(67%), ④항 0명(86%), ⑤항 0명(0%)이다.

결과적으로 보호·지원 기관통합을 묻는 본 질문에서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⑤‘매우 그렇다’가 37명에 23%, ④‘그런 편이다’가 50명에 32%로 두 응답이 전체에서 55%를 차지하여 기관통합의 필요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④~⑤항 응답자 비율은 67%, 상담소 65%, 스마일센터 28%, 아동보호전문기관 0%로 나타났다.

〈표 126〉 13-10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강원	1	0	1	3	3	8
경기	3	4	11	5	3	26
경남	0	2	0	1	6	9
경북	1	0	2	5	0	8
광주	0	1	0	2	0	3
대구	0	0	1	0	3	4
대전	0	0	0	3	0	3
부산	0	0	1	3	0	4
서울	4	8	19	18	10	59
울산	0	0	1	0	0	1
인천	0	0	0	1	2	3
전남	0	0	3	5	0	8
전북	0	0	0	2	0	2
제주	0	0	0	0	7	7
충남(세종)	0	0	4	1	1	6
충북	0	1	3	1	2	7
총합계	9	16	46	50	37	158

〈표 127〉 13-10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3	8	22	40	27	100
상담소	1	2	3	7	4	17
스마일센터	4	4	15	3	6	32
아전기관	1	2	6	0	0	9
총합계	9	16	46	50	37	158

〈표 128〉 13-10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범피센터	3%	8%	22%	40%	27%	100%
상담소	6%	12%	18%	41%	24%	100%
스마일센터	13%	13%	47%	9%	19%	100%
아전기관	11%	22%	67%	0%	0%	100%
총합계	6%	10%	29%	32%	23%	100%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I. 심층면접의 의도와 목적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은 살인, 강도, 폭행, 상해, 스토킹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소위 중대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이후 개인적인 변화와 지원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심층조사의 설문내용이다.

- 범죄피해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개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범죄피해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지원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개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 지원을 받기까지 유선, 기관방문, 형사사법기관에서 행한 연계, 문자 안내 등 총 몇 번의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 최종 범죄피해를 위한 지원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의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지 여부
- 범죄피해에 관하여 공식적인 기관에 접촉한 이후 최종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 중에 피해가 더욱

- 심각해지거나 2차적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었는지
-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에 최초 지원요청한 내용과 최종 지원받은 내용은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
 -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기타 인권침해라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와 구체적 사례
 -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또 그 내용이 중복된 점은 없었는지
 -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싶은 부분
 - 종사자로부터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는지 여부
 - 범죄피해 발생 이후 센터에서 피해자지원신청 접수를 하기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지원신청이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유
 - 지원신청 후 가장 먼저 받은 서비스 종류
 - 피해자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변화와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원을 통하여 실제로 범죄피해 회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와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회복 간의 구체적인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구성되었다.

II.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변화정도

1.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 전후를 비교하여 개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살인범죄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

미수범죄의 생존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경우 범죄피해 전후를 비교하여 우울감이 높아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살인범죄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모든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겪었고, 살해된 가족에 대한 부재로 인한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폭행, 중상해 등을 포함한 폭력범죄 피해자는 응답자 중 9명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한다. 이들 중 5명은 범죄피해 이후 직장 등 일자리를 잃었거나 치료를 받는 기간 중 근로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우울감이나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상해 등을 다시 범죄자로부터 받을 우려를 하고 있었다. 특히 존속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해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 비로소 안정을 취한다고 답변하였다.

강제추행, 성착취물, 강간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총 11명으로 심층면접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교제관계이거나 숙부 등 친밀관계에서의 성범죄피해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그와 같은 경우 신상노출로 인하여 주거지의 생활이 어렵거나 범죄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낀 피해자들이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1명으로,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피면접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는 1명으로 범죄피해 전후의 개인적인 변화가 많다고 답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2명으로, 이 중 한명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분리된 이후 가족이 없고 힘든 상황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하였고, 다른 한명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모부터 폭행을 당해 왔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면접자로 응하였다.

2. 지원기관의 지원 전후의 생활변화

범죄피해로 인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후를 비교하여서, 개인적인 상황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체로 심리치료를 통하여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과정을 겪었고, 응답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은 살인범죄 이후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체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치료비 및 생활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점을 진술하였다. 대부분 범죄피해로 신체적인 상해를 당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거나 치료경험이 있어서, 그로 인한 치료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경제적 지원으로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찾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역시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치료비지원은 충분하였으나 생활비 지원은 매우 적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또한 지원 전후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한 명 있다.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원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족과 분리된 이후 지원기관의 봉사자로 인하여 가족이 다시 생긴 느낌이 들어서 생활에 안정을 되찾아가는 느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한 명은 생활비가 전무하여 힘들지만, 지원기관이 생활비와 반찬이나 생활물품을 제공해 주어서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답변하였다.

학교폭력피해자의 어머니는 주거이전, 전학, 심리상담의 지원을 받았고, 피해아동이 떨어져 지내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주어서 아동과 서로를 이해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3. 정리 및 시사점

범죄피해 전후의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정도는 살인범죄와 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경우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고 모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그 밖의 범죄 피해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범죄피해로 인한 지원 전후의 생활변화에 대하여는 대체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범죄들에 있어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였으며, 피해지원 이후에는 피해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인다. 다만 대체로 경제적 지원이 생활의 정상적 회복을 위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1. 지원과정에서의 접촉 횟수

3번째 문항은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지원을 받기까지 관련 기관(지원센터,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유선, 방문, 문자안내 등 총 몇 번의 접촉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중복적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살인범죄피해자의 경우 3-5회나 6회 정도가 가장 많았고, 유족 중에서 80번 이상의 접촉을 한 사례도 있었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각각 2회 기관방문이 이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자주 접촉하였다거나, 최초 검찰청으로부터 3-4회 유선통화 후 직접 연락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더욱 빈번하게 접촉하는 등 그 횟수가 매우 많았다. 보통 30번 이상에서 많게는 118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15회, 31회, 80회, 30회 이상, 118회 등 피해자들은 자신이 접촉한 횟수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1회 또는 2-3회라고 답변한 피해자는 단 2명이었고, 10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78회에 이른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역시 비교적 자신이 접촉한 횟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80회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접 방문 1회 및 유선상 접촉 10회 이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현재에도 지원을 받고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며, 수많이 많을 정도로 접촉이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센터 봉사자들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화와 기관방문 등 10회 이내의 접촉을 하였다.

2. 지원기관의 지원내용과 지원으로 인한 생활변화

최종 범죄피해를 위한 지원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의 개선에 어

는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생계비, 법정 동행 등이 주를 이루었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지원과 피면접자 중 절반이 이사를 하였으므로 주거이사 비용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체험활동, 힐링캠프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2명이었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치료비, 물품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주로 받았고,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생활안정까지 찾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존속상해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등 법률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생활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13주에 이르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치료비 이외에도 재활기간의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역시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비와 생계비가 가장 많이 받은 지원이었지만, 많은 경우 지원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적어서 생활형편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답변이 3개 이상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4인 가구 한달 최소 생계비 120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재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 외에 최종지원에는 취업알선등 취업지원과 심리상담,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었다.

특히 재판 모니터링 지원과 상담기관 연계를 최종 지원내용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재판 시마다 참석하여 재판내용을 요약해주고 재판결과를 확인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상황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직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재판 시마다 개인적으로 연차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진술하였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두 가지 면을 지적하였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쉽게 해 준 것,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상담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의료비와 생계비 및 물품지원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이 가장 우선이었고, 생활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자들 모두

생활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가족(부)로부터 폭력행사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부의 구속 등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생계비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였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는 교복구입비, 생계비 및 심리상담비용을 지원받았고, 지원 이후에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3. 기관접촉 후 지원까지 소요기간

범죄피해에 관하여 공식적인 기관에 접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여부와 기간 도과 중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2차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2개월정도 소요된 것으로 응답하였고, 최장기간은 3개월 정도였다. 2차 피해여부에 관하여는 모두 살인범죄 경험 이후에 심리적인 불안정이 매우 컸고, 시간경과 및 심리치료에 의하여 안정을 되찾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장 단기가 9일이었고, 평균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가장 장기로서 1년이라고 답한 피해자가 2명이었다. 이들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기관접촉 후 지원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고 하였고, 특히 존속상해 등 가족으로부터의 상해피해자들은 기간 도과 중에 추가적인 상해피해 발생의 우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장 단기는 2주이고 그 외에 20일, 1개월, 2개월, 40일, 10개월 1년 등으로 답변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약 1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2차피해는 없었지만 자녀의 성착취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는 자녀와 함께 상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저녁시간밖에 되지 않으나, 해당 시간에 운영중인 상담소를 찾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 답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원받기 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신고 후에 바로 범죄자가 구속되어 범죄자로부터의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답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약 3개월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며, 2차 피해는 아니지만 생활비 부족

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4. 지원요청과 지원결과의 일치도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에 최초 지원요청한 내용과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내용이 어느정도 일치하는지 및 그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원안내를 받은 내용과 제공된 서비스가 모두 일치하며 이에 대하여 만족하였으나, 경제적 지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1인의 응답이 있었다.

폭력범죄 피해자와 성폭력범죄 피해자 역시 지원내용이 안내받은 바와 최종적으로 일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1인의 답변이 있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역시 일치하였으며, 금전적인 지원과 상담심리치료의 지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특히 법적 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법적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의료비만 신청하였으나 생계비 지원까지 받아서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5. 정리 및 시사점

지원과정에서의 접촉 횟수는 상해 등의 폭력범죄와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아동학대 피해자도 꾸준히 접촉을 하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접촉횟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과 분리되어 아동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접촉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초기이고, 그 이후에는 지원기관의 봉사자들이 자택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나 전화통화와 같은 유선연락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카카오톡과 같이 실시간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질문의 의도는 최종지원을 받기까지 중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나,

피해회복 과정이 장기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와 같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접촉 횟수를 정확히 숫자로 기억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원횟수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

지원내용의 특이점은 살인범죄 피해자들은 그 중 절반이 범죄 발생 이후 주거이전을 하였으며, 장례비와 주거이전비를 대부분 지원받았다는 점이고, 나아가 살인범죄로부터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힐링캠프, 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치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피해받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이 받은 생계비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들은 법률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접촉 이후 지원까지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개인별 편차가 매우 심하였고, 대체로 1-2개월 정도가 평균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별로 생기는 많은 편차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2차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중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구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요청과 지원결과의 일치도는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고 하였으며, 금전적 지원이 보다 현실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종합적으로, 총 지원을 받기까지는 범죄피해시점부터 1-2개월로 시간적인 지연이 있고, 지원요청과 지원결과 자체는 일치하지만 질적으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1. 지원과정에서의 불편함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한 점에 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들은 대체로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으나, 면담자가 기관 종사자여서 만족스럽다는 편협한 응답을 하였다고 면접을 행한 면접자 개인의 소견이

있었다. 그 외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경험을 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도 대부분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지만, 지원과정에서 치료비용수증 등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관리하는게 불편하였다고 하거나, 생활지원금이 모자라서 어렵다고 느낀 경우가 있었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치료기간 동안 직장상실 등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 이외에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담대기시간과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준비와 제출이 불편하였다고 하였으며, 신청후 지원받기 까지의 대기시간 동안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불편함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학생들이어서 학교생활 중 지원기관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화를 자주 받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던 점 및 서류준비를 불편함으로 언급하였다.

2. 지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범죄피해에 관하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종사자 등으로부터 수치심을 느끼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 기타 인권침해라고 느낀 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도 살인범죄 피해자들은 상담, 신청 등 방관기관 단체들이 대체로 친절하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으나 앞선 사유와 동일하게 면접자 스스로는 기관종사자에 대하여 응답하는 과정이므로 긍정적 답변이 도출되었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지원기관이 아니더라도 조사받을 때나 가해자의 태도로 수치심을 느꼈거나 상담과정에서 범죄피해과정 등을 진술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응답이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범죄의 특성상 가족이나 거주, 형편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는 것으로부터의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는 답변이 있었고, 같은 이

야기를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다.

3. 지원의 중복여부

범죄피해지원기관의 지원과정에서 총 몇 개의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상 중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검찰, 센터 등 다수의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경찰은 수사와 지원기관의 연계를, 검찰은 장례비 지원을,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종합지원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종류에 있어서는 중복 자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지원종류에 중복은 없었지만, 2명의 경우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혼동하였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2명이었고, 많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시청을 비롯하여 3개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원내용의 중복 자체는 없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역시 2개의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중복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아동학대피해자 중 한 명은 지자체 구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소개받았고,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만 받았다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은 구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금전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4. 개선권고 사항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개선권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살인범죄피해자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2명이 존속살인 및 가족간 살인으로, 살인범죄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간의 살인으로 인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가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가족관계로

서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았거나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관방문시마다 범죄 당시를 회상하게 되어서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존속상해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으로부터 2개월 간격을 계속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6개월 간격으로 그 보호명령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해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인 접촉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연락방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방법도 최대한 기관에의 접촉이 축소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원자체의 홍보가 부족함을 언급하였고, 피해에 대해 기관마다 반복적 진술을 하게끔 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사건발생 후 최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정리 및 시사점

범죄피해지원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지원과정에서의 불편함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과 수집, 제출과정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치료비 지원 역시 치료비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요하는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아동학대피해자들은 서류준비가 미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장인이거나 학생인 경우 주간에 지원기관과의 접촉이 원활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신청한 이후에 실제로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지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원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내방

또는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면접자가 기관종사자이기 때문에 부정적 반응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진술하였다. 특히 성범죄피해자들은 사생활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질문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지원받을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지원과정에서의 중복성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2개 이상의 기관 예컨대, 검찰, 지자체(구청 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개입이 있었지만, 지원의 내용이나 종류에 있어서는 크게 중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나 내용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피면접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지원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다. 우선 살인범죄에 있어서는 존속이나 친족간 살인에 의한 피해자들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의 구조금지급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구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범죄 당시를 회상하게 되어서 힘들다고 하였다. 이는 통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류제출 등으로 지원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검찰청을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피해자는 그 보호명령기간의 단기를 지적하였다. 2개월마다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6개월의 장기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인 접촉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연락방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방법도 최대한 기관에의 접촉이 축소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원자체의 홍보가 부족함을 언급하였고, 피해에 대해 기관마다 반복적 진술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건발생 후 최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V. 기타 사항

1. 종사자의 설명의 충실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로부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로, 살인범죄 피해자들과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및 학교폭력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이를 긍정하였다.

2. 범죄발생이후 피해지원신청·접수까지 지연여부

범죄피해가 직접 발생한 이후에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신청·접수를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한 질문이다. 살인범죄피해자의 경우 최장기간이 3개월이고, 대체로 1개월에서 일주일 정도로 다양하게 응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지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개월 정도이고 최단기간은 2주이며 최장기간은 5개월이었다. 지연이유에 대하여는 최초 경찰단계에서는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청 직후 바로 접수되었다는 피해자는 3명이었고 그 외에 6-7주, 8개월, 10개월 등 피해자마다 서로 달랐고, 10개월이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지연이유로서 경찰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였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약 일주일정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는 약 2주 정도 소요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3. 최초 지원서비스

범죄피해지원 신청 이후에 가장 먼저 받은 서비스 종류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사비용 2명, 장례비지원 1명, 그 외에 재판과정에서의 동행과 서류정리 등의 도움을 인정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았고, 소송관련 서류 정리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 생계비(50만원) 및 치료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숙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미혼모시설 입소를 가장 먼저 제공받았다고 하였으며 그 외 신변보호 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상담심리지원과 법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는 의료비와 생계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았다고 하였다.

4.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내용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담과 정신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이사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현물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의료비, 생활지원비를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였고, 그 외에 소송관련 진행순서나 양식작성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병원비의 대납을 원하는 답변이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역시 생계비, 치료비와 심리상담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취업연계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지원신청 후 가장 먼저 받은 서비스 역시 직업훈련 연계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역시 간접적으로 생계를 위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서류준비라고 응답한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금전적인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으며, 상담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점을 들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역시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정리 및 시사점

간접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교육과도 연관되어 보이는 바, 종사자들로부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는 모든 피해자들이 이를 긍정하였고 종사자들이 친절하였다고 답하였지만, 전문성의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는지는 해당 면접질문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선 질문이 피해로 인한 지원접수 이후 최종 지원까지의 소요기간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범죄발생 이후 피해지원신청·접수까지의 소요기간으로 통상 범죄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1개월 전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10개월 까지도 언급한 바가 있으며, 지연이유로 경찰의 대응은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범죄피해자가 받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최초에 받은 지원 서비스를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살인범죄 피해자는 살인범죄의 특성상 장례 비와 주거이전비용 지원, 서류정리 등이 최초 지원내용이었고,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역시 이사비용이었다. 또한 상담 및 정신 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언급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소송관련 서류정리를 최초 지원서비스로 보았고,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보았으며 그 외에 소송관련 진행순서나 부대적인 양식 작성 등 서류지원을 들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역시 의료비 등 경제적 비용을 최초 서비스로 언급하였고, 특이점으로는 신변보호 서비스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료비, 생활비지원 및 심리상담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그 외에 서류준비 역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였다. 그 외의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들 역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최초였으며, 그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들인 경우가 많아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한 치료비 소요, 생활환경의 열악, 생계비 부족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서로 중첩적으로 다중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많은 경우 대부분 가해자인 가

족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한 심리적 고독감과 불안을 드러내었고, 혼자 생활하거나 시설로 의 입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지원기관의 종사자와의 접촉을 가족과 같은 관계로서 심리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서비스 종사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서 보호·지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사자와 범죄피해자 간의 간극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제1문항은 기관봉사자가 중대범죄피해자의 존재를 어떠한 경로로 인식하고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연계기관에 대하여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단위로는 경찰에 의한 연계가 가장 많았지만, 검찰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범죄사건이 접수되고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에서의 연계활동과 사건이 검찰에 이관된 이후 검찰에서의 지원기관 연계활동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직접 지원기관에의 지원요청이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사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사법기관에 의한 직접 지원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순 안내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문항 2는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중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연계받은 기관들 중에서 주로 사건을 의뢰한 기관을 확인하고 그 중요도를 순서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을 주요한 연계기관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이한 점은 제주지역의 경우에만 검찰을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한국여성의 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 스마일센터나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지역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의 연계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이 1문항의 가장 많이 연계 받은 기관이자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이라고 답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및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불일치의 정도가 다소 심한 편이다. 모든 지역 전반에서 경찰과 검찰이 가장 주요한 연계기관 1순위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중이 많았으며, 그 외의 기관들은 피해자 본인이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이 순위에 있다. 이외에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 연계기관으로서 1순위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문항 3부터 문항 6-1까지는 중대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기관에 범죄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까지 및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신청을 하는 방법 및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문항 3은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중대범죄 발생일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의뢰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전체 종사자들의 응답과 관련하여서는 4주 이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주 이내인 반면, 1주 이내와 2주 이내는 누적비율이 4주이내보다 적었다. 따라서 범죄발생일로부터 피해자보호·지원의뢰까지는 최소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지체됨을 알 수 있었다.

문항 4는 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의뢰 또는 연계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해당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기초상담을 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의도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5주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1주일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73%를 차지하였으며, 2주 이내까지의 누적 총계가 91%로, 90% 이상의 사건이 일단 사건지원의뢰가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지원안내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4-1 문항 4에 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보호·지원 안내(기초상담)를 받은 후에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주일 이내 신청을 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였다. 특히 강원, 광주, 부산, 울산,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은 단 한건도 1주일 이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문항 4-2는 사건이 발행한 후에 해당 중대범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보호·지원안내(기초상담)를 받은 이후에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

는지 및 그 빈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주 발생 및 매우 자주 발생의 누적 비율은 11%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연락불가이거나 상담 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5는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선택은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전화로 구성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방문방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팩스인 반면, 홈페이지 이용의 경우 강원,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다. 즉, 홈페이지의 활용이 홍보와 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6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지원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초기의 경제적 또는 심리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런데 1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은 8%에 불과하였다.

문항 6-1은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중대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긴급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현장에서 긴급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긍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설문들은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이후에 실제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기간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설문 7의 문항은 사건 유형별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종사자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건유형별이라 함은 중대범죄를 6개군으로 구분하여서, 강력범죄(살인, 상도 상해 등),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학교폭력범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언급한 중대범죄 유형군에 해당하는 분류로서 각각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내용과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체 서비스를 100으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지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회복프로그램의 이용은 각각 전체 대비 13% 정도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신변보호프로그램으로 10%에 해당하였다. 현장지원프로그램은 7%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고, 취업지원이 5%로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문항 8부터 11까지는 사건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관하여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및 불만족의 원인 등 만족도에 관한 설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항 8은 설문응답자인 지원기관 봉사자로서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질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사건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내용과 질에 관한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선 긍정적 평가가 58%에 해당하였다.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은 29%로 전체의 약 1/3 정도에 미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조금만 만족한다는 답변은 11%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에 불과하였다.

문항 9는 만일 만족도 조사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경제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제공조건의 까다로움, 접근성의 불편, 자원의 부족, 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저하 또는 기타 구체적인 이유의 직접 기재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이었다.¹²⁸⁾ 전체 47%에 달하는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이를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제공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였으며, 자원(인프라) 부족이라고 본 응답이 15%에 달하였다. 그 외에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본 경우는 9%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응답은 4%에 불과하였다.

문항 10은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 외에 사항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복적인 응답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보완점 및 개선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지원의 신속성과 지원의 지속성 및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각각 14%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지원의 전문성과 지원절차 및

12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4, 141면 이하 참조.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 및 간편성이었고, 응답자의 12%가 이에 동의하였다.

문항 10-1은 만일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들로 부터 항의나 이의제기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될 만한 사항을 11개를 제시하고 가장 많은 순서로 3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문항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느낀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이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에 대한 항의가 17%로 가장 많았고, 지원의 지속성이 16%, 지원의 신속성이 15%로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수사절차나 진행상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항의가 14%로 네 번째 순위였다. 반면에 직원 태도의 친절성, 집단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이의제기는 단 1%에 불과하였고, 직원대응의 적극성, 직원 접촉의 용이성과 방문상담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가 2%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하였다.

문항 11은 지원기관의 봉사자들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순위를 정하여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봉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서비스 역시 경제적 지원으로 전체의 53%가 이를 우선순위로 보았다. 그 외에는 신변보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7%였고, 법률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였다. 그러나 주거지원, 취업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조정지원, 생활관 입소 프로그램의 운영, 기타 사회적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단 한건도 없었다.

문항 12번은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한 경험에 관한 질문이다. 그 결과 매우 자주있다 2%, 자주있다 20%, 보통이다 20%, 가끔 있다 약 33%, 없다 25%로 확인되었다.

12-1번 질문은 12번 질문과 연계된 질문으로 기관의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부예산지원을 기본으로 민간후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1%, 지자체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을 정부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민간후원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2%, 법무부가 지원금을 실적에 따라 지원기관에 분배해야 한다는 응답이 3%, 실적에 따른 예산분배는 지원활동을 위축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11%, 회계나 업무감독을 법무부로부터 받는 조건을 지원금 제공은 지원기관의 독

립성을 해한다는 응답은 단 한명으로 통계상으로는 0%에 해당하였다.

마지막 문항인 13번은 공공과 민간이 주축이 되어 범죄피해자지원이라는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조건은 연계 협력이라는 점에서, 13-1번부터 13-4번까지 질문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연계를 통합 협력과 협업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13-5부터 13-10번 문항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다른 관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이용상 편리성, 범죄 유형별 서비스의 차별화, 기관별 전문성을 통한 협력의 필요성,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각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각 문항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의 보다 강화된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지원기관 종사자나 범죄피해자 모두 공통적이었다. 또한 서비스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지원서류의 축소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양자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더하여 범죄피해자들은 최초로 지원받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소요 및 최초 연계 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발생 당시부터 최초의 개입기관은 경찰이 가장 많았지만, 최초 범죄발생일로부터 직접 지원기관에 연계의뢰를 하는데 소요기간이 1달 이상 걸린다는 점은 경찰에 의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연계노력이 보다 필요함을 확인하게 하였다. 예컨대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인지 후에는 수사와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연계를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관련 서류를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인계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강조하는 지원서류의 복잡성이나 서비스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원기관마다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같지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범죄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최초 연계되는가에 따라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다른 연계 또는 신청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간의 연계가 보다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지원기관간의 연계는 그

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른 지원기관과 유기적 연계율이 낮은 편이었다.

기관인식 면에서는, 최초 범죄발생일로부터 중대범죄 보호의뢰를 하는 기관들은 다수이지만, 지원기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의뢰기관은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중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단일화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원신청의 방법에 있어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매체의 이용도는 매우 적은 반면, 방문이나 팩스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이 보다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지원신청 방법을 신속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참작할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피해자 별 제공되는 보호·지원서비스는 다소 상이하였다. 그렇다면 각 기관별로 특히 많이 다루는 중대범죄별로 특화된 보호·지원서비스를 집중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다른 특화된 보호·지원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기관별 서비스 내용을 특화하고, 기관연계 방식으로 서비스 종류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심층면접과 연관지어 보면, 범죄피해자들은 최초로 받았던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인식이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관별 전문성을 높여서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기관별 자체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원기관의 활동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는 지원기관 자체적으로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정부나 지자체 등에 의한 충당히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사자들은 보호·지원기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에 앞서서 기간관의 상호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보호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거나 보호·지원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거의 2/3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지원현장에서도 통합과 연계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방안의 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제2절 통합적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I.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분절화의 지양(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1.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이 다르므로, 피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앞서 분석한 사건 유형별 보호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 보더라도, 피해유형별 서비스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즉 강력범죄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의 비율이 높아 폭력 행위자와의 격리가 중요함을 엿볼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는 취업지원이나 현장지원, 신변보호 및 법률지원보다는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취업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적 지원의 비율은 낮았던 반면 신변보호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높았으며, 학교폭력범죄 피해자는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살인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미수의 피해자, 폭력범죄피해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주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통한 재피해방지, 안전의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과의 소통, 친권, 양육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벌어지므로 지원기관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형별로 피해자 지원의 내용을 달리하고 해당되는 전

문 기관을 따로 두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등 특정 유형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개별 입법을 통해 지금과 같이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피해자 지원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서비스지원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2. 분절화의 지양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분업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중복 투자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분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피해유형에 대한 지원의 현격한 차별화를 야기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기 쉽다. 또한 지나치게 분절화된 지원체계는 지원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응을 조장할 수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분절화를 지양하는 한편,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366 등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초기부터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사절차 개시 이후에 필요한 경우 위 지원기관으로부터의 연계를 받아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기관간 연계율을 살펴보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1366이나 상담소로 연계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반면, 상담소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역할 분담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초로 피해자와 접

촉한 기관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유형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 지원을 실시하고 여타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타당하다.

II. 유사 지원사업의 조정과 통합

1.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조정(법무부, 대검찰청)

스마일센터와 여타 보호·지원기관 사이의 관계정립이 애매하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상담, 임시 주거시설 제공, 법률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의 상당부분은 여타 보호·지원기관의 지원 내용과 중첩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상담·정신치료를 중점을 둔 세심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일센터의 지원 대상 중 하나인 강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 대상이기도 하므로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중첩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불명확하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비하여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스마일센터를 여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연계 받아 심리치료·상담, 임시주거시설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최종적 지원기관으로 위치 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일센터에 피해자를 연계한 기관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15%), 피해자(15%), 검찰(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14%), 해바라기센터(12%), 다른 스마일센터(11%),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9%), 1366(6%), 아동보호전문기관(5%)의 비율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난 반면, 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스마일센터로부터 피해자를 연계 받았다는 답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계 비율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동 센터에 연계한 기관 중 스마일센터가 차지하는 비

중이 12%에 이르고 있어, 스마일센터를 최종적·완결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스마일센터는 특정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실시하고, 그 밖의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를 다시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스마일센터의 기능이 다른 기관과 중복되고 최종적 지원기관의 성격도 갖지 못한다면, 종합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병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태여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스마일센터와 여러 재원으로 운영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따로 두고 국가의 지원 예산을 분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공단’의 형태로 전환하여 각 부처의 관련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통합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해 모금된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보조금과 자체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당장 통합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스마일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심리치료나 트라우마 관리에 집중하고, 기타 중복사업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일센터의 주된 지원내용 중 하나인 주거지원이나 법률지원의 경우, 강력범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의 통합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가 특화된 기관에 해당 지원을 의뢰하면, 스마일센터는 심리치료에 특화된 기관으로서 심리치료와 지원에 집중하는 역할에 전종하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가족부 주관 지원사업의 통합(여성가족부)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의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특히 도드라진다. 앞서 분석한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의 종사자들은 대체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기관과의 연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여가부 지원사업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상담소 종사자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분명히 구별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의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각각 분리 제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외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가정폭력 역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하였다.

해당 영역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지만, 통합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법의 난립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중복적 지원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특정 피해자의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장점이 있기는 하다. 실제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앞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강력범죄피해자 등 여타 피해자에 비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별법의 난립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 부처별로 개별 범죄피해자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설과 조직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¹²⁹⁾ 또한 유사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유사 영역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이전 보호기금에서 여가부 소관 성폭력·

129) 송귀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앞의 논문 78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이 보호기금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보호기금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다.¹³⁰⁾ 이는 예산 부족으로 강력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우려는 앞의 종사자 설문에서도 일정부분 확인되었다. 여가부 역시 부족한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비 조달을 위해 복권기금이나 한국마사회 등을 통한 우회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복투자로 인한 안정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보호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나, 두 유형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상정한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관련 상담·보호시설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여성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가정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와 통합하되, 가족 단위의 임시 또는 장기 보호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쉼터 등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자 및 자녀가 직장이나 학교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보안을 잘 유지하면서도 직주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보호시설의 부재로 원거리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

셋째,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의 경우 새로운 지원시설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시설을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친밀한 사이에서의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의 영역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스토킹방지법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와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당장 개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해당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지원단체를

130)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앞의 논문 71~73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관의 난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절 통합적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I.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구축(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는 만큼 지원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사업들은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가부 주관 사업의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중복적으로 받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여러 기관을 경유할 경우 반복진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층면접 결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반복진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사 및 재판단계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단계에서도 반복진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 대상 설문에서도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언급된 것들이 바로 지원의 지속성, 충분한 정보제공, 지원절차의 간소화, 지원의 전문성 등이다. 이는 분절화된 지원체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다양한 지원기관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면, 모든 기관이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원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아동복지법 제28조의 2), 이와 같은 모델을 모든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도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최초로 피해자와 접촉한 기관에서 가칭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개략적인 내용, 제공된 지원서비스 등을 입력하고, 연계되는 모든 지원기관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발생일에서 지원의뢰까지 4주 이내, 지원의뢰에서 지원안내까지 1주 이내, 지원안내에서 지원신청까지 2주 이내, 지원의뢰에서 서비스제공까지 4주 이내가 소요되는 비율이 각각 가장 높았는데, 통합망의 부재는 피해자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통합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원기관별로 지원 안내에서 지원신청까지 소요기간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체적인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입력·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II.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얼마 전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¹³¹⁾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이 한 자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사한 모델인 해바라기센터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피해자 조사가 즉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스톱지원서비스가 실제

131) 법무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2023. 11. 15.

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가장 주요한 연계기관으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반쪽짜리 지원체계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스톱 솔루션 센터까지 내방하도록 한 다음, 연계를 위하여 다시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공급자 중심의 연계시스템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 기관들이 피해자의 정보 및 지원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가 관련 절차를 알아서 연계해주는 편이 훨씬 편리하고 부담도 적다. 따라서 최초로 피해자를 접촉한 기관은 유형별 특성화된 기관에 연계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자 지원의 책임기관이 되고, 연계 후에는 유형별 특성화된 기존의 지원기관이 최종 코디네이터가 되어 이후의 연계 및 지원과정까지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스토킹범죄의 경우 상담소(지원시설) 또는 1366,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력범죄를 포함한 일반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소나 1366에서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등의 피해자를 최초로 접촉한 경우 피해자가 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의 상담자가 코디네이터로 기능하여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지원 책임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피해자전담경찰관, 학대예방경찰관 등이 초기의 지원을 실시한 후 유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등에 연계한 후 해당 기관이 피해자 지원의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유형별 해당 기관의 코디네이터가 피해자와 상담하여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서식의 작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절차의 지연, 번잡성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 전담 청구를 마련함으로써

써, 관련 지원절차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³²⁾ 일본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창구를 마련하고 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검찰 역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에 피해자인권담당관을 정식 직제화하여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지검 단위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피해자지원실의 업무의 내용을 정비하여 형사조정과 기타 피해자 지원의 업무를 분리·조정함으로써 실질적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I. 구조금 구조대상의 확대(법무부)

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유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구조금의 종류를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제17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강력범죄 발생 건수(180,460건) 대비 구조금 수혜자는 0.1% 수준인 195명이며, 구조대상피해자 1인에게 지급한 구조금은 약 4천 9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구조대상피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8년 국가가 징수한 벌금액이 약 1조 1,624억¹³³⁾인 것을 감안할 때, 벌금 대비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수많은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연간 약 1조원을 상회하는 벌금이 납부되고 있고, 그 중 100분의 8이 보호기금으로 전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구조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132) 김 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 지방분권형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8, 59-84면.

133) 원혜옥,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2호, 2020, 185면.

보호법을 개정하여 구조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자 역시 구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래 구조금이 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 역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구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상 범죄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피해의 정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 및 친족간 범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¹³⁴⁾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제19조 제1항). 물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사유에 불과하다(제19조 제7항).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구조 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이는 UN 피해자 인권선언이나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심층면접에서도 가정 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의 유가족이 구조금 지급 제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피해자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¹³⁵⁾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제도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범죄피해자보호법 제23조), 외국인 피해자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구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 독일, 일본 모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폐기하고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구조금을

134)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261면 이하.

135) 이에 관하여는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115면 이하 참조.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¹³⁶⁾

II. 구조금 지급액의 실질화(법무부)

구조금의 지급대상뿐만 아니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유족구조금의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지급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현행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지급액은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¹³⁷⁾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 유족의 연령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월급여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구조 대상 피해자별 개월 수×[별표 4]의 배수를 곱하여 산출된다.¹³⁸⁾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망한 피해자와 구조대상피해자(유족)와의 관계에 따라 구조금액의 차이가 크고, 그 금액 역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더욱이 사망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무소득 성년자녀라도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족구조금의 지급액을 인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136) 김 혁,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211-233면.

137) 임금조사기관(대한건설협회)이 매년 6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22일 곱한 금액을 말한다.

138) 송귀채,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3호, 2022, 11~12면, <표 2-6> 인용.

〈표 129〉 2022년 기준 유족구조금 산출(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¹³⁹⁾

근거	구조피해자 (순위) ¹⁴⁰⁾	평균임금 (원)	개월 수	별표 4 배수	구조금액 (원) ¹⁴¹⁾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및 구조 피해자의 수입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¹⁴²⁾	3,267,220 (22년 상반기)	월급여,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40개월	6/6	130,688,800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손자·손녀·조 부모 및 형제자매 ¹⁴³⁾		월급여,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32개월	유족의 수 2명 이상 6/6	104,551,040
				유족 1인 5/6	87,125,866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부모·손자·손 녀·조부모 및 형제자매 ¹⁴⁴⁾		월급여,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24개월	자녀 3/6	39,206,640
		손자·손녀·조 부모 및 형제 자매 1/6		13,068,880	
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		구조피해자가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¹⁴⁵⁾	최대 평균 임금의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상동	최대 156,826,560 이내

※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2명 이상이면 구조금액을 동 순위 수로 나누어 각각 지급한다.

139) 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6항 사회통념에 따른 일부 부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최대 금액임.

14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연령 제한이 없음.

141) 구조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시 전부 부지급, 구조금액 이하 합의 시 손해배상청구대위 행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차액 지급.

142) 열거순서에 의해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19세 미만 자녀.

143)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 손자, 손녀는 19세 미만.

144)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145)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수입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그 금액, 단, 평균임금의 2배가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수입액으로 하되(법 제22조 제4항) 평균임금의 48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 장애 구조 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장애의 개념을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 정의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별표 1】에서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확정될 경우 최대 평균임금의 40개월에서 2개월 한도로 장애구조금이 지급된다.¹⁴⁶⁾ 그러나 범죄피해로 중증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 급수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조금액도 인상하여야 한다.

셋째,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별표 5】를 적용하여 구조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중상해를 당하여 상당 기간 근로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상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지급대상 요건인 약 8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의 입원, 60일 이상의 치료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5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상해구조금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구조금액 역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I. 경제적 지원의 통합(법무부, 대검찰청)

1. 지원소요기간의 단축

심층면접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146) 송귀채,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의 논문, 13~15면, <표 2-7> 인용.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이 자립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범죄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곤란해진 유형의 피해자들에게서 그러한 수요가 더욱 도드라졌다. 종사자 설문에서도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현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은 각각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역시 심의의결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구조금은 검찰청 지검단위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은 검찰청 지검 및 지청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간병비, 취업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분산성을 해결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의 심의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원접수일로부터 지원시점까지 걸린 기간은 4주 이내(41%), 2주 이내(19%), 3주 이내(14%), 5주 이내(11%), 1주 이내(8%), 5주 이상(5%)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지원의 심의체계를 통합하여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단계별 기간소요 현황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각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발생일로부터 최초범죄발생인지 기관의 지원기관에 대한 연계의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발생 이후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인지 자체에 기간이 소요된다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이나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의 공식기관에서 인지 이후에 연계의뢰가 지체되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많은 관련기관들이 법무부의 산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무부 자체 내에서 범죄발생 인지 이후 통일적인 기관연계 매뉴얼을 갖추고 선 연계 후 지원 자격 구비판단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 확인 이후의 의뢰연계사이에 지연이 발생한다면 중대범죄에 한하여 범죄발생인지 이후에는 피해자보호지원기관에 범죄발생을 통보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의 전달에 대한 동의를 얻은 이후에 지원기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만일 그와 같은 방안이 가능하다면, 지원의뢰 접수일로부터 피해자에게 유무선으로 구체적인 보호지원안내 및 기초상담까지의 기간소요 자체가 거의 지체됨이 없이 바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안내 이후 실제 범죄피해자의 지원신청까지의 기간 역시 2주 이내 누적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3주에서 5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50%에 이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관련 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서류간소화 및 서류대체물에 의한 변경 또는 사전신청 후 사후 서류제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체 지원연계의뢰시점부터 최초의 서비스제공시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1주 이내라고 응답한 답변은 8%에 불과하고 2주까지의 누적 답변율도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3주까지의 누적 서비스제공 답변도 41%로서 범죄피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장 많은 답변은 4주 즉, 거의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답변이 41%에 이르렀다. 이는 선 지원 후 요건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2. 신속을 위한 통합운영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적 지원, 즉 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을 구조금의 체계 안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반면, 구조금의 경우 같은 법 제4장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물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손실 복구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재원의 확보와 금액의 인상 등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른다. 영국의 경우 모든 경제적 지원을 통합하여 보상금(compensation)이라는 체계하에 지급범위와 대상을 명시하고, 상해보상금, 일실소득 보상금, 특별경비 보상금, 위로금, 유자녀 양육비, 피부양자 부양금, 장례비, 기타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현재와 같이 구조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 체계 역

시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구조금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구성, 관리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II. 재정의 안정성 확보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법무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호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르면, 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그중에서도 재원의 대부분은 벌금으로 구성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벌금액의 8%를 기금에 납입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이를 1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벌금의 일정 부분만을 보호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회복의 책임 부과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벌금액의 일정 비율이 보호기금으로 납입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법익침해를 간접적으로 회복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보다 심각한 법익침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형벌의 내용에서 피해회복이라는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벌금 중 일부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설계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형벌 외에 그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형벌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전액 보호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제도(surcharge)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민해볼만 하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형벌과는 별도로 법익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의 책임을 따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활용(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대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되는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위의 기부금의 용처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점적으로 공동모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최종 모금액은 4,279억 원에 이른다. 모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기부금이 1,226억 원(28.7%), 법인 기부금이 3,053억 원(71.3%)을 차지하고 있다.¹⁴⁷⁾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을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이러한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같은 법 제17조).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데,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업, 법무보호공단의 재소자와 출소자의 재사회화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킨다면, 부족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47)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10>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순현, 「헌법강의」, 형설출판사, 2016
- 김대근,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2019
-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 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0
- 김성룡/김현조,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김영천/김정현, “현행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2
- 김 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 지방분권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8
- 김 혁, “영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 김 혁,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21
-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2015
-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4
-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김혜경, “통합적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연대성의 원리와 전환적 사범이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피해

- 자학회, 2017/12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12
-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
- 박성훈, 전국범죄피해조사(XII):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 법무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2023. 11. 15.
- 법무부,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자료집, 2022
- 법무연수원, 2022년도 「범죄백서」, 2023
- 송귀채,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2호, 2022
- 송귀채,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3호, 2022
- 송귀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16
-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5
-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원혜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2호, 2020
- 이승현·박학모·김정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이용식,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 이은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70면, 2015
- 전현욱,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 조제성,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 최영신,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 홍영오,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국외문헌)

- ACPO, ACPO – Victim Support Victim Referral Agreement, 2003
- Ashworth A., “Victim Impact Statements and Sentencing”, Criminal Law Review, 1993
- Domestic abuse victim services, England and Wales: 2022
- Home Office, National Service Guidelines for Developing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SARCs), 2005
- McGarry D. & Smith K., Police Family Liai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206.
- Ministry of Justice, Getting it right for victims and witnesses,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12
- Ministry of Justice,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
- Robinson A. & Hudson K., Different yet complementary: Two approaches to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UK”,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1(5), 2011
- Vennard J., “Justice and recompense for victims of crime”, New Society 19, 1976
- Victims Commissioner, Victims Law Policy Paper: Victims’ Commissioner’s Proposals for a Victims Law, 2021
- Victims’ Commissioner, Commissioner for Victims and Witnesses: Report for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2013-14, 2014

-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supporting victims of crime : a rapid evidence assessment
- Wedlock E. & Tapley J., What works supporting victims of crime : a rapid evidence assessment, Victims' Commissioner : University of Portsmouth, 2016
- Hohn Petra(堀田晶子訳), “ドイツにおける被害者支援活動”, 法學研究: 法律·政治·社会81卷6号, 2013,
- 犬井勇司, “京都府における犯罪被害者支援”, 日本自治体危機管理学会誌20号, 2017
- 警察庁 犯罪被害者支援室, 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 2022
- 警察庁, 令和4年版 犯罪被害者白書, 2022
- 内閣府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室, 平成23年度諸外国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に対する経済的支援に関わる制度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11
- 滝本幸一·橋本三保子, “ドイツにおける被害者保護施策及び被害者救済活動の現状”, 法務総合研究所研究部報告9 -諸外国における犯罪被害者施策に関する研究-, 法務総合研究所, 2000
- 田口理穂, “ドイツのDV被害者が駆け込む「女性の家」システムから、いま日本が学べること”, 2020.7.28.

(참조사이트)

-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10>
- <http://www.gesetze-im-internet.de/bvg/index.html>
- <http://www.moj.go.kr/cvs/2709/subview.do>
- <https://president.jp/articles/-/37251?page=4>
- <https://www.npa.go.jp/hanzaihigai/keisatsu/kouhi.html#seihanzai>
- <https://www.npa.go.jp/higaisya/rikai/renkei/zenkoku.htm>
-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rimeandjustice/articles/domesticabusevictimservicesenglandandwales/2022>
- <https://www.victimsupport.org.uk/more-us/why-choose-us/specialist-services/homicide-service/>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인쇄일 | 2023년 12월 12일
| 발행일 | 2023년 12월 12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인권정책과 (02)2125-9828
| F A X | (02)2125-0918
| 제 작 | 준커뮤니케이션즈 053)425-1325

ISBN : 978-89-6114-979-2 93360 **비매품**

